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865-000003-10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9.6.





# 목차

С	0	N	Т	Е	N	Т	S
Ι.	주요국	최저임	l금제도	. 최근	동향	••••••	··1
Ⅱ.	국가별	최저임	금제도	••••••	••••••	••••••	15
	유럽						
	1. 그리스	스	••••••	•••••	••••••	••••••	19
	2. 네덜	란드	•••••	••••••	••••••	••••••	37
	3. 독일	•••••	•••••	••••••	••••••	••••••	63
	4. 러시	아	•••••••	•••••	••••••	••••••	85
	5. 루마	<b>니아</b>	•••••	••••••	••••••	••••••	95
	6. 벨기	게	•••••••	••••••	••••••		109
	7. 스페인	인	•••••••	••••••	••••••	············	123
	8. 아일	밴드	•••••	••••••	••••••	······································	143
	9. 영국	•••••	••••••	••••••	•••••	············	161
	10. 체코	<u> </u>	•••••	•••••	•••••		207

11. 포르투갈 223
12. 폴란드 239
13. 프랑스251
14. 헝가리269
아메리카
15. 멕시코287
16. 미국309
17. 브라질 333
18. 아르헨티나349
19. 칠레361
20. 캐나다371
21. 콜롬비아397
22. 파라과이413
아시아
23. 대만429
24. 말레이시아441

25.	베트남4	53
26.	우즈베키스탄4	73
27.	이스라엘4	87
28.	인도네시아5	01
29.	일본5	25
30.	중국5	71
31.	캄보디아5	91
32.	태국6	01
33.	터키6	21
34.	필리핀6	35
	오세아니아	
35.	뉴질랜드6	57
36.	호주6	77
0	·프리카	
37.	남아프리카공화국7	07

# I

# 주요국 최저임금제도 최근 동향



#### 1. 조사개요

#### □ 목적

○ 매년 최저임금 심의 전 동 자료를 발간하여 노·사·공익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20년 적용될 최저임금액 결정 및 제도개선 등의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

#### □ 주요내용

○ '19년 자료는 ①제도 개요, ②최저임금 결정, ③주요통계 3부분으로 구성

, -		
1부 제도개요	2부 최저임금 결정	3부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1. 국가개요	1. 결정기관	1. 최저임금 현황
2. 법 연혁	2. 결정방법 및 절차	2. 최저임금 적용현황
3. 법적근거	3. 결정기준	3. 최저임금 미만현황
4. 적용대상	4. 업종, 직종 등 구분	4. 기타 최저임금 관련통계
5. 최저임금 산입범위	5. 갱신주기	5.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6. 최저임금 이행지도		

#### □ 조사대상

- OECD 회원국(35개국\*) 21개국+비회원국 16개국 = 총 37개국
  - \* OECD 회원국 중 8개국은 법정 최저임금제도 미실시 국가, 6개국은 조사 미실시
- (대륙별 구성) 유럽 14개국, 아메리카 8개국, 아시아 12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아프리카 1개국

OECD		OECD 대륙별						
총계	가입국	비가입국	총계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37	21	16	37	14	8	12	2	1

# 2. 최저임금 관련 최근 동향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1.그리스 (OECD)	<ul> <li>2018년 8월 제3차 구제금융 종료와 함께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였으며, 2019.1월 노동사회보장부장관령을 발표하여 최저임금을 월 586유로에서 650유로(사무직, 3년미만 근로자 기준)로 11% 인상 결정</li> <li>전국노동자연합은 경제위기전 수준인 751유로(약 28%)로인상을 주장하였고, IMF 등 채권단은 소폭(2-4%) 인상을 권고했으나, 그리스 정부는 11% 인상</li> </ul>
유럽	2네덜란드 (OECD)	<ul> <li>2019년도 상반기 최저임금은 월 1,615.80유로로 2018년 상반기 (1,578유로) 대비 2.4% 인상 결정</li> <li>청소년 및 성인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정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바, 노동조합 주도로 18세 이상의 청년들에게 성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개최함</li> <li>청소년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2세 이상 청년부터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2017년 1월 통과함</li> </ul>
	3.독일 (OECD)	<ul> <li>○ 매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2019년도 최저시급은 9.19유로로 전년(8.84유로, '17-'18년도) 대비 4% 인상 결정</li> <li>○ 독일 좌파당 및 녹색당은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18.11.30. 의회에서 부결됨</li> <li>① ('17.11.20) 좌파당은 당시 시간당 8.84유로로 책정된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법안 발의</li> <li>② ('18.02.27) 녹색당은 최저임금 갱신주기를 1년으로 줄이자는 법안 발의</li> <li>③ ('18.04.28) 좌파당은 최저임금제 관리감독의 문제를 제기하며 불법노동감독기관의 인원을 5,000명으로 증원하고고용주의 시간별 근무기록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li> </ul>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④ ('18.04.28) 좌파당은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에서 '장기실업 자가 취업을 한 첫 직장에서 6개월' 및 '직업훈련이 미종료 된 18세 미만 청소년'을 제외하는 법안 발의
	4.러시아	<ul> <li>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11,280루블로 '18.5월(11,163루블) 대비 1.04% 인상 결정</li> <li>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li> </ul>
	5.루마니아	<ul> <li>2019년도 적용 월 최저임금은 2,080론으로 전년(1,900론) 대비 9.47% 인상</li> <li>2019년 최초로 세분화된 최저임금제도 도입하여 대학전공자 또는 경력 1년이상자는 2,350론, 건설분야자는 3,000론으로 구분 결정</li> </ul>
	6.벨기에 (OECD)	<ul> <li>2년마다 결정되는 보수기준에 따라 국가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2018.9.1. 기준 최저임금은 월 1,593.81 유로로 '17.6월 대비 1.99% 인상</li> <li>최근 국가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의 범위에 대해 논의</li> <li>적용제외 대상자인 1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규정 명확화를위한 논의 진행 중</li> </ul>
	7.스페인 (OECD)	<ul> <li>○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월 900유로로 전년(735.90유로) 대비 22.3% 인상 결정</li> <li>○ 정부는 2018.12.21.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 22.3% 인상안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1977년 이후 41년 만에 최대 인상폭임</li> <li>- 정부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의 주된 목적이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개선 및 워킹푸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이를 계기로 스페인 최저임금이 유럽 평균의 80.6%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설명</li> <li>- 아울러,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2.5백만명 가운데 여성이 56.7%로 정부는 동 정책이 남녀간</li> </ul>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임금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한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월 1,000유로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임
	8.이일랜드	○ 2019.1.1.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0유로로 전년대비(9.55 유로) 2.6%인상
	(OECD)	○ 2018.10.4. 고용사회보장부 장관은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을 2019.1.1.부터 9.80유로로 인상한다는 행정 명령 발표함
		○ 2019년 4월 1일부터 25세이상 최저임금은 8.21파운드로 전년 (7.83파운드) 대비 4.9% 인상
		-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7.70파운드, 18-20세 6.15파운드, 16-17세 4.35파운드, 도제의 경우 3.90파운드임
	9.영국 (OECD)	○ 종전 대비 4.9%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연간 소득은 약 600파운드가 오르고, 과세최저한도는 650파운드 오를 것으로 예상
		○ 영국정부는 2016년 최저임금 도입 당시 2020년까지 전체 중위 소득의 60%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 2019년도 인상률은 동 목표달성을 위한 과도기 성격이고, 현재 예상치를 반영하면 2020년도 최저임금은 2019년도보다 5.0% 인상된 8.62파운드로 예상
	10.체코 (OECD)	○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9.80코루나로 전년(73.20코루나) 대비 9.0% 인상
	11.포르투갈 (OECD)	○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600유로로 전년(580유로) 대비 3.4% 인상
	12.폴란드 (OECD)	○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2,250PLN달러로 전년(2,100PLN) 대비 7.14% 인상
	13.프랑스 (OECD)	○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전년(9.88유로) 대비 1.52% 인상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ul> <li>2019년 최저임금 재조정으로 1.52% 인상이 있었고,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노란조끼'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활동보너스로 최저임금대상자에게 평균 월 100유로 추가 인상 결정</li> </ul>
		○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149,000포린트로 전년대비(138,000 포린트) 7.97% 인상
	14.헝가리 (OECD)	○ 헝가리 정부는 실업률(2008년 12%→2018년 3.7%) 감소를 위해 공공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이를 고용에 포함시켜왔음
	(CEC)	<ul><li>또한 외국으로 이주한 고학력 근로자(의사, 간호사 등)의 귀환을 위한 특별지원정책을 추진중임</li></ul>
		- 귀국 항공요금, 1년간 월 10만 포린트의 주택 임대료, 출퇴근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19년 적용 일반지역 최저임금은 일급 102.68페소로 전년 (88.36페소) 대비 16.2% 인상
	15.멕시코 (OECD)	- 2015.10.1 지역 구분이 폐지되었으나, 2018.12월 멕시코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취임 후 최저임금위원 회는 2019.1.1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일반지역과 북부국경 자유무역지대 2개로 구분 결정함
		- 미국과 인접한 국경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최저임금에 79.97 페소를 더한 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여 176.22페소로 설정함
아메리카		ㅇ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음
		-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 시간당 7.25달러, 팁을 받는 근로자 시간당 2.13달러임
	16.미국 (OECD)	○ 2019년의 경우 19개의 주가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주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이 각 12달러 로서 가장 높았음
		ㅇ 지난 1.16일 민주당은 "The Rsise the Wage Act of 2019" 발의
		- 2019년 연방최저임금을 8.55달러까지 인상한 후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안 포함시킴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현재 명확치 않으며,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도 반대 입장이므로 인상안이 쉽게 관철되기는 어려울 듯함			
		- 다만, 2020년 미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등 진보주의 진영과 근로자 집단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 으므로 현행 연방최저임금 7.25달러보다는 다소 인상될 것 으로 예측			
		<ul> <li>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998헤알로 전년대비(954혜알) 4.61%</li> <li>인상</li> </ul>			
	17.브라질	<ul> <li>최저임금은 2018년 4월 당초 계획했던 월 1,006해알이 아니라 998해알로 결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과 예산에 반영된 금액간의 차이는 인플레이션 하락 때문임</li> </ul>			
		<ul> <li>브라질은 최근 수년간 법정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왔으며, 브라질의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수당, 실업수당, 노인 및 장애인 수당 등 정부지출에 연관이 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각종 수당도 그에 따라 인상되는 체계임</li> </ul>			
	18.아르	○ 2019년도 3월기준 최저임금은 월 12,500페소로 '18.1월기준 (9,500페소) 대비 31.6% 인상함			
	10. 카프 헨티나	<ul> <li>최근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폭락 및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도에만 4차례 최저임금 인상이 됨</li> </ul>			
		○ 2019년 3월기준 최저임금은 월 301,000페소로 '18.1월기준 (276,000페소) 대비 9.1% 인상됨			
	19.칠레 (OECD)	<ul> <li>2018.9.19. 칠레 의회는 오랜 진통 끝에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승인, 2020.3월까지 향후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이 명시된 최저임금법 제21,112호가 공표되어 2019.3.1.부터는 301,000 페소로 인상 결정되었고,</li> </ul>			
		- 2020.1.1 기준 재조정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계산법에 대해서는 2020.2월 기준 전년도 GDP 상승률이 4%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이 2.5% 인상되며, GDP 상승률이 4% 이상 일 경우에는 2.5%+(GDP 상승률-4%)로 인상됨을 명시함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20.캐나다 (OECD)	
		- 온타리오주는 2019.1.1.부터 최저임금을 15CAD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주정부 정권교체(2018.6월)로 인해 2020.9.30. 까지 최저임금이 14CAD로 동결됨
		<ul> <li>2019년 적용기준 최저임금은 월 828,116페소로 전년(781,242페소)</li> <li>기준 6% 인상됨</li> </ul>
	21.콜롬 비아	○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25년동안 가장 중요한 실 질적 인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6%)과 인플레이션 인상률(3.3%)의 차이(2.7%)가 지난 25년간 가장 높기 때문임(과거 최저임금-인플레이션 인상률간 차이는 0.2%∼1.8% 수준에 불과했음)
	22.파라 과이	<ul> <li>2018년 7월 기준 최저임금은 월 2,112,562과라니로 전년(2,041,123 과라니) 대비 3.5% 인상</li> </ul>
		<ul> <li>2019.3월 파라과이 상원은 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바, 향후 하원 에서 동 법안을 심의할 예정</li> </ul>
		* 현재 파라과이 노동법은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40% 감액된 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 2019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3,100NT\$로 전년(22,000NT\$) 대비 5% 인상
	20 11-1	ㅇ 2018.11.30.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초안 발표
아시아	23.대만	-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입하여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원칙상 매년 3/4분기에 진행되는 최저임금 심의'를 법적으로 매년 3/4분기 개최로 한다는 내용 수록
	24.말레 이시아	<ul> <li>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월 1,100링깃으로 전년(1,000링깃, 말레이반도기준) 대비 10% 인상됨</li> </ul>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까지 Sabah주, Sarawak주, Labuan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금융특구 소재 지역에 대해 말레이반도보다 낮은 최저임금률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9년부터는 동일한 최저임금률 적용				
		- 정부는 2018년 총선 전후에 현 여당연합의 선거공약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기존(월 1,000링깃)보다 50% 많은 월 1,500링깃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건비상 이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및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2019년 1월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당초 목표보다 낮은 월 1,100링깃으로 결정 ○ 2019년도 1지역기준 최저임금은 월 418만동으로 전년(398만동) 대비 5% 인상				
	25.베트남	○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견해차 존재				
		- '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전체 평균 5.3% 인상안으로 결정				
		○ 2019년도 현재 최저임금은 월 202,730숨으로 '18.7월(172,240숨) 대비 17.7% 인상				
	26.우즈 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은 '16.12월 신정부 출범 후, 경제 선진화를 목표로 급속한 경제개방·자유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2017.9월 외환 자유화 및 환율단일화 조치에 따른 숨(Sum)화 평가 절하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나, 다만 2019년부터 성장세를 차츰 회복할 전망				
	27.이스 라엘 (OECD)	○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월 5,300NIS로 전년동결				
		<ul> <li>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월 3,940,973루피아로 전년(3,648,035 루피아) 대비 8.03% 인상&lt;자카르타주 기준&gt;</li> </ul>				
	28.인도 네시아	○ 노동부는 지난 10월 15일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8.03%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	-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매년 1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15년(12.1%)→'16년(11.5%)→'17년(8.25%)→'18년(8.71%)→'19년(8.03%)				
	29.일본 (OECD)	<ul><li>2018년 10월 적용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874엔으로 전년 (848엔) 대비 3.06% 인상</li></ul>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전국 가중평균)으로 874엔을 권고하였으며, 47개 도도부현을 A,B,C,D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별 최저임금 인상 액을 권고			
		- 도도부현 지방최저심의회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권고를 토대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			
		* 최저임금이 가능 높은 곳은 도쿄로 985엔, 가장 낮은 곳은 가고 시마현으로 761엔임			
		○ 중국의 최저임금은 각 성·시·지치구별로 정하여 발표하며, 2018년 9월 적용 북경시 최저임금은 월 2,120위안으로 전년 (2,000위안) 대비 6.0% 인상			
		ㅇ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율은 여전히 높으나, 매년 하락하는 추세			
		- 2011-2015년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13%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7년부터 인상율이 10% 이하로 하회			
	30.중국	* 최저임금 인상율 : (2011) 25.2% → (2012) 17.5% → (2013) 15.1%, (2014) 13.0% → (2015) 13.0% → (2016) 10.3% → (2017) 8.7% → (2018) 8.4%			
		○ 2018년의 경우, 전체 32개 성·시 중 북경, 상해 등 총 16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조정지역기준 인상율은 8.4%)			
		- 전일제 월급을 기준으로 상해의 최저임금이 2,420위안으로 가장 높고, 상해·북경·광둥·천진 등 7개 지역이 2,000위안을 초과함			
		○ 중국은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중진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양극화 및 저임금 근로자와 빈곤인구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전망			
		○ 2019년 적용 월 최저임금(직물, 봉제, 신발업계 한정)은 182 달러로 전년(170달러) 대비 7.1% 인상			
	31.캄보 디아	- 직물, 봉제, 신발업계 근로자에 대한 2019년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며 여타 업종에 대해서는 강제적 용되지 않으나 관행상 이에 준하여 설정하고 있음			
		ㅇ 2018.9월 「근속수당 지급에 대한 시행령」개정으로 근로기간이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종료시 급여의 5%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 해고시 지급하는 보 상금(연 15일 급여)을 연2회(6월 및 12월) 분할하여 사전 지급		
		* 직물, 봉제, 신발업계는 2019.6월, 여타업종은 2021년부터 시행 예정		
		○ 태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며, 2018년 4월 적용 방콕의 최저 일급은 325바트로 전년(310바트) 대비 4.8% 인상		
	32.태국	- '13.1.1-'16.12.31까지 최저임금이 300바트로 동결되어 지역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17.1.1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ul> <li>2018년에는 77개 지역을 7개 최저임금으로 구분하여 '18.4.1.</li> <li>부터 최대 330바트까지 인상(인상률 최대 7.14%)</li> <li>*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신정부 구성('19.6월 잠정) 이후 발표 예정</li> </ul>		
	33.터키 (OECD)	○ 2019년 적용 월 최저임금은 2,558TL로 전년(2,029TL)대비 26% 인상		
	34.필리핀	○ 필리핀은 17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각 지역 내에서도 산업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을 결정함		
	JA. 린디딘	<ul> <li>수도권지역(비농업 업종)의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일급 537페소(10.2달러)로 전년(512페소) 대비 4.9% 인상</li> </ul>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성인기준) 시간당 17.70NZ\$로 전년 (16.50NZ\$) 대비 7.3% 인상		
	35.뉴질 랜드	○ 2017년 10월 집권한 노동당 주도 연립정부는 '더 공정하고 더 좋은 뉴질랜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포용성장과 공정 경제, 빈곤감소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옴		
오세아니아	(OECD)	- 그 일환으로 현정부는 집권 직후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20NZ\$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8년 4.8%, 2019년 7.3% 인상하였으며, 금년 최저임금 인상액 발표시 2020년 까지 18.90NZ\$, 2021년까지 20NZ\$로 단계적 인상 계획을 공표		
	36.호주 (OECD)	○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령별, 업종별, 숙련도별 구분 적용하며,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3A\$로 전년(18.29A\$) 대비 3.5% 인상		

# I. 주요국 최저임금제도 최근 동향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 호주노조위원회는 2019.7월부터 적용될 호주 최저임금이 주급 기준으로 최소 5.9%(43A\$) 인상한 762.20A\$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호주 산업협회, 호주 산업상공회의소 등 기업 및 산업대표 단체들은 저물가 장기화로 인한 임금인상률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이용한다면 대규모 정리해고 및 신규채용 축소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주급기준으로 2.0% 수준(14.4A\$)의 인상이 적절 하다고 주장		
아프리카	37.남아 프리카 공화국	<ul> <li>2017년 2월 '국가경제개발노동위원회(NEDLAC)'는 국가최 저임금협상안을 수용하였고, 동 협상안을 근거로 한 최저 임금법안이 국회에 상정됨</li> </ul>		
		- 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여 2018.11.26.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여 입법이 완료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 동 법을 시행		
		<ul> <li>2019년 1월 1일 부로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은 시급 20랜드, 주 40시간 근무시 월 3,500랜드, 주 45시간 근무시 월 3,900랜드임</li> </ul>		
		- 예외적으로 농장근로자는 시급 18랜드, 가사근로자는 시급 15랜드, 공공사업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는 시급 11랜드의 최저임금이 적용됨		

※ ㈜자료출처 : 해당국 대사관을 통한 자료 수집

# II

# 국가별 최저임금제도



# 유럽

# 1. 그리스

국	명	그리스(Hellenic Republic)		
언	어	그리스어		
면	적	131,957 <sup>km²</sup>		
인	구	1,078만명		
수	도	아테네(인구: 약 450만 명)		
주:	요도시	테살로니키, 파트라, 이라클리오, 라리사 등		
종	교	그리스정교(98%), 이슬람교(1.3%), 기타(0.7%)		
교 육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초등6년, 중등3년)		
화፲	폐단위	유로('19년 현재 환율 1,284.82원)		
GDP		2,002억달러		
	1인당 GDP	1만8,613달러		
주요 경제	GDP성장률	1.9%(그리스 통계청, 잠정)		
지표	교역	863억 유로(수출 340억 유로, 수입 523억 유로 전망)		
(2018)	실업률	18.3%(2018.12.)		
	물가상승률	0.4%(2019.1.)		
대사관 웹사이트		http://grc.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955년 그리스 정부는 「노동분쟁해결에 관한 법률(Law 3239/1955)」을 제정, 근로자의 최저생계수준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도입
- 1967~1974년 군사정권시절 정부의 자의적인 노사관계 개입으로 인한 병폐를 교훈삼아 군사정권 붕괴이후 민정체제 아래 정부는 노사양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1990년「단체교섭에 관한 법률(Law 1876/1990)」을 제정, 최저임 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노동자연합과 고용인협회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도출하도록 규정(정부개입 불허)
- 2009년 경제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EU, ECB, IMF)과 2012년 제2차 구제금융협정을 체결, 최저임금 삭감(22%), 노동권 제한 등을 이행
- 2012년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의 요구로 법률 4046/2012를 제정하고, 채권단의 동의하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
- 2015.1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급진좌파 주도 연립정부는 최저임금 10% 인상, 노동권 복원 등을 공약하였으나, 채권단의 반대로 무산
- 2015.9월 체결된 제3차 구제금융협정에서도 그리스 정부가 채권 단과의 동의 없이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변경

하지 못하도록 규정

- 2017년 근로자 파업권 제한(1/3 찬성 → 1/2 찬성), 집단해고시 노동사회보장부장관 승인조항 폐지, 해고 통지기간 단축(6 → 4개 월) 등 일부 노동관련 법령 개정
- 2018년 8월 제3차 구제금융 종료와 함께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였으며, 2019.1월 노동사회보장부장관령을 발표하여 최저임금을 월 586유로에서 650유로(사무직, 3년미만 근로자기준)로 11%인상 결정
  - 전국노동자연합은 경제위기전 수준인 751유로(약 28%)로 인상을 주장하였고, IMF 등 채권단은 소폭(2-4%) 인상을 권고했으나, 그리스 정부는 11% 인상 결정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Law 1876/1990)
- 개정 노동고용법 (Law 3864/2010)
- 중기재정조치령 (Financial Adjustment Act) (Law 4046/2012)
- 2013-2016 중기재정조치 개정법 (Financial Adjustment Act) (Law 4093/2012)
- 소득세 및 긴급재정조치 (4046/2012, 4093/2012, 4127/2013)
  - \* 2017.1.1.부터 시행
- 노동사회보장부 장관령 (4241/127/2019)
  - \* 2019.2.1.부터 시행

#### 2. 최근 (2013~2019년) 법령 개정사항

- 2012.3월 노동 유연성을 강조한 노동고용법 개정법(법률 4046/2012)에 따라 최저임금 22% 삭감
  - 2017.1.1.부터 25세 미만(3년 미만, 미혼자)은 32%로 추가 삭감
- 2012.11월 제정된 2013-2016 중기재정조치 개정법(Financial Adjustment Act) (Law 4093/2012)에 신규 최저임금 기준 설정
  -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이전까지 최저임금 인상 동결 및 단체

계약, 노동중재 등 노동법 규정 적용 배제

- 2015.9월 체결된 제3차 구제금융협정은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과의 동의 없이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
- 2019.1월, 노동사회보장부 장관령(4241/127/2019)에 의해 소득세 및 긴급재정조치법(4127/2013 103조) 개정하여, △최저임금을 월 650유로(3년 미만, 사무직, 미혼 기준)로 인상 △25세 미만 차별 (sub minimum wage)을 폐지, △ 일부 수당 복원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 사업주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 □ 근로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외국인 및 비정규직 근로자,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 가사근로자 (home workers) 포함
    - ※ 임시직의 경우 정규직 최저임금에 비례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2. 적용제외대상
  - ㅇ 없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통상 월급제로 지급
- □ 근로시간: 주 40~48시간
  - 주 4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시간당 100% 추가 지급
  - ㅇ 공휴일 초과근무 시 주간 75%, 야간 100% 추가 지급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3년 근속수당
-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개인 부담금(총 월급의 6.67%), 상여금 등 현금급여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초과근로수당, 휴가비, 출장비,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현물급여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노동감독기관 Labour Inspection Corps (LIC) : 동 기관은 노동 사회보장부 장관 직속기구로서 1999.7.1. 발촉되었고 중앙 및 지역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노동감독업무를 수행함
- 동 기구의 수장은 특별사무국장이고 장관이 임명 (법적근거: 법률 1558/1985)
- 권한 및 역할
  - 민간 모든 기업의 노동관련 국가제도의 충실한 이행 여부 감독
  - · 노동법 위반, 불법 고용,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 보호 여부 등 사례 적발, 조사, 행정적 제재 처리
  - · 행정적 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 위반 시, 관련기록과 확 인서를 발행함 (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제기해야 함)
  - · 노동에 기인한 질병, 업무 중 발생하는 중상, 또는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 노동자의 고발 접수
  - 노동제도와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권고

#### ㅇ 노사 중재기관

- 그리스에는 OMED(Organism for Mediation and Arbitration)라는 노사중재기관이 있고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사중재업무를 담당해왔으나, 2012년 중기재정정책법에 의해 권한이 약화되어 현재 유명무실함
- 경제위기 이전에는, 각종 소송에 대해 노동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원고와 피고가 참여하는 사전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과반수로 의결하였음
- 2012년 법률 개정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토록 되었으며,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임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최저임금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1,000~3,000유로의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 부과
- 중대한 위반일 경우 사업주에게 징벌형 등 형사상 제재부과 가능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법원(혹은 민사법원)에 구제신청
- 동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사업주의 위반정도를 심판하여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 부과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2012년 구제금융협상 이전까지는 노동법상 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 (GSEE)과 사용자단체(SEB)간 협의체에서 결정
- 2012.3월 제2차 구제금융협정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결정 및 관련 입법조치에 따라 최저임금 조정

#### 2 결정방법 및 기준

#### 1. 결정방법

- 2012년 구제금융협상 이전까지는 노동법상 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 (GSEE)과 사용자단체(SEB)간 협상에 따라 전국노동단체협약(National General Collective Agreement)을 체결하여 전국 모든 업종과 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 2012.3월 제2차 구제금융협정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결정 및 관련 입법조치에 따라 최저임금 조정

#### 2. 결정기준

- 2012년 구제금융협상 이전까지는 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GSEE)과 사용자단체(SEB)는 협상 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 등 경제지표 및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타협 도출
- 2012.3월 제2차 구제금융협정에 따라 노조와 합의절차없이 정부가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리스정부는 별도 결정기준 없이 최저임금을 월 586.08유로로 22% 삭감
- 2019.2월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 △사회보장제도 예산 흑자 전망(2019년 141백만 유로, 2020년 42백만 유로), △그리스 중앙은 행, 통계청, 인력관리공단, 전국노조연합 노동연구소(INE-GGSEE), 산업경제연구소(IOBE)가 발표한 자료를 고려하였으며, 의무사항은 아니나 노동자단체와 협의를 거쳤다고 발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령 4241/127/2019, 9, 10, 21조)

# 3 갱신주기

- 2012년 2차 구제금융 협상 이전까지는 노동법상 매년 노사 간 협상에 따라 전국노동단체협약(NGCA)을 체결하여 최저임금을 결정
- 2012.3월 2차 구제금융협상에 따라 최저임금이 삭감된 이후 2019.1월 까지 동결
- 2019.2월 최저임금을 월 650유로(일급 29.04유로)로 인상 발표
  - \* 법상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는 재정과 경제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

# 4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사무직근로자(White Collar) : 월급제
- 노동기술자(Blue Collar) : 일급제

#### 5 고시방법

- 월 650유로(사무직근로자), 일급 29.04유로(노동기술자), 3년 근속수당\* 고시
- \*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3년 근속시마다 근속수당 월 65유로 적용, 노동기술자의 경우 3년 근속시마다 근속수당 일급 1.45유로 적용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 2019년 2월 현재: 월 650 유로\*지급 (3년미만 사무직근로자 기준), 일급 29.04유로(3년미만 노동기술자 기준)
  - \* 2018년에는 월 최저임금이 연간 14회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월 650 유로로 발표(고시)하기 때문에 동 기준으로 변경
  - ※ 200% 상여금을 포함 연간 14회 보수를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연간 9,100유로(650유로×14개월)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매월 758.3유로(9,100유로 /12)를 받게 됨
  - 2017.1.1.부터 만 25세 미만은 510.95유로로 추가 삭감(2011년 대비 32% 삭감)되었으나, 2019.2월부터 25세 미만 연령차별 폐지되어 모든 연령 동일하게 650유로 지급
  - 한달 미만 근무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 일한 날과 시간에 비례하여 일급/시간급 산정

#### □ 3년 근속수당

- ㅇ 사업장이 바뀌어도 경력에 따라 근속수당이 지급
  -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3년 경력마다 근속수당으로 월 65유로를 최저임금에 가산
  - 노동기술자의 경우는 3년 경력마다 근속수당으로 일급 1.45유로를 최저임금에 가산

#### 가. 노동기술자 (blue collar)

#### ㅇ 미혼자

※ 18년 이상 경력자: 37.75 유로

(단위 : 유로(€), 일급, %)

경력	3년	3년	6년	9년	12년	15년
적용기간	미만	~ 6년	~ 9년	~ 12년	~ 15년	이상
2019.2.1. <sup>~</sup> 현재	29.04	30.49	31.94	33.40	34.85	36.30
2012.1.1.	22.83	23.97	25.11	25.11	25.11	25.11
2011.7.1.	33.57	34.80	36.46	38.11	39.78	41.43
2011.1.1.	33.04	34.25	35.89	37.51	39.15	40.78
2010.5.1.	33.04	34.25	35.89	37.51	39.15	40.78
2009.5.1.	33.04	34.25	35.89	37.51	39.15	40.78
2008.9.1.	31.32	32.47	34.02	35.56	37.11	38.66
2008.1.1.	30.40	31.52	33.03	34.52	36.03	37.53
2007.5.1.	29.39	30.47	31.93	33.37	34.83	36.28
2006.9.1.	27.96	28.99	30.88	31.76	33.14	34.52
2006.1.1.	27.18	28.12	29.52	30.86	32.21	33.55

<sup>※ 2012.1.1.-2019.1.31.</sup> 기간은 구제금융협정에 따라 6년이상 근속기술자에 대해 3년 근속수당 가산이 미적용됨('19.2.1부터 환원)

#### ○ 기혼자

※ 18년 이상 경력자: 37.75 유로

(단위 : 유로(€), 일급, %)

경력 적용기간	3년 미만	3년 ~ 6년	6년 ~ 9년	9년 ~ 12년	12년 ~ 15년	15년 이상
2019.2.1. <sup>~</sup> 현재	29.04	30.49	31.94	33.40	34.85	36.30
2012.1.1.	25.11	26.25	27.39	27.39	27.39	27.39
2011.7.1.	36.92	38.16	39.83	41.47	43.14	44.80
2011.1.1.	36.34	37.56	39.20	40.82	42.46	44.09
2010.5.1.	36.34	37.56	39.20	40.82	42.46	44.09
2009.5.1.	36.34	37.56	39.20	40.82	42.46	44.09

<sup>※</sup> 노동사회보장부 장관령 4241/127/2019에 의해 소득세 및 긴급재정조치법 4127/2013 103조 (액수) 개정

경력 적용기간	3년 미만	3년 ~ 6년	6년 ~ 9년	9년 ~ 12년	12년 ~ 15년	15년 이상
2008.9.1.	34.45	35.60	37.16	38.69	40.25	41.79
2008.1.1.	33.45	34.56	36.07	37.56	39.07	40.57
2007.5.1.	32.33	33.41	34.87	36.31	37.77	39.22
2006.9.1.	30.76	31.79	33.17	34.55	35.94	37.31
2006.1.1.	29.89	30.89	32.24	33.58	34.92	36.26

※ 2012.1.1.-2019.1.31. 기간은 구제금융협정에 따라 6년이상 근속기술자에 대해 3년 근속수 당 가산이 미적용됨('19.2.1부터 환원)

# 나. 사무직 근로자(white collar)

ㅇ 미혼자

(단위 : 유로(€), 월급, %)

경력 적용기간	3년 미만	3년 <sup>~</sup> 6년	6년 <sup>~</sup> 9년	9년 이상
2019.2.1. <sup>~</sup> 현재	650.00	715.00	780.00	845.00
2017.1.1	510.95	644.69	703.30	761.90
2012.1.1.	586.08	644.69	703.30	761.90
2011.7.1.	751.39	813.99	887.99	961.99
2011.1.1.	739.56	801.17	874.01	946.84
2010.5.1.	739.56	801.17	874.01	946.84
2009.5.1.	739.56	801.17	874.01	946.84
2008.9.1.	701.00	759.41	828.49	897.48
2008.1.1.	680.59	737.29	804.31	871.34
2007.5.1.	657.89	712.70	777.49	842.28
2006.9.1.	625.97	678.11	739.76	801.41
2006.1.1.	608.32	659.00	718.91	778.82

# ㅇ 기혼자

(단위 : 유로(€), 월급, %)

경력 적용기간	3년 미만	3년 <sup>~</sup> 6년	6년 <sup>~</sup> 9년	9년 이상
2019.2.1. <sup>~</sup> 현재	650.00	715.00	780.00	845.00
2012.1.1.	644.69	703.30	761.90	820.51
2011.7.1.	826.54	889.13	963.13	1037.13
2011.1.1.	813.52	875.13	947.96	1020.80
2010.5.1.	813.52	875.13	947.96	1020.80
2009.5.1.	813.52	875.13	947.96	1020.80
2008.9.1.	771.11	829.54	898.54	967.58
2008.1.1.	748.65	805.35	872.37	939.40
2007.5.1.	723.68	778.49	843.28	908.07
2006.9.1.	688.56	740.71	802.36	864.00
2006.1.1.	669.16	719.84	779.75	839.65

# 2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2019.2월, 노동사회부장관령을 발표하여 최저임금 11% 인상
- 2019.3월, IMF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지적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EU 통계청 자료 :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Minimum\_wage\_statistics
- EU 회원국 노사관계 자료 : http://www.eurofound.europa.eu
- 그리스 노동자연합 : http://www.gsee.gr
- 그리스 노동자연합 노동연구소 : http://www.inegsee.gr
- 그리스 노동사회보장연대부 : http://www.ypakp.gr 최저임금 관련 부처 : 노동고용국 노동보수부 (30) 213 151 6281/6666
- 그리스 근로감독대 아테네 관할사무소 : (30) 210 528 1203

(작성자) 주그리스대사관 참사관 성명 강준모 (30-210-698-4080, jmkang17@mofa.go.kr)

# 2. 네덜란드

국	명	네덜란드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		
언	어	네덜란드어(영어, 프리스란드어, 파피아멘토어)		
민 족		네덜란드족(게르만족 계통)		
면 적		41,543km²(내해수면 제외 시 면적 : 33,893km²)		
인	구	1,718만명		
수	도	암스테르담(약 85만명)		
주요	도시	헤이그(정부소재지), 로테르담, 위트레히트		
종 교		가톨릭교(24%), 개신교(15%), 이슬람교(5%) 기타 (5%), 무교(51%)		
교 육		의무교육기간 : 7~16세(10년) 초등교육 : 9년(4~12세), 중등교육 7년(13~18세)		
화폐	단위	유로화(Euro)		
	GDP	8,262억달러		
	1인당 GDP	54,436달러(PPP기준)		
주요 경제	경제 성장률	2.9%		
지표 (2017, OECD)	교역규모	수출 6,905억달러 수입 6,014억달러		
02057	실업률	4.8%		
	물가상승률	1.4%		
–	란드왕국 웹사이트	http://nld.mofa.go.kr/kor/eu/nld/main/index.jsp		

# I. 최저임금제도 개요

# 1 연혁

- □ 1968.11.27. 최저임금법 제정
  - 네덜란드 국왕자문위원회(de Raad van State, Council of State)와의 협의를 거쳐 1968.11.27. 당시 Juliana (율리아나) 여왕이 '최저임금 및 최저휴가수당에 관한 법' 공포1)
  -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노동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의 임금이 그 가족의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sup>1)</sup> 최저임금 및 최저휴가수당에 관한 법 서문 참조(주재국 법령 게재사이트): http://wetten.overheid.nl/BWBR0002638/2019-01-01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최저임금 및 최저휴가수당에 관한 법

(Wet minimumloon en minimumvakantiebijslag) 제1~25조

제I장 일반규정 (제1~6조) 제II장 최저임금에 관한 법 (제7~14조)

제III장 최저휴가수당에 관한 법 (제15~18조)

제IV장 (법령)준수 및 감사 (제18a~18p조)

제V장 최종규정 (제18q~25조)

- 상기 제II장 최저임금에 관한 법(minimumloon)²) 제7~14조에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연령' 및 '적용내용'명시
- 제7조 1항: 고용계약에 의거, 노동을 제공한 22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해야 함
- 제7조 2항: ...(생략)...고용계약에 의거 22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노동자 또한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수령할 권리를 지님
- 제8조 1항: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단위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음(괄호안은 2019.1.1. 이후 적용기준)

<sup>2) &#</sup>x27;최저임금'의 네덜란드어 원문 표기

- A. 1,264.80 유로/월 (2019.1.1.이후: 1,615.80 유로/월)
- B. 291.90 유로/주 (2019.1.1.이후: 372.90 유로/주)
- C. 58.38 유로/일 (2019.1.1.이후: 74.58 유로/일)
- 제9조: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양측이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임금은 동 법 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액수로 매 분기마다 지급되어 야 함
- 제14조 1항: 제8조에 명시된 법정최저임금의 최종금액은 매년 1.1. 사회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됨
  - A. 최저임금액은 매년 전년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거시경제지표 (Macro-Economic Explorations)를 반영하여 결정됨
- 제14조 2항: 제8조에 명시된 법정최저임금의 최종금액은 매년 7.1. 상반기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됨
- 제14조 4항: 제14조 1항 및 2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액이 이전 액수에 미달할 경우 이는 적용되지 않고 이전 시기에 결정된 최저임금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추가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다시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제Ⅲ장 최저휴가수당에 관한 법(minimumvakantiebijslag)<sup>3)</sup> 제15~18조에 '적용 대상' 및 '적용내용'명시

<sup>3) &#</sup>x27;최저휴가수당'의 네덜란드어 원문 표기

- 제 15조 1항: 근로자는 임금 또는 질병수당법(Ziektewet) 및 실업수당법(Werkloosheidswet)에 의거하여 지급받는 수당의 최소 8%를 휴가수당으로 받을 권리를 지님
- 제 16조 5항: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3 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휴가수당 미만의 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음

#### 2. 최근 5년 이내(2015~2019년) 법령 개정사항

매년 1월, 7월에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이 조정되며, 최근5년 동안의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유로)

연도	٨	간당 최저임금	<u>1</u>	주당	월당	
也工	주 36시간	주 38시간	주 40시간	T 70	<u></u> ∃ 0	
2019	10.36	9.82	9.33	372.90	1,615.80	
2018	10.22	9.69	9.20	367.90	1,594.20	
2017	10.04	9.51	9.04	361.25	1,565.40	
2016	9.78	9.26	8.80	351.85	1,524.60	
2015	9.63	9.12	8.66	346.55	1,501.80	

※ (기준) 2017년 이후는 22세이상 / 2016년 이전은 23세 이상부터 적용

#### 3

####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네덜란드 노동법이 적용되는 15세에서 연금수령 연령4) 사이 근로 자로서,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국적에 관계없이 내외국인 최저임금 및 최저휴가수당에 관한 법 동일 적용5)
- 호출근로자(on call employee) 및 재택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노동을 제공한다면 최저임금 수령이 가능함
- 일의 양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실적급 근로자(piece worker)는 정상속도로 일한 시간에 대응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음

#### 2. 특례대상

- □ 청소년 근로자
  - 15세~21세 근로자는 청소년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며, 그 최저임금은 연령에 따라 감액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낮은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됨

<sup>4)</sup> 연금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하며(예시: △1952.3.31이후 1953.1.1이전 출생자의 연금수령 연령은 66세 △1954.4.30이후 1955.1.1이전 출생자의 연금수령 연령은 67세 등), 현재 기준은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하단링크 참조: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algemene-ouderdomswet-aow/inhoud/aow-betaalbaar-houden)

<sup>5)</sup> https://www.inspectieszw.nl/onderwerpen/wml/vraag-en-antwoord/geldt-het-wettelijk-minimumloon-ook-voor-buitenlandse-werknemers

- 다른 국가들에 비해 청소년 최저임금의 감액비율이 큼(뒤쪽 표 참조)
- 청소년층에 대해 100%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 ① 15세~18세 청소년은 근로보다 학업이 우선되어야 함
  - 청소년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나올 목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줌
- ② 청소년들은 경험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으므로 성인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취업이 용이함
  - 청소년 임금은 고용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방과 후) 노동시장 참 여를 촉진함
  - ※ 네덜란드에서 청소년(15세-18세)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적음 (네덜란드 7.2%, 프랑스 10%, 이태리/스페인/그리스 35% 이상)
- ③ 청소년들은 대개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용이 많이들지 않음
- 한편, 청소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것이 연령차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2004년 5월부터 연령차별금 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 해서는 동법의 예외로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 이라고 함

#### 3. 적용제외대상

- □ 고령근로자
- 연금수령자는 최저사회보장에 근거한 최저은퇴수당을 받으므로 적용제외
- □ 장애원조수당 수급 근로자
  - 18세 이전 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Wajong(장애원조)
     수당을 지급받으며, 사회보장국(UWV)의 허가를 얻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음
    - ※ 18세 이후 30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인이 되기 이전 연도에 최소 6개월 이상 학생으로서 수학하였으면 Wajong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된 경우, 고용주가 본래 임금의 최소 70%를 2년간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가 없는 경우 사회보장 국이 질병수당을 지급함

#### □ 공무원

○ 공무원의 임금은 별도의 보수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 임금구성항목:
- 기본급여(Base Salary)
- 휴가수당(Holiday Allowances)
- 연말수당(End-of-year-allowances)
-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ment)
- 통근수당(Commuting Allowances) 등
- 상기항목을 월급 또는 주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사업장에 따라 세부 임금구성항목 및 지급내용은 상이함
- 유급주휴제도는 없으며 '최저임금 및 최저휴가수당에 관한 법'에 의 거하여 총 연봉(gross salary)의 최소 8% 이상을 5-6월에 휴가수당으 로 지급함
- 최저휴가수당 계산 시, 초과근무수당은 연봉에 산입하지만 연말수당 및 수익배당은 연봉에 산입하지 아니함.6

<sup>6)</sup> 출처: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vakantiedagen-en-vakantiegeld/vraag-en-antwoord/hoe-hoog-is-mijn-vakantiegeld

#### □ 근로시간

- 풀타임 기준 주 35-40시간(주36, 38, 40시간이 일반적)
- 법정 최대근로시간은 교대근무 당 최대 12시간, 주당 최대 60시간
- 단, 4주의 기간 동안(Per week during a 4-week period) 평균 주당 55시간, 16주의 기간 동안(Per week during a 16-week period) 평균 주당 48시간 이상 근로 불가기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8)

- ㅇ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임금
- ㅇ 성과에 대한 고정보수
- 교대근무 및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 성격의 추가 보수
- 팁처럼 제3자가 제공하는 보수
-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고용주와 합의되어야 함
- ㅇ 상기임금을 합산한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sup>7)</sup> 출처: The Working Hours Act

<sup>8)</sup> 출처: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nl/topics/minimum-wage/contents/components-of-the-minimum-wage

- 휴가(휴직) 수당
- 이익배당 성격의 성과급(payment of profits)
- 장기근로에 따른 적립금(연금/저축에 대한 고용주 기여분)
- ㅇ 근로에 따라 발생한 피고용인의 비용에 대한 보상금
- 연말수당(end-of-year-allowances)

#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5

- ㅇ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 노동감사원(Inspectie SZW, 사회고용부 산하기구)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급여기록 조사
- 사회고용부 산하 노동감사원은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고용주의 급여기록부를 압류하여 조사할 수 있음
- 고용주의 급여기록이 올바르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 직원의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 12,000유로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ㅇ 미납금 지급 명령
- 노동감사원의 상시 감사 후 위반사실 적발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한 근로자에게 4주 이내 미납금을 지급해야 함
- 기간 내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인 및 임금체납 1일당 고용주에게 500유로 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4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ㅇ 벌금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10,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휴가수당을 미납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000유로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이후 5년 이내(사안이 심각한 경우 10년 이내) 고용주가 2차, 3차에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벌금 또한 두 배, 세 배 증액 부과됨

#### ㅇ 영업 정지

- 사업체가 2-3차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노동감사원은 사업 체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사회고용부산하 노동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용주에게 체납임금 지불명령 및 벌금 부과

#### 4. 최저임금 이행상황

- 최저임금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높은 감액률을 남용하는 형태의 고용이 일부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라고 함
- 소매업, 특히 슈퍼마켓 등에서 연소근로자의 나이가 올라가면 고용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보다 나이가 적은 연소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억제하는 경향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 슈퍼마켓 등에서 간단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1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15~23세이고, 그 중에서도 16~19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네덜란드 중앙노동단체 FNV는 청소년 최저임금의 철폐와 18세부터 일반최저임금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까지 18세 이상 23세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7.7.1.부터 22세 근로자도 최저임금 100%를 받게 됨

<sup>9)</sup> 노동감사원 홈페이지(www.arbeidsinspectie.nl 또는 www.inspectieszw.nl)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ㅇ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매년 초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앙경제계획(Central Economic Plan)과 부문별 노사단체협약에서 합의된 평균임금동향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을 사회고용부 장관 명의로 최종 결정
- ㅇ 최저임금 갱신: 전 반기 대비 상향조정만 가능

#### 2. 결정절차

- 관련 법령에 근거, 최저임금은 매년 6개월을 주기로 갱신되며 물가상승에 따른 가중치 적용 및 부문별 노사단체협약에서 합의된 평균임금 인상 동향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사회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부가 고시함
- 매년 1월에 발표되는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발표된 정부의 경제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평균적인 임금인상정도를 참조하여 조정

 매년 7월에 발표되는 최저임금은 동년 상반기에 발표된 정부의 경제분석보고서에 기록된 평균적인 임금 인상정도를 참조하여 조정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민간 및 공공단체의 협의과정 관련, 별도의 공개절차는 없으며 최종적으로 조정된 금액을 사회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부가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결정기준

 최저임금법 제14조 1항에 의거, 매년 최저임금은 동년 1월, 7월 사회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발표되며, 이는 매년 전년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거시경제지표(Macro-Economic Explorations) 및 중앙통계청(CBS)에서 발행하는 National Accounts of the Netherlands 등을 참고하여 결정됨<sup>10</sup>)

<sup>10)</sup> National Accounts of the Netherlands 2017은 네덜란드통계청(www.cbs.nl)에 게재됨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 총 최저임금(gross minimum wage)

- 고용주는 개별근로자에 해당되는 총액기준 최저임금을 월급명세서 (wage slip)에 명시하여야 함
- 고용주는 총액기준 최저임금에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함
-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게 되는 순 최저임금은 총액기준 최저임금보다 적음
- 매년 총액기준 최저임금은 1.1.과 7.1. 연간 2번 인상됨
- ㅇ 최저임금 고시기준
- 최저임금을 월급, 주급 및 일급으로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함
  - ※ 지역별 최저임금제에 대해 네덜란드는 지역간 빈부격차가 크지 않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임
- 다른 국가와 같이 시간급을 고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 금액은 풀타임 근로자의 주 표준근로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산정 하고 있음
  - 풀타임(전일근무) 고용의 근로시간이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시간당 최저임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풀타임 고용에 대한 근무시간은 주당 34시간(금융분야)부터 주당 40시 간(산업 분야)까지 다양함

- 파트타임 근무 시 총액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적으로 감소함
- ㅇ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방법
  - 주당 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매일 근로하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 일 평균 근로시간으로 일급액을 나눔
    - ex) 주당 36시간 근무하고 매일 74.58유로의 임금을 지급받는 22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평균 일 근로시간은 7.2시간(36 / 5)이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74.85 / 7.2 = 10.36유로임
- 풀타임 총액기준 최저임금현황 (표)

(적용시기: 2019.1.1. - 6.30. 단위: %, 유로)

		( 1 0 1		
연령	비율	월급	주급	일급
22세 이상	100	1,615.80	372.98	74.58
21세	85	1,373.45	316.95	63.39
20세	72.5	1,131.05	261.05	52.21
19세	61.5	888.70	205.10	41.02
18세	52.5	767.50	177.15	35.43
17세	45.5	638.25	147.30	29.46
16세	39.5	557.45	128.65	25.73
15세	34.5	484.75	111.85	22.37

# ○ 주당 근로시간별 시간당 총액기준 최저임금현황 (표)

(적용시기 : 2019.1.1. - 6.30, 단위 : 유로)

어컨	시간당 최저임금(시급)				
연령	주 40시간	주 38시간	주36시간		
22세 이상	9.33	9.82	10.36		
21세	7.93	8.35	8.81		
20세	6.53	6.87	7.26		
19세	5.13	5.40	5.70		
18세	4.43	4.37	4.93		
17세	3.69	3.88	4.10		
16세	3.22	3.39	3.58		
15세	2.80	2.95	3.11		

# ○ 최근 5년간 적용시기별 시간당 총액기준 최저임금현황 (표)

(단위 : 유로)

			,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시급)				
연도	주 36시간	주 38시간	주 40시간		
2019	10.36	9.82	9.33		
2018	10.22	9.69	9.20		
2017	10.04	9.51	9.04		
2016	9.78	9.26	8.80		
2015	9.63	9.12	8.66		

※ (기준) 2017년 이후는 22세이상 / 2016년 이전은 23세 이상부터 적용

#### □ 순 최저임금(net minimum wage)

- 순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으로 1년에 2회 조정 되는 총 최저임금을 근거로 계산됨
- 순 최저임금은 개인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과 세금 등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함
- 순 최저임금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순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가능한 공제액만을 고려함
- 따라서 배우자의 세금 공제액, 57세 이상 근로자의 세금 공제액, 연금 기여금, 건강사회보장 기여금은 고려하지 않음

# 갱신주기

□ 갱신주기: 6개월

5

○ 최저임금에 관한 법 제2장 14조에 의거, 매년 1월1일, 7월1일 사회고용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최저임금 조정안 발효 및 고시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최저임금 현황 1

(단위: 유로, %)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인상률	결정
ㅋㅋ만ㅗ	시신님	(8시간 기준)	(시간기준)	고시일
2019 상반기	9.33	74.58	1.4	2019.1.1.
2018 하반기	9.20	73.58	1.0	2018.7.1
2018 상반기	9.11	72.88	0.8	2018.1.1
2017 하반기	9.04	72.32	0.9	2017.7.1
2017 상반기	8.96	71.68	1.0	2017.1.1
2016 하반기	8.87	70.96	0.8	2016.7.1
2016 상반기	8.80	70.40	1.1	2016.1.1
2015 하반기	8.70	69.60	0.5	2015.7.1
2015 상반기	8.66	69.28	0.3	2015.1.1

<sup>※ (</sup>기준) 2017 하반기 이후 22세 이상, 2017 상반기 이전 23세 이상 적용, 주40시간 기준

<sup>※</sup> 최저임금 고시 기준은 월, 주, 일을 기준으로 함

2

# 최저임금 적용현황

- 2017년 전체 고용 계약의 6.3%가 최저임금 수령
  - 최저임금 적용 주요 직종: 임대 및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외식업, 문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 종사자 대부분은 주20시간 이하 근무 학생이며 특히 인턴십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일이 빈번함(인턴십은 공식적으로 학생만 지원 가능)

####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네덜란드)

(기준년도: 2017년)

	최저임금적용 고용 계약 수	네덜란드
	(단위: 천건)	각 직종 별 비율
전체	507.7	6.3%
농업 및 산업	45.6	3.7%
상업 서비스	344.9	8.1%
비상업 서비스 (정부 및 건강관련분야 포함)	117.2	4.5%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 (Netherland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www.cbs.nl

#### <표> 최저임금 미만현황(네덜란드)

(단위: 천명, %)

연도	최저임금 및 근사임금(최저임금의 100-105%) 받는 근로자수(비율)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비율)
2017	284.9(3.5)	507.7(6.3)
2016	243(3.1)	517(6.6)
2014	222(2.9)	490(6.4)
2012	195(2.5)	491(6.2)
2008	_	461(5.9)

- 주 1) 최저임금의 100%-105% 사이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합계로 산출(최저임금 및 근사임금)
  - 2) 장애근로자 및 최저임금 적용 예외대상과 같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의 경우 또한 수 치에 포함하여 집계

# 3 최저임금 미만현황

- □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보다 낮은 액수를 받는 근로자 관련 통계
  - 장애근로자(Wajong Scheme) 고용 시 비장애근로자와 장애근로자간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보전을 위해 고용주에게 일정액의 정부지원금을 지급, 장애근로자의 최저임금 수령을 유도함
    - 동 제도의 적용으로 2014년 약 1만 명의 장애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됨.11)
    - 2018까지 학자금대출 자격부여에 따라 청년장애급여 수령 기간이 단축되거나 수령금액이 감소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학자금대출 자격이 부여되더라도 장애급여 수령기간이 단축 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학습 및 교육을 받을 수 있음 12)
  - 2017년 노동감사원은 약 500개의 파견회사를 감사하였으며, 위반이 발견된 131개 고용사무소에 총 13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함.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최저임금・최저휴가수당법 위반임.13)
    - 네덜란드에는 약 12,000개의 파견직 회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약 770,000명의 파견근로자가 고용
    - 특히 농업, 원예, 금속, 외식(케이터링), 소매, 건설, 청소산업에서

<sup>11)</sup> 출처: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Joke Verbeek 담당관

<sup>12)</sup> 출처: https://www.rijksoverheid.nl/actueel/nieuws/2019/02/22/vereenvoudiging-regelgeving-wajong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wajong/nieuws/2018/12/19/wat-verandert-er-op-1-januari-2019

<sup>13)</sup> 출처:https://www.inspectieszw.nl/actueel/nieuws/2017/07/12/uitzendbureaus-en-inleners-voor-ruim-13-miljoen-euro-beboet

최저임금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파견 근로자의 절반 이상(59%)는 폴란드 국적
-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전일근로자(full time worker)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수 없으므로 네덜란드 중앙통계청(Netherland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또한 이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음

# 4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정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바, 노동조합들 주도로 18세 이상의 청년 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임
  - 청소년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2세 이상 청년부터 성 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2017년 1월 통과
  - 또한, 18세 이상 22세 미만의 청소년 최저임금도 인상 됨14)
- 경제연구재단 (SEO, de Stichting Economisch Onderzoek) 조사에 따르면, 18~22세 청년임금 조정으로 인한 큰 변화가 없었으며, 특히 재학 청소년 같은 경우 임금 변화의 비율 변동이 미비함. 따라서 2019년 7월1일 법정청소년임금 인상에 추가적인 인상 조치사항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sup>14)</sup>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minimumloon/nieuws/2017/01/24/minimumjeugaloon-omhoog

<청소년최저	임금	조정	로드맵>
--------	----	----	------

연령	2017.1.1	2017.7.1	2019.7.1.시행예정
23세 이상	100%	100%	100%
22세	85%	100%	100%
21세	72.5%	85%	100%
20세	61.5%	70%	80%
19세	52.5%	55%	60%
18세	45.5%	47.5%	50%
17세	39.5%	39.5%	39.5%
16세	34.5%	34.5%	34.5%
15세	30%	30%	30%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네덜란드 최저임금법 관련 안내 www.minimumloon.nl
- 네덜란드 정부홈페이지
   www.government.nl/topics/minimum-wage/
   www.rijksoverheid.nl
- 네덜란드 중앙통계청 www.cbs.nl/en-GB
- 네덜란드 노동감사원 www.inspectieszw.nl

(작성자) 주네덜란드대사관 최정은 연구원 (jechoi18@mofa.go.kr, +31 70 7400 231)

# 3. 독일

,

. . . .

. . . . . .

ı.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언 어		독일어		
면 적		357,022 <sup>km²</sup>		
인 구		약 8,300만 명('18) / km²당 232명		
수	도	베를린		
주요도시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종	교	신교 28.9%, 구교 30.3%, 이슬람 4%, 무종교 33%		
교 육		의무교육 12년		
화폐 단위		EURO(€1=\$1.13: '19.3 기준)		
	GDP	3조 8,286억달러(세계 4위)		
 주요	1인당 GDP	46,104달러(잠정)		
ᅵ	GDP성장률	3.8%(명목), 1.5%(실질)		
지표 (2018)	교역	2조 4,079억 유로(수출 : 1.3조 유로, 수입 : 1.1조 유로)		
	실업률	3.2%		
	물가상승률	2.3%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de-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독일은 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사 간 임금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노사 양측이 노동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조건 등을 결정토록 해왔음
  - ※ 독일에서는 각 산업부문별로 임금 및 노동 조건 등에 관한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
- 1952년 '최저근로조건법(Mindestarbeitsbedingungengesetz)' 제정으로 최저임금제의 법적근거는 마련, 노사 자율협상을 통해 산업 별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노동협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동 법에 근거해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관련사항을 규율
- 1996년 외국출신 저임금 근로자로부터 독일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 광산, 세탁, 경비, 폐기물처리업 등 일부 저임금분야에 대해서 '근로자파견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으로 최저임금을 규율
- 1990년대 중반 이후 양호한 경제성장에도 저임금 시간제근로자가 꾸 준히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확대를 위하여 근로자파견법 및 최저근로조건법의 개정을 추진에, 2009년 2월 13일 최저임금 관련 2개 법안(근로자파견법 및 최저근로조건법)이 개정됨
  - \* 최저임금 실시 및 감독은 최종적으로 연방세관당국으로 일원화
  - \* 2개의 개정법은 모두 노동협약 자치를 보완하는 형태로 최저임금 설정방 법을 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종래부터 존재하는 노동협약법의 일반적

구속력 선언제도와 함께 최저임금 설정방법이 3가지(근로자파견법, 최 저근로조건법, 노동협약법의 일반적 구속력 선언제도)가 되었음

-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및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워킹 푸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법정 일괄 최저임금제도 도입 요구가 노조, 시민단체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중도좌파정당 사민당(SPD)은 2013.9 월 총선 핵심공약으로 법정 일괄 최저임금제 도입을 제시하였고, 기민·기사연합과의 연정협약에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일괄 최저임 금제 도입을 포함, 2014.8월 관련 규정을 포함한 "노동협약자율성강 화법안"을 제정함
  - \* 2014년 4월 내각/2014년 하원(6월) · 상원(7월) 결의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노동협약자율성강화법(Tarifautonomiestaerkungsgesetz)

※ 통칭 : 최저임금법(Mindestlohngesetz)

-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일괄최저임금을 도입하기 위해 2014.8월
   제정된 법으로서, 노동협약시 법정 일괄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제1조)이 주요 내용
- 2015.1.1.자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

- 근로자파견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상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 보호에 긍정적이었음을 고려, 향후 동법의 적 용 범위를 건설업, 광산업 등 일부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 으로 확대(제6조)
- 2014년 8월 법정일괄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함께 근로자파견법의
   적용 범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됨
  - ※ 최저임금법 관련 기타 법안 별첨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ㅇ 모든 업종의 근로자
- 장애인,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 적용

# 2. 특례대상

- ㅇ 없음
  - \* 신문배달원의 경우 2015.12.31.까지는 법정최저임금(8.5유로)의 75%, 2016.12.31.까지는 85%를 적용하였으나 2017년부터 전면 시행함

#### 3. 적용제외대상

-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경우에는 최저임 금제를 적용하지 않음
  - 장기실업자가 재취업을 한 첫 직장에서 6개월간은 최저임금제 미적용
  - 미수료(졸업증 미취득)한 18세미만 청소년, 교육중인 18세미만 청소년 직업훈련생
  - 학교 또는 직업훈련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행되는 실습 업무
  - 3개월 미만으로 실행되는 자발적인 인턴(수습) 업무 및 자원봉사자
  - 직업교육법에 명시된 직업교육준비과정 참여 청소년
  - 명예직 종사자
    - \* 명예직 종사자는 일정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 임금은 민법(BGB) 제614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후불로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사원(Angestellter)에게는 월급, 노동자(Arbeiter)에게는 주급, 보조업무자(Hilfsarbeiter) 등과 같은 기타 형태의 근로자에게는 일급의 형태로 지급
  - \* 독일에서 사원(Angestellter)은 통상 사무직 노동자, 노동자(Arbeiter)는 노무직 노동자를 뜻하며, 보조업무자(Hilfsarbeiter)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
- 임금지급은 경영조직법(BetrVG) 제87조제1항제4호 따라 현금 또는 은행을 통한 이체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식사 또는 주거시 설제공 등의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 지급일, 장소, 형태 등에 대한 별도의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영조직법(BetrVG)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recht)에 의해경영협의회(Betriebsrat)에서 결정 가능

## □ 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법(ArbZG) 제3조에 따라 평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6개월 또는 24주 근로시간의 평 균이 8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10시간까지 연장 근무 가능

-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에 관한 근로시간법(ArbZG) 규정을 어겼을 경우 15,000 유로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근로자는 근로시간법(ArbZG) 제4조에 따라 6시간 이상 9시간 이하 근무 이후 30분 동안의 휴식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9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에는 4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동 휴 식시간은 각각 15분씩 나누어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하루의 근무를 마친 후 다음 근로시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산입 임금 : 기본급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기본급 외의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 특별수당(Schmutzzulagen), 주행수당 등 기타수당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총괄적인 이행지도 주체는 연방노동사회부
- 법률해석 및 관련 상담은 세관(Zoll)에서 담당
- 이행 감독은 세관(Zoll) 내 불법노동감독기관(Finanzkontrolle Schwarzarbeit)에서 실시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처벌규정)

○ 최저임금 이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21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형법 제266a조에 의해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해당 근로자가 세관에 있는 불법노동감독기관(Finanzkontrolle Schwarzarbeit)에 신고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

-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Mindeslohnkommission)를 설치하고 2016.6.30.부터 최저임금 산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6명(고용주대표 3명, 노동자대표 3명),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 / 5년 단위로 새롭게 구성)
  - \* 상임위원은 상근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독일어로 Stimmberechtigte Mitglieder로, 직역하면 "표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해석됨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노사대표의 선정은 노사단체가 추천하여 연방정부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근로자 측과 사업주 측에서 협의하에 추천(최저임금법 제6조 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양측 추천인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맡게 되며,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최저임금법 제6조 2항)
  - 자문위원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노사단체에 속하지 않고, 동 단체들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인사로서 고용주 협회측과 노조측 추천(각 남성 1명/여성 1명 이상)에 의해 연방정부에서 임명

# 2 결정방법 및 기준

#### 1. 결정방법

ㅇ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표결로 결정

#### 2. 결정기준 및 산출근거

- □ 결정기준
  - 연방통계청은 월별 임금(시급) 현황을 집계하여 임금지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동 임금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
    -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규모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보호에 기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
    - 또한, 경기현황 및 노동시장의 특별한 조건으로 인해 위원회 위원 의 2/3가 연방통계청의 임금지표가 부적격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임금지표와 별도로 결정
- □ '19년(최신) 최저임금 결정 산출근거 자료
  - 1단계 최저임금 인상 ('19년 9.19유로) 결정 : 2016년, 2017년
     연방통계청 월별 임금(시급) 인상률 집계하여 산출
  - 2단계 최저임금 인상 ('20년 9.35유로) 결정 : 2018년 상반기까지의 연방통계청 월별 임금(시급) 인상률 집계하여 산출

スヘココい	키用이그레드
수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1 1 - 1 - 1	

# 3. 결정과정 공개 여부

 위원회의 회의 및 표결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회의 이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

# 3 갱신주기

- ㅇ 매 2년에 한번씩 산정
- 짝수년 6월에 산정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적용

# 4 고시방법

- ㅇ 시급 고시
- o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없음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1. 법정 최저임금 수준

적 용 년 도	시 간 급	심 의 의결일	결 정 고시일
'20년 도	9.35 유로	'18.6.25 (최저임금 위원회)	'18.10.31 (정부승인)
'19년도	9.19 유로	'18.6.25 (최저임금 위원회)	'18.10.31 (정부승인)
'17 ~ '18년도	8.84 유로	'16.6.28. (최저임금 위원회)	'16.6.28.
'15 ~ '16년도*	8.5 유로	'14.6.3(하원) '14.7.11(상원)	'14.8.16

<sup>\* &#</sup>x27;15-16년도 최저임금은 독일 의회에서 의결

# 2. 법정 최저임금 적용현황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적용대상일자리*
'17.4월 기준	적용제외대상 직업군∗을 제외한 모든 업종	약 140만 명

\* 출처 : 독일 연방 통계청

# 3. 법정 최저임금 미만률

조사기간	'14년	'15년	'16년	'17년
8.5유로 미만 일자리	약 400만명	약 100만명	약 80만명	약 80만명
미만율	10.7%	2.3%	1.8%	1.7%

\* 출처 : 독일 연방 통계청

\* '14년도 데이터는 8.50유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었을 때 영향을 받았던 일자리 수 통계 산출수치

# 2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 독일 좌파당 및 녹색당,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는 법안 발의
  - ㅇ 개요
    - ('17.11.20) 좌파당은 법정 최저임금액이 저소득층의 가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당시 시간당 8.84유로로 책정된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첫번째 법안 발의
    - ('18.02.27) 녹색당은 법정 최저임금제는 현재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요구(정확한 금액 미제시)하면서 최저임금 갱신주기를 1년으로 줄이는 등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발의
    - ('18.04.28) 좌파당은 최저임금제 관리감독의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1600명 규모의 세관(Zoll) 내 '불법노동감독기관 (Finanzkontrolle Schwarzarbeit)'의 인원을 5,000명으로 증원하 고 고용주의 시간별 근로기록 의무화하는 두번째 법안 발의
    - ('18.04.28) 좌파당은 최저임금제 적용제외대상에서 '장기실업자가 취업을 한 첫 직장에서 6개월간은 비적용' 및 '직업훈련 미수료한 18 세 미만 청소년' 을 제외하는 법안 발의

## 0 결과

- 상기 4개 법안은 '18.11.30. 의회에서 부결

- 법정 최저임금 인상 법안 발의 관련 각 정당 동향
  - (사민당) 최저임금은 단지 임금체계의 하한선을 의미할 뿐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자칫 단체교섭 자치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대안당)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교섭권을 크게 약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켜 비정규직, 파견직 등을 증가 시킨 잘못된 논의로 오히려 아젠다 2010\*에 대해 이야기할 때 라고 주장
    - \* '아젠다 2010'은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발표한 국가개혁안으로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 조세정책, 환경정책, 이민정책, 교육정책, 행정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정책을 포괄하는 개혁안
  - (기민·기사 연합) 최저임금은 사회적 정책수단이 아닌 경쟁을 규제하는 규제수단이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
  - (자민당)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빈곤퇴치 수단이 아니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에 개입하려는 행태 비판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연방노동사회부 최저임금 관련 공식 홈페이지

http://www.der-mindestlohn-wirkt.de/ml/DE/Startseite/start.html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mindestlohn-kommission.de/DE/Home/home\_node.html
- 최저임금 감독 기관(연방 세관) 홈페이지
   http://www.zoll.de/DE/Fachthemen/Arbeit/Mindestarbeitsbedin gungen/Mindestlohn-Mindestlohngesetz/mindestlohn-mindestlohngesetz\_node.html
- 연방노동청 통계 홈페이지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
- 연방통계정 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

- (첨부) 최저임금 관련 법안 (노동협약법 제5조, 근로자파견법, 최저 근로조건법)
  - 1. 노동협약법 제5조 (일반적 구속력 선언, 1949년 발효)
  - 노동협약법 제5조는 산업부문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 구속력 선언 제도를 이용한 산업부문별 협약 확장 메커니즘임
    - 노사가 신청하는 경우 ①부문의 노동협약이 노동자의 50% 이상을 커버하고 있을 것, ②노사대표 각 3명으로 구성하는 협약위원회의 동의(노사단체로부터 각각 3명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어 다수결 또는 적어도 사용자 대표 1명의 동의가 있을 것)를 조건으로 하여 연방 노동사회부장관이 해당 협약에 대해 일반적 구속력 선언을 명함
  - 2014년 「노동협약자율성 강화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부 산업 부분에 적용되어 왔음
    - 단, 협약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요건으로 이 방법에 따라 통일적인 최저임금 설정기능을 완수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 또, 이 방법은 해외로부터 파견되어 건설프로젝트 등에서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EU 역내로부터 유입되는 노동자의 임금 덤핑을 저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2. 근로자파견법(Arbeiternehmer-Entsendegesetz)

- 독일 통일 이후 1990년대 초 급격히 증가한 건설수요를 배경으로 독일지역의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저임금 외국인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양호한 경제성장에도 실업률이 상승하고 저임금 시간제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저임금 외국인노동자가 독일인의 고용을 빼앗는다는 비판이 고조됨
  - 이에 독일정부는 임금덤핑방지를 목적으로 EU규정 96/71의 국내 실시법으로서 1996년도에 「근로자파견법(국경을 넘는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강제적 노동조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이 법률은 건설산업(건설업, 도장)부문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선 언된 노동협약 중 ①초과시간 보수기준을 포함한 최저보수기준, ②휴가, 휴가기간 동안의 보수 또는 휴가수당에 관한 규정을 국내 및 외국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 노동협약법의 일반적 구속력 선언과 달리 협약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방노동사회부가 해당 노동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나, 노동협약의 구속을 받고 있지 않는 모든 사용자 및 노동자에게 해당 노동협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노동협약에 규정된 노동조건 이상을 보장해야 함
- 독일 정부는 2006년 8월 근로자파견법 적용을 건물청소 분야에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또 독일 금속산업노조(IG Metall)와 전기수공업중앙연맹의 임금협약에

일반적 구속력 선언을 하는 것을 협약위원회에서 동의하여 2007년 9월 1일부터 건설산업의 전기수공업 노동자에게도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되었음

- 아울러 2007년 12월 우편서비스사업자연합회와 통일서비스 노조가 체결한 최저임금협약\*에 근로자파견법에 근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령이 성립하였고, 2008년 1월 1일 우편시장의 완전자유화와 동시에 시행되었음
  - \*노동협약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임금협약에 일반적 구속력 선언은 협약 위원회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짐
- 2009년 4월 근로자파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 (1)적용사업의 확대, (2)독일 내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의 보호도 명시, (3)노동협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신청을 전제, (4)법규명령은 해당 산업의 노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노사에게도 적용됨(노동자에 유리한 협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됨)
- 아울러 노동협약 적용률이 50%를 넘는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노사로 부터 신청을 받아 동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업종을 확대하였음
  - 노사의 신청이 있던 것은 요양업분야(노인요양 및 가정내 간병), 경비분야, 광산업 내 특수업무분야, 대규모 세탁업무분야, 오물처리산 업분야 그리고 사회법전 제2·제3권에 따른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향상훈련 분야, 노동자파견업과 임업서비스의 8개 업종이었으나, 연방하원의 심의에서 노동자파견업과 임업서비스는 제외되었으며,

이로써 120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됨

2014년 8월 법정일괄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함께 근로자파견법의
 적용범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됨

# 3. 최저근로조건법(Mindestarbeitsbedingungengesetz)

- 1952년 '최저근로조건법(Mindestarbeitsbedingungengesetz)' 제정 으로 최저임금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시행되지는 않음
- 2009년 동법의 개정을 통해,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50% 미만이 적용되거나 또는 노사간협약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최저임금 설정
- 상설 중앙위원회(의장, 연방노동사회부 2명, 노사대표 각 2명으로 구성, Hauptausschuss)는 사회적 왜곡이 있는 경제부문인지, 최저임금 결정, 개정 또는 폐기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며, 연방정부, 사용자단체의 연합단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연방주정부가 각각 최저임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산업분야 관련하여 제안을할 수 있음
  - 중앙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장, 노사 대표 각 3명에 의해 구성)가 설치되고, 이 전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최저임금액을 결정
    - \* 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결정
-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연방정부에 의해 법규명령으로 공포되고, 이는 산업분야 내에 있는 사용자가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인가와 관계없이, 또한 노동자의 출신국을 불문하고, 독일 국내의 해당 부문에서 모든 사용자 및 노동자에게 적용됨

- 다만, 2008년 7월 16일(동 법안의 각의 결정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산업부문별 노동협약 및 그 후속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협약에 정한 최저임금이 존재하면 해당 협약이 우선함
- ※ 근로자파견법과 최저근로조건법이 규율하지 아니하는 부문에 대하여는 노동협약법의 규율을 받아 노사자치원칙에 의해 임금이 결정됨
- ㅇ 2014년 8월 16일 이후 법적 효력 상실

(작성자) 주독일대사관 실무관 최동민(전화번호 +49 30 26065 352, dongmin.choi@koreaemb.de)

# 4. 러시아

국	명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
언	어	러시아어
면	적*	1,713만 Km² (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인	구*	1억 4,678만 명 (2019.1월 러 통계청 자료)
수	도	모스크바 (약 1,262만 명)
주의	요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종	교	러시아정교(75%), 이슬람교(5%), 유대교, 가톨릭 등 다수
교	<b>교 육</b> 의무교육 11년(무상)	
화폐 단위		루블(ruble). \$1=65 (2019.3.28 현재)
	GDP	1조 56,525억달러
	1인당 GDP	11,258달러
주요 경제	GDP성장률	2.3%
지표	교역	6,926억달러(수출 4,521억, 수입 2,405억)
(2018)	실업률	4.8%
	물가상승률	4.3%
대사관	웹사이트	http://rus-moscow.mofa.go.kr

<sup>\*</sup> 크림반도 포함 러시아 정부 공식 자료 기준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러시아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된 시기는 2000년 푸틴 대통령 부임 직후이며, 그 이후 매년 노동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러시아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시기는 2007년 9월과 2009년 1월이며, 각각 약 2배 인상되었음. 2018.1.1. 1,689루블 인상되었고, 2018.5.1. 1,674루블 추가 인상이 확정되었으며, 2019.1.1. 117루블 추가 인상됨
  - ※ 2019.3.28.(현재) 러시아 월 최저임금은 월 11,280루블 (약 \$174, 1\$=65루블 적용)임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 최저임금법 (N82-FZ)
  - 최저임금은 임금조정과 휴직 및 출산휴가 수당, 기타 의무사회보 험금 책정을 위해 적용됨

- □ 최저임금 인상법 (N421-FZ)
  - 매년 1.1.자로 최저임금은 전년 2/4분기 노동가능인구의 최저생계 비 수준까지 인상함
- □ 노동법 (N191-FZ 제21장 제133조)
  - 최저임금은 러시아연방의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노동가능인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수 없음
  - 최저임금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민간기관, 기업에 적용되며
     1개월간 법정근무시간을 채운 근로자의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음
  - 단, 러시아의 경우 총 85개 연방주체로 구성되어 있어 각 지역마다 사회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지방정부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이때 중앙정부가 정해서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보다 낮을 수 없음. 또한 러시아는 열악한 산업근로여건 등을 고려 하여 산업별로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중앙정부가 정하는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수 없음
    - ※ 법정 최저생계비는 러시아 정부가 매분기마다 소비자물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매분기 정부 공식 기관의 사이트에 발표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정부 및 지방정부기관, 민간기관 및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내·외국인 동일적용

#### 2. 특례대상 및 적용제외대상

○ 해당 사항 없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 기본급을 비롯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 등
-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초과 금지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ㅇ 기본급, 상여금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 가족수당, 현물급여등 기본급, 상여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노동고용청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관리감독 이행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러시아는 최저임금 이행을 위해서 행정법위반에 관한 법에 의거 최저임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기준 30,000 ~ 50,000 루블 (약 510달러 ~ 847달러) 상당의 벌금 지불과 같은 사법수단이 적용됨
  - 재위반일 경우 50,000 ~ 70,000 루블 (약 847달러~ 1,186달러)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노동고용청에 신고 → 노동고용청의 현장 실사 → 노동고용청 판
 단 하에 구제 여부 결정(민사소송 불가)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ㅇ 노동사회보호부가 최저임금법 초안 마련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노동사회보호부가 마련한 최저임금법 초안을 사회노동전문가 실무회의에 제출하여 검토 요청
- 동 회의는 노·사·정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 2. 결정절차

- 사회노동전문가 실무회의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법안을 '러시아 노사정위원회'에서 검토
- 러시아 노사정위원회 위원 수는 지역별로, 그리고 개최 시마다 다르며, 개최 시기도 불규칙
  - ㅇ 노사정위원회
  - 전러노동조합연합(노), 전러고용주연합(사),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며, 각 기관 대표 1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노사정 동일수로 구성함
    - $\star$  즉, 위원회는 3  $^\sim$  90명으로 구성 가능하며, 각 기관 대표 수는 동일해야 함
  - 위원 임명은 노사정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임기는 3년임

- 러시아 노사정위원회는 상기 법안 검토 후 공개투표를 통해 과 반수 찬성으로 결정
- 러시아 노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재송부,정부는 동 법안을 하원에 제출
- 하원 통과 후 상원에 이송
- 상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
- 대통령 서명 후 7일 이내 공포, 공포 후 10일 이내 발효(연방 노동법에 개정 최저임금액 명기)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 외부 방청 허용 여부
  - 일반 및 언론인 방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 다만 필요시 전문가 및 학자 초청 가능
- □ 녹취 여부
  - 녹취 여부 관련 규정 없음. 다만, 회의록 작성 작업을 위해 관행에 따라 녹취작업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
- □ 공개 여부 및 범위
  - 위원회 활동 전반을 언론에 공개, 회의 직후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

# 3 결정기준

- 전년 2/4분기 노동가능인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함
- 2017.12.29. 개정된 최저임금인상법 N421-Φ3에 의거 매년 최저임금은 전년 2/4분기 노동가능인구의 최저생계비와 동일 금액으로 정하도록 변경됨. 노동가능인구의 최저생계비는 매분기 정부기관이인터넷에 공식 발표하도록 개정됨
  - ※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와 동일 금액으로 확정하였더라 도 각 지방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금액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 있음. 더불어, 만일 전년 2/4분기의 최저생계비가 기존 최저임금 보다 적을 시에는 기존 최저임금을 유지함

# 4 갱신주기

ㅇ 매월 1.1.마다 1년 단위로 최저임금을 조정함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연도별 연방최저임금 추이 >

적용개시 일자	근브 (의)	관련 법령
작용계시 될사	루블 (월)	산년 합성
2019.1.1.	11,280	최저임금 인상법 N421-Φ3 제3조 (2017.12.28. 개정)
2018.5.1.	11,163	최저임금 인상법 N41-Φ3 (2018.3.7. 개정)
2018.1.1.	9,489	최저임금 인상법 N421-Φ3 제3조 (2017.12.28. 개정)
2017.7.1.	7,800	최저임금법 N460-Φ3 제1조 (2016.12.19. 개정)
2016.7.1.	7,500	최저임금법 N164-Φ3 제1조 (2016.6.2. 개정)
2016.1.1.	6,204	최저임금법 N376-Φ3 제1조 (2015.12.14. 개정)
2015.1.1.	5,965	최저임금법 408-Φ3 제1조 (2014.12.1. 개정)
2014.1.1.	5,554	최저임금법 336-Φ3 제1조 (2013.12.2. 개정)
2013.1.1.	5,205	최저임금법 232-Φ3 제1조 (2012.12.3. 개정)
2011.6.1.	4,611	최저임금법 106-Φ3 제1조 (2011.6.1. 개정)

※ 연소자 등 특례근로자 없음 / 시급, 주급, 월급의 분류 없음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단위: 명,%)

적 용 년 도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수	비율
업데이트			
'16–'17	75,917,000	_	-
'12–'15	75,676,000	_	_
'08	74,952,000	14,990	0.02
'07	74,156,000	14,831	0.02
'06	73,811,000	14,762	0.02

# 3 기타

□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 홈페이지: http://www.rosmintrud.ru

(작성자) 주러시아대사관 김혜경 선임연구원 (+7-495-783-2727, hykkim17@mofa.go.kr)

# 5.루마니아

국	명	루마니아(Romania)
언	어	루마니아어(공용어), 헝가리어, 독일어 등
면	적	238,397Km²(한반도222.816km²의 1.1배)
인	구	1,952만명(루마니아인(88.6%), 헝가리인(6.5%), 집시(3.2%) 등)
수	도	부쿠레슈티(Bucuresti, 210만명)
주 <u>9</u>	요도시	클루지나포카(Cluj-Napoca, 31만명), 콘스탄차(Constanta, 25만명), 이아시(lasi, 26만명), 티미쇼아라(Timisoara, 30만명) 등
종	교	루마니아 정교(86.7%), 가톨릭(4.7%), 개신교(3.2%), 기타(6.1%)
교 육		초등 5년과 중등 4년, 고등 2년 <sup>*</sup> 의 11년제 의무교육 (6세부터 17세까지) (*고등 총 4년 중 2년만 의무에 해당)
화피	례 단위	Ron(Lei로도 표기, 2019.3월 기준 1Euro=4.75Ron)
	GDP	2,079억유로 (약 2,351억달러, EU 집행위 기준)
	1인당 GDP	10,500유로 (약 11,874달러, EU 집행위 기준)
주요 경제	GDP성장률	4.1% (EU 집행위 기준)
지표 (2018)	교역	수출: 677억유로(기계류, 전동장치, 금속 등, Eurostat 기준) 수입: 828억유로(기계류, 광물, 화학 등, Eurostat 기준)
	실업률	4.3% (루 통계청 기준)
	물가상승률	4.1% (Eurostat 기준)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ro-k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991년 「노동법(Labor Code」)에 의거,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국가 총최저기본급(National Minimum Gross Basic Pay) 도입
- 매년 국가총최저기본급은 노조와 경영자단체간 협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Government Ordinance)하여 확정
  - 경제주체는 경영자 단위의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결정 (국가단위 총 최저임금의 시간당 기본급 준용)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노동법(Labor Code)
- 가. 통상적인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하인 경우, 시간당 최저기본급은 국가총최저기본급을 월별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 나. 사용자는 국가단위 시간당 최저기본급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할 수 없음
- 다. 사용자는 적어도 국가총최저기본급과 같은 금액의 월별 총 임금을 보장하여야 함

- 근로일정에 따라 근로일이 다르지만 사적인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파업의 경우는 제외)

## 2. 최근 5년 이내(2014~2018년) 법령 개정사항

- ㅇ 매년 정부결의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 2019년 최초로 세분화된 최저임금제도 도입(대학 전공자 또는 경력 1년 이상의 경우 2,350 Ron, 건설분야 3,000 Ron(세금 2028년까지 면제))

(단위 : 론(Ron))

연 도	월 최저임금	규범법(정부결의-HG)
2019	2,080 (2019년 1월~현재) * 대학 전공자 또는 경력 1년 이상 : 2,350 * 건설분야 3,000 (2028년까지 세금 면제)	HG. no 937/ <b>2018</b>
2018	1,900 (2018년 1월 ~ 12월)	HG. no 846/ <b>2017</b>
2017	1,450 (2017년 2월~12월)	HG no.15/ <b>2017</b>
2016	1,050 (2016년 1월 ~ 4월) 1,250 (2016년 5월 ~ 2017년 1월)	HG no. 1017/ <b>2015</b>
2015	975 (2015년 1월 ~6월) 1,050 (2015년 7월 ~12월)	HG no. 1091/ <b>2014</b>

- ※ 집권 여당(사회민주당, PSD) 제시 최저임금제도 개선 근거
  - 루마니아 내 빈곤·소외 계층 구제
  - EU 선진국 수준까지 최저임금제도 지속 개선(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50%)
  - 노동이윤 및 노동의 질 제고를 통한 생산성 증가 및 경제지표 개선,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
- 외국인의 경우, 기존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4,162 Ron을 보장<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보장하여 높았으나, 금년부터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하였으나(정부긴급명령 194/2002), 2018.11월 노동법 개정으로(노동법 247/2018) 루마니아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최저임금 적용

\* (외국인) 루마니아 내국인 고용 촉진을 위해 월급의 최저액이 루마니아 내 거주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저 금액인 4,162 Ron 이상(약 1,110 미불)으로 규정되어 있음(정부 긴급명령 194/2002호 기준)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모든 사용자(자연인, 법인) 및 노동자(외국인, 장애인, 수습노동자 포함)
- 장애인의 경우 △50인 이상 노동자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은 전체 노동자의 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근로법 448/2006), △전일 근무하는 중증 이상의 장애인은 기본급에서 15% 인상된 급여를 받는 등 추가 조항을 적용 받음(정부 긴급명령 51/2017호)

# 2. 적용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적용)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최저임금(2019년): 월 2,080 Ron
- 기타 해당 분야 전공자 및 경력 1년 이상의 경우 2,350 Ron, 건설 분야 3,000 Ron(세금 2028년까지 면제)으로 세분화
- 근로시간: 월 167.333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기준)
  \* 각 월별 근로시간(근로일 수\*8시간)의 평균 수치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ㅇ 기본급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업무 위험도, 업무 환경, 연공서열 등에 따른 임금 인상분(bonuses or other increments),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
  - 사기업의 경우 임금 인상분이 기본급에 산입될 수 있음 ※ 유급주휴제도 없음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노동감독관(사회노동연대부 산하)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처벌규정)

- 최저임금 미지급 시 300~2,000 Ron 벌금 부과(53-노동법, 2010년 개정)
- 다만, 계약서 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
- 노동법 위반 시 사업자는 최대 20,000 Ron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정부긴급명령 53/2017), 일부 금고형 적용(노동자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500~1,000 Ron 벌금 부과)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노사관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 분야는 특수한 중앙행정기관인 노 동감독관(사회노동연대부 산하)의 통제를 받음
-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사용자, 노동자, 노조, 기타 법인)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설립되고 노동분쟁재판의 심리권이 있는 법정에 항소할 수 있음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1. 국가노사정위원회(National Tripartite Council)

- (구성) 노동부의 자문기관으로서, 경영인연맹<sup>\*</sup> 및 노동조합<sup>\*\*</sup> 대표, 관계 부처 대표(서기관급 이상), 루마니아 국립은행 대표, 경제사회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
  - \* 전국 41개 주 중에 21개 주(50%)+1개 주에 지사를 보유한 경영인연맹(2017년 3개 단체 해당)
  - \*\* 루마니아 정부가 집계한 노동자의 5% 이상을 조합원으로 보유한 노동조합 (2017년 기준 2개 해당)
- (임기 및 임명방식) 사회적 합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명단은 의제 및 개최시기에 따라 유동적이고, 별도의 임기나 임명방식이 없음
  - ※ 2011년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 62호 근거(Law on Social Dialogue no.62/2011)

# 2.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구성) 정부·입법부의 자문기구로서,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총 45명(경영인 연맹, 노동조합, 시민단체별 각 15명)으로 구성
- (임기) 4년마다 교체
- (임명방식) 경영인연맹과 노동조합 대표는 내부협의를 거쳐 임명되며,
   시민단체 대표는 노동부 장관 추천 하에 총리가 지명

- ※ 단, 노동조합 대표는 후보 수 과다 등 내부협의가 어려울 경우 전체 조합 투표를 통해 선출
- ※ 의장은 위원회 내에서 4분의 3 이상의 표를 얻어 선출되며, 경영인연맹,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각 이해관계집단 대표가 번갈아가며 역임(연임 시 미적용)

## 2 결정방법 및 기준

#### 1. 결정방법

- ㅇ 법령 53-노동법에 근거 매년 최저임금은 아래 절차에 따라 결정
  - ① 정부초안에 대한 국가노사정위원회(National Tripartite Council) 협의 진행
  - ② 정부초안 확정
  - ③ 입법회의(Legislative Council)의 승인
  - ④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승인
  - ⑤ 관보(Official Gazette of Romania)에 최종안 공고
    - ※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의결권한이 없는 협의기구이며, 기타 최저임금 결정과정 상의 입법회의 및 경제사회위원회 승인절차는 형식적 절차임. 또한 입법회의는 국회와 무관한 정부 내 조직임
  - 상기 과정 중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최저 임금 결정(Government Ordinance)

T 0 7 7 0	-1-101-1-11-
수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2. 결정기준 및 산출근거
  - 결정기준 및 산출근거는 비공개 사항으로 알 수 없음
  - 3 갱신주기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년에 1~2회 갱신되는 추세이며, 총선 전후 집권정당의 주도 하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향이 있음
  - 4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ㅇ 월급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ㅇ 최저임금 현황

(단위 : 론(Ron))

연 도	월 최저임금	규범법(정부결의-HG)
2019	2,080 (2019년 1월~현재) *대학 전공자 또는 경력 1년 이상 : 2,350 *건설 분야 3,000 (2028년까지 세금 면제)	HG. no 937/2018
2018	1,900 (2018년 1월~12월)	HG. no 846/2017
2017	1,450 (2017년 2월~12월)	HG no.15/2017
2016	1,050 (2016년 1월~4월) 1,250 (2016년 5월~2017년 1월)	HG no. 1017/2015
2015	975 (2015년 1월 ~ 6월) 1,050 (2015년 7월 ~ 12월)	HG no. 1091/2014
2014	850 (2014년 1월 ~ 6월) 900 (2014년 7월 ~ 12월)	HG no. 871/2013
2013	750 (2013년 2월 ~ 6월) 800 (2013년 7월 ~ 2013년 12월)	HG no. 23/2013
2012	700	HG no. 1225/2011
2011	670	HG no. 11193/2010
2010	600	HG no. 1051/2008
2009	600	HG no. 1051/2008
2008	540 (2008년 10월1일) 500 (2008년 1월 1일)	HG no. 1051/2008 HG no. 1507/2007
2007	390	HG no. 1825/2006
2006	330	HG no. 1766/2005

- 영향률 (노동부 발표 노동인구 630만명 기준, 조사기관별 상이)
  - 루마니아 노동부 기준 2018년 영향률 21.6% 추산(최저임금 수령 노동자 약 138만명)
  - 국립노동사회보호과학연구소(INCSMPS) 조사 결과 2018년 영향률 27.1% 추산(최저임금 수령 노동자 약 173만명)
    - \* 2012년 영향률은 6.25%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 해당 노동자 비율 급증
  - 지역투자고용(PIAROM) 및 노동감독관 조사 결과 2018년 영향률 46% 추산

#### ㅇ 미만률

2

- 집계·연구내역 없음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최저임금제도 관련 각계 의견)
  - 아용자의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 △공공분야 외 민간 사업분야에서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등의 문제 우려
    - \* 주재국 내 다수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바,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공공분야에 고급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 노동자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산층 이상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간 임금 격차 축소, △물가 상승, △해외기업 투자

축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직·간접적 손해에 따른 불만 제기 가능성(PIAROM 의견)

- △사업처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노동법 위반을 감수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할 가능성 등 우려(루마니아 기업인협회 의견)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부재로 임금상승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 악화 시, 최저임금의 지속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국립중소기업위원회 의견)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ㅇ 루마니아 노동·가족·사회보장부서(Ministry of Labor, Family and Social Protection): http://www.mmuncii.ro/ro/
- 루마니아 국가통계청(National Statistics Institute): http://www.insse.ro/cms/rw/pages/index.ro.do
- 루마니아 국가예측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Prognosis) :
   http://www.cnp.ro

(작성자) 주루마니아 대사관 김지은 (전화번호 40-21-230-7198, e-mail: jeunkim15@mofa.go.kr)

# 6. 벨기에

국	명	벨기에		
언	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및 독일어		
면	적	32,545 <sup>km²</sup>		
인	구	1,135만명('17)		
수	도	브랏셀(Brussels)		
주:	요도시	안트워프, 브뤼주, 리에주, 겐트, 몽스 등		
종	卫	카톨릭(75%), 유대교, 신교, 성공회, 정교회, 이슬람교		
교	육	의무교육 12년		
화፤	폐 단위	유로(1Euro=1.15US dollars, 2019.1월 현재)		
	GDP	5,655억달러('17)		
	1인당 GDP	49,271달러('17)		
주요	GDP성장률	1.7%('15)→1.5%('16)→1.7%('17)		
경제   지표	교역	수출 3,814억유로(전년대비 +6.0%), 수입은 3,623억유로(+5.7%)		
	실업률	7.8%('16)→7.1%('17)		
	물가상승률	2.2%('17)		
대사관	웹사이트	bel.mofa.go.kr		

<sup>※ 2016</sup>년부터 최저임금제도 조사시작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국가최저임금 법적 근거

- 최저임금은 국가차원(national or inter-sectoral), 산업별(sectoral) 또는 사업 장별(enterprise) 세 가지 차원에서 단체협약(CCTs)을 통해 결정
  - 따라서 최저임금은 산업별·사업장별로 다양
  - 다만 산업별·사업장별 최저임금은 국가최저임금(GAMMI)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산업별·사업장별 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최저임금을 적용
  - 이러한 다층구조로 인해 벨기에 최저임금 수준은 유럽국가 중 상대 적으로 높은 편에 속함
    - \* 2017년 기준 : 벨기에 1562.6유로, 프랑스 1498.5유로, 네델란드 1578.0유로, 독일 1497.8유로, 영국 1462.6유로('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Eurofound, 2018)
- 국가최저임금(GAMMI) 및 산업별 최저임금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단체협약(CCT : collective labor agreement)으로 결정됨
  - 합의된 단체협약은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발생시킴. 또한 합의된 단체협약이 노동부에 등록되면 칙령(Royal Decree)의 첨부물로 인정\*,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 \*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약 3%)에게 국가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함
    - \* 벨기에 노동부는 단체협약의 법적 정의 충족 여부 등 검토 결과에 따라 등록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협약은 법적구속력이 없음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등록 후 법적구속력이 발생, 이를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됨
  - \* EU 집행위는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산업별 단체협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와 달리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가최저임금 적용국가 22개국 중 하나로 분류
- 18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CCT n43)과 18세미만 근로자 및 18-20세 학생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CCT n50)이 있음

#### 국가최저임금 적용 대상

#### 1. 적용대상

2

○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민간부문 근로자

#### 2. 특례대상

- ㅇ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에 따른 구분은 별도 없음
- 나이와 경력기간의 3가지 범주(①18세이상 ②19세이며 6개월 이상 근무 ③20세이며 12월이상 근무)에 따라 최저임금 특례 적용
  - 16세와 17세는 각각 70% 및 76%, 학생계약을 체결한 18, 19, 20세는 각각 82%, 88%, 94%의 감액률 적용(CCT n50 근거)
  - ※ 18~20세 단체협약 적용자에 대한 감액률 적용은 2013년 사회적 합의로 2015.1.1.부터 폐지

#### 3. 적용제외

3

- ㅇ 가족기업 종사자
- 1월 미만 기간 고용된 근로자(Seasonal workers 등)
- 샌드위치코스(Sandwich courses)\*로 일하는 청년
  - \* 대학생 등이 학업과 현장, 회사 등의 일을 병행하는 코스

#### 국가최저임금 산입 범위

- 국가최저임금은 소득(income)으로 월급·보수(salary/wage) 보다 넓은 개념
  - 정상적인 근무수행 대가로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급여, 고정·비고정 보수, 보너스, 급여(benefits)\* 는 소득에 포함
    - \* 수수료·보충근무·야근·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수 등이 포함
- ㅇ 다음의 사항은 제외
  - 휴가급여(holiday pay), 직장사고 또는 직업병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보충수당, 법정 사회보장 급여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스톡옵션 또는 회사에서 지급된 주식 등
-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38시간, 최대 40시간
  - 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 외 훈련시간, 점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들을 이동하는 시간 등을 포함하나 출퇴근시간, 식사시간은 제외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4 최저임금 이행지도

- 근로자가 13번째 월급을 받게 되면 지난 한해 모든 고정 및 비고정 임금 총합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
  -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 \*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당임금×주근무시간(38시간) ×52주÷12를 하여 월수입으로 환산
- 연방 고용·노동·사회적 대화부(FPS Employment, Labor and Social Dialogue)의 사회법 통제국(the General Directorate of Control of Social Laws) 감독관(Inspectors)이 감시(1965.5.10. 및 1969.10.21. 칙령에 근거)
  - 근로감독은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배타적 관할 사항
- 법(social penal code (2010.6.6.) 189조)에 따라 사업장에 행정벌금 부과
  - \* 행정벌금은 80-800유로 수준으로 최저임금 보장 위반 근로자의 수만큼 곱하여 결정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국가최저임금(GAMMI)
  - 1975년부터 국가노동위원회(NLC: National Labor Council)에서 결정
  - 국가노동위원회는 법률(Act of May 29, 1952)에 의해 설치된 법정기관 으로 노·사 양측 각각 13명씩 26명 위원과 회장으로 구성
    - 주요 기능 및 역할은
      - ·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모아 정부·의회에 제안 또는 권고
      - · 산업별 고용위원회의 분쟁 발생 시 조정 권고
      - 국가최저임금 결정
      - · 근로관계 및 사회복지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 제안
      - ·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대화에 참여
      - · ILO, EU 경제사회위원회 등 국제 논의 및 협력 파트너
  - 국가최저임금(GAMMI)은 고용부(the Registar office of the FPS Employment, work and Social concertation for registration)로 전달된 후 고용부·국가노동위원회 웹사이트와 Belgian Official Journal에 월단위 최저임금으로 고지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 산업별 최저임금
  - 산업별 공동위원회(JC: Joint committee)에서 결정
    - 산업별 단체협상은 지역, 호봉으로 분류되는 직위, 주당 근로시간, 근속기간에 따라 보수계산의 일반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규정을 포함
      - \* 산업별 공동위원회 구성 및 개수는 산업별로 다양함
  -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산업별 공동위원회 및 단체협약 사항을 벨기에 근로감독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SPOC.LabourInspection@employment.belgium.be)
  - 사업장이 속한 공동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속한 공동위가 아직 없는 경우에는 국가최저임금을 적용

### 2 국가최저임금(GAMMI) 결정기준

- □ 물가 연동
  - ㅇ 법적 근거
    - 1989.1.6. 국내기업경쟁력 보호법 이행을 위해 1993 12.24 칙령으로 근거 수립, 이후 1994.3.30. 법으로 제정된 후 2015.4.23. 개정
  - 1988.5.2. 단체협상에 따라 국가최저임금(GAMMI)은 '조정된 건강지수' (Smoothed Health Index, 2015.4.23.고용증진법에 규정)와 자동 연동(automatic indexation)
    - 건강지수는 휘발유, 알콜, 담배를 제외한 품목의 물가지수

- 건강지수 변동 폭의 최소화를 위해 해당 월과 직전 3월의 평균 인상 률로 조정하여 '조정된 건강지수' 산정, 이를 국가최저임금에 연계 하여 조정

2013년=100기준	2017.12월	2018.12월	2019.1월	2019.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05.75	108.22	108.17	108.52
물가상승(inflation)	2.13%	2.34%	1.99%	2.17%
건강지수(Health index)	106.15	108.45	108.50	108.78
조정된 건강지수 (smoothed health index)	103.72	106.01	106.25	106.38

- 조정된 건강지수\*는 매월 계산되지만 변동률이 2%를 넘는 경우 에만 최저임금을 조정
  - \* 3개월 평균인상률로 조정된 건강지수

#### □ 보수기준(Wage norm)

- 매2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당 2년 동안 국가, 산업별, 사업장별 단체협약시 보수비용(salary cost) 인상률 상한 결정
- (근거) 고용증진 및 경쟁력 예방적 보호를 위한 법(1996.7.26.Law on promotion of employment and the presentive safeguiding of competitiveness제정 및 2017.3.19개정, 보수기준법으로 칭함)\*에서 평균임금인상이 기업의 급격한 노동비용 유발시 정부 개입권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
  - \* GDP의 70%를 수출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급격한 노동비용 인상으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1996년에 임금인상 수준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인접 3개 국가 노동비용 증가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규정 강화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2017.3월에 인접국 보수비용 예상치를 바탕으로 예방적으로 보수 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정부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 (결정절차) 중앙경제이사회(Central Economic Council)가 2년마다 국가 차원 단체협상 개시 전 가을에 명목임금 상승이 가능한 한계치 조사 보고서를 발간
  - 보수기준이 협상되는 첫해 1월말까지 중앙경제이사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상 추진
  -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 제안(중위값으로 제안)가능, 정부제안 수용시 단체협약결과로, 불수용되면 칙령으로 보수기준이 결정
- (효과)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보수기준은 법률규정은 아니나 정치적·
   윤리적 구속력을 가짐
  - 2017.3.29. 법 개정으로 위반 시 벌금부과 내용이 포함되면서 보수 기준의 구속력이 강화됨
    - \* 최대 100명까지 근로자수를 곱하여 250-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

#### <보수기준 현황>

기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인 상 률	6.10%	5.90%	64~7%	5.40%	4.50%	5.00%	250	0.30%	0.00%	0.5%+ 0.3%	1.1%

- (경과) 97-98년 보수기준은 칙령으로 정해진 후 2010년까지 사회적합의에 의해 결정
  - 2011-2012년 및 2013-2014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결정, 2015-2016년은 15.4월 시행된 새로운 법(Moniteur belge of April 30, 2013)에 의해 결정
  - 2017-2018년은 2017.2월 개최된 사회적 대화결과 물가인상에 추가 1.1%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결과는 2017.3.21. 실시된 국가 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었음
    - \* 동 기간 동안의 예상 물가인상률이 2.9%인 것을 감안시 총 4% 임금인상에 합의
  - 2019-2020년 보수기준은 전문가보고서 제시안(1.1%)을 바탕으로 19.3월현재 국가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

## 국가최저임금 갱신주기

ㅇ 수시 갱신

3

- 2년마다 결정되는 보수기준(wage norm)에 따라 국가노동위원회에서 조정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건강지수(Health index) 변경시 자동조정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국가최저임금 현황

ㅇ 국가최저임금 현황

(단위: 유로)

날짜	21세이상	21세반+6개월이상 경력	22세+12개월이상 경력	기타
2007. 4.1.	1,283.91	1,318.61	1,334.03	
2008.10.1.	1,387.49	1,424.31	1,440.67	
2010. 9.1.	1,415.24	1,452.80	1,469.48	물기빈영
2011. 5.1.	1,443.54	1,481.86	1,498.87	물기반영
2012. 2.1.	1,472.40	1,511.48	1,528.84	물기빈영
2012.12.1.	1,501.82	1,541.67	1,559.38	물기빈영
	18세이상	19세+6개월이상 경력	20세+12개월이상 경력	
2015. 1.1.	1,501.82	1,541.67	1,559.38	
2016. 6.1.	1,531.93	1,572.58	1,590.64	물기빈영
2017. 6.1.	1,562.59	1,604.06	1622.48	물기빈영
2018. 9.1	1,593.81	1,636.10	1,654.90	

\* 출처 : 벨기에 통계(19.3월)

ㅇ 정규직(full-time employees) 평균월소득(Gross average monthly wages)

(단위 : 유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	3,182	3,258	3,320	3,356	3,471	3,502	3,540
여	2,863	2,995	3,079	3,137	3,252	3,289	3,354
전체	3,103	3,192	3,258	3,300	3,414	3,445	3,489

\* 출처 : 벨기에 통계(19.3월)

- 최저임금의 105% 미만 소득자 비율(14.10월 기준, Eurostat)
  - 0.4%로 EU 국가 중 벨기에가 가장 낮은 비중(프랑스 8.4%, 슬로베니아 10.1%, 루마니아 15.8%, 포르투칼 13.0%, 스페인 1%, 룩셈부르크 5.8% 등)
    - \* 학계는 근로자의 약 3%가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Eurofound,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 2 최근 이슈 및 동향

- 최근 국가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의 범위에 논의
  - 적용제외 대상자인 1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규정 명확화를 위한 논의 진행 중(19.1.19 1차 회의 개최, 19.5월 2차회의 개최예정)

(작성자) 벨기에 대사관 직책 참사관 성명 이 선영 (전화번호 322 675 57 77, e-mail: sylee17@mofa.go.kr)

# 7. 스페인

국	명	스페인 왕국 (Reino de España, Kingdom of Spain)		
언	어	스페인어(Castilla 지방어가 표준어, 기타 까딸루냐어, 바 스크어, 갈리시아어 등이 해당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		
면	적	505,990km²(한반도의 약 2.3배)		
인	구	4,665만명(2018년)		
수	도	마드리드 (인구 : 318만명)		
주9	요도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비야		
종	교	카톨릭 (국교는 아니지만 인구 70% 이상이 카톨릭 신자)		
교	육	의무교육 6~16세 (초등 및 중등교육)		
화되	폐 단위	유로		
	GDP	1조 4,250억달러 (2018년, 통계청)		
	1인당 GDP	30,499달러 (2018년, 통계청)		
주요	GDP성장률	2.6%(2018년, 통계청)		
경제 지표	교역	7,134억달러 (수출 3,367억달러, 수입 3,766억달러) (2018년, 스페인 경제부)		
실업률		15.3%(2018년 평균, 통계청)		
	물가상승률	1.2%(2018년, 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esp.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연혁			
---	--	----	--	--	--

- □ 1963년 최저임금제도 최초 시행
  - 농업·산업·서비스업 등 종사분야 및 직종에 따라 차등적용
- □ 1980년「스페인 노동법(Estatuto de los Trabajadores)」에 최저임 금제도 규정
  - ㅇ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 16세 이상-17세 미만, 17세 이상-18세 미만, 18세 이상 근로자로 3단계로 차등 적용
- □ 1990년 나이별 차등적용기준 개정
  - 나이별 차등적용기준을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 16세 이상-18세 미만과 18세 이상 근로자로 구분
- □ 1998년 단일 최저임금 적용
  - 18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18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 기준 마련

#### 2 법적근거

- □ 스페인 노동법 제27조제1항
  - 정부는 대표적인 노동조합 및 경영자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매년 최저임금을 확정하며,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
    - ① 소비자 물가지수
    - ② 국내 평균 생산성
    - ③ 국민소득 내 노동참여 증가율(노동소득분배율 증가율)
    - ④ 전반적인 경제상황
  - 다만, 실질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전전망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은 반기별 재검토를 거쳐 수정될 수 있음
  - 연도중 수정되는 최저임금은 연간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 스페인 노동법 제27조 제2항
  - 최저임금은 압류할 수 없음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 사업주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 □ 근로자
  -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내·외국인 동일 적용)

#### 2. 특례대상

- □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직 근로자
  - 최저임금 외에 주말수당 및 두 차례의 법정보너스에 대한 비례배 분금액 지급
  - 이에 따라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일당 42.62유로 미만 일 수 없음
    - \* 42.62유로='19년도 최저임금 30유로+주말수당+법정보너스에 대한 비례배분금액
- □ 시간제 가사도우미
  - 가사도우미의 특별고용관계를 규정하는 국왕령 1620/2011에 의거,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실질근무
     시간당 7.04유로로 규정

スロフルロ	최저임금제도
十五 カノー	- 레이 ㅁㅁ에ㅗ

#### 3. 적용제외대상

ㅇ 해당없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구성항목
  - ㅇ 기본급
  - ㅇ 법정상여금
    - 크리스마스 시기 및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달(통상 하계휴가 직전)에 두 차례 법정상여금 지급
  - ㅇ 추가수당
    - 개별수당 : 근속수당, 특별상여금, 현물급여
    - 위험수당
    - 근무시간수당 :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교대수당, 시간외수당 등
    - 직책수당, 직무수당
    - 성과수당

- □ 법정근로시간 (노동법 제34조)
  - 근로시간은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계약에 따르며, 통상 주당 근 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체협약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에 의해 연중 근로시간은 불규칙하게 분배될 수 있으며, 단체협약규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시 간의 10%를 불규칙적으로 분배할 수 있음
  - 근로종료부터 다음날 근로시작까지 최소 12시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단체협약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에 의해 근무시 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실질 근무시간은 9시간(18세 이하 청소년 근 로자의 경우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ㅇ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 ㅇ 두 차례의 법정상여금
  - ※ 주휴수당: 2018년 법정 일최저임금은 30유로, 월최저임금은 900유로이며, 동 임금은 법정 일·월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따라서 통상 월<sup>~</sup> 금 법정근로시간대로 근로한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 월급여는 900유 로임. 참고로 산술적으로 계산시 월최저임금 900유로는 일 최저임금 30유 로에 30일을 곱한 금액이므로 근로가 있는 주휴도 유급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됨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ㅇ 기본급 및 법정상여금을 제외한 추가수당
- ㅇ 주거, 식사제공 등 현물급여
  - ※ 예외적으로, 주거 및 식사를 제공받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현물급여는 양측의 합의 하에 총 임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5

- 스페인 노동이민사회보장부 산하 노동·사회보장감독국(Inspecció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ITSS)은 노동규정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법령의 이행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상기 노동·사회보장감독국은 노동이민사회보장부 산하 중앙정부 기관이며, 각 자치주(17개 자치주 및 2개 자치시)에도 정부 노동· 사회보장감독국의 지방관할국을 설치하고 노동감독 권한 부여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사회질서 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에 관한 국왕령 5/2000 제8조 1항 (Son infracciones muy graves: El impago y los retrasos reiterados en el pago del salario debido.)은, 임금체불 혹은 반복 적인 임금지급연체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40

조에 근거, 최소 6,251유로에서 최대 187,515유로의 벌금 부과 가능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중앙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 관할 노동당국으로부터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를 통보받은 사업주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항소 제기 가능
- ㅇ 항소가 제기되면 최대 6개월 이내 항소에 대해 판결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별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매년 12월 최저임 금 결정을 위한 노사정회의에서 사전협의
  - 노사정 사전협의는 경우에 따라 서면협의로 대체되며, 동 협의 결과는 구속적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이 특징
- ㅇ 노사정 사전협의 이후 국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

#### 2 결정방법 및 절차

- 4년마다 경제인단체를 대표하는 스페인 경제인연합회(CEOE) 및 스페인 중소기업협회(CEPYME)와 주요 노동조합인 노동자위원회 (CCOO) 및 노동자총연합(UGT)간 회의인 「고용협약 및 단체교섭 (AENC, Acuerdo para el Empleo y la Negociación Colectiva)」을 통해 근로시간, 임금 상승률 등에 관한 기준 정립
- 상기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스페인 고용사회보장부 고용국 (Dirección General de Empleo)에서 '임금보장기금(FOGASA), 공공 고용서비스국, 사회보장관리국, 노동시장분석부국의 의견을 종합 하여 최저임금기준 초안 작성

- 상기 초안은 12월 개최되는 노사정회의에 상정, 최저임금 기준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 동 협의의 결과는 구속적 성격을 갖지 않음
- 고용사회보장부 장관은 12월 국무회의에 최저임금 기준안을 제안,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
- 통과된 최저임금은 국왕령(Real Decreto)으로 관보에 고시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ㅇ 소비자 물가지수
- ㅇ 국내 평균 생산성
- 국민소득 내 노동참여 증가율(노동소득분배율 증가율)
- ㅇ 전반적인 경제상황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소비자 물가지수, 국내 평균 생산성,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참여 상 승률과 같이 수치상 분석가능한 기준의 경우 스페인 통계청(INE)
 의 통계자료를 활용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한편, 수치로 분석하기 어려운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경우, 통계청 분기별 국민계정에 나타난 GDP 성장률, 거시경제전망, 노동시장 주요지표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평가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국왕령으로 관보에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월급 외 일급 및 연간 급여로도 표시
- 전일 정규직 근로자: 30유로/일, 900유로/월, 12,600유로/연
-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 : 최저임금 외에 주말수당 및 두 차례의 법정보너스에 대한 비례배분금액을 지급하며, 이에 따라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일당 42.62유로 미만일 수 없음
- 시간제 가사도우미 : 실질근무시간당 7.04유로
- ㅇ 전 지역 단일 최저임금 적용

#### 5 갱신주기

○ 최저임금 기준을 매년 12월 갱신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최저임금 현황 1

(단위: 유로, %)

dг	성인 및 청소년 최저임금			이시르
연도	일	월	연	인상률
2019	30.00	900.00	12,600.00	22.3
2018	24.53	735.90	10,302.60	4.0
2017	23.59	707.70	9,907.80	8.0
2016	21.84	655.20	9,172.80	1.0
2015	21.62	648.60	9,080.4	0.5
2014	21.51	645.30	9,034.2	_
2013	21.51	645.30	9,034.2	0.6
2012	21.38	641.40	8,979.6	_
2011	21.38	641.40	8,979.6	1.28
2010	21.11	633.30	8,866.2	1.5
2009	20.80	624.00	8,736	4.0
2008	20.00	600.00	8,400	5.2
2007	19.02	570.60	7,988.4	5.5
2006	18.08	540.90	7,572.6	5.4
2005	17.10	513.00	7,182	11.4
2004	15.35	460.50	6,447	2.0

<sup>※ 2018</sup>년 최저임금 월 900€ × 14회(12개월+법정보너스 2회) = 12,600.00€

<sup>※</sup> 스페인 월 최저임금은 900유로이나 이를 연간 총 14회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타 국 가와 비교 분석을 위해 연 12회 지급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스페인의 산술적 최저임금은 월 1,050유로임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단위: 개소, 명)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적용대상사업체	적용대상근로자
'18	1명 이상 전 산업	3,337,646	16,453,600
'17	1명 이상 전 산업	3,282,246	15,922,600

출처 : 스페인 통계청

※ ①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과 함께 법정 보너스 등의 비례배분금액이 지급되며, ②시간제 가사도우미의 경우 실질근무 시간당 7.04유로의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바, 비율만 상이할 뿐 모두 최저임금 대상자로 고려

#### 최저임금 미만현황

3

- 스페인 조세청(Agencia Tributaria)은 매년 임금통계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치를 발표하나, 이는 총 연간임금 평균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임금 비례배분금액을 지급받는 임시직 근로자 및시간제·기간제 근로자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사실상 최저임금 위반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는 바, 현재 최저임금 위반현황을 발표하는 공식통계 자료 부재
  - ※ 예) 조세청 통계표에 의하면, 2월에 퇴직한 월 급여 5,000유로의 기업 간부의 경우(연간임금 평균지급액은 총 5,000유로), 9월에 취직하여 월 급여 2,000유로를 지급받은 회사원의 경우(연간임금 평균지급액은 총 8,000유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3개월 동안 월급여 1,000유로의 아르 바이트를 한 대학생의 경우 등, 이들이 모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것 으로 분류
- 따라서, 해당 자료를 인용하여 2017년도 스페인의 최저임금 위반율이34.3%라고 분석하지 않도록 유의

(단위: 명, %)

연도	<b>'</b> 16	<b>'17</b>
임금근로자수(A)	17,888,520	18,343,199
미만근로자수(B)	6,083,517	6,304,753
미만율(B/A)	34.0%	34.3%

※ 자료출처 : 스페인 조세청

※ 상기 2. 최저임금 적용현황의 '적용대상 근로자수'(통계청 자료)와 상기 3. 최저임금 미만 현황의 '임금근로자수'(조세청 자료)가 상이한 이유는, 통계청의 경우 2016년 4분기 조사 시점의 임금근로자수에 대한 집계이며, 조세청의 경우 2016년 한 해 동안 소득신고한 전 체 근로자수에 대한 집계이기 때문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조세청의 통계자료는 연 평균 절대임금 수치를 다룰 뿐 실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고, 통계청 자료 중 임금구조조사(Encuesta de Estructura Salarial)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미만 현황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2016년 기준 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5%가, 풀타임 근로자의 1.5%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풀타임 근로자 19만 명, 파트 타임 근로자 170만명)
- 다만 4년마다 실시되는 EU소득구조조사(structure of earnings survey)에서 스페인은 2010, 2014년 2회 연속 최저임금 105% 이하의 근로자 비중이 전체 EU회원국 중 가장 낮은 0.2%를 기록한바 있음. 참고로 2014년 조사에서 슬로베니아(19.1%), 루마니아(14.3%), 폴란드(11.5%), 프랑스, 리투아니아(9.5%), 불가리아(8.8%) 등이 높은 수치를 기록(2018년 자료 미발표)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4

-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18.12.21(금)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 22.3% 인상안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1977년 이후 41년 만에최대의 인상폭임
- 정부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의 주된 목적이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개선 및 워킹푸어(Working Poor)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이를 계기로 스페인 최저임금이 유럽 평균의 80.6%까지 올라가게 되 었다고 설명함
- 아울러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2.5백만명 가운데 여성이 56.7%으로 정부는 동 정책이 남녀간 임금격차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이 고용시장 개선 노력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 OECD의 호세 앙헬 구리아(José Ángel Gurría) 사무총장은 지난해 독일이 최저임금 인상이후 3백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최저임금이 일 30유로가 되었다고해서 스페인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번 결정을 두둔함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월 1,000유로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현 페드로 산체스 정부의 입장임
- 일부 경제전문가와 대내외 기관들은 22%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파괴를 우려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일방적 임금상승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함

- (IMF)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임시직 · 파트타임 고용을 줄어들게 하는 동시에 청년 · 저숙련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
- (중앙은행) 20%가 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약 12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임금인상 효과는 고용감소와 상쇄되어 실질적인 소비증진은 없을 것으로 전망
- (BBVA) 2019년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으로 2019년 20,000
   ~75,000명의 고용손실이 예상되며, 임금상승을 상쇄할 생산성 향상이 없을 시 2020년까지 총 160,000~319,000개의 일자리가 소멸 될 것으로 우려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 관련 기관 홈페이지
  - 고용사회보장부 (Ministerio de Empleo y Seguridad Social) www.empleo.gob.es
  - 노동·사회보장감독국 (Inspecció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www.empleo.gob.es/itss
  - 각 자치주 관할 노동국 www.empleo.gob.es/itss/web/Quienes\_somos/Estamos\_muy\_

cerca/autoridades\_laborales.html

### □ 관련 법령 원문

- 스페인 노동법www.boe.es/boe/dias/2015/10/24/pdfs/BOE-A-2015-11430.pdf
- 사회질서 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에 관한 국왕령 5/2000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00-15060
- 2018년 최저임금 법령
   https://www.boe.es/buscar/pdf/2018/BOE-A-2018-17773-consoli dado.pdf
- 최저임금 적용현황 통계
   http://www.ine.es/jaxiT3/Tabla.htm?t=3961&L=0
   http://www.ine.es/dyngs/INEbase/es/categoria.htm?c=Estadistica\_P&cid=1254735570541
- ㅇ 최저임금 미만현황 통계

http://www.agenciatributaria.es/AEAT/Contenidos\_Comunes/La\_Agencia\_Tributaria/Estadisticas/Publicaciones/sites/mercado/2016/jrubikc696967c0781a5fedf26509b6403762005214b8.html

https://blogs.elconfidencial.com/economia/laissez-faire/2018-11-23/cuantos-espanoles-cobran-salario-minimo-smi\_1663450/

$\mathbf{x} \cap \mathbf{z} \cap \mathbf{z}$	최저임금제도
스닷구가이	· 시서인 <del>스</del> 세노

ㅇ 근로시간 및 휴가 관련 법령

http://www.boe.es/diario\_boe/txt.php?id=BOE-A-1983-20906

(작성자) 주스페인한국대사관 정기훈 연구원 (34-91-353-2000, kihoonj21.embajada@gmail.com)

# 8. 아일랜드

국 명		아일랜드 공화국(Republic of Ireland)
언 어		영어, 게일릭어
면	적	70,282km²(한반도의 약 1/3, 남한의 약 82%)
인	구	485.7만명(2018.4월)
수	도	더블린(Dublin, Population 134.5만명)(2016년)
주 9	요도시	코크(Cork), 골웨이(Galway), 리머릭(Limerick), 케리(Kerry)
종	교	가톨릭(78%), 기타(12%), 무교(10%)(2016년)
교	육	6세부터 15세까지 의무교육
화폐 단위		유로(Euro)
	GDP	3,761억달러(2018년)
	1인당 GDP	77,861달러(2018년)
주요	GDP성장률	6.7%(2018년)
경제   지표	교역	수출 1,405억 유로/ 수입 903억 유로(2018년)
	실업률	5.4% (2019.3월)
	물가상승률	0.6% (2019.2월)
대사관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ie-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아일랜드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임금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던 2000년에 최저임금제도(시간당 4.40파운드≒5.58유로)를 도입
  - 2000년 이후 11번의 인상, 1번의 인하 등 총 12번의 최저임금의 조정이 있었음
  - ※ 2011.2월 아일랜드 경제상황 악화로 동 제도 도입 이래 최초 최저임금 수준을 소폭 하향 조정했으나, 2011년 7월 기존 임금수준으로 재인상함
- 시간당 9.55유로였던 최저임금을 2019.1.1.부터 9.80유로로 인상함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2000)
  - 최저임금 관련 기본법으로, 고용기업혁신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변경 행정명령 채택 권한 부여
- □ 최저임금법(저임금위원회)(National Minimum Wage(Low Pay Commission) Act 2015)

$\mathbf{x} \cap \mathbf{n} = \mathbf{n}$	최저임금제도
스얼구가이	ᄼᆡᄶᄓᆖᄱᅜ
十	ᆈᄭᄆᄆᆀᆂ

- 2000년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2000)을 개정하여 국가 최저임금 설정 관할기관 '저임금위원회' 설립 및 작업장 관계 법(Workplace Relations Act 2015)의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 □ 금융위기조치법(Financial Emergency Measures in the Public Interest Act 2010)
  - ㅇ 2011년 최저임금 하향조정을 포함한 각종 긴축경제조치 규정
- □ 사회보장 및 연금법(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11)
  - ※ 상기 외 매년 관련 행정명령 시행
- 2. 최근 5년 이내(2014~2018년) 법령 개정사항
- □ 2019.1.1. 최저임금 인상
  - 2018.10.4. 아일랜드 고용사회보장부 장관은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을 2019.1.1.부터 9.80 유로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Order) 발표
    - 이전 수준보다 25센트 인상
    - \* 2017.8.1. 아일랜드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최저임금제도 관련 소관 부처가 고용사회보장부로 변경

### 3

#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ㅇ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 외국인, 장애인 차등적용 없음

### 2. 특례대상

- 18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으나, 국가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2000)에 따라 적용율을 차등 적용
  - 18세 미만의 근로자(성인 최저임금의 70%(6.86유로))
  - 18세가 되어 처음 고용된 이후 2년간(고용 첫해는 최저임금의 80%(7.84유로), 두 번째 해는 최저임금의 90%(8.82유로))
  - ※ 훈련생 특례 조항은 2019년부터 삭제되고, 임금 지급율은 나이에만 근거 (2019.3.4.부터 적용)

# 3. 적용제외대상

- ㅇ 고용주의 가까운 친척인 근로자
- 직계존속·비속,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 이복형제, 의붓자녀 등 포함
- Industrial Training Act(1967) 및 Labour Services Act(1987)의 적용을
   받는 견습공(Apprentices)에 프린터공, 벽돌쌓기공, 기계조작공,
   배관공, 목수, 전기공 분야의 견습공을 포함

- ㅇ 교도관 감독 하에 수감자가 참여하는 비상업적 활동
- ㅇ 고용주에 대한 적용 면제
- 고용자가 △경제적 곤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며, △ 강제로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해야하는 상황을 노동법 원에 증명하여 승인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기간(3~12개월) 이 내 범위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급 임금을 지급 가능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님

#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

4

- 임금지급법(Payment of Wages Act 1991)에 따라 고용계약은 임금지급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주가 1주일, 2주일, 월 단위 등으로 지급가능하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안됨
- 사업주는 임금지급 시 임금항목, 차감항목 및 사유 등을 서면 (Payslip)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지급기간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최근 12개월 내)

### □ 근로시간

ㅇ 근로시간법(Organisation of Working Time Act 1997)은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48시간으로 규정함

- 일반적으로 4개월간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치 계산
- 경비, 병원, 구치소, 전기/가스, 공항/항구 및 관광산업 등 특정 시간에 업무시간이 많아지는 분야의 경우 6개월간 근무시간을 합산 하여 평균치 계산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사업주-근로자간 합의로 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12개월간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치 계산 가능
  - ※ 근로시간에는 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은 포함되지 않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ㅇ 산입 임금
  - 근로시간 동안 임금총액임(조세, 공과금 등 공제전)
  - 기본급(basic salary), 교대근무수당(shift premium), 상여금(bonus), 서비스료(service charge) 등
  -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 아래 계산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에 포함
    - ※ 식사만 제공되는 경우, 근무시간당 0.87유로(시간율로 계산)는 최저임금에 포함 하여 계산
    - ※ 숙박만 제공되는 경우, 주당 23.15유로 또는 일당 3.32유로 산입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초과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기본급을 초과하여 할증된 초과분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산입됨), 직무수당, 팁, 호출근로수당, 병가수당, 퇴직금, 숙식 및 교통비 이외의 현물수당, 당직수당, 직원 제안 제도에 따른 상금 등
- ㅇ 법률상 주휴수당 규정여부 및 최저임금 산입 여부
  - 근로시간법(Organisation of Working Time Act 1997)에 주휴수당 규정,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음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 직장관계위원회(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
  - 직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2015)에 따라 2015.10월 설립되어 근로환경 개선 촉진, 근로관련 규정 홍보, 근로환경 감독, 조사 등 역할 담당
- □ 노동법원(Labour Court)
  - 1946년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46)에 따라 설립되어 분쟁해결 최종기관 역할 및 각종 근로관련법규 위반 여부 조사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최저임금법 제37조에 따르면, 약식재판의 경우 1,500 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정식재판의 경우 10,000 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유죄판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불이행에 대해 유죄선고 가능하며, 건별 200파운드 이하, 최대 1000파운드 이하의 벌금부과
    - ※ 아일랜드는 2002.1.1.부터 유로화 사용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장관계 위원회 사이트(http://www.workplacerelations.ie)에서 아래 두 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이의제기 가능
- 직장관계위원회 조사관(inspector)의 조사 요청
- 사업주로부터 평균시간당 수당증명서류를 요청한 후 심사관(adjudicator) 에게 사안을 회부할 수 있음(6개월 이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모든 절차를 동원하였으나 해결이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 노동법원에 제소 가능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ㅇ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여 고용사회보장부 장관이 결정
-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2015년 최저임금법 수정안인
   National Minimum Wage(Low Pay Commission) Act 2015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8명의 위원과 1명의 의장으로 구성됨
  - 위원장 포함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 가능하나 3회 이상 연임은 불가함
  - 위원 중 3명은 노동자(employee) 관련 인사, 3명은 고용자(employer) 관련 인사, 2명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며, 남녀 성별 비율에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의장은 공익대표 인사로 임명됨
- 저임금위원회 의장은 고용사회보장부 장관이 직접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임명하며, 8명의 위원은 아일랜드 공무원 채용기관인 Public Appointment Service가 고용사회보장부와 협의하여 선발한 후, 고용사회보장부장관이 임명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최저임금법 제11조-제13조는 고용사회보장부 장관은 사회연대협약 또는 노동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권고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임금을 변경하는 행정명령(order)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15년 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동 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면 고용사회보장부 장관이 동 권고안을 수용, 변경수용, 또는 불수용 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고용사회보장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변경하는 행정 명령을 채택 가능하게 됨

# 2. 결정절차

- 저임금위원회는 1년간 약 10차례 회의를 갖고 합의를 통해 권고안을 작성하며, 소수가 권고안과 다른 의견을 가질 경우 소수의견 (minority report)으로 권고안에 포함
- 저임금위원회 합의과정에서 노사관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중소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시로 외부 관련인사를 초청해 컨설팅회의 개최

- 고용사회보장부장관은 동 권고안을 변경수용하거나 불수용할 경우 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함
- 이 경우 장관은 저임금위원회에서 고려했던 요건들(아래 "결정 기준" 참조)을 모두 검토하였음을 증명하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해야 함
- 저임금위원회가 권고안을 재작성할 의무는 없음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저임금위원회는 고용사회보장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관련 권고안 제시할 시에 동 권고안을 공개(www.lowpaycommission.ie)함
- 저임금위원회의 합의과정은 회의록으로 작성되나 이는 내부용으로서 대외 공개되지 않으며, 최종 작성된 권고안만을 공개

#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3

- □ 저임금위원회는 권고안 작성 시 하기 요건을 고려해야 함
  - ㅇ 해당 기간 내 소득변화
  - ㅇ 해당 기간 내 환율변화
  - 해당 기간 내 소득분배의 변화

#### 154 ... 최저임금위원회

- 해당기간 내 △실업률의 증감 추이, △고용율의 증감 추이,△생산성의 증감 추이
- 세계 각국, 특히 영국 및 북아일랜드와의 비교
- ㅇ 고용 창출의 필요성
- 최저임금 변경 행정명령이 △고용/실업 수준, △생계비,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
- 생계비는 실태생계비로서 저임금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2016년의 경우 월세, EU Harmonized Index of Cosumer Prices 등을 검토)를 감안하여 생계비를 검토하며, 가구수와 상관없이 1인 기준 적용
  - ※ 국가최저임금법(저임금위원회)(2015)는 가장 최근 국가최저임금 수령 이후의 기간의 상기요소 고려 권고,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검토 (2017.10월까지 내용으로 작성) 이후 2018.7월까지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려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권고안 작성 시 활용되는 통계의 작성기관은 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OECD, 경제사회연구원(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재무부, 국가경쟁력위원회(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네빈 경제 연구원(Nev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직장관계위원회 (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 등임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 고시는 장관 명의 행정명령(National Minimum Wage Order) 형식으로 이루어짐
  - 2019.1.1. 이후 시간당 9.80유로
    - ※ 차등적용 관련 상기 적용대상 참조

# 5 갱신주기

□ 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권고안을 고용사회보장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유로, 시급)

			그 외 특례 근로자				
구분 연도별	성인	청소년 (18세 미만)	18세 이후 처음 고용된 근로자		정상적인 근로시간 아래 놓여 18세 이상 훈련생(Trainee)		
			첫해	둘째해	1/3 기간	2/3 기간	3/3 기간
2019	9.8	6.86	7.84	8.82	폐지	폐지	폐지
2018	9.55	6.69	7.64	8.60	7.16	7.64	8.60
2017	9.25	6.48	7.40	8.33	6.94	7.40	8.33
2016	9.15	6.41	7.32	8.24	6.86	7.32	8.24
2011(7.1.)	8.65	6.06	6.92	7.79	6.49	6.92	7.79
2011(1.19.)	7.65	5.36	6.12	6.89	5.74	6.12	6.89
2007(7.1.)	8.65	6.06	6.92	7.79	6.49	6.92	7.79
2007(1.1.)	8.30	5.81	6.64	7.47	6.23	6.64	7.47
2005	7.65	5.35	6.12	6.88	5.73	6.12	6.88
2004	7.00	4.90	5.60	6.30	5.25	5.60	6.30
2002	6.35	4.44	5.08	5.71	4.76	5.08	5.71
2001	6.00	4.20	4.80	5.40	4.50	4.80	5.40
2000	5.58	3.90	4.46	5.02	4.18	4.46	5.02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및 미만현황

- □ 직장관계위원회(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의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2017년 입법위반 3,039건 중 409건이 최저임금위반(13.4%)으로 전년대비 증가(2016년 2,398건 중 292건으로 12.2%)
  - 입법 위반 사례(2017년)

입법 위반 사례	총수
국가최저임금	409
일요근무수당	199
불완전한 고용기록	1,553
고용허가	509
연가/공휴일	321
고용 대행사	10
기타 고용약관	26
총합계	3,039

- □ WRC가 2017년에 총 4,747명의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그 중 2,741명은 비공식 조사)했고, 그 중 2,032명의 고용주에 대한 입법 위반사실이 확인됨(42.8%)
  - ㅇ 업계별 근로 관련 법규 준수 현황

# 8. 아일랜드

분야	케이스	위반횟수	위 반율(%)
CONTRACT CLEANING	18	14	78
AGRICULTURE	48	36	75
HAIR & BEAUTY	79	48	61
WHOLESALE & RETAIL	258	157	61
FOOD & DRINK	645	371	58
EQUINE	54	30	56
CONSTRUCTION	75	39	52
DOMESTIC Worker	20	10	50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3

www.lowpaycommission.ie
www.irishstatutebook.ie
www.workplacerelation.ie
employmentrightsireland.com/tag/minimum-wage-rates/
www.citizensinformation.ie
www.cso.ie/indicators/Maintable.aspx

(작성자) 주아일랜드대사관 3등서기관 김보미(+353-(0)1-660-8800, bmkim13@mofa.go.kr)

# 9. 영국

į.

국 명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 연합왕국)	
<b>언 어</b> 영어			
면 적 244,820 km²			
인	구	6,604만명 (2017년 기준, 통계청) / * 6,647만명(2018년, 추정)	
수	도	런던	
주-	요도시	런던(London), 에딘버러(Edinburgh), 카디프(Cardiff)	
종 교 기독교(59.3%), 없음(25.1%), 이슬람교(4.8%), 힌두교(1.5%) 기타(2.1%), 무응답(7.2%) (2011년 인구센서스)		기독교(59.3%), 없음(25.1%), 이슬람교(4.8%), 힌두교(1.5%), 기타(2.1%), 무응답(7.2%) (2011년 인구센서스)	
교 육		상류층의 자녀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립학교에 다니고, 일반계층의 어린이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보통 - 학제 구성 : 초등(6)-중등(5)-후기중등(2)-대학(3) - 의무 교육 : 5~16세, 총11년 (초등 6년, 중등 5년)	
화피	폐단위	£ (Pound Sterling)	
	GDP	2조 8,000억달러('18년, IMF)/2조 336억GBP('18년, 통계청)	
	1인당 GDP	4만 4,177달러('18년, IMF)/	
주요 경제	GDP성장률	1.5% ('18년, IMF)	
경제   지표	교역	수출 : 6,345억 파운드, 수입 : 6,643억 파운드 (통계청)	
	실업률	4.1% (2018년, 통계청)	
	물가상승률	2.3% (2018년, 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gbr.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 임금위원회 시대(1909년~1945년)

- □ 영국은 19세기 이래 노동조합이 없는 업종에 있어서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를 중심으로 위생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장 시간 일하면서도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소위「고한(苦汗)노동」이 확산
- □ 20세기 들어 저임금업종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압력이 고조된 결과 이들 근로자들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위원회법(Trade Boards Act 1909)을 제정하고, 1911년 저임금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강제적인 임금결정기구로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임금위원회를 설치
  - 임금위원회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대상 업종은 당초 봉제업, 종이 상자, 레이스, 어망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대상근로자 약 40만명), 1918년 법 개정으로 적용범위가 단체교섭기구가 발달 하지 않은 부문으로 확대
  - 1921년까지 37개 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그 후 감소되었고,
     1938년과 1939년에는 제빵, 가구제조, 고무제조 등의 산업에도 설치
     (대상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5%인 300만명 수준에 달함)
    -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강제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임금위원회는 유명무실화하게 됨

# 2. 임금심의회 시대(1945년~1993년)

- □ 1945년 임금심의회법(Wages Councils Act 1945)에 의해 임금위원회는 보다 더 큰 권한과 결정범위를 가진 임금심의회로 재편됨
  - 임금심의회의 기본적인 임무는 노동부장관에게 법정최저임금액,유급휴가 및 그 수당액을 제안하는 것이었음
  - 임금심의회는 민간 서비스업(소매업, 호텔·접객업, 봉제업 등 3개 업종의 근로자가 90% 이상을 차지)을 중심으로 1947년에 69개소에 달하였으나, 1960년대 전반에 53개소로 감소1)
  - 대부분의 민간 서비스업에서는 직장에 노동조합이 없고, 또 있어도 단체교섭을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임금심의회가 산별 수준의 임금 규제를 행하게 되었고, 대상근로자가 1948년에 350만명(전체 근로 자의 18%)에 달하고, 1960년대까지 거의 같은 수준이 유지됨
  - 임금심의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상승이 미미했고, 잘 이행되지 않았으며, 임금심의회에서 정의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임금 상승을 억제하였고,
    - 또한 임금심의회에 의해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기 때문에 임금교섭에 대한 무력감이 퍼져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연대감이 제고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측에 유리하게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음2)

<sup>1)</sup> 임금심의회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체기능을 하는 기구라는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단체교섭이 활성화된 1950년 후반에 일부 임금심의회 폐지

<sup>2) 1979</sup>년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48% 수준이었으나, 1992년에는 평균임금의 40% 수준이었으며, 임금감독관이 전국에 120명 밖에 없어 등록기업의 11% 정도에 대하여 우편으로 체크하는 실정이었다고 함

- □ 1970년 영국 정부는 코포라티즘과 사회적 합의를 기본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여 소득분배에 있어 정부는 저임금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고임금층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기도 하였으나,
  - 1978~79년의 「불만의 겨울」시 파업 급증 등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대처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단체교섭과 전국적 협약의 축소,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로 국내투자 증가, 노동 시장 규제완화, 노동조합의 권리제한, 노조활동 규제 등을 실시함
  - 이러한 관점에서 강제적 임금결정기구인 임금심의회는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그 대상과 기능이 축소되기 시작
    - 정부에서 임금심의회의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1980년에서 1981년에 걸쳐 임금감독관(wage inspector)의 수를 2/3로 감축하는 등 임금심의회의 감시기능을 크게 약화시킴
  - 1986년에는 임금법(Wage Act)를 제정하여 임금심의회의 대상과 권한을 대폭 축소시킴
    - 임금심의회의 결정은 21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미적용
    - 임금심의회의 권한은 기본적인 시간급과 하나의 특별급여를 설정 하는 것으로 한정
    - 임금심의회는 스스로 설정한 임금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임금심의회의 대상 폐지 또는 변경을 위한 절차의 단순화
    - 그러나 경영측은 더욱 많은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위해 임금심의회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1993년 노동조합 개혁·고용권리법 (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TURERA) 제35조는 2개의 농업임금심의회를 제외하고 26개 임금심의회를 폐지

- □ 메이어 정부는 다음 3가지를 주요 사유로 들어 임금심의회를 폐지
  - ① 대상노동자가 빈곤자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임금심의회가 설정한 최저임금액은 빈곤을 거의 완화시키지 않았으며, 임금심의회 대상노동자의 80%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
    - ⇒ 이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입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에 의해 보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당시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었음
  - ② 임금심의회의 최저임금액은 대상산업의 고용 감소를 유발하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는 임금을 강요한 경우 기업은 고용을 줄임
    - ⇒ 이에 대해, 당시 취업자수 변화를 분석해서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었음
  - ③ 강제적인 임금결정기구는 노동권, 안전·위생법, 사회보장 등이 없었던 1900년대 초기에 설립된 것이고, 1990년대에는 맞지 않음
    - ⇒ 이에 대해, Rosemary Lucas & Nicholas Radiven은 임금심의회는 호텔업 등 저임금 업종에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반론이 있었음

□ 결론적으로, 메이어 정부는 저비용 구조의 산업구조를 만들어 영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금 심의회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3. 저임금위원회 시대(1999년~2016년 3월)

- □ 대처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이 실시된 결과 1990년대에는 소득불균형이 확대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
  -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는 1990년대에 세계대전 이후 가장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캠페인 전개
  -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블레어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경영자, 노동자, 전문가의 3 자로 구성된 저임금위원회(LPC, Low Pay Commission) 설치 (7월)
  - 동 위원회의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1998년 7월 국가최저임금법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을 제정하고, 1999년 4월부터 국가최저임금제를 실시함
- □ 블레어정부는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저임금위원회(LPC)는 최저임금제는 국민·근로자·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설명
  - ① 노동에 상응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에 의해 빈곤을 감소시키고,

노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세제와 빈곤자 구제제도를 보완함

- ② 노동착취라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는 것에 의해 근로자의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고, 직장의 건전성과 공평성을 보장함
- ③ 남녀간, 민족간의 공평한 기회를 촉진함
- ④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함
- ⑤ 종업원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직을 줄이며, 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경쟁력을 높임
- □ 영국 노동당 정부가 전국적인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은 다음 2가지 상황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첫째, 1993년의 임금심의회 폐지 이후 저임금층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임금격차가 확대
    - 또한, 빈곤가정 아동문제가 전후 최악이라고 말할 만큼 심각해짐
  - 둘째, 재정상의 문제도 제도 도입의 강한 동기가 되었음
    - 보수당 정부가 1988년 취업연동형 급부제도(in-work benefits)로 도입한 가족세액공제(Family Credit)는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을 조건으로 소득보조(세금 환급)를 행하는 제도로 빈곤층의 취업 촉진과 빈곤아동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그러나 임금수준 하한 철폐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종업원의 임금을 억제해서 이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 결과 세액공제 수급자 확대로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함

- 이에 따라, 기업이 타당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을 배경으로 국가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게 됨
- □ 결론적으로, 영국 노동당정부는 저임금층의 임금수준 적정화와 이를 통한 사회보장지출의 축소 및 세금·사회보험료 등의 수입 증가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4. 국가생활임금 시행(2016년 4월 ~ 현재)

- □ 2016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성인에게 국가생활임금 적용
  - 국가생활임금이란, 기존에 21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성인최저임금의 연령구간을 「21세 이상 25세 미만」과 「25세 이상」으로 나누고 2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성인 최저임금에 별도의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가의 강제력이 부여되며, 생활임금 재단이 지역별로 구분하여 발표해오던 생활임금과는 다른 개념임
  - '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15/'16년도 수정 예산안 (emergency Budget)을 발표('15.7.8.)하며, 국가생활임금 도입을 확정·공표
    - (적용시기/대상) **2016년 4월부터 / 25세 이상 근로자**
    - (금액) 시간당 7.2파운드(기존 21세 성인 최저임금 대비 10% 이상 증가)
      - ※ 향후 2020년까지 중위소득의 60%까지 인상 추진
         (참고) '16.4월 £ 7.2 → '17.4월 £ 7.5 → '18.4월 £ 7.83 → '19.4월 £ 8.21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 1998년 7월 국가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을 제정하고, 1999년 4월부터 전국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됨
  - 동법 제1조의 해석상 '최저임금'은 '임금기준기간(pay reference period)내에 최소한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당 임금'으로 정의됨
- □ 매년 국가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액 및 기타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연도별 최저임금규칙(행정명령) 공표
  - ※ 현행 적용 규칙: National Minimum Wage Regulations 2019

# 2. 최근 3년 이내(2015~2018년) 법령 개정사항

- □ 2017년 최저임금규칙 개정
  - ▶ The National Minimum Wage (Amendment) Regulations 2017 (발효 2017.4.1.)

구분	25세 이상	21~24세	18~20세	18세 미만	견습생
'16년 4월이후	£7.20 ('16년 4월~)	£6.95	£5.55	£4.00	£3.40
'17년 4월이후	£7.50	£7.05	£5.60	£4.05	£3.50

\* 그 동안 최저임금은 매년 10월 조정되었으나, '17년부터는 25세 이상 국가 생활임금과 함께 매년 4월부터 조정

# □ 2018년 최저임금규칙 개정

# ▶ The National Minimum Wage (Amendment) Regulations 2018 (발효 2018.4.1.)

구분	25세 이상	21~24세	18~20세	18세 미만	견습생
'17년 4월 이후	£7.50	£7.05	£5.60	£4.05	£3.50
'18년 4월 이후	£7.83	£7.38	£5.90	£4.20	£3.70

# □ 2019년 최저임금규칙 개정

### ▶ The National Minimum Wage (Amendment) Regulations 2019 (발효 2019.4.1.)

구분	25세 이상	21~24세	18~20세	18세 미만	견습생
'18년 4월 이후	£7.83	£7.38	£5.90	£4.20	£3.70
'19년 4월 이후	£8.21	£7.70	£6.15	£4.35	£3.90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 16세 이상 모든 근로자 (worker)
  - 군인, 재소자, 소작어민, 자원봉사적 근로자, 친구와 이웃, 진정한 의미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16세 이상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 국가최저임금규칙(National Minimum Wage Regulations 1999)에 따른 「근로자」는 노동관계에 관한 보통법 및 제정법이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employee」보다는 넓은 「worker」를 사용하고 있는 바, 그 결과 진정한 의미의 자영업자3)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때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이 쉽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바, 예를 들어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자는 자신의 작업시간을 통제·조정할 수 있고 사업수익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사업손실을 부담하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사용자)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영업자라고 할 수 없음
    - 자영업자는 단순히 자신들의 납세상 지위에 의존하여서는 안 됨. 가령, 납세를 목적으로 국세관세청(HMRC)에 의해 '자영업자'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최저임금제의 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sup>3)</sup> 국가최저임금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쉽게 구분됨. 자영업자라면 고객과 작업에 대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송장 또는 청구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됨. 또한 자신의 작업시간을 통제·조정할 수 있으며 각 작업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조달하며 사업수익을 자신의 소유로 하거나 손실을 직접 부담함

# 위에 기술한 모든 사항들을 검토함4)

### 2. 특례 대상

- □ 25세 이상 근로자
  - 2016년 4월부터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5)이 도입되어, 25세 이상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보장됨
  - 국가생활임금은 매년 4월에 갱신되며, '17년부터는 매년 10월에 개정되던 최저임금도 국가생활임금과 함께 4월에 개정

### □ 16세~20세 근로자6

- 1999년 시행 초기에는 연령을 22세 이상, 18~21세기로 구분하여 2가지의 최저임금액을 시행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16~17세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동 연령대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보다는 낮은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적용
- ※ 당초 16~17세 청소년은 완전한 노동력이 아니라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하였으나, 현장에서 극단적 으로 낮은 저임금을 받는 청소년 근로자가 많이 나타나자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결정

<sup>4)</sup>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최저임금 관련 법령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 즉,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자는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항상 해당 사용자(라고 주장되는 자)에게 있음

<sup>5)</sup> 국가생활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이 매년 11월 런던과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공표하는 권고인 '생활임금'과는 전혀다른 개념임

<sup>6)</sup> 당초 성인근로자의 연령은 22세 이상이었으나, 기업들의 다수가 21세와 22세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노동당과 노동조합이 적용연령을 21세로 낮추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연령하한을 21세로 낮추었음

<sup>7) 2010</sup>년 10월부터 18~20세로 낮춤

- 2010년부터 성인 최저임금 적용연령을 21세 이상으로 함에 따라, 연령별 최저임금은 21세 이상, 18~20세, 16~17세로 구분됨
- 2016년 4월부터 2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는 국가생활임금 (National Living Wage)이 적용됨에 따라, 25세 이상, 21~24세, 18~20세, 16~17세의 4개 연령별 최저임금이 적용

### □ 가사고용인

○ 영국은 오페어(Au pair)<sup>8)</sup>나 유모처럼 가족의 일부로서 생활하며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가 입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됨

### □ 도제

- 경기침체를 맞아 인턴십을 비롯한 도제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됨
- 2010년 10월부터 19세 미만 및 19세 이상이나 근무기간 12개월 내인 도제제도(apprenticeship)의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됨

<sup>8)</sup> 외국인 가정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대가로 숙식과 일정량의 급여를 받고, 자유시간에는 어학 공부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임.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나 기존의 유모(Nanny)와 다르게 일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외국인 가정에 입주하여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동시에 어학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참고】 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의 타당성 논의

- 16~20세 근로자에 대하여 성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연령차별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저임금위원회는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 20세 이하의 근로자들이 경험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인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이들의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함
- 이에 따라 영국에서 20세 이하 근로자에게 21세 이상의 근로자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기 보다는 청소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논리가 큰 논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
  - (EU 연령차별 관련지침 위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3. 적용제외대상

- □ 의무 학업연령 내에 있는 자
  - 근로자는 '의무 학령(school age)'을 벗어나는 16세에 도달하여야 최저임금을 적용받음
- □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자영업자(self-employed people)로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회사의 대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적 근로자, 정부 고용프로그램 (예: 정부근로) 참가자, 군인
- 고용주의 가족으로서 가내에 살고 있는 자, 오-페어(Au pairs)
- 고등교육 혹은 보습교육 학생으로 1년 이내 연수중인 학생, 정부의 예비도제과정(pre-apprenticeships schemes)에 있는 자, 고용센터 시범근로기간 중에 있는 자(6주)
- 어획 수입을 할당받는 어부 근로자(share fishermen), 죄수, 종교인 등
- □ 다만, 근로형태에 대한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임
- \* 파트-타임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agency workers), 가내근로자, 도제(apprentices), 직업훈련생(trainees) 혹은 수습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선원(seafarers), 국외근로자 등

#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4

- □ (임금) 국가최저임금 해당액 산정
  -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열거된
     제외 요소들과, 기타 제외하여야 할 지급액 및 공제액을 차감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된 최저임금 해당액을 산정

- 일부 지급액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으며, 최저임금에 산입 할 수 없는 항목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해당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최저임금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 발생
  - ▶ 예컨대, 추가근무(overtime)시의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해당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나, 고용주가 착오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등
- 최저임금 계산은 임금기준기간(PRP, Pay Reference Period) 중에 지급된 총 급여에서 출발하며, 이는 소득세(income tax)와 사회보장 보험금(NI, National Insurance)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임
  - ▶ 임금기준기간은 시급, 주급, 월급으로 구분하며, 1개월을 넘지 않음

#### □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 '근로시간규정(working time regulations 1998)'에 의거하여, 통상 주당 평균 48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수 없음
- 다만, 동 한도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미적용(Opt-out) 할 수 있는 바, 서면으로 합의(최대 3개월)하며, 7일 전에 고용주에 통지하여 취소 가능
- 청소년인 근로자(16~18세)의 경우에는 일일 8시간, 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 국가최저임금 해당액에 산입되는 요소들
  - 인센티브(incentive pay) 및 상여금(bonus)
    - 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바, 인센티브, 판매 수당(sales commission),

공로수당(merit) 혹은 성과연동 임금체계(performance-related pay scheme) 등을 포함함

- 상여금(bonus)은 동 상여금이 실제 지급된 월의 급여에 산입함
- ㅇ 소득세와 피고용인의 국민보험료
- ㅇ 벌과금의 공제 및 지급금
- ㅇ 임금 선급금의 상환을 위한 공제 및 지급금
- ㅇ 주식 또는 증권 매입 대금의 공제 및 지급금
- 오류로 인한 임금 초과지급액을 반환하기 위한 공제 및 지급금
- 사용자에 의해 공제되지만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는 금액9)
- ㅇ 자발적인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해 근로자가 지불하는 금액
- ㅇ 상한선 이내의 숙박비
  -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로, 공제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선 이내의 금액만을 산입할 수 있음

<sup>9)</sup> 근로자의 고용과 연계되어 지급이 요구되거나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노동조합비나 연금기여금과 같이 근로자가 원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 현금 급여로서 산입되지 않는 경우
  - ㅇ 대부 금액 및 대부상환을 위한 공제 및 지급금
  - 임금 선급금, 연금 수령액, 퇴직 시 지급되는 일시금
  - ㅇ 해고수당, 직원제안 제도에 의한 포상금
  - 추가수당(추가, 휴일근무), 특별수당(위험수당, 특정근무지수당 등)
  - 고용주는 아래의 근로에 대하여 평상시의 임금을 초과하여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렇게 초과 지급되는 금액(premium)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 (예) 초과근무, 주말근무 혹은 야간교대, 법정 공휴일(bank holiday) 근무, 일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 근무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용주 자신의 용도 혹은 편익을 위한 사항에 대해 지출한 금액
  - 이는, 근로자가 동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산입할 수 없음
  - 모든 유형의 팁, 봉사료 등 (2009년 10월부터)
    - ※ 접객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팁, 봉사료, 서비스요금 및 테이블 요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급여액에 포함되거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총괄 관리인(tronc master)을 통해 지급받는 모든 경우 포함

- ㅇ 휴가비 (holiday pay)
  - 휴가 규정(holiday entitlement)에 따르면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소 28일(연간 7~8일 상당의 법정공휴일(Bank holiday) 포함) 이상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비(holiday pay)는 시급에 포함할 수 없음
    - ※ 유급주휴제도 및 유사한 규정은 없음
- □ 현물 급여(benefits in kind)로서 산입되지 않는 경우
  - 현물급여는 국가최저임금 해당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유일하게 숙박 제공은 고시된 상한선 내에서 산입 가능
    - 숙박산입액은 매년 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정부에 통보하며, 시장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책정
    -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에서 숙박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후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음
      - · 고용주가 위와 같은 공제나 청구를 하지 않고 고용패키지의 일 부로서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 2019년의 경우 지난해 대비 55펜스 인상된 7.55파운드로 인상

#### 〈연도별 숙박 산입액(일당)〉

(단위 :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숙박 산입액	5.08	5.35	6.00	6.40	7.00	7.55

- ㅇ 숙박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현물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 불가
- ※ 산입되지 않는 현물급여 예시 : 식권, 연료(fuel), 차량, 근로자 연금기금에 대한 사용자 분담금, 이사지원금, 의료보험비, 보육시설 이용권(child care vouchers) 등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 최저임금 이행감독
  - 최저임금제도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은 국세관세청(HMRC)에서 관장하고 있음
    - 임금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국세관세청의 기능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이 최저임금 이행상황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 보다 최저임금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국세관세청의 감독관(compliance officer)들은 최저임금 위반에 관해 사용자에 대한 출입검사, 체불임금 및 벌금 고지, 최저임금 미이행 악덕 고용주에 대한 형사소추 의뢰 등 권한을 가짐
- □ 노동법원(Employment Tribunals)
  - 고용주가 임금 관련 자료를 보여주지 않거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노동법원에 제소하거나, 민사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 2011년 법무부가 노동법원 및 노동 항소법원 제소 수수료 부과 도입을 검토했으나, 저임금위원회 반대로 미적용한 바 있음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 체불임금 지불명령 및 벌금 부과
  - 국세관세청(HMRC)은 최저임금 위반사용자에 대해서는 최장 과거

6년분까지 소급해서 이자를 더한 미지급 임금의 지불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벌금을 부과함

- (2009.4월~2014.2월) 최저임금 위반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이자를 더한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외에 최대 5,000파운드(약 900만원) 내에서 미지급금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14.3월 이후) 기존의 벌금 액수를 미지급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최대 벌금 한도액을 2만 파운드(약 3,600만원)로 상향함
- (2016.4월 이후) 기존의 벌금 액수를 미지급분의 100%에서 200%로 상향 (단, 최대 벌금 한도액은 2만 파운드 유지)
- 이행통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관세청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동법원이나 일반법원에 제소하거나 직접 사법처리할 수 있음
- 위반의 정도가 높은 악덕 고용주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며, 유죄 판결시에 동 고용주는 15년간 대표자격이 상실됨

## □ 위반사업자 명단공표(Naming)

- 2011년 1월부터 최저임금 시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반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고용주를 공표
   (전국 및 지역 대상 언론보도자료 배포)하는 제도를 시행함
  - ※ 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성명공표 (Naming)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2012년도 보고서에서 권고함
  - ※ 이에 따라, 기업기술혁신부(BIS, 現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BEIS)는 2012.9월 최초로 3,361파운드를 미지급한 미용실업자의 이름을 공표한 바 있음

- ► 다만, 미지급액이 2,000파운드(약360만원) 이상, 근로자당 500파운드(약9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HMRC에서 BIS에 명단을 통보하였음
- ※ 2013년 10월부터는 기존의 성명공표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고용주가 HMRC로부터 미지급 임금의 지급 및 벌금의 납부를 고지하는 '저임금 통지서(underpayment notice)'가 발급될 경우 모두 성명공표의 대상이 됨

# 【참고. 제14차 최저임금 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내용('18. 3. 9.)】

- 최저임금 보다 적게 보수를 지급받은 9,200명의 근로자를 확인하고, 179명의
   관련 업주를 공표하는 한편, 총13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위반 사례가
   많은 분야는 소매업, 숙박업, 미용업계라고 밝힘
- ▶ 4월 1일부터 새로운 국가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위반사업자 공표를 통해 사업자와 근로자에 변경된 기준을 알리고, 홍보 병행

#### 【참고】 국세관세청의 명단공표(naming) 절차

- ▶ 국세관세청(HMRC)의 조사결과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HMRC는 고용주에게 저임금 통지서(underpayment notice)를 발부
- ▶ 동 통지에 대해 고용주는 28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 만약,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HMRC는 동 고용주를 기업기술혁신부(BIS)에 통보함
- ▶ 고용주는 통보 이후 14일 이내에 BIS의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있음을 소명 가능
  - \*개인, 가족의 안전에 위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
- ▶ 고용주의 소명이 없거나, 그 소명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이 공개됨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 국세관세청(HMRC)의 감독관(compliance officer)을 통하는 경우
  -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 본인 및 제3자의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HMRC 자체조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 HMRC의 집행권(enforcement)이 발생함
  - 동 사안은 HMRC 최저임금 감독부서(compliance team)로 배당되며, 동 부서의 감독관(compliance officer)은 공식 조사를 개시
    - ※ 조사내용: 임금서류 및 기록 확인, 고용주 및 급여담당, 근로자 인터뷰 등
  - 조사결과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저임금 통지서 (underpayment notice)'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한 벌금 내역을 통보함
  - 만약, 고용주가 '저임금 통지서(underpayment notice)'를 받아서 동 통지서가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동 건은 종결됨
  - 고용주가 HMRC가 명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HMRC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바,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표하여 민사 혹은 노동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음
  - 소송을 통해 HMRC는 근로자의 고용주에 대한 채권을 판결로 확정하며, 고용주의 이행 지연시 압류(distraint) 조치 등을 시행함

-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고용주에 대해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노동법원) 노동법원(employment tribunal)에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에 반하는 불법 임금 공제', 혹은 '근로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을 들어 제소
  - (지방법원) 지방법원(county court)에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을 들어 제소
- □ 최저임금 지급사실 입증 책임
  - 노동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송절차 진행시 최 저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 이는 최저임금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며, 다른 일반 노동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 고용주는 임금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최저임금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용주에게 관련 서류를 6년 이상 보관하도록 권장함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기업혁신기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BIS)
  - 기업혁신기술부의 장관은 소관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으로, 저임금위원회에 권고안을 의뢰하고, 동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에 동의함으로써 해당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공표함
- □ 저임금위원회 (LPC, Low Pay Commission)
  - 저임금위원회는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산하의 독립적 비정부 부처형기구로 국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하여 정부에 권고·자문하는 기관임
    - 위원은 의장(1명), 공익(2명), 노(3명), 사(3명)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공개경쟁을 통해 개인자격으로 임명됨
  - ㅇ 임명권자 : 기업혁신기술부 장관
  - ㅇ 임명절차
    - 장관은 위원 임명시 다음과 같이 위원들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a)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전반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지식, 경험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들

- (b) 사용자 단체 또는 사용자 전반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지식, 경험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들
- (c) 기타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위원들
- 위원임기: 2년
  - 위원은 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위원직 사퇴 가능
  -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자는 재임명 대상이 될 수 있음
  - 장관은 다음과 같은 위원에게 사전 통보를 함으로써 당해 위원의 위원직 박탈 가능
    - (a) 파산을 하였거나 채권자들과 어떠한 형태의 합의를 하였거나, 자신의 재산을 저당물로 제공하였거나, 채권자들에게 신탁증서를 제공하였거나, 채권자들과 화의협약을 체결한 자
    - (b) 2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자로서 불참이유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c)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자
- ㅇ 의사 절차
  - 위원회의 정족수와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들은 위원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
  - 위원회 의사절차의 유효성은 다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
    - (a) 위원의 사망, 사임을 포함한 모든 사유에 의한 위원직 공석

- (b) 시기와 상관없는 공석 충원을 위한 위원 임명
- (c) 위원 임명과정의 결함

## 【참고】저임금위원회 사무국(Secretariat)

- 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11인 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
   ※ 사무국장(1명), 행정 및 언론, 정책분석, 경제·통계 각 2~4명
- 직원 충원은 공석이 된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하며
   (통상 BIS 출신 임명),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 근무가 가능
- 경제 및 통계 등 전문분야 근무자는 해당분야 대학 전공자 요구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최저임금액 권고안은 지금까지 저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10)

## 2. 결정절차

- □ 장관이 국가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할 단일시간급 등을 부의하여 저 임금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요청
  - 장관은 저임금위원회에 보고기한을 명시하는 통보를 하며, 추가 통보를 통해 보고 마감기한을 수시로 연장할 수 있음

<sup>10)</sup>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마지막 회의 시에는 전 위원들이 호텔에 격리된 상태에서 끝장 토론식으로 진행하여 위원들의 합의를 도출한다고 함(2011년도 이후 최저임금 수준 심의시 통상 2일 정도 소요)

- □ 저임금위원회는 부의된 사항들을 심의한 후에 각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의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총리와 기술혁신부장관에게 제출
- □ 저임금위원회의 보고 이후에 장관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장관은□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 양원에 제출
  - ① 저임금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결정
  - ② 위원회 권고사항 중 일부만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한다는 결정
  - ③ 위원회가 건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결정
  - ④ 기타 위원회의 권고사항과는 다른 규정을 수립한다는 결정
  - ⑤ 위원회의 건의와는 관련이 없는 규정을 수립한다는 결정
- □ 저임금위원회가 허용된 기간 내에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한 (국가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할 단일시간급 결정)을 행사할 수 있음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 저임금위원회 회의
- 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in private)로 진행됨
  - 회의 의사록(minutes)은 기록되나, 최종회의(final negotiations)는 비공개(closed session)이며, 의사록이나 여타의 기록을 남기지 않음(with no minutes taken or record kept)

ㅇ 모든 회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함

#### □ 수집자료 및 연구용역 결과

- 모든 용역결과, 서베이, 경제지표 및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공개(publish)되며, 저임금위원회의 연보에 수록됨
- 기업계, 노동계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evidence)들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됨
- 통상 매월 개최하는 일반회의의 의사록(minutes)은 기록은 되나, 공개되지는 않으며, 회의의 주제(agenda)도 공개되지 않음
  - 다만, 동 자료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적용을 받으며, 회의 아젠다 및 의사록 공개를 요구받을 수 있음
- 최저임금 권고안을 결정하는 최종회의(final negotiation meeting)는 외부인 참석이 배제된 장소에서 개최되며, 기록도 남기지 않음 (secret and no record is kept)
  - 다만, 저임금위원회 연보에서는 동 최저임금 권고안을 설명하고,
     최종 토론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등을 기술할 수 있음

## □ 공개시점 및 방법

저임금위원회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서베이, 경제지표 및 최저임금 신정을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권고안 보고서가 제출됨과 동시에 공개됨

동 보고서의 발표시점은 통상 매년 3월이며, 동 시기에 발표되는위 자료들은 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됨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 경제·고용 등에 관한 통계청 자료
  - 통계청의 '근로시간 및 소득에 관한 연차조사(ASHE)', '주당평균 소득(AWE)', '노동력 조사(LFS)' 등이 주요 자료원이며, '국민소득', 각종 '근로자 직업 조사' 등도 활용되고 있음
-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국세관세청(HMRC) 등 기타 정부기관 자료
- □ 관련 국제정세 자료(필요시, 해외공관 활용)
- □ 미디어 모니터링 및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자료 등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 연구용역 의뢰
  - 저임금위원회에서는 국가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소득분포의 변화, 고용・실업 등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이윤・생산성 등 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1999년 이래 총 150회 이상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매년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있음

- 축적된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결정시 강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평가
- 또한,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및 주요 EU 국가 등 15개국 최저임금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함

#### □ 관계자 협의

- 공식 서면을 통한 협의 및 구두 협의(연 1회)
- 위원의 현장방문(연 10회)을 통한 의견 수렴
  - 현장의 고용주 및 저임금 근로자 방문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사무국간 정기회의 개최(연 100회)
  - 최저임금 작용방식 이해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 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근거 설명
- □ 최저임금 도출을 위한 위원간 합의
  - 고용주 및 노조 출신 위원들은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
  - 연구자료 및 다양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현재까지 모든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를 이루어 왔음
    - ※ 이를 위해 위원들의 최종회의는 비공개되며, 의사록을 남기지 않음

#### 【참고】 생계비의 최저임금 심의 반영 여부

-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등을 위해 생계비(living costs)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가족지출보고서 등을 발간하나,
- 저임금위원회는 생계비의 개념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직접적 판단기준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함

##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4

- □ 영국의 최저임금은 지역·업종의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연령별로 나누어 적용함
  - 25세 이상 성인(국가생활임금\*), 21~24세 성인, 청년개발시기(18~20세), 청소년(16~18세)
    - \* 2016.4월부터 25세 이상 근로자는 '국가생활임금' 적용
  - 아울러, 19세 미만 도제근로자 및 19세 이상이나 근무기간이 12 개월 이내인 도제제도(apprenticeship)의 근로자는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
- □ 저임금위원회는 현행의 연령별 구분 이외에 지역·업종의 구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
  - 지역 및 업종별로 구분 시 최저임금체계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고,지역 및 업종간 차등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음

# 5 갱신주기

- □ 매년 최저임금기준 갱신
  - ※ 2016.4월부터 국민생활임금이 도입되고'17년 4월에 갱신되면서, 최저임금 갱신주기도 국민생활임금과 일치되도록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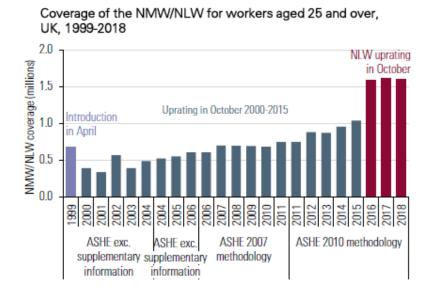
구 분	종전	변경
(장관) 저임금위원회에 권고안 제출 의뢰	매년 6~7월	'16년 4월경
(저임금위원회) 권고안 제출	다음 연도 2월	'16년 10월경
(장관) 권고안 검토 및 확정	통상 3월 중	'17년 1월경
확정안 시행	10월부터	'17년 4월부터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저임금위위원회 발표 '18년 12월에 발간한 '국가최저임금' 자료 활용

# 1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현황

- \* 명칭에도 불구하고, 25세 이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임
- □ 2018년도 국가생활임금(NLW) 적용 근로자
  - 2018년도 160만명으로, 25세 이상 성인근로자(2,465만명)의 6.49%
    - 이는 NLW 도입 이전 최저임금 적용 대상(100만명) 보다 증가



○ 세부적으로는 공공분야(1.29%) 보다 민간분야(8.72%), 남성(4.92%) 보다 여성(8.15%), 연령별로 60대 이상 고령 근로자 그리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국가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 으로 조사

○ 업종별로는 청소용역(30.77%), 소매업(19.50%), 서비스업(28.40%) 등 저임금 업종에서 국가생활임금 적용 비중이 높음

【특성별 국가생활임금 적용 현황】

	Characteristic	NLW (A)	Total Economy (B)	비고 (A/B)
	Public	80	6,190	1.29%
Sector	Private	1,420	16,280	8.72%
	Voluntary	110	2,180	5.05%
Time	Full-time	620	18,050	3.43%
Tille	Part-time	980	6,600	14.85%
Permanence	Permanent	1,430	22,970	6.23%
	Temporary	160	1,550	10.32%
Sex	Male	610	12,390	4.92%
	Female	1,000	12,270	8.15%
	25-29	250	3,270	7.65%
Age	30-59	1,150	19,100	6.02%
	60+	210	2,290	9.17%
	Micro (1 to 9 employees)	330	2,020	16.34%
	OtherSmall(10 to 49 employees)	310	3,450	8.99%
Firm Size	Medium(50 to 249 employees)	240	3,690	6.50%
	Large(250 to 4,999employees)	380	7,410	5.13%
	Very large(5,000 or more employees)	350	8,060	4.34%
	Cleaning & Maintenance	240	780	30.77%
Occupation	Retail	310	1,590	19.50%
	Hospitality	230	810	28.40%
	Other low-paying sectors	510	3,730	13.67%
	Non low-paying sectors	310	17,740	1.75%
	Total	1,600	24,650	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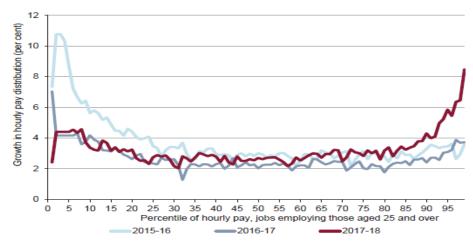
출처: LPC estimates using ASHE 2010 methodology, low pay weights, excluding first year apprentices, UK, April 2018

- □ 2018 국가생활임금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 2017년 £7.5 → 2018년 £7.83으로 시간당 국가생활임금이 4.4% 인상 되면서 중위소득은 2.7%, 평균소득은 4.6% 각각 상승하고,
    - 평균 시급 기준 하위 10% 근로자는 평균 £7.81 → £8.08로, 하위 25% 근로자는 £9.15 → £9.51로 각각 3.4%, 2.7% 상승

	April 2017	April 2018	Growth
Minimum wage for those aged 25 and over	£7.50	£7.83	4.4%
Median hourly earnings (excluding overtime)	£13.01	£13.37	2.7%
Mean hourly earnings (excluding overtime)	£16.46	£17.23	4.6%
10th percentile of hourly earnings (excluding overtime)	£7.81	£8.08	3.4%
25th percentile of hourly earnings (excluding overtime)	£9.25	£9.51	2.7%

Source: LPC estimates using ASHE 2010 methodology, standard weights, excluding first year apprentices, UK, 2017-18.

ㅇ 국가생활임금 도입 후 2016/2017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시급을, 2018년도는 상위 임금 근로자들의 시급 상승을 상대적으로 크게 견인한 것으로 조사



Source: LPC estimates using ASHE 2010 methodology, standard weights, UK, 2015-18. Note: Data exclude first year apprentices.

Hourly earnings exclude overtime.

b. Growth figures are based on raw, unrounded data.

- □ 최저임금 미만 현황
  - 2018년 25세 이상 근로자 중 국가생활임금(NLW) £7.83 미만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는 총 36만 9천명으로 조사
    - 전체 근로자의 1.5%, NLW을 적용 받는 저임금의 근로자의 23%에 해당되며, 보육(Childcare) 분야에서 특히 증가했다고 밝힘

【국가생활임금 미만 현황】

	2016	2017	2018
Survey date (pay period containing)	13 April	26 April	18 April
Total underpayment	479,000	371,000	493,000
Legitimate underpayment (low-pay flag)	174,000	32,000	124,000
Adjusted underpayment	305,000	339,000	369,000

Source: LPC estimates using: ASHE, low pay weights, low pay flag, UK, April 2016-18. Note: Data exclude first year apprentices.

- \* (참고, legitimate underpayment)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 후 첫 번째 임금지불까지는 (일종의 이행기간으로) 새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이 아님
- 법정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30세 이하 젊은 근로자는 약2%로 조사
  - 국가생활임금(NLW)을 적용받는 25~30세가 2.3%로 가장 높고, 연령대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16~17세가 1.7%로 가장 낮은 수준임

【2018년도 연령대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



- □ 2019년도 최저임금
  - 2019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성인 국가생활임금은 8.21파운드로,종전 7.83파운드 보다 4.9% 인상
  -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7.70파운드, 18~20세 6.15파운드, 16~17세4.35파운드, 도제의 경우 3.90파운드이고,
    - 각각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종전 보다 21세 이상 4.3%, 18~20세의 경우 4.2%, 16~17세의 경우 3.6%이며, 도제의 경우 5.4% 인상

구 분	'18년 4월 이후	'19년 4월 이후	종전 대비 인상률
25세 이상	5세 이상 £7.83 £8.21		4.9%
21~24세	£7.38	£7.70	4.3%
18~20세	£5.90	£6.15	4.2%
18세 미만	£4.20	£4.35	3.6%
도제	£3.70	£3.90	5.4%

- □ 2019년도 국가생활임금 인상 효과
  - 종전 대비 4.9% 국가생활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연간 소득은 약 600파운드가 오르고, 과세최저한도(Tax threshold)는 650파운드 오를 것으로 예상

NLW worker, 30 hour week	2018/19	2019/20	2018/19 to 2019	9/20
	£	£	£	%
Pre-tax hourly rate	7.83	8.21	0.38	4.9
Annual pay	12,248	12,842	594.40	4.9
Tax threshold	11,850	12,500	650.00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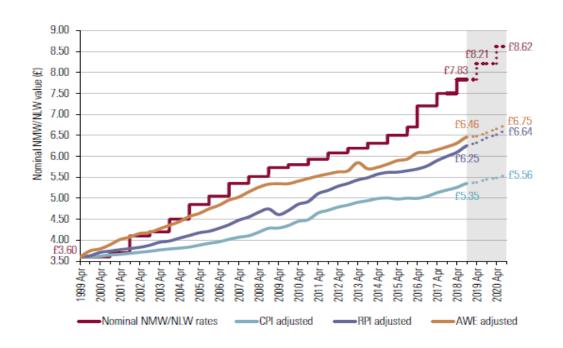
\* 2016년 이전: 21세 이상 최저임금, 2016년 이후: 25세 이상 국가생활임금

 ○ 금번 인상으로 국가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160만명 → 240만명으로 증가하고, 연령대별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최대 18.6% 증가 예상

Rates	April 2018 Coverage Estimated numbers directly by 2019 rate recommend:			
	(thousands)	(per cent)	(thousands)	(per cent)
National Living Wage	1,604	6.5	2,396	9.7
21-24 Year Old Rate	167	8.5	229	11.6
18-20 Year Old Rate	119	12.0	147	14.9
16-17 Year Old Rate	40	13.2	41	13.6
Apprentice Rate	32	16.5	36	18.6

Source: LPC estimates using ASHE 2010 methodology, low pay weights, UK, April 2018 and HIM Treasury panel of independent forecasts for the UK economy (2018b) and Bank of England (2018a) average weekly earnings projections.

- 영국정부는 2016년 국가생활임금 도입 당시 2020년까지 전체 중위 소득의 60%까지 국가생활임금을 인상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 2019년도 인상률은 동 목표달성을 위한 과도기 성격이고, 현재 예상치를 반영하면 2020년도 국가생활임금은 2019년도보다 5.0% 인상된 8.62파운드로 예상됨.



# <연도별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변동 추이>

(단위: £/시간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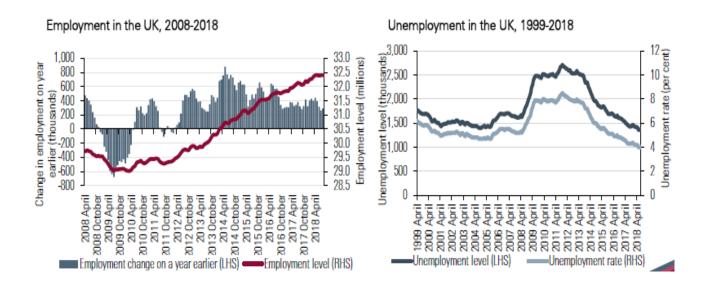
연령	성인 (25 & over)			! 인 to 24)	フ	개발시   <sup>11)</sup> to 20)		·17세 er 18)		전 entice)
연도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19.4월 ~ '20.3월	8.21	4.9%	7.70	4.3	6.15	4.2	4.35	3.6%	3.90	5.4%
'18.4월 ~ '19.3월	7.83	4.4%	7.38	4.7	5.90	5.4	4.20	3.7%	3.70	5.7%
'17.4월 ~ '18.3월	7.50	4.2%	7.05	1.4	5.60	0.9	4.05	1.3	3.50	2.9
'16.10월 ~ '17.3월	7.20	'16.4월	6.95	3.7	5.55	4.7	4.00	3.4	3.40	3.0
'15.10월 ~ '16.9월		신설	6.70	3.0	5.30	3.3	3.87	2.2	3.30	20.9
'14.10월 ~ '15.9월			6.50	3.0	5.13	2.0	3.79	1.9	2.73	1.9
'13.10월 ~ '14.9월			6.31	1.9	5.03	1.0	3.72	1.0	2.68	1.1
'12.10월 ~'13.9월			6.19	1.8	4.98	0	3.68	0	2.65	1.9
'11.10월 ~'12.9월			6.08	2.5	4.98	1.2	3.68	1.1	2.60	4.0
'10.10월 ~'11.9월			5.93	2.2	4.92	1.9	3.64	2.0	2.50	_
'09.10월 ~'10.9월			5.80	1.2	4.83	1.3	3.57	1.1	_	_
'08.10월 ~ '09.9월			5.73	3.8	4.77	3.7	3.53	3.8	_	-
'07.10월 ~ '08.9월			5.52	3.2	4.60	3.3	3.40	3.0	_	_
'06.10월 ~ '07.9월			5.35	5.9	4.45	4.7	3.30	10.0	_	_
'05.10월 ~ '06.9월			5.05	4.1	4.25	3.7	3.00	0	_	_
'04.10월 ~ '05.9월			4.85	7.8	4.10	7.9	3.00	_	_	_
'03.10월 ~ '04.9월			4.50	7.1	3.80	5.6	-	_	_	_
'02.10월 ~ '03.9월			4.20	2.4	3.60	2.9	_	_	_	_
'01.10월 ~ '02.9월			4.10	10.8	3.50	9.4	_	_	_	_
'00.10월 ~ '01.9월			3.70	2.8	3.20	0	_	_	_	_
'00.6월 ~ '00.9월			3.60	0	3.20	6.7	-	_	-	-
'99.4월 ~ '00.5월			3.60	_	3.00	_	-	_	_	_
평균인상률		4.16	_	3.61	ı	3.53	-	2.37	ı	5.84

\* 자료 : 영국 저임금위원회 (Low Pay Commission)

<sup>11) 21</sup>세의 경우 2010년 9월까지는 청년개발시기로, 2010년 10월부터는 성년으로 함

## 2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 고용과 실업률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견고한 성장세 유지
  - o 최저임금 상승에도 2018년 고용과 근로시간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 하고 있고, 실업률 또한 지난 40년 이래로 최저치 기록



- □ 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관련 주요 연구결과(19.2.1) 발표
  - 최저임금과 일자리 자동화 및 해외이전 연관성(런던정경대학교)
    - 최저임금 인상이 업무 자동화와 일자리 해외이전을 촉진시켜 일 자리를 감소시키지만, 영향\*은 양호한(modest) 수준임
      - \* 최저임금 £1 증가 시 자동화할 수 있는(automatable) 일자리는 0.24%, 해 외이전이 가능한(off-shorable) 일자리는 0.15% 각각 감소
    - 국가생활임금이 시간당 £7.5 → £8.5로 인상될 경우 자동화 분야고용 상관계수(elasticity)는 0.055, 해외이전 가능분야는 0.034
       나타나고, 총 45,000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함

- 제조업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자동화 분야 일자리는 0.58%p, 해외이전 분야는 0.34%p 각각 하락하고, 미숙련 남성, 고령 노동자들에 영향이 크다고 함
- 국가생활임금 도입 영향 (경제사회연구소)
  - 2016년 4월부터 25세 이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국가생활임금이 신규 도입되어, 최저임금이 종전보다 7.5% 인상되었으나,
  - 소매업 근로자와 시간제 여성근로자들에게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고용 및 근로시간 면에서 부정적 효과는 없다고 밝힘

3

기타 : 생활임금(Living Wage)

#### □ 영국 생활임금

- 비영리단체인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은 매년 11월경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임금(Living Wage)' 산정・발표
  - (현행 적용액 발표시기/대상) 2018년 11월 / 18세 이상 근로자
  - (금액) 런던 지역 시간당 £10.55 / 기타 지역 시간당 £9.00
  - ※ 2003년부터 런던시의 생활임금이 발표되어 왔으며, 2011년부터 수도인 런던과, 기타 지역(전국)을 구분하여 발표

	I		
연도	런던 생활임금	UK 생활임금	최저임금 <i>l</i> 국가생활임금
2003/2004	£6.40	-	£4.50
2004/2005	£6.50	-	£4.85
2005/2006	£6.70	-	£5.05
2006/2007	£7.05	-	£5.35
2007/2008	£7.20	-	£5.52
2008/2009	£7.45	-	£5.73
2009/2010	£7.60	-	£5.80
2010/2011	£7.85	-	£5.93
2011/2012	£8.30	£7.20	£6.08
2012/2013	£8.55	£7.45	£6.19
2013/2014	£8.80	£7.65	£6.31
2014/2015	£9.15	£7.85	£6.50
2015/2016	£9.40	£8.25	£6.70
2016/2017	£9.75	£8.45	£7.20
2017/2018	£10.20	£8.75	£7.50
2018/2019	£10.55	£9.00	£7.83
2019/2020	-	-	£8.21

○ 생활임금재단 생활임금은 국가 생활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법적성격(의무적용 여부), 산정방법 및 산정기관, 적용대상 및 지역 구분 등에서 국가생활임금과 전혀 다른 개념

구분	국가생활임금 (National Living Wage)	생활임금 (The Living Wage)
법적 성격	법정 의무사항/위반 시 제재 대상	자발적인 권고사항
현행 금액	'19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8.20	시간당 £10.55 (런던) / £9.00 (기타지역)
산정 방법	중위 임금 대비 일정 비율  ※ 저임금 위원회에서 시장 여건상 수용이 가능한 금액을 감안하여 인상률 산정 (단, 2020년까지 중위임금의 60%를 목표)	근로 가구의 최소 생계비 (cost of living) ※ 매년 11월경 생활임금재단이 런던시 및 기타지역으로 구분 하여 근로가구의 최소 생계비 필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
적용 대상	25세 이상	18세 이상 모든 근로자
적용 지역	전국 단일 금액 적용	런던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산정 기관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

# 4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 영국 저임금위원회 : http://www.lowpay.gov.uk
- □ 영국 정부 통합 홈페이지 : http://www.gov.uk
  - · 최저임금 http://www.gov.uk/your-right-to-minimum-wage
  - · 고용 http://www.gov.uk/browse/employing-people
  - · 근로·직업 http://www.gov.uk/browse/working
- □ 영국 통계청 통계포털 : http://www.statistics.gov.uk
- □ 영국 국세관세청 : http://www.hmrc.gov.uk

(작성자) 주영국대사관 조달관 강희훈 (전화 +44 (0)20-7227-5545, 이메일 hhkang17@mofa.go.kr)

# 10. 체코

국	명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		
언	어	체코어		
면	적	78,864 <sup>km²</sup> (한반도의 ½), 북위 48-51도 위치		
인	구	1,064만명('18.9월 기준)		
수	도	프라하		
주:	요도시	프라하, 브루노, 오스트라바, 프루젠, 리베레츠, 올로모츠		
종 교		무교(34.5%), 가톨릭(10.4%), 기타(10.4%), 무응답(44.7%) (2011년 체코 통계청 기준/통계청은 10년 단위로 인구조사)		
교	육	초등 5년과 초기 중등 4년의 9년제(6세부터 9년 의무 교육), 대학 졸업률 : 12.5% (2011년 기준)		
화፤	폐 단위	코루나(CZK) / 1\$ = 약 22.61 코루나('19.3월 현재)		
	GDP	2,445억달러 (2018년 IMF 기준)		
	1인당 GDP	23,085달러 (2018년 IMF 기준)		
_ 주요	GDP성장률	2.8% (2018년, 체코 재무부, 잠정치)		
경제 지표	교역	총 3,858억달러(수출 2,021억달러, 수입 1,837억달러) ※ 2018년 한-체 교역 규모: 약 33억달러(한국 무역협회 기준)		
	실업률	2.3% (2018년 기준, 잠정치)		
	물가상승률	2.1% (2018년 기준, 잠정치)		
대사관	웹사이트	cze.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연혁		
---	--	----	--	--

- 1. 체코는 최저임금(minium wage) 개념을 1991년에 처음으로 도입함
- □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법(Labour Code No. 262/2006 Coll.)에 명시되어 있음
  - 노동법 262/2006은 2006. 6. 7. 제정되었고 2007. 1. 1.부터 시행됨.
     노동법은 약 30여번 개정되었으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바뀌지 않음
  - 최저임금의 정확한 액수는 정부 법령(government decree)에 의해 정해짐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 노동법 (Labour Code No. 262/2006 Coll.)
  - 노동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관계(labour relationship)하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수(remuneration) 이며, 협의된 임금, 급여 혹은 보수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됨.

따라서 임금(wage)이나 급여(salary)는 초과근무 수당, 휴일 근무, 야근, 험한 근무환경, 주말 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서는 안 됨

○ 최저임금액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ee's employability)과 최저임금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정부법령에 명시됨. 정부 법령은 보통 매년 초에 시행되며, 임금과 소비자 물가를 고려함

## 2. 최근 5년 이내(2014~2018년) 법령 개정사항

- □ 최저임금 관련 노동법 규정은 개정이 많이 되지 않았으며, 구체 적인 변동사항은 정부법령에 명시됨
  - 정부법령 233/2015 Coll.: 최저임금 월 9,900 코루나, 시간당 최저 임금 58.7 코루나로 개정
  - 정부법령 286/2016 Coll.: 최저임금 월 11,000 코루나, 시간당 최저임금 66 코루나로 개정
  - 정부법령 336/2017 Coll.: 최저임금 월 12,200 코루나, 시간당 최저임금 73.20 코루나로 개정
  - 정부법령 273/2018 Coll.: 최저임금 월 13,350 코루나, 시간당 최저임금 79.80 코루나로 개정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가.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적용제외 대상은 없음

#### 나. 근로자

- ㅇ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됨.
- ※ 내·외국인 동일 적용

#### 2. 특례대상

- □ 2013년 전에는 18-21세, -16-18세, -장애인 연금수령자들에게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었으나, 2012년 말 청소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대부분 통일되었으며, 2017년 최저임금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연금수령자들에게 달리 적용되었던 최저임금 또한 폐지됨
  - ※ 2013.1월 변경 전에는 △ 18세 이상 21세 이하 근로자의 첫 6개월 수습기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청소년) 근로자 △ 장애인 및 은퇴자 등에 대해 성인 최저임금의 50-90% 차등 지급

$\mathbf{x} \cap \mathbf{n} = \mathbf{n}$	최저임금제도
스얼구가이	ᄼᆡᄶᄓᆖᄱᅜ
十	ᆈᄭᄆᄆᆀᆂ

# 3. 적용제외대상

- □ 적용제외대상 없음
  - ※ 체코 정부는 2012.6월 정부 결의안을 발표하고 2013.1월부터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모두 폐지함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ㅇ 임금은 보통 월당 지급되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도 있음
- 월당 급여는 주당 40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짐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ㅇ 보너스, 포상 등 급여 대부분 포함
- 점심 티켓 등 현물 급여도 포함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수당, 주말근무에 대한 임금(급여)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 최저임금제의 이행은 국가근로감독청(State Labour Inspection Office)과 지역근로감독청이 근로감독법(Labour Inspection Act No. 251/2005)에 의거하여 감독함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은 노동사회부 소속 노동청 (Labour Office)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2 백만 코루나(원화로는 약 9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노동사회부는 노동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할 의무를 지나, 처벌보다는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처리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법 제13조에 의해 최대 2 백만 코루나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3. 최저임금 위반현황

- ㅇ 2015년도에 31건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적발
- ㅇ 2016년도에 18건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적발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정부(노동사회부)가 최저임금 조정안을 마련, 노사정 3자위원회를 통해 협의함
  - ※ 동 협의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노사정 3자위원회 결정은 노동사회부에 권고되고, 이후 노동사회부가 정부내각에 보고, 정부내각이 최종 결정함.
  - 노사정 3자위원회(공식적으로 경제사회협의회, Council of Economic and Social Agreement라 불림)는 △ 정부측 대표 7인, △ 노조측 대표 7인 및 △ 사측 대표 7인으로 구성됨
    - 정부측 위원은 당연직으로 체코 총리(경제사회협의회장), 노동부 장관, 재무무 장관, 교통부 장관, 지역개발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및 농업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 노조측 위원은 체코-모라비아 노동조합연맹(Czech-Moravian Confederation of Unions) 추천 6인과 독립노동조합협회 (Association of Independent Unions) 추천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 사측 대표는 체코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Industry of the Czech Republic) 추천 4인과 체코 경영인·사업가협회연맹 (Confederation of Employers and Entrepreneurs Association of the Czech Republic) 추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들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노사정 3자위원회 구성 시마다 노조측과 사측이 추천하는 위원이 노조측 대표와 사측 대표로 위촉됨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 정부(노동사회부)가 최저임금 조정안을 마련, 노사정 3자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나, 동 협의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 ※ 최저임금은 통상 매년 초(1월 1일)에 변경되지만, 시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치적 논의를 거쳐 결정함

# 2. 결정절차

- □ 최저임금은 노동사회부가 마련한 조정안을 노사정 3자위원회가 폭넓은 토론 및 협상을 통해 결정함
- □ 노사정 3자위원회 결정은 노동사회부에 권고되고, 이후 노동사회부가 정부내각에 보고, 정부내각이 최종 결정함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 노사정 3자위원회는 비공개로 개최되고 서면으로 기록되며, 특별히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녹취는 없음
- □ 노사정 3자위원회의 결정은 노사정 3자 대표의 합의에 따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되고 이후 노동사회부, 노동조합, 사업자 대표단체(체코 경영인·사업가협회연맹 등) 홈페이지 등에 게시됨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정부는 소비자 물가뿐 아니라 경제상황, 최저 생활비 및 사회 보장비, 평균 임금수준, 각 변수들 간의 예상 역학관계, 체코 상황과 국제상황 비교, 국제관행 준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함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해당사항 없음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 정부고시는 월급과 시급 두가지 방법으로 전년도 8월 고시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월급 또는 시급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 노동법은 '최저임금(minimum wage)'과는 별도로 '보장임금 (guaranteed wage)'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보장임금'이란 고용계약이나 기업의 내규 등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수령할 권리를 가지는임금(wage) 또는 급여(salary)를 의미함
  - 보장임금의 최저수준은 최저임금(minimum wage)보다 낮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이 조정됨에 따라 직군별 보장임금의 최저수준 또한 함께 조정되어 고시됨(최저임금 관련 정부 법령에 함께 명시)

# 5 갱신주기

- □ 최저임금은 통상 일 년에 한번 보통 매년 초(1월 1일에 시행)-변경되지만 시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 치적 논의를 거쳐 결정함
  - ※ 2007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최저임금은 조정되지 않음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 체코는 1주 40시간, 연간 252일, 2,10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함.
  - 휴일과 월별 날짜 차이에 따라 한 달 중 근로일이 4주간 160시간을 조금 상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산정

(단위 : 코루나, %)

구분 연도별	성인	청소년	그 외 특례 근로자	
2019	월 13,350 시간당 79.80	성인과 동일	성인과 동일	
2018	월 12,200 시간당 73.20	성인과 동일	성인과 동일	
2017	월 11,000 시간당 66.00	성인과 동일	성인과 동일	
2016	월 9,900 시간당 58.70			
2015	월 9,200 시간당 55.00	성인과 동일	성인과 동일	
2013(8월~2014.12)	월 8,500 시간당 50.60	정한파 증별	정한파 등글	
2013(1~7월)	월 8,000 시간당 48.10			
2012	월 8,000 시간당 48.10	성인의 80-90%	성인의 50~80%	
2011	월 8,000 시간당 48.10	성인의 80-90%	성인의 50~80%	
2010	월 8,000 시간당 48.10	성인의 80-90%	성인의 50~80%	
2009	월 8,000 시간당 48.10	성인의 80-90%	성인의 50~80%	
2008	월 8,000 시간당 48.10	성인의 80-90%	성인의 50~80%	
2007	월 8,000 시간당 48.10	성인의 80-90%	성인의 50~80%	

○ 직군별 보장임금의 최저수준은 업무의 복잡성(complexity), 업무에 수반하는 책임의 정도(responsibility), 업무가 어려운 정도(strenuousness) 에 따라 아래 8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산정됨

(단위 : 코루나)

분류	직군(예시)	시급별 최저 보장임금	월별 최저 보장임금
1그룹	Unqualified	79.80	13,350
2그룹	Simple Specialized Work	88.10	14,740
3그룹	High Specialization (자동차 수리 등)	97.30	16,280
4그룹	Expert Work (회계사 등)	107.40	17,970
5그룹	Expert Specialized Work (간호사 등)	118.60	19,850
6그룹	System Specialized Work (IT 관련 업종)	130.90	21,900
7그룹	Creative System Work (의사, 대학교수 등)	144.50	24,180
8그룹	Creative System Work, psychologically demanding	159.60	26,700

スヘココロ	최저임금제도
수요국가의	~ I 저 언 <del></del> 제 노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단위: 개소, 명, %)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적용대상사업체	적용대상근로자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영향률
'13	1명 이상 전산업	_	3,737,400	100,000-120,000 (노동사회부 추정치)	2.6- 3.2%

3	최저임금 미만현황	
---	-----------	--

- □ 해당자료 없음
- 4 기타 최저임금 관련통계
- □ 해당자료 없음
- 5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 최근 노동조합들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선단 홈페이지 및 참고사양 궁
	체코 노동사회부 (체코어) : http://www.mpsv.cz/cs/870
	체코 2019년 기준 최저임금 명시
	http://www.mpsv.cz/files/clanky/3221/Labour_Code_2012.pdf
	2014년 9월 체코 정부 발간 '최저임금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http://www.vlada.cz/assets/media-centrum/dulezite-dokumenty/ /VLIV-MINIMALNI-MZDY-NA-NEZAMESTNANOST-V-CR.pdf
	최저임금 등에 관한 정부 법령(No. 567/2006 Coll., 2017년 최신
	개정 체코어 버전)

(작성자) 주체코대사관 참사관 김창희 (+420 234 090 426, chkim17@mofa.go.kr)/ 주체코대사관 경제담당 연구원 Jan Hajek (+420 234 090 419, korean.em@gmail.com)

# 11. 포르투갈

국	명	포르투갈공화국(A República Portuguesa)		
언 어		포르투갈어		
면	적	92,141.5 Km <sup>2</sup>		
인	구	10,291천명(2017년)		
수	도	리스본(광역권 인구 283만 명, 리스본시 50만 명)(2017년)		
주:	요도시	포르투(Porto), 코임브라(Coimbra), 브라가(Braga)		
종	교	가톨릭(88.7%이나 국교는 아님) (2015년 교황청 발표 자료)		
교	육	3~6세 유아교육, 6~18(1~12학년) 의무교육		
화፲	폐 단위	유로(Euro)		
	GDP	2,277억달러 (2018년 기준 추정치)		
, s	1인당 GDP	22,156달러		
주요 경제	GDP성장률	2.1%		
지표 교역		수출 : 579억 유로 / 수입 : 750.5억 유로		
실업률		7.0%		
물가상승률		1%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pt-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974년 산업·서비스분야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제도 최초 도입(법령 217/74호, 1974.5.27)
- 1975년 산업·서비스분야의 5인 미만 사업장 중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국한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
- 1977년 1월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가 확대적용되었고, 산업· 서비스 분야보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고시(법령49-B/77호, 1977.2.12)
- 1978년 가사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가 확대적용되었고, 산업· 서비스분야, 농업분야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고시(법령113/78호, 1978.5.29)
- 1987년 1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전면 적용하고, 17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75%, 17세 미만근로자는 50% 지급
- 1988년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모두 최저임금의 75%를 지급하도록 변경
- ㅇ 1990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조건특례제도를 폐지
- 1991년 산업·서비스와 농업분야의 최저임금제도를 통합하여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가사서비스업은 독립적으로 책정(법령14-B/91호, 1991.1.9.)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1998년 연령별 특례제도를 없애고, 모든 연령에 대해 전면적용
- 2004년 산업·서비스, 농업, 가사서비스업의 최저임금제도를 통합하여 최저임금 책정(법령19/2004호, 2004.1.1. 발효)
- 월 최저보수 적용범위와 방법, 시간당최저보수, 월 최저보수 인하의 경우 및 소득과 물가정책기준에 적절한 월 최저보수의 현실화 등을 규정(법령35/2004호, 2004.7.29.)
- 2006년 12월 정부와 노사단체는 2007년 최저임금액을 월 403유로로 확정, 2011년까지 월 500유로로 합의
  - 중기목표 설정 : 2009년 월 450유로, 2010년 월 475유로, 2011년 월 500유로로 단계적 인상
- 2011년 최저임금액은 월 485유로(재정위기로 인하여 당초 목표 보다 하향)로 책정되고, 구제금융체제(2011.5월부터 2014.5월까지) 에서 성공적으로 졸업한 직후인 2014년 9월말까지 동결
- 2014년 485유로(10월부터 505유로), 2015년 505유로, 2016년 530유로,2017년 557유로, 2018년 580유로, 2019년 600유로로 단계적 인상 중

# 2 법적근거

# □ 관련 법령

- ㅇ「노동법」
  - 별도의 최저임금법이 존재하지 않고, 2003년 개정된 「노동법 (Código de Trabalho)」 제266조에 월 최저보수(Retribuição Mínima Mensal Garantida)를 명시하도록 규정
  - 개정 「노동법」(법 제7/2009호, 2009.2.12.) 제273조, 제274조 및 제275조에 월 최저보수를 상세 규정
- ㅇ「최저임금고시법령」
  - 최저임금고시법령(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을 통해 최저임금 변경을 고시하는 바, 법령 제117/2018호(2017.12.27)로 2019년 최저임금(600유로)을 고시함

#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3

○ 현재 포르투갈은 연령별 특례제도가 없으며, 전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2. 특례대상

- 실습생, 견습생 및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는 20%까지 감액 적용할수 있음(법 35/2004호 제209조)
  - 단, 감액적용기간은 동일직종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기술직 수료자에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제한된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감액적용이 가능하며, 기 본근로능력과 실제 근로능력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그 비율만큼의 감 액을 적용함
  - 제한된 근로능력이란 기본근로능력의 10~50%를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 및 증명은 국립고용·직업훈련센터(IEFP, I.P.- Instituto do Emprego e Formação Profissional) 또는 보건시설이 수행함
- ㅇ 외국인에 대한 차등적용은 없음

#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Base-salary)
- 숙박비, 식사비 등 현물급여(현물급여 평가액의 상한비율은 50%)
- 고정적 상여금(휴가수당과 성탄휴가수당 등 연 2회)
  - \* 월 기본급의 200%가 고정상여금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연간 최저임금은 『월 최저임금×14개월』로 계산

4

- 변동적 상여금과 성과급(노사협의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여부를 결정)
  - \* 주휴수당제도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불포함
  - \* 노사합의에 따라 산입하지 않기로 한 성과급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최저임금 위반 현황

- 근로조건 관련 전체 위반건수 대비 최저임금 지급 위반건수는 거의 전무하며, 가장 높은 수치는 2004년의 0.3%
-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 전략기획실(GEP)은 2016.5월부터 최저임금합의(2016.1.22 경제사회위원회의 사회협의상임위원회 서명) 이행관련 보고서를 제출함 (2018.11월 10차 보고서 제출)

####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최저임금법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에 처함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는 포르투갈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 직 속기관인 근로조건감시청(Autoridade para as Condições do Trabalho)에 서 관할함.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피해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조건감시 청(ACT)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감시청(ACT)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15일내 조사서를 작성, 벌금 규모를 결정하여 고용 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포 함된 벌금을 근로조건감시청(ACT)에 지불해야 함

# Ⅱ.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방법 및 절차

#### □ 최저임금 결정방식 - 위원회 방식

- 총리가 경제사회위원회(CES)의 사회협의상임위원회(CPCS)에 요청을 하면 사회협의상임위원회는 매년 10~11월 최저임금을 심의, 사회결속 고용사회보장부장관에게 제출
  - 상임위원회는 생계비, 물가상승률, 기업의 경쟁력 등 제반 경제지표를 정리하여 3~5개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안
  - 상임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하지 않으며,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 합의안을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결정
  -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정부가 상임위원회 논의결과를 참고로 하여 일방적으로 결정
-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장관은 노사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을 거친 후 최종 고시, 새로운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파업을 한 사례는 거의 없고,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관행이 정착

#### ※ 경제사회위원회(CES - Conselho Económico e Social)

-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결정과정에 있어 정부 및 사회단체 관계자, 시민사회 대표자 간 대화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사회협약 기능의 헌법기구
- 구성 : 위원장(국회에서 선출), 부위원장 4인(이사회에서 선출), 정부대표 8인 (각료회의에서 임명), 노조연맹 대표 8인(해당 연맹에서 임명), 기업연맹 대표 8인 (해당 연맹에서 임명), 협동조합 연맹 대표 2인(해당 협동조합에서 임명), 기술 과학혁신고등위원회 대표 2인, 프리랜서 직업 대표 2인(관련 협회에서 임명), 공기업 대표 1인(각료회의에서 결정), 자치주 대표 2인(각 지방의회에서 임명), 본토 지자체 대표 8인(각 지방의 지역협력발전위원회에서 선출), 환경보호협회 대표 1인, 소비자보호협회 대표 1인, 민간 사회복지기관 대표 2인, 가족협회 대표 1인, 대학교 대표 1인(대학총장이사회에서 임명), 청년기업인협회 대표 1인, 가족 농단체 및 농촌단체 대표 각 1인, 남녀기회평등협회 대표 1인, 포르투갈 여성협회 대표 각 1인, 여성평등·인권위원회 자문 기능을 가진 여성협회 대표 1인, 장애인협회 대표 1인, 금융보험부문 단체 대표 2인, 관광부문 관련 협회 대표 1인, 경제·사회분야 저명인사 5인(이사회에서 임명) 등 총 60명으로 구성

#### ※ 사회협의상임위원회(CPCS-Comissão Permanente de Concertação Social)

- 경제사회위원회(CES) 구성기구의 하나로 경제사회위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는 노·사·정 3자 협의기구
- 총리가 주재하고 최저임금 결정 등 사회적 합의내용을 협상·결정(이때 경제 사회위원회(CES)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음)
- 구성:정부대표 4명(재무장관, 경제장관, 농업해양장관,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 장관), 노조대표 4명(포르투갈근로자총연맹(CGTP-IN) 2명과 근로자총연합 (UGT) 2명), 사용자대표 4명(포르투갈산업연맹(CIP), 포르투갈상업서비스 연맹(CCP), 포르투갈농민연맹(CAP), 포르투갈관광연맹(CTP) 각 1명)
- 상기 CES 및 CPCS 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새로 선출되며, 위원회 구성원도 새로 조직됨.

# 2 결정기준

#### □ 결정기준

- 가. 근로자의 최저 생계보장(생계비)
  - 1) 독신 근로자(단순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 2)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4인 가족)가 모두 취업하여 한 가족에 2명이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부부 모두 단순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 나. 소비자 물가상승률
- 다. GDP성장률
- 라. 노동생산성
- 마. 노동시장 상황과 유사근로자 임금
- 바. 전반적인 경제상황

# □ 갱신주기

ㅇ 연 1회

# □ 고시방법

ㅇ 월단위 고시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1. 2019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및 경위

- 2019년 최저임금 600유로로 책정(법령 117/2018호, 2018.12.27)
  - 1974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줄곧 최저임금액을 월액으로 고시하고 있음
  - 2006.12월 정부와 사회협의상임위원회는 2009년 최저임금 450유로, 2010년 475유로, 2011년 500유로 등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후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최저임금은 목표액보다 낮은 485유로로 책정하였으며, 2014.9월말까지 동결함
  - 2014.5월 국제 구제금융체제에서 성공적으로 졸업한 후, 2014.10.1부터 최저임금을 505유로로 상향 조정하여 2015.12.31.까지 적용함
  - 2016년 530유로, 2017년 557유로, 2018년 580유로, 2019년 600유로로 단계적 인상
  - 시간급 최저임금 산출방법(노동법 제271조) : (최저임금x12)/(52x주 근무시간)

# 2.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1974년~2019년)

(단위 : 유로/월, 단, 2001년 이전의 경우 \$ 표기)

어드	적용	적용기간	20세	이상 월 최	지임금	연소자 최저	임금 비율(%)
연도	시점	(월수)	일반산업	농업	가사서비스업	18~19세	18세 미만
1974	5.27.	7	3300\$	_	_	_	_
1975		5	3300\$	-	_	_	_
	6.16.	7	4000\$	_	_	_	_
1976		12	4000\$	_	_	_	-
1977	1.1.	12	4500\$	3500\$	_	50	50
1978		3	4500\$	3500\$	-	50	50
	4.1.	9	5700\$	4600\$	3500\$	75	50
1979		9	5700\$	4600\$	3500\$	75	50
	10.1.	3	7500\$	6100\$	4700\$	75	50
1980		9	7500\$	6100\$	4700\$	75	50
	10.1.	3	9000\$	7500\$	5700\$	75	50
1981		9	9000\$	7500\$	5700\$	75	50
	10.1.	3	10700\$	8950\$	6800\$	75	50
1982		12	10700\$	8950\$	6800\$	75	50
1983	1.1.	12	13000\$	10900\$	8300\$	75	50
1984	1.1.	12	15600\$	13000\$	10000\$	75	50
1985	1.1.	12	19200\$	16500\$	13000\$	75	50
1986	1.1.	12	22500\$	19500\$	15200\$	75	50
1987	1.1.	12	252\$	224\$	175\$	100	17세 이상: 75 17세 미만: 50
1988	1.1.	12	272\$	248\$	195\$	100	75
1989	1.1.	6	300\$	284\$	224\$	100	75
	7.1.	6	315\$	300\$	240\$	100	75
1990	1.1.	12	350\$	345\$	280\$	100	75
1991	1.1.	12	401\$	401\$	335\$	100	75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어드	적용	적용기간	20세	이상 월 최	되저임금	연소자 최저	임금 비율(%)	
연도	시점	(월수)	일반산업	농업	가사서비스업	18~19세	18세 미만	
1992	1.1.	12	445\$	445\$	380\$	100	75	
1993	1.1.	12	474\$	474\$	410\$	100	75	
1994	1.1.	12	493\$	493\$	430\$	100	75	
1995	1.1.	12	520\$	520\$	457\$	100	75	
1996	1.1.	12	546\$	546\$	490\$	100	75	
1997	1.1.	12	567\$	567\$	514\$	100	75	
1998	1.1.	12	589\$	589\$	541\$	100	100	
1999	1.1.	12	613\$	613\$	569\$	100	100	
2000	1.1.	12	638\$	638\$	600\$	100	100	
2001	1.1.	12	670\$	670\$	643\$	100	100	
2002	1.1.	12	698\$	698\$	684\$	100	100	
2002	1.1.	12	(348€)	(348€)	(341.25€)			
2003	1.1.	12	356.60€	356.60€	353.20€	100	100	
2004	1.1.	12			365.60€			
2005	1.1.	12			374.70€			
2006	1.1.	12		385.90€				
2007	1.1.	12			403.00€			
2008	1.1.	12			426.00€			
2009	1.1.	12			450.00€			
2010	1.1	12			475.00€			
2011	1.1	45	485.00€					
2014	10.1	15	505.00€					
2016	1.1	12	530.00€					
2017	1.1	12	557.00€					
2018	1.1	12	580.00€					
2019	1.1	12			600.00€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수 비율 추이

(단위: 천명, %)

비율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수혜	최저임금 미만
연도	선제 근도자구	근로자 비율(%)	근로자수
2006	5,160	4.0	_
2007	5,170	5.5	_
2008	5,198	6.8	_
2009	5,054	8.1	-
2010	4,978	9.4	_
2011	5,350	9.8	_
2012	4,635	12.7	_
2013	5,285	11.7	-
2014	5,226	13.2	_
2015	5,195	20.6	_
2016	5,211	25.3	
2017	5,218	22.8	_
2018*	5,184	22.3	

\* 2018년 수치는 상반기 기준

2

3

\* 출처 : 포르투갈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

# 최저임금 미만현황

○ 포르투갈은 성별 및 종사부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율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 및 미만 근로자 수에 대한 별도의 통계조사는 하고 있지 않음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4 기타 최저임금 관련통계

- ㅇ 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
  -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67.57%(2018년 기준)
  - 2018년 기준 월 평균 기본급여(Net): 888유로

# 5 관련 홈페이지

- 경제사회위원회(CES) http://www.ces.pt
-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 전략기획국(MGEP)
   http://www.gep.msess.gov.pt
- 포르투갈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 고용노사관계국(DGERT)
   http://www.dgert.msess.gov.pt
- 포르투갈 경제부 전략연구실(GEE)
   http://www.gee.min-economia.pt
- 근로조건감시청(Autoridade para as Condições do Trabalho)
   http://www.act.gov.pt

주포르투갈공화국대사관 2등서기관 겸 영사 박민우 (mwpark05@mofa.go.kr)

# 12. 폴란드

국	명	폴란드 공화국(THE REPUBLIC OF POLAND)		
언 어		폴란드어(POLISH)		
면 적		312,683 <sup>km²</sup> (한반도의 1.4배)		
인	구	3,843만(123명/km²)		
수	도	바르샤바(WARSZAWA, 176만 명)		
주요도시		KRAKOW(77만명), LODZ(68만명), WROCLAW(64만명)		
종	교	가톨릭(95%), 신교, 희랍정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교 육		의무교육 8년(취학률 95%)		
화폐 단위		즈워티(ZLOTY)		
	GDP	6,142억달러		
	1인당 GDP	16,180달러		
주요 경제 지표 ('18)	GDP성장률	5.1%		
	교역	수출 2,618억달러 / 수입 2,677억달러		
	실업률	5.8%(97만명)		
	물가상승률	1.7%		
대사관 웹사이트		http://pol.mofa.go.kr/kor/eu/pol/main/index.jsp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 최저임금제도 변동 현황
  - 1956년 최저임금에 관한 내각시행령
  - 1974년 최저임금 관련 규정의 노동법 명기
  - 1988년 사회보장노동부 결정사안으로 규정
  - 2004년 사회경제3자위원회 합의사안으로 변경
  - 2015년 사회경제3자위원회는 사회문제협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 사회문제협의위원회의 합의도출 실패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 2 법적근거
  - 최저임금에 관한 법령(2002.10.10.)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ㅇ 사업주: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ㅇ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근로자
- 외국인: 체류허가, 노동비자를 소지하며 정식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적용

#### 2. 특례대상

○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최소 80%를 지불하며, 청소년 및 직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 적용 없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ㅇ 기본급
- 직종별 각종 수당 및 연수생 신분인 경우 연수수당
- ㅇ 근로계약에 의한 정기 보너스
- 석탄, 전기, 식료품 등 현물 구입을 위한 현금 지급액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초과근무수당
- ㅇ 공기업 근로자 추가수당
- 근속수당(일정기간 이상 근무에 대한 일시불 보상)

#### 242 ... 최저임금위원회

- ㅇ 야간근무수당
- 위험수당, 유해환경 근무수당
- 사측에 의해 제공되는 근무 중 식사비용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폴란드 노동청(National Labour Inspectorate)
-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안전, 위생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의 위법 적발시 벌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 권한 보유
- 노동청은 하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하원의장이 노동청장을 임명 및 해임 권한 보유(임기 4년)
- 전국 16개주 주도(州都)에 지방노동청 소재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사업장 방문조사(법정 근로계약, 근무시간, 급여규정 준수 여부)
- 노동법 위반 적발 시 검찰 고발, 행정지도 및 최소 1,000PLN (약 294달러), 최대 30,000PLN(약 8,824달러) 벌금 부과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노동법원에 제소 및 판결 가능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사회문제협의위원회
  - 설립근거 : 사회경제3자위원회 설치법(1994), 사회경제3자위원회 및 주정부 사회문제협의위원회에 관한 법령(2001.7.7.), 최저임금에 관한 법령(2002.10.10.) 사회문제협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령 (2015.7.24.)
  - 총리실 및 각 부처 대표, 3개 노조단체(NSZZ, OPZZ, FZZ 각 7명),
     4개 사업자단체(폴란드사업주연맹Lewiatan, 폴란드제조업협회, 폴란드 사기업연맹, Business Center Club 각 5명)로 구성
    - ※ 상기 협의회는 2018년 기준, 정부측 대표 15명, 노조단체 대표 21명, 사업자단체 대표 20명 등 총 56명(사회문제협의위원회는 투표를 통한 결정기구가 아닌 정부 제출안에 대한 협의체)
  - 정부측 대표위원에 대해서는 총리가 임면권을 가지고, 노조 및 사업자측 대표위원은 노사단체의 후보추천을 받아 총리가 임명 (해임 시 노사단체의 동의 필요)
  - 위원장은 총리가 국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임명
  - 사회문제협의위원회는 노사정 3자 대표들이 폴란드 사회 통합, 경제 발전 및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현안을 협의, 방안 마련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및 절차

- 정부는 익년 최저임금수준을 매년 6.15까지 사회문제협의위원회에 제출, 위원회는 7.15까지 심의 완료, 국무회의는 9.15까지 익년 최저임금을 고시
- 정부는 기한 내 사회문제협의위원회에서 정부제출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의로 익년 최저임금수준을 결정 고시
- 이 경우 최저임금 고시액수는 애초 위원회에 제출한 액수보다 낮을 수 없음

#### 2.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ㅇ 비공개회의 원칙
- 일반인 방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언론기자 등 외부인사는 본회의 시작 전 퇴장
- ㅇ 사회문제협의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회의록 작성
- 회의 후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사회문제협의위원회 홈페이지, 언론 공개
  - \* 2015년 법과정의당 현 정부 출범 직후 기존 노동사회정책부의 명칭을 가족 노동사회정책부로 변경(2015.12.3.)
- 가족노동사회정책부 홈페이지 : www.mpips.gov.pl/en/
- 사회문제협의위원회 홈페이지: www.dialog.gov.pl/en/

#### 3 결정기준

- □ 결정기준(당해 경제지표를 토대로 익년 최저임금 결정기준)
  - ㅇ 실질경제성장률
  - 당해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급여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연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의 2/3 추가 반영
  - 전년 물가상승률, 당해년 물가상승률 및 익년 물가상승 전망
  - ㅇ 익년 전체근로자 평균급여 전망
  - ㅇ 익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 당해 1/4분기 전체근로자 평균급여
  - ㅇ 이전년도 산업부문별 근로자 평균급여
  - 사회 계층별 생활수준
  - 기타 국가예산, 경제환경,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등
    - ※ 사회문제협의위원회는 산하 실무조직으로 분과위원회 9개, 자문위원회 2개를 구성하여 차기 최저임금 편성 관련 자료수집
    - 분과위원회(9개): 경제 고용시장정책위원회, 노동법위원회, 사회문제협의 발전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예산 • 임금 • 보조금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협력위원회, EU기금위원회, 유럽사회헌장위원회
    - 자문위원회(2개): EU문제 자문위원회, 공공행정근로자 자문위원회

- 4 갱신주기
- ㅇ 매년 익년도 최저임금수준 결정(갱신주기 1년)
- 5 고시방법(결정단위 월, 주, 일, 시간)
- ㅇ 월 단위로 최저임금 액수 고시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단위: PLN/달러)

연 도	월 최저임금	인상률
2019	2,250PLN(\$608.1)	7.1%
2018	2,100PLN(\$583.3)	5.0%
2017	2,000PLN(\$500.0)	8.1%
2016	1,850PLN(\$486.8)	5.7%
2015	1,750PLN(\$486.1)	4.2%
2014	1,680PLN(\$525.0)	5.0%
2013	1,600PLN(\$516.1)	6.7%
2012	1,500PLN(\$483.0)	8.2%
2011	1,386PLN(\$495.0)	5.2%
2010	1,317.0PLN(\$430.0)	3.2%
2009	1,276.0PLN(\$386.6)	13.3%
2008	1,126.0PLN(\$467.2)	20.2%
2007	936.0PLN(\$337.9)	4.1%

<sup>※</sup> 정규고용직 월 160시간 기준(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 시급 14.7PLN)

<sup>※ &#</sup>x27;14년 1\$=3.2PLN, '15 1\$=3.6PLN, '16 1\$=3.8PLN, '17 1\$=4PLN, '18 1\$=3.6PLN, '19 1\$=3.7PLN 기준

<sup>※ 2019</sup>년 법정 최저임금은 2019.1월 민간부문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4,932PLN의 45.6% 수준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수 및 비율 추이

(단위: 명, %)

구분 연도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수	비고
언工			
		1,500,000	
2018	16,617,000	(*최저임금 근로자수 기준/	9%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	
2017	15,720,000	_	-
2016	15,293,000	_	-
2015	14,830,000	_	-
2014	14,560,000	225,000	1.55%
2013	14,240,000	436,000	3.06%
2012	14,170,000	358,000	2.53%
2011	14,230,000	_	_
2010	14,110,000	705,300	5.00%
2009	13,780,000	526,000	3.82%
2008	14,040,000	435,100	3.10%
2007	13,770,000	211,000	1.53%
2006	13,220,000	178,700	1.35%

# 3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 : www.mpips.gov.pl

○ 폴란드 노동청 : www.pip.gov.pl

○ 사회문제협의위원회 : www.dialog.gov.pl.

주폴란드공화국대사관 선임연구원 남창현(48-22-559-2900, arpia@mofa.go.kr)

# 13. 프랑스

국	명	프랑스(La République Française, the French Republic)
언	어	불어
면	적	675,417km²(속령 포함, 한반도의 3.1배)
인	구	6,699만명(2019.1.1.) ※ 출처 : INSEE(프랑스 통계청)
수	도	파리(Paris)
주 9	요도시	Paris, Lyon, Marseille 등
종	교	가톨릭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卫	육	의무교육 6-16세 ※ 2018.3.27. 발의된 유치원 의무교육 관련 법안에 의해 만3세이상 아동 유치원 의무교육 시행 추진 중
화피	ᅨ 단위	유로(euros) ※ 1달러 = 0.89유로(2019.3월)
	GDP	2조 5,836억달러(2017)
	1인당 GDP	38,476달러(2017)
   주요	GDP성장률	1.5%(2018)
경제 지표	교역	수출 4,917억 유로 / 수입 5,513억 유로(2018) ※ 출처 : 프랑스재경부 보고서
	실업률	8.8%(2018)
	물가상승률	2%(2018)
대사관	웹사이트	http://fra.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 20세기 초에는 노사 간 개별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
  - 제2차세계대전 중 노사간 임금계약이 붕괴되면서 정부개입이 필요, 정부 임금결정 방식(등급별 결정) 도입
- □ 1950.2.11. 노사간 협상방식을 통한 임금결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정부 임금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물가상승 률에 따라 인상하는 전직종 최저임금제(SMIG :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를 시행
- □ 1945~75년은 프랑스 번영의 시대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SMIG 방식은 인상률이 너무 낮아 1970년 법제를 정비, SMIC\*으로 변경
  - \* SMIC(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은 '법정 최저임금'을 의미하며, 프랑스 '번영의 30년(1945년-1975년)의 혜택을 저임금근로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됨
  - 1967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논란이 발생, 1968년 최저임금을 35% 인상
  - 1968년에서 1980년까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평균임금 대비 39%에서 50%로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구매력 상승에는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급격한 실업률 상승(1968년 2.5%에서 1980년 6.8%)

- SMIC(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음 3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
  - ① 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 ② 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근로자 임금상승률 반영)
  - ③ 노사정 협의를 거쳐 결정된 인상 요인(정부 재량으로 반영)
- □ 2000.1.19. 공포된 「Aubry법」 2차 법안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하면서 SMIC 근로자에게 현재의 월 급여수준 유지 (GMR, Garantie Mensuelle de Rémunération : 최저 보장월급) 및 향후의 구매력 증대를 보장하여 11.4%의 임금 인상 효과를 부여
- □ 2003.1.17. 공포된「Fillon법」은 2005.7.1.까지 GMR을 폐지하기 위해,
   위 계산법에 따른 SMIC 재조정을 중지한 후 2003년, 2004년, 2005년
   3회에 걸쳐 SMIC 시급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
- □ 2008.12.3. 공포된 노동임금법(Loi du 3 décembre 2008 en faveur des revenus de travail)에 따라 SMIC 법령 개정
  -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SMIC 결정절차에 참여
  - 새로이 책정된 SMIC 수준 적용시기를 기존 7월 1일에서 2010년 부터 매년 1월 1일로 변경\*
    - \* 기업 및 산업별 임금 협상에 해당연도 SMIC 수준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MIC 적용시기를 조정

- SMIC 결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2013.2.7. 행정명령(Décret) 2013-123으로 SMIC 산정방식 변경 개정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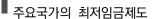
# 2 법적근거

- □ 노동법 L3231-2, L3231-3 : 원칙
  - 최저임금은 수입이 가장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 △구매력 △국가 경제성장 활동 참여를 보장
  -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에서 예상임금의 결정 및 수정을 위해 최저 임금을 준거화하는 것과 연동화하는 것을 금지
- □ 2018.12.19. Decret 2018-1173 : 금액
  -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 또는 월 1,521.22유로(주 35시간, 월 151시간 근로 기준)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
- □ 민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부문 근로자
  - ※ 외국인: 장기체류자로서 근로를 허가하는 체류증 소지자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 적용
  - ※ 장애인: 근로소득액에 따라 장애인 수당혜택이 부여(근로하지 않은 장애인 대상 수당 액은 미혼자 1인 월 819유로, 2018.4.1. 기준)



#### 2. 특례대상

- □ 견습공 및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 근로자
  - ㅇ 나이와 계약 기간에 따라 감액
- □ 고용된 분야에서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18세 미만 근로자
  - 17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최대 10% 감액, 17세 미만인 경우 최대 20% 감액
  - 상기 내용은 '미래형 고용(les emplois d'avenir) 잠재적 근로자(인턴)' 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미적용

#### 3. 적용제외대상

□ 외판원 등 실질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VRP, voyageur représantant placier)

#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

4

- 임금액은 담당직책과 역할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간 자유롭게 결정하되 SMIC, 양성평등원칙, 단체협정, 추가 근무수당 규칙 준수 필요
- 임금은 계절근로자, 재택근로자, 부정기근로자(intermittent), 도급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급으로 지급

#### 256 ... 최저임금위원회

- 월급이 아닐 경우 최소 월 2회에 걸쳐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 기간의 간격이 16일 초과 금지
- 상기 원칙은 기본급에만 적용되며, 여타 수당 및 상여금 등에는 미적용
-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외에 수당 및 상여금, 현물급여(식사, 주택제공) 등이 가능하며, 고용계약서 혹은 단체협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
  - 수당의 종류로는 연말보너스, 13월차 월급, 휴가수당, 평가수당, 참여수당, 물가관련 보상수당, 근면성 등 고용인의 포상수당, 위험성 등 근로조건 관련 수당 등이 존재
  - 현물급여는 대개 음식, 숙박, 차량 제공의 형식으로 제공

## □ (근로시간)

- ㅇ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35시간
- 추가노동 시 △일 10시간 이상 노동 불가 △주 48시간 이상 노동 불가 (12주간 평균 주당 노동시간 44시간 초과 불가) 요건 준수 필요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ㅇ 기본급
- 현물급여(식사, 자동차, 주택 등)
  - \* 매월 지급하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이쓴ㄴ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에 산입
- ㅇ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기본급을 보완하는 다양한 기타 수당(상여금, 연월차 휴가수당, 실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변상 등)
- 팁, 매상고에 대한 커미션
- 개인 성과수당 및 팀별 성과수당, 생산수당 및 생산성수당
- ㅇ 연말 보너스
  - \* 연말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만 해당
- ㅇ 휴가비
  - \* 휴가비가 지급되는 달에만 해당
- ㅇ 다목적 수당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근로자가 미리 부담한 실경비의 변상 (교통비 포함)
- 외식비, 공구비, 세탁비, 출장비 등
- 초과근로수당
- ㅇ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할증수당
- ㅇ 연공수당
- ㅇ 개근수당
- 지역수당 (섬나라, 댐 공사현장, 건설현장 등)

-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추위수당, 비위생수당 등)
- ㅇ 기업의 총 생산, 생산성 및 성과에 따른 집단 성과급
- 근로자들을 기업 번영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여금 및 기업의 이윤 분배금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 노동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의 조사를 통해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 또는 경범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에서 판결
  - 지역(région)별로 소재하는 기업·경쟁·소비·노동국(DIRECCTE)은 노동 감독관이 작성한 조서를 검토, 기소 여부를 결정
- □ 근로자가 노동분쟁조정위원회(Conseil des Prud'Hommes)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 동 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 실패시 해결 방안을 결정하여 제시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위반 사업주에게는 벌금으로 SMIC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가 부과되며, 1년 내에 재적발되는 경우, 3000유로 까지 벌금 증액 가능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 부당한 상황에 직면한 근로자는 아래 경로로 구제절차를 개시
  - 직접 또는 11인 이상 고용 기업에 존재하는 직원대표(délégué du personnel)를 통해 노동감독관에게 문제 제기
  - 노동분쟁조정위원회(Conseil des Prud'Hommes)에 문제제기
- □ 노동감독관이 작성한 조서는 지역별로 소재하는 기업·경쟁·소비· 노동국(DIRECCTE)의 검토를 거쳐 검사에게 제출되며, 경찰법원 또는 경범죄법원에서 판결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노동부가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

# 2 결정방법 및 기준

#### 1. 결정방법

- □ 노동부는 △행정명령 2013-123에서 규정한 통계지수(아래 결정기준 항목 참고), '단체협상, 고용 및 전문직업교육 국가위원회'(CNCEFP, Commission nationale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에 제시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종합, 국무회의에 당해연도 SMIC 인상률을 결정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
  - 단체협상 국가위원회는 정부, 국가 자문위원회, 전국 수준의 고용주 대표 기구, 전국 수준의 노동자 대표 노동조합의 대리인들로 구성
  - 상기 위원회 구성을 2019.1.1.부로 변경
  - 기존 노동장관(또는 대리), 농업장관(또는 대리), 경제장관(또는 대리), 국가자문위원회, 6명의 고용주 대표, 10명의 노동자대표(직업군별 노조대표) 이외에 고용장관(또는 대리), 전문직업교육장관(또는 대리), 교육장관(또는 대리), 고등연구장관(또는 대리), 8명의 지역의회로부터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전문직업교육에 관한 위임을 받은 지역단체교섭 대표, 2명의 광역 노동조합 대표

- 18명의 고용주 대표는 기업인협회(MEDEF) 92인, 중소기업총연합 (CPME)대표 2인, 소상공인연합(U2P)대표 2인 등 각 연합대표들 로서, 노동장관이 임명
- 농업분야 고용주 및 근로자 대표, 경제사회연대 고용주 연합 대표, 문화예술공연 기업연대 대표는 농업장관의 승인에 따라 위원회에 포함 가능
- 단체협상 국가위원회는 노동장관 또는 구성원 다수의 결정에 따라 개최될 수 있으며, 최소 연1회 개최
- □ 단, 소비자 물가지수(indice des prix à la cosommation)가 직전 최저임금 결정 시점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최소 2% 상승하였을 경우, 동 비율로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조정
  - 정부는 언제든 재량으로 SMIC 인상을 결정할 권한 보유

## 2. 결정절차

□ '독립적 전문가그룹'(Groupe d'experts)이 매년 '단체협상, 고용 및 전문 직업교육 국가위원회'(CNCEFP, Commission nationale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와 정부에 SMIC 인상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독립적 전문가그룹은 경제·사회 분야의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노동, 고용, 경제담당 장관들의 추천에 근거해서 총리가 지명(4년 임기)
- 전문가그룹 위원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당국의 지시도받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비밀 준수
- 업무수행과정에서 총리실 산하 경제분석실(Conseil d'Analyse Economique)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및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필요시 외부기관에 연구요청 가능(Decret 2009-552)
- □ 정부는 국가 재정 분석 및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에 제출
- □ 노동부는 '단체협상 국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후 SMIC 인상률을 결정하며 조정된 SMIC은 관보(JO) 게재를통해 공고

## 2. 결정기준 및 산출근거

- □ 법률상 규정 : 행정명령(Décret) 2013-123 및 노동법 L3231-2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
  - ㅇ 소비자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지수 산출근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를 대상{노동자(ouvriers)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employés)도 대상에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포함}으로 담배를 제외하고 매월 측정

- 근로자 구매력 상승률의 1/2
  - (구매력 상승률 산출근거) '근로자 기본 시급률(Taux de salaire horaire de base ouvrier et employe)'의 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을 감한 수치로 노동부에서 분기별로 측정
  - ※ 소비자 물가지수 및 구매력 산출시 프랑스 통계청(INSEE) 또는 고용통계 국(Dares) 통계를 활용
- 정부 재량에 의한 인상률(coup de pouce)
  - 저임금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근로자 임금 조사 자료를 활용
- □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2018.12.19. 행정명령(Décret) 2018-1173 로 고시
- 2019.1.1. 이후 시간당 10.03유로(1.5% 증가) 또는 월 1521.22 유로로 고시 (주 35시간, 월 151시간 근로 기준)
- 업종·직종 구분 없이 단일최저임금을 규정

## 갱신주기

3

ㅇ 매년 1.1. 갱신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2010년 이후 최저임금 변화

적용년도	시급	월 환산급여
2011년	9.00유로	1,365 유로
2011년	9.19유로	1393.82유로
2012년	9.22유로	1398.37유로
2013년	9.43유로	1,430.22유로
2014년	9.53유로	1,445.38유로
2015년	9.61유로	1,457.52유로
2016년	9.67유로	1,446.62유로
2017년	9.76유로	1,480.27유로
2018년	9.88유로	1,498.47유로
2019년	10.03유로	1,521.22유로

※ 자료 : Dares(프랑스 고용통계국)

# 민간기업(농업, 파견 등 제외)의 최저임금 근로자수 비율 추이

(단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율	11.1	12.3	10.8	11.1	10.5	10.6 (165만 명)

※ 최저임금 근로자수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수를 의미

※ 자료 : Dares(프랑스 고용통계국)

2

3

# 기타 최저임금 관련통계

#### <기업규모별 최저임금 근로자수 및 비율(2017-2018)>

(단위: 천명, %)

기업	2017	7년1월1일	2018	3년1월1일
규모	수혜 근로자수	전체 인원대비 비율	수혜 근로자수	전체 인원 대비 비율
1-9	720	24.3	830	26.5
10-19	140	10.1	160	10.5
20-49	230	11.6	280	12.8
50-99	140	11.6	180	12.2
100-249	120	7.3	140	7.3
250-499	70	5.7	110	7.9
500-	230	4.5	280	5.0
합계	1,650	10.6	1,980	11.5

※ 자료 : Dares(프랑스 고용통계국)

#### <기업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은 근로자 비율(2017-18년)>

(단위:%)

		(= 11 11)
그ㅂ	최저임금 혜탁	근로자 비율
구분	2017년	2018년
채굴 산업	5.9	2.2
제조업	5.7	5.5
전기, 가스 생산 및 유통	0.8	0.4
물 생산 및 배급	2.9	3.6
건설	8.8	9.9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정비	12.6	15.5
운송 및 저장	6.5	6.7
호텔 및 외식업	31.2	34.4
정보 통신	2.6	2.5
금융 및 보험	3.6	2.9
부동산	10.3	11.4
전문화 및 과학기술	6.4	5.3
행정 서비스	11.7	11.9
교육 (공교육 제외)	5.9	5.2
보건 및 사회적 활동	21.1	15.5
예술, 공연	14.7	13.7
기타 서비스 활동	24.9	23.5
종합	10.6	11.5

※ 자료 : Dares(프랑스 고용통계국)

266 ... 최저임금위원회

#### <성별 및 연령별 근로자 중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2016년)>

남성	여성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세 이상
5.5	12.7	28.1	11.0	6.6	6.8

# 4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2019.1.1. 최저임금 재조정으로 1.5% 인상이 있었고, 2018.11월부터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활동보너스 (prime d'activite)로 최저임금대상자에게 평균 월 100유로 추가 인상 결정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 최저임금 운영 전반 및 고용통계국 보고서
  - http://www.travail-emploi.gouv.fr
- □ 노동법(Code de Travail)
  - www.legifrance.fr

(작성자) 주프랑스대사관 2등서기관 성명 신정훈(+33-(0)1-4753-6957, jhshin09@mofa.go.kr)

# 14. 헝가리

국	명	헝가리(Hungary)
언	어	마자르어(헝가리어)
면	적	93,036 <sup>km²</sup>
인	구	978만명(2018.1월)
수	도	부다페스트(175만명, 2018.1월)
주:	요도시	Debrecen(20만), Szeged(16.1만) Miskolc(15.7만),Pecs(14.4만)
종	교	가톨릭(39%), 개신교(14.2%), 그리스정교(0.1%), 유대교(0.1%)
卫	육	초중등학교 8년, 고교(전문기술고등학교 포함) 4년, 학사 3년, 석사 2~3년(의무교육 연령을 종전 18세에서 16세로 2011년부터 하향)
화되	폐단위	Forint (\$1 : 약 280.26포린트, 2019.2월 평균)
	GDP	1,419억달러 (환율 270.25포린트, 2018년 평균)
   주요	1인당 GDP	14,509달러
구요   경제	GDP성장률	4.9%
지표	교역	수출: 1,237억달러 / 수입: 1,171억달러
'2018	실업률	3.6%
	물가상승률	2.8%
대사관	웹사이트	http://hun.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932년 ILO 협약 No.26을 비준하고 이를 법령으로 공포
- 1951년에 시행된 공산체제하 노동법에서 최저임금제도 폐지
- 1971년 최저임금제도 부활
- 1989년말 시장경제로의 전환 후, 1992년부터 국가단위 노·사·정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 2011.7.1. 최저임금을 정부(내각)에서 사실상 단독 결정
  - 단,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대신 재계·노동계· 학계·종교계·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자문기구 성격의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 National Economy and Social Council)의 자문·협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도록 제도 변경

# 2 법적근거

- 노동법에 관한 2012년 법 I {69. 의무적 최저임금과 최저보장임금 (제153조 3항)}
- 의무적 최저임금과 최저보장임금에 대한 정부시행령 No. 430/2016.(XII.15.)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 학력별 분류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되, 고졸 미만 근로자 및 고졸 이상 근로자(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간주) 두 분류로 구분, 각기 다른 최저임금 적용
- □ 사업장 범위
  - 고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미자격, 단순노동직종에 해당
    - 환경미화원, 단순서비스업(배달원, 주차장 직원 등), 농업 및 산업 분야 단순보조직
      - ※ 고졸미만 근로자의 경우 실제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기술자격증 소지자 범위에서 제외
  - o 고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졸 기술·산업직종에 해당
    -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분야에서 기계를 다루거나, 일정한 지식이 요구되는 직종

## 2. 특례대상

- □ 정부지정「공공 근로자」
  - 단기채용(1년 미만), 고졸 미만 단순노무직(주로 환경미화원으로) 근로자가 이에 해당

- ※ 헝가리 정부는 근로장려를 목적으로 2011.9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면서 일시적 고용을 위한 공공근로 제도를 도입
  - 공공근로자들은 중앙 정부지원으로 지자체에서 고용.관리
- 2019년도 고졸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54.7% 지급

		월급 (일 6시간 근무)	월급 (일 8시간 근무)	최저임금대비 비율
명목		53,850	71,800	77%
2012.1월~	실질	35,272	47,029	77%
2013.1월~	명목	56,625	75,500	77%
2013.1결	실질	37,089	49,453	77%
2014.1월~	명목	57,975	77,300	76%
2014.1 설	실질	37,974	50,632	76%
2015.1월~	명목	59,366	79,155	75%
2013.1 설	실질	38,885	51,847	75%
2016.1월~	명목	_	79,155	71,3%
2010.1 설	실질	_	51,847	71,3%
2017.1월~	명목	_	81,530	64%
2017.12	실질	_	54,128	64%
   2018.1월~	명목	_	81,530	59.1%
2010.1 <del>2</del>	실질	_	54,218	59.1%
2010 1위~	명목	_	81,530	54.7%
2019.1월~	실질	_	54,218	54.7%

※ 명목 수치는 과세 전 금액임

#### 3. 적용제외대상

□ 청소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별도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T 0 7 7 0	ニエン・コー
수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	------	------

1.	임금	및	근로시	スト

- □ 임금
  - 지급방법: 월급 (경우에 따라 주급도 가능)
  - ㅇ 임금체계: 연봉제
  - 임금구성항목: 시간당 임금(기본급)
    - ※ 유급주휴제도, 성과급, 숙박비, 교통비는 없음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 기본급(근로소득세 15%, 연금 10%, 의료보험 7%, 고용시장기여세 1.5% 포함)
  - \* 4대 세금의 비율은 기본급 대비 비율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 국가경제부 내 고용정책담당 차관실에서 총괄·관리하며, 지역별로 노동감독관실(Hungarian Labour Inspectorate)에서 실무를 담당
  - ※ 노동감독관실 포털: http://www.ommf.gov.hu/
- □ 지역별로 행정-노동법원 운영
  - ※ 행정-노동 법원 포털: http://birosag.hu/kozigazgatasi-es-munkaugyi-birosagok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지역 노동감독관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납세번호와 고용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입,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주를 통한 보수 미지급분 지급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노동감독관실 신고창구 : http://nyilvantartas.ommf.gov.hu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최저임금 위반 고용주가 해당지역 노동감독관의 행정판단에 따라 과태료 납부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함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중앙정부 내각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 정부가 전국노조(6개) 대표 및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E)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 동 최저임금을 정부령 형식으로 매년말 공포 시행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E) 개요〉

- 동 위원회는 인적자원부 종교·민족·시민단체 담당 차관실 시민단체 및 사회협의국 국가경제사회위원과에서 운영·관리
- 연혁: 조화롭고 균형있는 경제발전과 사회모델에 관한 대정부 및 국회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해 2011.7월 신설
- 구성 (총 39명)
- 재계 대표(12명): 10개 전국경영자조직 대표, 상공회의소장, 농업협회장

- 노동계 대표(6명): 법으로 인정된 6개 전국노조 대표
- 학계대표(8명): 헝가리과학원 원장 등 4인, 헝가리대학총장협회 협회장 등 2인, 헝가리경제학협회 2인
- 종교계 대표(4명): 종교법에서 인정된 4개 종교단체(카톨릭, 장로교, 감리교, 유대교) 대표
- 시민단체 대표(5명): 국가협력기금 대표 등 4인
- 예술계 대표(4명): 헝가리예술아카데미 원장 등 4인
- ㅇ 임기: 임기는 4년이며, 재임 가능, 별도 보수는 없음
- 임명추천: 각 소속기관(단체)장이 자동 임명되거나 기관(단체)에서 각 각 추천
- ㅇ 운영방식
- 매년 의무적으로 최소 4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정례회의에 소관부처 장관들과 장관들이 추천한 정부대표, 공정거래 위원장, 통계청장 및 부청장 상시 참석
- 동 위원회 사무국은 국가경제부에 소속되어 기능 수행
- 위원장 : 위원회 구성 각계 대표들이 3개월마다 돌아가며 수임

#### 2. 결정절차

□ 정부대표(경제부 장관)와 민간(6개의 전국노조 대표)이 상설포럼을 통해 실질소득, 기업의 경쟁력 및 이윤창출,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안을 책정한 후,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E)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E) 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녹취의무도 없으나 회의록은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됨

#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3

- □ 정부는 최저임금과 최저보장임금의 규모와 효력을 국가경제사회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다(1항)
  - 의무적 최저임금의 규모와 효력 결정시 특히 근로환경에 필요한 조건, 국가 노동시장의 특징, 국가경제상황, 경제산업 각 분야와 일련의 지리적 노동시장 특성을 감안해야만 함 {2012년 법 I 69. 의무적 최저임금과 최저보장임금 (제153조 3항)}

2.	결정기	[쥬의	도출방법
	— U'		— E U D

□ 결정기준 범위가 넓어 해당 연도의 제반 경제적 여건 및 각종 관련 통계 등을 종합 고려·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사·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음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 정부는 12월말 관보에 최저임금 고시
  - 월급을 주급, 일급,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 고시
  - 고졸미만 및 고졸이상자 최저임금을 동시 고시 ※ 업종·지역은 상기 고시대상에서 제외

# 5 갱신주기

□ 연 1회(매년 12월 말까지 갱신)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고졸미만 근로자

(단위 : 포린트, %)

적용년도	성인	인상률	
2019	149,000 포린트/월, 34,260 포린트/주	8%	
2019	6,860 포린트/일, 857포린트/시간	U /0	
2018	138,000 포린트/월, 31,730 포린트/주	8.2%	
2010	6.350 포린트/일, 794 포린트/시간	0.270	
2017	127,500 포린트/월, 29,310 포린트/주	15%	
2017	5,870 포린트/일, 733 포린트/시간		
2016	111,000 포린트/월, 25,550 포린트/주	E E0/	
2016	5,110 포린트/일, 639 포린트/시간	5.5%	
2015	105,000 포린트/월, 24,160 포린트/주	3.4%	
2015	4,830 포린트/일, 604 포린트/시간	3.470	
2014	101,500 포린트/월, 23,360 포린트/주	3.6%	
2014	4,670 포린트/일, 584 포린트/시간	3.0 /0	
2013	98,000 포린트/월, 22,560 포린트/주	E 10/	
2013	4,510 포린트/일, 564 포린트/시간	5.4%	
2012	93,000 포린트/월, 21,400 포린트/주 *	19.2%	
2012	4,280 포린트/일, 535 포린트/시간	19.2 /0	
2011	78,000 포린트/월, 19,500 포린트/주	6.1%	
2011	3,900 포린트/일, 487.5 포린트/시간	0.170	
2010	73,500 포린트/월, 18,375 포린트/주	2.8%	
2010	3,675 포린트/일, 459 포린트/시간	2.0 /0	
2009	71,500 포린트/월, 16,500 포린트/주	3.6%	
2009	3,290 포린트/일, 411 포린트/시간	3.0 /0	
2008	69,000 포린트/월, 15,880 포린트/주	5.3%	
2000	3,180 포린트/일, 397 포린트/시간	J.J /0	

<sup>※</sup> 일 8시간, 주 40 시간 , 월 4.35주 기준으로 환산 (이후 미세 조정)

## ○ 고졸이상 근로자

(단위: 포린트, %)

적용년도	성인	인상률
2010	195,000 포린트/월, 44,830 포린트/주	8%
2019	8,970 포린트/일, 1,121포린트/시간	O /o
2010	180,500 포린트/월, 41,500 포린트/주	0.00/
2018	8,300 포린트/일, 1,038포린트/시간	8.2%

<sup>※</sup> 일 8시간, 주 40 시간 , 월 4.35주 기준으로 환산 (이후 미세 조정)

# 최저임금 적용현황

2

(단위: 개소, 명, %)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적용대상사업체	적용대상근로자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영향률
'18	1명 이상 전산업	1,908,808	4,469,000	1,984,236	44.4%
'17	1명 이상 전산업	1,870,415	4,421.400	1,923,309-	46.4%
'16	1명 이상 전산업	1,846,101	4,351,000	965,000	22.2%
'15	1명 이상 전산업	1,837,704	4,259,000	950,000	22.3%

- ※ 상기 통계는 고졸 미만 및 고졸 이상 근로자 모두를 합한 수치임
-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www.kormany.hu/en/ministry-for-national-economy
- ※ 헝가리통계청(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www.ksh.hu

# 3 최저임금 미만현황

□미만근로자 : 정부지정 공공 근로자

조사기간	'15	'16	'17	'18
임금근로자수(A)	4,259,000	4,351,000	4,421,400	4,469,000
미만근로자수(B)	232,300	217,700	208,000	149,000
미만율(B/A)	5.4%	5%	4.7%	3.3%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4

헝가리 정부는	실업률(20	08년 12%에/	서 2018년	3.7%로	감소)	감소를
위해 공공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이를	고용에
포함시킴						

- □ 한편, 헝가리 정부는 외국으로 이주한 고학력 근로자(의사, 간호사 등)의 귀환을 위한 특별지원정책을 추진 중임
  - 헝가리에 정착한다는 조건하에 귀국 항공요금, 1인당 1년간 월10만 포린트의 주택 임대료, 회사 출퇴근 비용 지원
  - 헝가리 통계청은 1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헝가리 근로자를 약360만명으로 추산
    - 이들 대부분(80%)이 40세 이하이며, 평균 연령은 33세
    - 2016년의 경우 11만5천7백여명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 관련 홈페이지
  - ㅇ 헝가리통계청(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www.ksh.hu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www.kormany.hu/en/ministry-for-national-economy

(작성자) 주헝가리대사관 유미진 서기관(전화번호 : +36-1-462-3085, 이메일 : mjryu14@mofa.go.kr)



# 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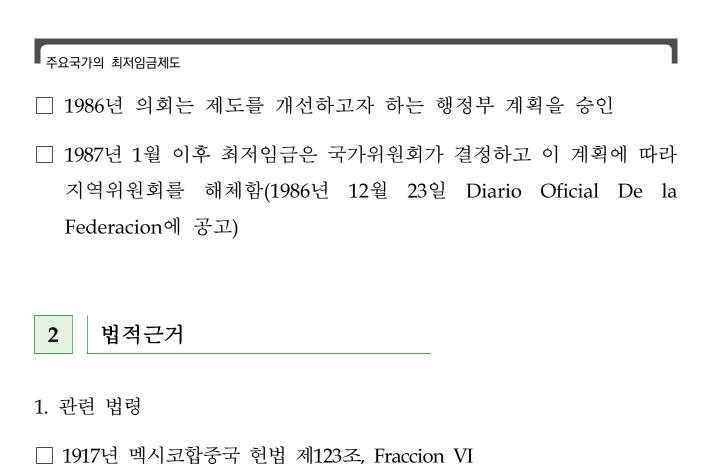
## 15. 멕시코

국	명	멕시코합중국(Los Estados Unidos Mexicanos)		
언	어	스페인어		
면	적	1,959,247 <sup>km²</sup>		
인	구	1억2,920만명 (2017년, World Bank)		
수	도	멕시코시티		
주의	요도시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종 교		로마가톨릭(89%), 개신교(6%)		
교 육		초등학교 6년(무상의무교육),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5년		
화피	ᅨ 단위	멕시코 페소(Peso)		
	GDP	12,400억달러(2018, IMF)		
주요	1인당 GDP	9,870달러(2018, IMF)		
경제	GDP성장률	2% (2018, 멕시코 통계청)		
지표 (2016-	교역	수출 4,506억달러 / 수입 4,643억달러 (2018, 멕시코 통계청)		
2017년)	실업률	연 평균 3.3% (2018, 멕시코 통계청)		
	물가상승률	5.27% (2018, 멕시코 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mx-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 1917년 멕시코합중국 헌법은 Fraction VI 제123조에서 최저임금액을 최초로 규정
- □ 1931년 연방 노동법(Labor Work)이 처음 시행
  - 이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결정을 담당하는 특별 지방자치위원회가 설립
  - 이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정확한 조건을 결정할 전문적 지식이 없었는데, 이는 그 당시 멕시코 경제발전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임
- □ 1963년 111개의 지역위원회와 더불어 국가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됨
  -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일치시켜서 지역위원회가 국가위원
     회의 감독을 받아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임
  - 그 결과 Fraction VI 제123조와 연방 노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 이러한 제도는 지역위원회의 수를 67개로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진 1986년까지 유지됨
- □ 1981년 농업종사자의 최저임금을 폐지하여 농업종사자를 도시 근로자와 동등하게 간주하며, 경제구역의 수를 3개로 축소함



- □ 연방 노동법 : 제90조~제97조, 제523조, 제551조~제563조, 제564조~제569조, 제570조~제574조, 제676조~제682조A
- □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협약 26, 협약 99, 협약 131
- 2. 최근 3년 이내(2016~2018년) 법령 개정사항
- □ 2016년 1월 27일자, 멕시코 헌법 개정에 대한 각령 발표
  - 헌법 제41조 base ii, 헌법 123조 apartado A의 fraccion vi의 첫 문단 개혁, 헌법 제26조 apartado b의 6,7문단이 수정된 바, 기존에 (벌금, 세금, 할당금 등의) 단위, 기반, 측정기준 혹은 참조의 기준으로 언급했던 연방법의 모든 조항들을 개정해야 하며,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 개념으로 암시하던 연방 수준 141개법의 886개 조항을 최신화해야 함을 의미

	_		
1	ᄃ	멕시	╕
- 1	:).	-4/	'

□ 2016.1.28. 국가지리통계연구소는 측정단위 및 최신화 기준을 발표, 1일 기준 74.03페소, 한달 기준 2,220.42페소, 연 기준 26,645.04 페소로 정함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 최저임금은 법적 연령, 사회경제적 활동 및 조건과는 별개로 민간 분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됨
  - 노동법 제2조 등에 의거 '인종, 국적, 성별, 연령, 장애유무, 사회적 조건, 건강조건, 이민조건, 견해, 성적기호, 결혼 유무 등으로 인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

## 2. 특례대상

□ 법적 연령, 성별, 종교, 종교, 사회경제적 활동 및 조건, 건강상태 등으로 특례규정 없음

## 3. 적용제외대상

□ 없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 연방노동법 제84조에 따르면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당, 주거,
   보너스, 각종 지급, 커미션, 상여금, 현물 혜택 및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혜택을 의미함
- 작업단위당 임금에 있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 근무의 급료지급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합산액과 같아야 함
- 육체 근로자(trabajo material)의 경우 임금 지급 기한은 일주일을 넘길수 없고(주급) 그 외의 근로자의 경우 임금 지급 기한은 15일을 넘길수 없음(월 2회 지급)
- ㅇ 임금은 일당과 법에 명시된 최소 혜택으로 구성됨
  - 최소 혜택은 법정통화로 지불, 휴가, 휴가수당, 보너스,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 퇴직, 연금, 퇴직수당, 주택수당) 지급, 역량 강화, 출산 및 육아 (지원), 안전위생에 대한 적절한 조건,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의 이익 분배 등임
  -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를 통해 다음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채권, 식비지원, 장학금, 피복, 저축펀드, 교통지원 등

근로시	[2]
근노^	l

- 연방노동법 제61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을 주간근무 8시간, 야간근무 7시간, 혼합근무 7시간(이 중 야간근무의 범위가 3시간 30분을 넘을 수 없음)으로 정의
- 근로자는 6일을 근무하고 1일(유급휴일)을 휴식하며, 주간 휴일을 일요 일로 권장함
  -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무일 급여의 최소 25% 이상의 보너스를 받게 됨
    - ※ 1주 단위 최저임금 = (1일 최저임금 x 근무일 6일)+유급휴일 1일
    - ※ 주 6일 근무일 중 결근이 1일 있을 경우 유급휴일의 급여에서 1/6을 감함(노동법 72조)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만 해당, 기타 수당 미포함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법적으로 지정된 연 상여금 (연말 1회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상여금, 휴가비 등) 및 기타 혜택(사회보험료 및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등)

## 최저임금 이행 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5

- □ 연방노동법 제523조는 근로규정 적용에 대한 감시는 각각의 관할권에 상응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분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부 부처는 노동사회복지부임
  - ※ 524조 노동사회복지부와 노동부장관은 관련 구성법과 노동규범이 부여하는 권한을 갖는다
  - ※ 관할기관: 노동사회복지부, 재무부, 공공교육부, 각 연방기관의 노동부 혹은 과, 노동보호검찰, 국가고용서비스 등
  - 연방노동법 제527조에서는 산업별로 최저임금 지불을 포함하는 근로 규범 준수 감시를 위한 연방 관할기관 및 지방정부 관할기관(주·시 자치단체) 권한의 분배에 대해 설정하고 있음
    - ※ 산업별로 연방에서 관할할지, 지자체에서 관할할지 구분하며, 각 지방정부에는 노동부 및 노동부장관, 지방 노동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있음
    - (연방에서 감독하는 산업 범위) 섬유, 전기, 영화, 고무, 설탕, 광업, 철강 및 야금(주조 등), 석유, 석유화학, 시멘트, 석회, 자동차(부품 포함), 화학(의약품 포함), 펄프 및 종이, 식물성 지방 및 기름, 패킹· 밀봉 식음료, 철도, 목재(mdf 등 포함), 유리, 담배, 은행 및 대부업,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연방정부의 양허 또는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연방정부의 허가를 통해 공공 사업을 진행, 국가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업체), 연방구역, 관할구역,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 지역 사업체

- 또한, 2개 이상의 연방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과 관련된 사항 (하나 이상의 연방 단체에 의무화된 집단 계약), 직장 내 교육, 훈련 및 위생안전과 관련된 고용주의 의무에 있어서는 연방 관할기관에 노동규정 적용의 권한이 있음
- 연방노동법 제527조에서 언급되지 않은 근로활동과 기업의 감시에 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음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최저임	금 지불	이행 감	시를 위	리한 주 <b>요</b>	L 장치로는	: '근로감독	군(Inspecci	on
del tra	nbajo)' o]	있으며,	연방 !	및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질 -	수 있음	

- □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
  - ① 1개월분의 일반 최저임금 액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6개월에서 3년의 징역과 일반최저임금의 최대 800배에 달하는 벌금
  - ② 1개월분의 일반 최저임금 액수를 초과하나 3개월분 미만일 경우: 6개월에서 3년의 징역 및 일반 최저임금의 1,600배에 달하는 벌금
  - ③ 3개월분의 일반 최저임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에서 4년의 징역 및 일반 최저임금의 3,200배에 달하는 벌금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는 일반적인 노동법 위반 시의 구제절차와 동일함

#### ㅇ 노동청 신고

- 1) 노동청에 신고
- 2) 노동청 내부 심사
- 3) 심사 통과 시 조사관이 업체 방문 및 조사
- 4)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제재(필요시 형사입건)

## ㅇ 노동법원에 제소

- 1) 회사 업종에 따라 지방 또는 연방노동법원에 소장 접수
- 2) 판사가 형식 요건 검토 후 소송 접수
- 3) 피고인에 소장 송달
- 4) 판사가 정식 소송 시작 전 양방 간 합의 주선
- 5) 합의 실패 시 소송 진행
- 6) 양방 간 증거제출 및 심사
- 7) 최종변론
- 8) 중재 판정

## Ⅱ. 최저임금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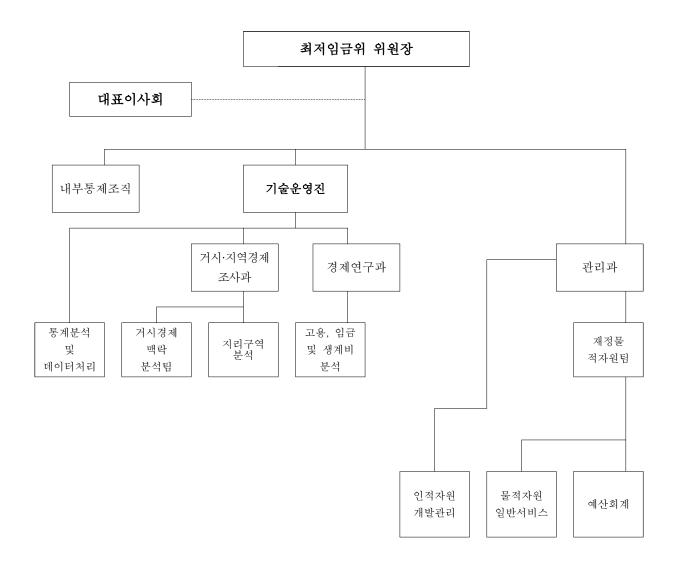
## 1 결정기관

- □ 최저임금위원회(CONASAMI)
  - 최저임금위원회는 크게 위원장 1인, 대표이사회, 기술운영진(Technical Direction) 등으로 구성됨 (연방노동법 제551조)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 \* 만 35세 이상으로,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멕시코 국민, 법학·경제학 학사학위를 보유한 자, 노동법 및 경제 연구에 뛰어난 자, 종교적 지위가 없는 자, 범죄로 인한 구금의 경력이 없는 자
  - 대표이사회: 정부 대표와 최저임금위원장, 노동부장관(Secretary of Work)이 지정한 두 명의 고문 및 노조대표와 경영자대표로 구성됨.
     노조대표와 경영자 대표의 수는 각각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이루어져야하며, 양 측 대표의 수는 동일해야 함
    - \* 노조 및 경영자대표는 노동사회부가 발표하는 모집공고에 따라 4년마다 선출되며, 해당하는 연도의 7월 1일까지 이사회 구성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노동계 및 경영계 에서 대표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사회부에서 이를 지정함
  - 기술운영진: 노동사회부에서 임명하는 1명의 대표, 노동사회부에서 임명하는 일정 수의 기술 자문, 노동사회부에서 정의하고 근로자 및 고용주대표들이 임명하는 같은 수의 보조기술자문으로 구성되며, 보조 기술자문은 이들을 선출한 근로자 및 고용주대표의 51%가 요청할 경우 언제

든지 직위해제 될 수 있음. (제558조)

- \* 기술운영진의 의무와 권한은 1)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연방을 지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기술적 연구를 시행,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표이사회에 제안(2016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정 폐지), 2)정당화될만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연방의 지리적 구분을 세분화하거나 통합하도록 대표이사회에 수정을 제안(2016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정 폐지), 3)대표이사회가 최저임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연구와 조사를시행, 4)전문직 최저임금 지정을 제안 등
- □ 최저임금위원회 자문위원회(Comisiones Consultivas)
  -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표이사회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결정 하고 승인할 수 있으며, 기술운영진은 자문위의 조사활동 및 기술적 업무를 지원함
  - 자문위는 1명의 자문위원장, 1명의 기술서기관, 근로자와 고용주 대표(3-5명) 및 최저임금위원장이 지정하는 근로자와 고용주 대표 와 같은 수의 기술자문과 전문가로 구성됨
    - 자문위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사와 연구를 직접 진행하며, 이를 위해 기술운영진이 조사하는 자료(경제상황, 생계비 변동, 임금체계조건, 예산연구에 필요한 항목 조사자료 등)를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근로자, 고용주 연합단체 및 모든 공공기관과 민영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거나 제안을 수령할 수 있음
      - 즉, 자문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취득하며, 보고서의 권한에 포함되는 문제와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의견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함. (제567조)

## □ 기관 조직도 (전체)



## 2 결정절차

#### 1. 결정절차

- 기술운영진(Technical Direction)은 11월 말까지 연방노동법 제562조의 Fraction V에 따라 보고서 제출
  - ※ 근로자와 경영자는 매년 11월말 전까지는 언제든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검토를 편리한 시기에 할 수 있음. 단, 동 검토를 위해서는 노동복지부장관, 노동조합, 경영자협회에서 제반 경제 여건상 최저임금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검토 요청을 해야 함
- 근로자와 경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연구조사 보고서를 준비하여 대표위원회가 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 책정은 3개 분야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이사회에서 이루어짐:
   고용주 대표 11명, 근로자 대표 11명, 연방정부 대표 1명(최저임금위원장)
   (이사회는 매월 정기회의 및 최저임금 책정위원회 혹은 일반/전문 최저임금 검토이사회를 개최함)
- 12월 대표이사회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작성한 연구조사에 기초한 기술 지침 보고서 분석
- 12월 31일 이전 대표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결의안 발표(매년 최저임금 결정)
- 결의안이 승인되면 바로 위원장(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이 연방관보(Federation Official Diary)에 공고를 명함

## 2.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이사회에는 대표이사회 구성원만이 참여하며,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취는 가능하나 공개목적으로는 불가능함
- 월간 정기회의는 대표이사회에 연간 노동계획의 진전사항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회의 결과는 경제추이 관련 월간 보고를 통해 매월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됨. 공개 기한은 차기 월간 정기 회의 전까지임
- 최저임금 책정 회의는 12월에 열리고, 일반/전문직 최저임금 액수 확정 결과는 차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최저임금 책정에 대한 대표이사회의 결정 내용이 연방 관보에 공시되 어야 함
- 대표이사회가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상설회의를 개최하면 국내 전역 범위의 보도자료를 통해 책정과정 시작을 여론에 알림. 마찬가지로 대표 이사회가 새로운 최저임금을 책정하면 국내 전역에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최저임금과 전문직 최저임금 및 효력 발생일을 통보함
- ㅇ 이러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발표됨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 최저임금은 국가의 경제성장, 경제활동의 발전, 일자리 상황, 과거 임금 구조, 근로자의 생계비\* 및 기타 요소 등을 반영\*\*함
  - \* 생계비는 2년마다 통계청(Inegi)에서 진행하는 전국 가구 소득-지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조사되는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함. 그러나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어떤 식으로 이를 반영하는지는 정해져있지 않음. 2016년 조사에 따르면, 1가구 인원은 평균 3.67명이며, 가정당 평균 월 수입은 15,507페소(약 861달러), 평균 월 지출은 9,381페소(약 521달러).
  - \*\* 국내 노동법에 따른 요건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요건들을 모두 고려하나, 각각의 요건이 어떠한 비중과 방식으로 고려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 헌법 제123조에 따르면, 일반최저임금은 한 가정의 가장이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인 기본 필요를 충족하고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전문직최저임금은 이에 더해 각각의 경제활동의 상이한 조건도 고려하여 책정됨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국가지리통계연구소(INEGI)는 15일마다 기본식료품 가격지수, 계층1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2018년 기준 약 16%)을 위한 인플레이션 등의 소비자가격 변동을 발표하고, 전국 가정 소득-지출 조사(ENIGH)를 통해 2년마다 가정의 지출분배상황을 발표함

- 국가사회개발정책평가위원회(CONEVAL)에서 최저소득 근로자의 구매 력과 관련된 지수를 조사하는데, 이는 빈곤노동동향지수(ITLP); 기본 식료품 총 가치(금액)의 월별 변동(최소복지선)지수, 농어촌 및 도시 환경에서의 빈곤 측정을 위해 기관이 이용하는 복지선(수준) 등임
  - 농어촌과 도시지역에서의 최소복지선(수준)은, 1인이 기본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월 통화량을 의미함. 복지선의 경우는 농어촌과 도시지역에서 기본식료품/식료품이 아닌 것(교통, 교육, 피복, 보건, 오락 등)을 획득할 수 있는 통화량으로 계산됨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 2019년 기준 일반 최저임금 : 일 102.68페소
  - ※ 2015.10월 지역별 최저임금 고시 폐지
  - 2019년 기준 전문직 최저임금 : 기타 최저임금 관련 통계 참조
    - \* 전문직 최저임금은 법으로 공포한 59개 전문직 각각에 대한 개별적 최저임금 으로, 목록에 해당하는 전문적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5 갱신주기

□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나, 동 최저임금은 경제상황 요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중 상시 재검토 가능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 2019년 최저임금 설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12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계기 2019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기존 모든 지역에서 동 일하게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북부 국경 자유무역지대\* 최저임금/일반 최저임금 두 가지로 구분함
  - \* 미국과 접한 북부국경선에서 직선으로 25km 거리 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미국과 인접해있어 미국 수출을 꾀하는 기업 및 공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만장일치로 2019년 1월 일반최저임금을 102.68페소로 인상하기로 결정, 동 102.68페소는 2018년 일반최저임금인 88.36페소에 독립적 회복액\*(Monto Independiente de Recuperacion) 9.43페소를 더한 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한 결과(실질 상승률 16.21%)
    - \* 독립적 회복액(Monto Independiente de Recuperacion): 최저임금의 구매력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이 구매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반 최저임금에 적용하는 인상액으로, 일반 최저임금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함
  - 또한, 미국과 인접한 국경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최저임금에 독립적 회복액 79.97페소를 더한 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여 176.22페소로 설정함(실질 상승률 100%)

## □ 일반 최저임금 현황

(단위: 일급 기준, 페소, %)

ᄀᆸ	전국	평균	A지	역		B지	역		C지	역
구분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	금	인상률	최저역	임금	인상률
				일반			북부	- 국경 자	유무역	지대
2019	102.68	16.21	최저임금	1	인상률		최저임·	금	C	인상률
			102.68		16.21		176.72	2		100
2018	88.36	10.4								
2017	80.04	9.59								
2016	73.04	4.19								
2015.10	70.10	2.59		201	5년 10월 1	일부	로 지역구분	폐지		
2015	68.33	4.20	70.10	4.20	66.45	5	4.20			
2014	65.58	3.90	67.29	3.90	63.77	7	3.90			
2013	63.07	4.25	64.76	3.90	61.38	3	1.34		2년 11월 .B지역으	27일부로 로 통합
2012	60.50	4.20	62.33	4.20	60.57	7	4.20	59.	08	4.20
2011	58.06	4.10	59.82	4.10	58.13	3	4.10	56.	70	4.09
2010	55.77	4.85	57.46	4.85	55.84	1	4.84	54.	47	4.85
2009	53.19	4.60	54.80	4.20	53.26	6	4.50	51.	95	4.90
2008	50.84	4.00	52.59	4.00	50.96	3	4.00	49.	50	4.00
2007	48.88	3.90	50.57	3.90	49.00	)	3.90	47.	60	3.90
2006	47.05	4.00	48.67	4.00	47.16	3	4.00	45.	81	4.00
2005	45.24	4.50	46.80	3.40	45.35	5	3.70	44.	05	4.60
2004	43.29	4.20	45.24	3.60	43.73	3	4.50	42.	11	4.50
2003	41.53	4.50	43.65	3.60	41.85	5	4.40	40.	30	5.20
2002	39.74	5.80	42.15	4.50	40.10	)	5.70	38.	30	6.80

## 주) 2015.10.1. 지역 구분이 폐지되었으나, 2019년 1.1.자로 일반/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 2개로 분리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 Baja California(Ensenada, Playas de Rosarito, Mexicali, Tecate, Tijuana, San Luis Rio Colorado), Sonora(San Luis Rio Colorado, Puerto Penasco, General Plutarco Elias Calles, Caborca, Altar, Saric, Nogales, Santa Cruz, Cananea, Naco, Agua Prieta), Chihuahua(Janos, Ascension, Juarez, Praxedis G. Guerrero, Guadalupe, Coyame del Sotol, Ojinaga, Manuel Benavides), Coahuila(Ocampo, Acuna, Zaragoza, Jimenez, Piedras Negras, Nava, Guerrero, Hidalgo), Nuevo Leon(Anahuac(,

Tamaulipas(Nuevo Laredo, Guerrero, Mier, Miguel Aleman, Camargo, Gustavo Diaz Ordaz, Reynosa, Rio Bravo, Valle Hermoso, Matamoros)

일반지역: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

## □ 2019년 직종별 전문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일 기준, 페소)

1   Albarilleria, oficial de   176.72   120.70	구 분	직종	북부국경	일반
3	1	Albañilería, oficial de	176.72	120.70
4 Cajero(a) de máquina registradora 176.72 107.07 5 Cantinero(a) preparador(a) de bebidas 176.72 109.56 6 Carpintero(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8.47 7 Carpintero(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8.47 8 Cocinero(a), mayor(a) en restaurantes, fondas y demás establecimientos de preparación y venta de alimentos de alimentos de preparación y venta de alimentos de dificios y reparación de 176.72 110.79 10 Colocador(a) de mosaicos y azulejos, oficial 176.72 118.00 11 Construcción de edificios y casas habitación, yesero(a) en 176.72 111.67 12 Cortador(a) en talleres y fábricas de manufactura de calzado, oficial 176.72 118.00 13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76.72 110.689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76.72 110.08 15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76.72 112.50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2.50 176.72 114.45 179 Draga, operador(a) de vi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vi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viculos con grúa 176.72 119.87 2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9.80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oparact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176.72 119.28 22 Electricista instal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9.28 23 Electricista instal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9.28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8.80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08.80 26 Ferreterias y tiapaleri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08.80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06.89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6.28	2	Boticas, farmacias y drogu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04.99
5         Cartinero(a) preparador(a) de bebidas         176.72         109.56           6         Carpintero(a) de obra negra         176.72         120.70           7         Carpintero(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8.47           8         Cocinero(a), mayor(a) en restaurantes, fondas y demás establecimientos de preparación y volta de alimentos         176.72         122.42           9         Colchones, oficial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176.72         110.79           10         Colocador(a) de mosalcos y azulejos, oficial         176.72         118.00           11         Construcción de edificios y casas habitación, yesero(a) en         176.72         111.67           12         Cortador(a) en talleres y fábricas de manufactura de calzado, oficial         176.72         108.36           13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76.72         106.89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76.72         110.08           15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76.72         112.50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2.48           17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4.45	3	Buldózer y/o traxcavo, operador(a) de	176.72	127.14
6 Carpintero(a) de obra negra 176.72 120.70 7 Carpintero(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8.47 8 Cocinero(a), mayor(a) en restaurantes, fondas y demás establecimientos de preparación y verita de alimentos oficial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176.72 122.42 9 Colchones, oficial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176.72 110.79 10 Colocador(a) de mosaicos y azulejos, oficial 176.72 118.00 11 Construcción de edificios y casas habitación, yesero(a) en 176.72 111.67 12 Cortador(a) en talleres y fábricas de manufactura de calzado, oficial 176.72 108.36 13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alleres o fábricas 176.72 106.89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abajo a domicillo 176.72 110.08 15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76.72 112.50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23.48 17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28.45 2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20.40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9.28 22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9.28 23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9.28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19.46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19.39 26 Encertarias y t/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9.49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9.49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6.28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10.82	4	Cajero(a) de máquina registradora	176.72	107.07
7         Carpintero(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8.47           8         Cocinero(a), mayor(a) en restaurantes, fondas y demás establecimientos de preparación y vorta de alimentos         176.72         122.42           9         Colchones, oficial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176.72         110.79           10         Colocador(a) de mosaicos y azulejos, oficial         176.72         1118.00           11         Construcción de edificios y casas habitación, yesero(a) en         176.72         111.67           12         Cortador(a) en talleres y fábricas de manufactura de calzado, oficial         176.72         108.36           13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alleres o fábricas         176.72         106.89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76.72         110.08           15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76.72         112.50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2.50           17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	5	Cantinero(a) preparador(a) de bebidas	176.72	109.56
8         Cocinero(a), venta de alimentos         176.72         122.42           9         Colchones, oficial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176.72         110.79           10         Colchones, oficial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176.72         118.00           11         Construcción de edificios y casas habitación, yesero(a) en         176.72         111.67           12         Cortador(a) en talleres y fábricas de manufactura de calzado, oficial         176.72         108.36           13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lo         176.72         106.89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lo         176.72         110.08           15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76.72         112.50           16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76.72         112.50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2.50           17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28.45           20         Ebanista	6	Carpintero(a) de obra negra	176.72	120.70
8         venta de alimentos         176.72         122.42           9         Colchones, oficial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176.72         110.79           10         Colocador(a) de mosalcos y azulejos, oficial         176.72         118.00           11         Construcción de edificios y casas habitación, yesero(a) en         176.72         111.67           12         Cortador(a) en talleres y fábricas de manufactura de calzado, oficial         176.72         108.36           13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alleres o fábricas         176.72         106.89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76.72         110.08           15         Chofer ac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76.72         112.50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23.48           17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176.72         128.45           2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8.00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	7	Carpintero(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8.47
10 Colocador(a) de mosaicos y azulejos, oficial 11 Construcción de edificios y casas habitación, yesero(a) en 11 Construcción de edificios y casas habitación, yesero(a) en 11 Cortador(a) en talleres y fábricas de manufactura de calzado, oficial 12 Cortador(a) en confección de ropa en talleres o fábricas 13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5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2.50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2.50 16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28.45 2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28.45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8.00 22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9.28 23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0.89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76.72 176.72 176.72 176.72 176.73 176.72 176.73 176.74 176.75 176.75 176.76 176.77 176.77 176.78 176.79 176.79 176.79 176.79 176.79 176.70	8		176.72	122.42
11 Construcción de edificios y casas habitación, yesero(a) en 176.72 111.67 12 Cortador(a) en talleres y fábricas de manufactura de calzado, oficial 176.72 106.89 13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alleres o fábricas 176.72 106.89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76.72 110.08 15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76.72 112.50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23.48 17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28.45 2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20.40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176.72 119.28 22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4.45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4.64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15.40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6.28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16.72 116.28	9	Colchones, oficial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176.72	110.79
12 Cortador(a) en talleres y fábricas de manufactura de calzado, oficial 13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alleres o fábricas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5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2.50 176.72 112.50 177.72 112.50 178.72 112.50 189.73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8.72 119.57 189.74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8.72 119.57 189.75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8.72 114.45 199.76 Draga,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8.72 1128.45 20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ción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22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23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8.72 114.45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8.72 108.90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8.72 115.40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8.72 115.40 28 Gasolinero(a), oficial 178.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8.72 116.28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0	Colocador(a) de mosaicos y azulejos, oficial	176.72	118.00
13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alleres o fábricas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5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2.50  176.72 112.50  18 Chofer de camioneta de carga en general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28.45  2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22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23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4.64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1.37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6.28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16.28	11	Construcción de edificios y casas habitación, yesero(a) en	176.72	111.67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5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23.48 17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176.72 128.45 2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22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23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26 Ferreteri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27 Fogonero(a), oficial 28 Gasolinero(a), oficial 29 Herrería, oficial de 30 Hojalatero(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31 176.72 118.47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2	Cortador(a) en talleres y fábricas de manufactura de calzado, oficial	176.72	108.36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76.72  112.50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12.48  17 Chofer de camioneta de carga en general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8.00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176.72  118.00  22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9.28  23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4.45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4.64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04.64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5.40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6.28  176.72  116.28  176.72  116.28  176.72  116.28  176.72  116.28	13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alleres o fábricas	176.72	106.89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23.48 17 Chofer de camioneta de carga en general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176.72 128.45 2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20.40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176.72 118.00 22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9.28 23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4.45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4.64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08.90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5.40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6.28 116.27 116.28 116.28 128.45 129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14	Costurero(a) en confección de ropa en trabajo a domicilio	176.72	110.08
17 Chofer de camioneta de carga en general  176.72 119.57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176.72 128.45  2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22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23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26 Ferreteri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5.40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116.28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16.28	15	Chofer acomodador(a) de automóviles en estacionamientos	176.72	112.50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19 Draga, operador(a) de 176.72 128.45 2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20.40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176.72 118.00 22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9.28 23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4.45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4.64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08.90 26 Ferreterías y ti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76.72 115.40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6.28 116.72 118.47 116.72 118.47	16	Chofer de camión de carga en general	176.72	123.48
Draga, operador(a) de 176.72 128.45  Draga, operador(a) de 176.72 120.4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20.40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176.72 118.00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9.28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4.45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4.64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08.90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1.3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5.40  Gasolinero(a), oficial 176.72 116.89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17	Chofer de camioneta de carga en general	176.72	119.57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20.40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176.72  118.00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9.28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4.45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4.64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08.90  Encargad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1.3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5.40  Basolinero(a), oficial  176.72  116.28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18	Chofer operador(a) de vehículos con grúa	176.72	114.45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176.72 118.00  22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9.28  23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4.45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4.64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08.90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1.37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5.40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06.89  29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19	Draga, operador(a) de	176.72	128.45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9.28  23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4.45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4.64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08.90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1.37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5.40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06.89  29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20	Ebanista en fabricación y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20.40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Gasolinero(a), oficial  Herrería, oficial de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14.45  106.89  176.72  116.28  176.72  118.47	21	Electricista instalador(a) y reparador(a)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oficial	176.72	118.00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4.64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08.90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1.37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5.40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06.89  29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22	Electricist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9.28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08.90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1.37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5.40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06.89 29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23	Electricista reparador(a) de motores y/o generadores en talleres de servicio, oficial	176.72	114.45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1.37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5.40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06.89  29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24	Empleado(a) de góndola, anaquel o sección en tiendas de autoservicio	176.72	104.64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5.40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06.89         29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25	Encargado(a) de bodega y/o almacén	176.72	108.90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06.89  29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26	Ferreterías y tlapalería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11.37
29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27	Fogonero(a) de calderas de vapor	176.72	115.40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28	Gasolinero(a), oficial	176.72	106.89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29	Herrería, oficial de	176.72	116.28
	30	Hojalatero(a) en la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8.47
32 Manejador(a) en granja avícola 176.72 103.35	31	Lubricador(a) de automóviles, camiones y otros vehículos de motor	176.72	107.82
	32	Manejador(a) en granja avícola	176.72	103.35

구 분	직종	북부국경	일반
33	Maquinaria agrícola, operador(a) de	176.72	121.37
34	Máquinas para madera en general, oficial operador(a) de	176.72	115.40
35	Mecánico(a) en reparación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25.14
36	Montador(a) en talleres y fábricas de calzado, oficial	176.72	108.36
37	Peluquero(a) y cultor(a) de belleza en general	176.72	112.50
38	Pintor(a) de automóviles y camiones, oficial	176.72	116.28
39	Pintor(a) de casas, edificios y construcciones en general, oficial	176.72	115.40
40	Planchador(a) a máquina en tintorerías, lavanderías y establecimientos similares	176.72	107.07
41	Plomero(a) en instalaciones sanitarias, oficial	176.72	115.63
42	Radiotécnico(a) reparador(a) de aparatos eléctricos y electrónicos, oficial	176.72	120.40
43	Recamarero(a) en hoteles, moteles y otros establecimientos de hospedaje	176.72	104.64
44	Refaccionarias de automóviles y camiones, dependiente(a) de mostrador en	176.72	108.90
45	Reparador(a) de aparatos eléctricos para el hogar, oficial	176.72	113.97
46	Reportero(a) en prensa diaria impresa	248.09	248.09
47	Reportero(a) gráfico(a) en prensa diaria impresa	248.09	248.09
48	Repostero(a) o pastelero(a)	176.72	120.70
49	Sastrería en trabajo a domicilio, oficial de	176.72	121.37
50	Secretario(a) auxiliar	176.72	124.85
51	Soldador(a) con soplete o con arco eléctrico	176.72	119.28
52	Tablajero(a) y/o camicero(a) en mostrador	176.72	112.50
53	Tapicero(a) de vestiduras de automóviles, oficial	176.72	114.45
54	Tapicero(a) en reparación de muebles, oficial	176.72	114.45
55	Trabajo social, técnico(a) en	176.72	136.48
56	Vaquero(a) ordeñador(a) a máquina	176.72	104.64
57	Velador(a)	176.72	106.89
58	Vendedor(a) de piso de aparatos de uso doméstico	176.72	110.08
59	Zapatero(a) en talleres de reparación de calzado, oficial	176.72	108.36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 www.gob.mx/conasami(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멕시코 연방 노동법 (Ley Federal del Trabajo)

(작성자) 주멕시코대사관 직책 공사참사관 성명 노원일(winoh05@mofa.go.kr)

## 16. 미국

=	국 명	미국(Uniteed States Of America)		
ç	선 어	영어		
Ę	면 적	9,826,675 <sup>km²</sup>		
ç	<u> </u> 구	3억2,867만명(2019.4.5 기준)		
2	수 도	워싱턴 D.C(Washington, D.C)		
2	F요도시	뉴욕,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2	등 교	기독교 45%, 천주교 20%, 무교 24%, 기타 11%(2016)		
교 육		대부분 주에서 12년제의 의무교육 실시		
<u> </u>	화폐 단위	US 달러(USD, \$)		
	GDP	19조3,900억달러 (2017)		
	1인당 GDP	53,129달러(2017)		
 주요 경제	GDP 성장률	2.3%(2017)		
지표	교역	수출 : 2조730억달러 / 수입: 2조5,850억달러(2019.1)		
	실업률	3.8%(2019.3)		
물가상승률		1.5%(2018.3~2019.2)		
· ·	미국대사관 뮄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us-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미국 최초의 최저임금법령은 1912년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에서 주법으로 만들어졌으나 동법에 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지 연소자와 여성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권고(non-compulsory)할 수 있었음
  - ※ 동 법은 당시 직물공장 등에서 여성 등의 노동력 착취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앞장섰던 여성노동조합연합(Women's Trade Union League) 등의 노력으로 통과됨
- 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 주들이 그 뒤를 따라 1913년 유사한 주 법령을 만들었으며, 1923년에는 총 15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러한 법령을 채택하였음
  - 그러나 당시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들 최저임금 관련 주법령을 "최저임금이 자기스스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사용자의 자유로운 임금계약체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위헌이라고 판정
- 대공황이 닥친 1930년대에도 국가적으로 규율되는 최저임금이나 노동자들을 착취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은 없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은 매우 적은 임금만을 받으며 공장 등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해 왔음
  - 노동조합들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연방대법원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사용자

들은 대공황기간 내내 엄청난 구직수요와 그에 따른 저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었음

- 이에 노동자의 빈곤문제가 엄청난 미국의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고,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Franklin D. Roosevelt는 1933년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다시 연방대법원은 위헌 결정하였고,
  - 1936년 재선 캠페인기간에 노동자들을 헌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후 압도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1937년 결국 연방 대법원은 Washington주의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합헌으로 인정함
  - 이후 1938년 초에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 FLSA)이 제정되었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25센트로 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아동노동금지, 산업안전관련규정 등 도입

## 2 법적근거

- 최저임금은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 FLSA)과 각 주의 최저임금 법령이 규율함
  - 연방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9.7.24.부터 발효된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해 설정된 7.25달러이며,
  - 앨라바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5개 주(연방법 적용)를 제외한 45개 주 및 워싱턴 DC는 연방법 수준과 같거나 상회하는 주 최저임금법령을 별도로 가지고 있음

- 연방법(FLSA)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 최저임금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주 최저임금이 적용됨
- 다만,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주 최저임금이 적용

## │ 연방법(FLSA) 적용대상

#### 1. 사업체 적용범위

3

- 2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연간 총매출 또는 거래규모가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체(businesses or organizations)
- ㅇ 연매출 및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음
  - 병원, 사회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등 각종 학교
  -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등 정부기관

## 2. 근로자 적용범위

- 비록 사업체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States) 간의 통상(서로 다른 주간의 물품의 거래 및 생산, 사람이나 물품 등의 운송 등과 관련된 산업, Interstate commerce)에는 FLSA가 적용됨
  - 예컨대, 물건을 다른 주에도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 이런 상품의

생산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두 FLSA의 적용대상임

- ※ 직접 상품의 부품을 조립하는 근로자들, 정기적으로 다른 주에 있는 고객등에게 전화하는 근로자들, 그 사업체의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근로자들, 상업용 편지를 쓰는 비서들, 상품판매등을 위해서 다른 주로 여행하는 근로자들. 해당상품 제조 건물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이에 해당함
- 가정부, 전일제 아이돌보미, 요리사 등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들 (domestic service workers)도 일반적으로 동 법의 적용대상임

#### 3. 특례적용 대상

## ○ 연소자(Youth Employees)

- 20세 미만 연소노동자의 경우 고용 후 최초 90일간(근로일이 아닌 달력일)은 연소자 최저임금(\$4.25) 적용 가능
- 다만, 사용자는 연소근로자 고용을 위해 기존의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그의 근로시간, 임금 또는 고용상 부가급여 축소 금지

## ○ 직업훈련생(Student-learners, Vocational education students)

- 16세 이상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들이 노동자증명서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연방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시급으로 고용할 수 있음

## ○ 정규 학생(Full-time students)

- 소매 또는 서비스제공 시설, 농업,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일하는 풀타임 학생에 대해서는 그들이 노동자증명서를 취득 했을 경우 연방최저임금의 85%이상의 시급으로 고용 가능

- 단, 학기 중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2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또 대학의 방학기간 중에는 1주에 40시간 이내로 제한하여야 함

## ○ 장애근로자(Workers with disabilities)

- 고용주는 노동부 인가를 받아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그로 인해 업무수행 능력이 손상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손상된 생산성 등에 비례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이 가능함
- 단,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야 최저임금 이하의 지급이 가능

## ○ 팁을 받는 근로자(Tipped employee)

- 근로자가 ①팁과 임금을 합하면 그 수입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②받은 팁을 전액 수령하며(일부 예외 있음), ③ 고용주가 근로자 에게 tip credit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고지하는 경우는
- 통상적으로 매월 30달러 이상의 팁을 바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2.13 이상만 지급하면 됨
- 만일 팁과 받은 임금의 합이 연방 최저임금(\$7.25)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주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함

## 4. 적용제외 대상

○ 기업 경영진, 관리직, 전문직 고용인 - 주급이 아닌 월급형태로 급여를 받되 주당 \$455를 초과하는 수준의 월급을 받는 자

- ㅇ 계절적인 놀이 및 여가시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ㅇ 소규모 농장 근로자, 외국선박에서 근무하는 어업종사자
- ㅇ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직 가사종사자
- ㅇ 소규모 신문사 근로자, 배전반 교환원 등
-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분석자,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다만, 시간당 \$27.63 이상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함

##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4

- o 회사별로 시간급, 주급, 월급, 연봉제가 시행되는데 통상임금률 (regular rate)은 1시간당으로 계산됨
  - 주급제 및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당의 임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
  - 위험수당이나 교대수당 등이 추가될 경우 그 추가된 수당부분도 포함하여 주의 임금총액을 주의 실근로시간수로 나눔
  - 반면,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 지급, 경축일·휴가 등 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재량적인 보너스, 이익분배제도 등은 구체적으로 근로의

대상성이 적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됨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에는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비율로 임금을 지급해야함
  - 즉, 사용자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50% 할증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이상이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 FLSA)이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의 전부이며, 별도로 성인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고용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식사, 숙박 또는 기타 이러한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예: 직원식당) 등에
소요된 합리적인 금액의 비용(다만, 고용주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필요)

□ 기본 시급(2019.4월 현재 연방최저임금 시간당 **\$ 7.25**)

- □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부담금과 같이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 (부담금)이지만 고용주가 납부하는 금원
- □ **팁**(다만, 팁을 받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2.13 이상을 주어야 하며, 팁 금액과 지급임금의 합이 연방최저임금인 시간당 \$7.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

- 이는 월 \$30 이상의 tip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tip credit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하며, 근로자는 실제로 tip을 가질 수 있어야 함
- □ 각종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연방법인 FLSA에는 주휴수당 규정이 없으며, 이처럼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여부는 고용 계약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간 결정됨
  - ※ 다만, 미국 고용관계의 특성상 만약 당사자간 결정에 따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분쟁 발생시에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는 고용노동관의 분석이며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는 찾기 어려움)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 상여금

- 고용주가 정한 일정기준을 토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로 고용주와 피고용자간의 면담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짐
  - 상여금에 대해서는 FLSA(공정근로기준법)는 어떠한 기준도 없으며, 다루지도 않음

## □ 시간외 수당

○ FLSA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기본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며, 이러한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 최저임금 준수여부 감독은 미국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청(The Wage and Hour Division: WHD)이 담당함
  - WHD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FLSA에 의해서 고용주가 유지해야할 각종 기록 등을 점검할 권한이 있으며, 만약 고용주가WHD 감독관의 방문을 거부할 경우에는 WHD 청장은 고용주에게 강제구인장(subpoena) 발부가 가능함
    - 이러한 권한을 통해 WHD는 최저임금 위반을 조사하고 적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수습근로자 또는 풀타임 학생 등 부분적인 법 적용 예외를 승인함
    - 이러한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청은 미국 전역에 지청을 운영
      - 감독관(inspector)들이 정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임금기록을 체크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

#### 2. 최저임금 이행확보 수단

### □ 과태료(Civil penalty)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반복적이거나 고의로 위반 하는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10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이에 불복하는 고용주는 행정법 판사에 대해 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노동부장관은 해당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기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민사소송

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체불된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위반 등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근로자는 신청 불가)
- 특히, 이를 통해 최저임금 조항 등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州간의 통상을 금지할 수 있음

## □ 손해배상소송

○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형사상 소추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공정근로기준법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willful violations)시 고용주에 대한 형사상 소추가 가능함
- 유죄판결 시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병과가 가능함. 다만,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은 불가함

#### □ 특별 제척기간

최저임금 위반 등에 기인한 FLSA 소송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 통상 적용되지만, 고의적 위반(willful violation)의 경우 3년
 적용됨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 소급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back wage)의 액수 추정
  - 통상 법위반을 적발하는 감독관들이 소급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 액수를 추정함
  - 사용자는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할 기회를 가짐
- □ 추정된 임금에 대한 합의와 고용주의 자발적 지급의사가 있는 경우
- 사용자가 추정된 임금에 대해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지급한다면 합의된 금액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WHD로부터 근로자 에게 보내짐
  - 근로자는 소제기와 같은 행위는 못하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가 없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음
- □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고용주의 자발적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량으로 소급임금 지급의 소를 연방1심법원(Federal District Court)에 제기할 수 있음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근로자도 자신의 주도하에 연방 또는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다만,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위반 금지명령과 금전적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는 금전적 배상만을 구할 수 있음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연방의회(연방최저임금) 및 주 의회(주 최저임금)가 연방법(공정근로 기준법 등) 또는 주법 개정을 통해 결정

# 2 결정방법 및 절차

- ㅇ 일반적인 법 개정절차에 따름
  - 연방최저임금은 연방의회에 최저임금 개정안이 제출되고, 상하원에서 심의하여 개정이 승인된 후 대통령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됨
  -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통상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상하원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여타 법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으나 최근 행사된 사례는 없음

# 3 결정기준, 고시방법 및 갱신주기

- 의회가 주로 물가상승이나 생계비 증가 등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
  -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법에 별도의 결정기준이 있거나 고시방법, 갱신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음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 연방정부

- 일반근로자 \$7.25(시간급), 팁을 받는 근로자는 \$2.13
  -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음

#### □ 주정부

- 30개 주(DC포함)에서는 주 법령 등으로 연방법(Fair Labor Standard Act : FLSA)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 연방법(FLSA)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 최저임금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주 최저임금이 적용
- 2019년의 경우 19개의 주(DC포함\*)가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을 인상 했으며, DC(\$13.25)를 제외하면 주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이 각 \$12로서 가장 높음
  - \* 단, DC는 '19.7.1 부터 인상
  - \* DC는 컬럼비아 특별구로 미국 연방정부 소재지. 일반적으로 워싱턴DC라고함

(단위: US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방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앨라바마	_	_	_	_	_	_	_	_	-	_	_
알라스카	7.15	7.75	7.75	7.75	7.75	7.75	8.75	9.75	9.80	9.84	9.89

아라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원리포니아   800   800   800   800   800   800   900   9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1   12.0	애리조나	7.25	7.25	7.35	7.65	7.80	7.90	8.05	8.05	10.00	10.50	11.00
공로라도         7.28         7.24         7.36         7.64         7.78         8.00         8.23         8.31         9.30         10.20         11.10           교내타것         8.00         8.25         8.25         8.25         8.70         9.15         9.60         10.10         10.10         10.10           필라웨어         7.15         7.25         7.25         7.25         7.25         7.75         7.75         8.25         9.25         7.25         7.25 <t< td=""><td>아칸소</td><td>6.25</td><td>6.25</td><td>6.25</td><td>6.25</td><td>6.25</td><td>6.25</td><td>7.50</td><td>8.00</td><td>8.50</td><td>8.50</td><td>9.25</td></t<>	아칸소	6.25	6.25	6.25	6.25	6.25	6.25	7.50	8.00	8.50	8.50	9.25
교비타対         800         825         825         825         870         915         960         10.10         10.10         10.10         世紀에         71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826         825         725 <t< td=""><td>캘리포니아</td><td>8.00</td><td>8.00</td><td>8.00</td><td>8.00</td><td>8.00</td><td>9.00</td><td>9.00</td><td>10.00</td><td>10.50</td><td>11.00</td><td>12.00</td></t<>	캘리포니아	8.00	8.00	8.00	8.00	8.00	9.00	9.00	10.00	10.50	11.00	12.00
반타웨어         7.15         7.25         7.25         7.25         7.75         7.75         8.25         8.25         8.75           플로리다         7.21         7.25         7.25         7.67         7.79         7.38         8.05         8.05         8.10         8.25         8.46           조지아         5.15         5.1	콜로라도	7.28	7.24	7.36	7.64	7.78	8.00	8.23	8.31	9.30	10.20	11.10
종로리다 7.21 7.25 7.25 7.67 7.79 7.89 8.05 8.05 8.10 8.25 8.46 조지아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	코네티컷	8.00	8.25	8.25	8.25	8.25	8.70	9.15	9.60	10.10	10.10	10.10
종자아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	델라웨어	7.15	7.25	7.25	7.25	7.25	7.75	7.75	8.25	8.25	8.25	8.75
하위이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플로리다	7.21	7.25	7.25	7.67	7.79	7.93	8.05	8.05	8.10	8.25	8.46
아이다호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	조지아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인디애나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	하와이	7.25	7.25	7.25	7.25	7.25	7.25	7.75	8.50	9.25	10.10	10.10
인디애나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	아이다호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아이오와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일리노이	7.75	8.00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캔자스         2.66         7.25         8.25         8.75         8.00         10.00         11.00	인디애나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천타키   6.55   7.25   8.25   8.75   8.75   10.10	아이오와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무이지애나	캔자스	2.6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메인 7.25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	캔터키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매릴랜드 6.55 7.25 7.25 7.25 7.25 7.25 8.25 8.75 10.10 10.10 메사추세츠 8.00 8.00 8.00 8.00 8.00 8.00 9.00 10.00 11.00 11.00 12.00 미시건 7.40 7.40 7.40 7.40 7.40 8.15 8.15 8.50 8.90 9.25 9.25 미네소타 6.15 6.15 6.15 6.15 6.15 8.00 9.00 9.00 9.50 9.50 9.86 9.86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_	_	-	_	_	_	_	_	_	_	_
메사추세츠 8.00 8.00 8.00 8.00 8.00 8.00 9.00 10.00 11.00 11.00 12.00 미시건 7.40 7.40 7.40 7.40 8.15 8.15 8.50 8.90 9.25 9.25 미네소타 6.15 6.15 6.15 6.15 6.15 8.00 9.00 9.50 9.50 9.86 9.86 미시시피	메인	7.25	7.50	7.50	7.50	7.50	7.50	7.50	7.50	9.00	10.00	11.00
미시건 7.40 7.40 7.40 7.40 7.40 8.15 8.15 8.50 8.90 9.25 9.25 미네소타 5.25/ 5.25/ 5.25/ 5.25/ 5.25/ 6.15 8.00 9.00 9.50 9.50 9.86 9.86 미시시피	매릴랜드	6.55	7.25	7.25	7.25	7.25	7.25	8.25	8.75	8.75	10.10	10.10
미네소타 5.25/ 5.25/ 5.25/ 6.15 5.25/ 6.15 6.15 6.15 6.15 6.15 8.00 9.00 9.50 9.50 9.86 9.86 의용6 의용6 의무리 기사시피	메사추세츠	8.00	8.00	8.00	8.00	8.00	8.00	9.00	10.00	11.00	11.00	12.00
미시시피	미시건	7.40	7.40	7.40	7.40	7.40	8.15	8.15	8.50	8.90	9.25	9.25
미시시피	미네스타	5.25/	5.25/	5.25/	5.25/	5.25/	6.50/	7.25/	7.25/	7.75/	8.04/	8.04/
미주리 7.05 7.25 7.25 7.25 7.35 7.50 7.65 7.65 7.65 7.70 7.85 8.60  본타나 4.00/ 6.90 7.25 7.35 7.65 7.80 7.90 8.05 8.05 8.15 8.30 8.50  네브라스카 6.55 7.25 7.25 7.25 7.25 7.25 8.00 9.00 9.00 9.00 9.00 9.00  네바다 6.55/ 6.55/ 7.5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	1 1 1 1	6.15	6.15	6.15	6.15	6.15	8.00	9.00	9.50	9.50	9.86	9.86
문타나 4.00/ 6.90 7.25 7.25 7.25 7.25 7.25 7.25 8.00 9.00 9.00 9.00 9.00 1.00 1.00 1.00 1	미시시피	_	_	_	_	_	_	_	_	_	_	_
변부나 6.90 /7.25 7.35 7.65 7.80 7.90 8.05 8.05 8.15 8.30 8.50 네브라스카 6.55 7.25 7.25 7.25 7.25 8.00 9.00 9.00 9.00 9.00 9.00 네바다 6.55/ 6.85 7.5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	미주리	7.05	7.25	7.25	7.25	7.35	7.50	7.65	7.65	7.70	7.85	8.60
네바다 6.55/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몬타나						7.90	8.05	8.05	8.15	8.30	8.50
대하다 6.85 7.5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	네브라스카	6.55	7.25	7.25	7.25	7.25	7.25	8.00	9.00	9.00	9.00	9.00
뉴햄프셔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네바다							l				
뉴저지 7.15 7.25 7.25 7.25 7.25 8.25 8.38 8.38 8.44 8.60 <b>8.85</b>	뉴햄프셔											
.    = :	'' ' ' 뉴멕시코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뉴욕	7.15	7.25	7.25	7.25	7.25	8.00	8.75	9.00	9.70	10.40	11.10
노스캐롤 라이나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노스다코타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오하이오	7.30	7.30	7.40	7.70	7.85	7.25/ 7.95	7.25/ 8.10	7.25/ 8.10	8.15	8.30	8.55
오클라호마	2.00/ 6.55	2.00/ 7.25									
오레건	8.40	8.40	8.50	8.80	8.95	9.10	9.25	9.75	9.75	10.75	10.75
펜실베니아	7.1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로드이일랜드	7.40	7.40	7.40	7.40	7.40	8.00	9.00	9.60	9.60	10.10	10.50
사우스캐롤 라이나	_	-	_	-	-	-	_	-	-	_	-
사우스다코타	6.55	7.25	7.25	7.25	7.25	7.25	8.50	8.55	8.65	8.85	9.10
테네시	_	_	_	_	-	_	_	_	_	_	_
텍사스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유타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버몬트	8.06	8.06	8.15	8.46	8.60	8.73	9.15	9.60	10.00	10.50	10.78
버지니아	6.5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워싱턴	8.55	8.55	8.67	9.04	9.19	9.32	9.47	9.47	11.00	11.50	12.00
웨스트 버지니아	7.25	7.25	7.25	7.25	7.25	7.25	8.00	8.75	8.75	8.75	8.75
위스콘신	6.50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와이오밍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D·C	7.55	8.25	8.25	8.25	8.25	9.50	10.50	11.50	11.50	13.25	13.25

- 주1) 앨라바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5개주는 별도로 주 법령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방법이 적용됨. 진한색은 '19년도에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19개)
- 주2)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26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금액이며, 25인이하 사업장은 \$11.00(미 노동부의 "Consolidated Minimum Wage Update Table"에 기재된 CA의 최저임금). DC는 '19.7.1부터 \$14로 인상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 미노동부 BLS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는 16세 이상 근로자는 80.4백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58.3%를 차지
  - 시간급을 받는 자 중에서 정확히 연방 최저임금(\$7.25)을 받는 근로자는 542천명이며, 연방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는 1.3백만명임
  - 따라서 연방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총 1.8백만명으로, 이는 전체 시간급 근로자의 2.3%에 해당함(전년보다 0.4%P 하락)
- 시간급 근로자 중 연방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근로자 비율은 해당 자료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9년 13.4%에서 점차 감소 추세

<연방최저임금 이하 시급 근로자 비율 추이>

(단위: US \$, %)

연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연방 최저임금	2.90	3.10	3.35	3.35	3.35	3.35	3.35	3.35	3.35	3.35
비율	13.4	15.1	15.1	12.8	12.2	11	9.9	8.8	7.9	6.5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연방 최저임금	3.35	3.80	4.25	4.25	4.25	4.25	4.25	4.75	5.15	5.15
비율	5.1	5.1	8.4	7.7	6.7	6.2	5.3	5.4	6.7	6.2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방 최저임금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85	6.55
비율	4.6	3.6	3	3	2.9	2.7	2.5	2.2	2.3	3.0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방 최저임금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비율	4.9	6.0	5.2	4.7	4.3	3.9	3.3	2.7	2.3	

※ 출처: BLS Reports(March 2018), Characteristics of Minimum Wage Workers, 2017

3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이슈 및 동향

## □ 민주당, "The Raise the Wage Act of 2019" 발의

- 지난 1.16일 민주당은 주요 리더들인 Bernie Sanders 상원의원,
   Bobby Scott 하원 교육노동위원장 등 연방상원 31명, 연방하원 181명이 서명한 "The Raise the Wage Act of 2019"를 발의
  - 동법에 따르면 2019년 연방최저임금을 \$8.55까지 인상한 후 2024년 까지 점진적으로 \$15까지 인상
  - 최저임금 차등적용대상이었던 팁을 받는 근로자, 유소년근로자, 장애 근로자들에 대한 적용제한을 단계적으로 없앰으로써 미국내 모든 full- time 근로자들이 완전한 최저임금 적용됨
  - 2024년 이후에는 중위소득 근로자의 임금(typical worker's wages)과 연동하여 매년 상승
- ㅇ 민주당내 주요 리더들의 반응
  - Bernie Sanders(상원의원): "수년전까지만 해도 시간당 최저임금 \$15는 급진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현재의 연방최 저임금은 초 박봉수준의 임금(starvation wage)이며, 이제 일을 통 해 빈곤을 탈출해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급진적이지 않음."
  - Bobby Scott(하원 교육노동위원장): "미국에서 full time 근로자는 누구도 빈곤에 빠지면 안되며, 동 법안은 거의 4천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높일 것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지역 경제활성화 등 경제에도 자극으로 작용할 것임."

- Nancy Pelosi(하원 의장): "연방최저임금 \$15은 공정성이라는 미국의 근본가치를 확실히 하는 것임. 우리는 일하는 가정들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부자나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견인하는 경제 성장을 이뤄낼 것임."
- Chuck Schumer(상원 리더): "트럼프 대통령은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챔피언이라는 대선 캠페인과는 달리 당선 직후에 일하는 미국인들을 포기했음. Health care를 빼앗은 반면, 기업과 부자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금감면을 했음. 이제 우리가 나설 것임"

#### □ 미 노동부장관 및 공화당내 반응

- 미 노동부장관 Alexander Acosta는 민주당 발의 다음날, "현재 연방 최저임금을 2배수준으로 올릴 경우에는 그간 오랜기간 이어진 고용 창출 추세를 위협하고 미국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자신의 발언의 근거로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참조했음을 밝힘
  - 2017년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 보고서: 동 보고서에서는 시애틀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3으로 인상한 후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9%감소했다고 결론
    - ※ 그러나 미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후, 전체 고용은 오히려 미국 타지역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함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2014년 Congressional Budget Office study: 동 보고서에서는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까지 인상한다면, 향후 2년간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
  - ※ 다만, 동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시 약 90만명의 미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
  - ※ 위 보고서들과 달리 University of Massachusetts 경제학자들은 최근 1979~2016년간 미국내에서 벌어졌던 138건의 주별 최저임금 인상사례를 연구했으며, 그 결과 저소득 근로자들의 순 고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근로자들의 소득은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림
- 공화당도 이번 발의안은 고용창출을 감소시켜 결국 근로자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

#### □ 향후 전망

- '18년말 중간선거시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한 이후 최저임금 \$15 쟁취를 정책 아젠다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힌 바 있음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일부 인상을 찬성 발언도 한바 있으나 현재는 명확치 않으며,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도 반대입장이므로 금번안이 쉽게 관철되기는 어려울 듯함
- 현실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최소한 4개주는
   이미 수년내에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으며,
   그 외 26개주(DC포함)에서도 최저임금은 연방기준을 넘어선 상태이고,
  - 2020 미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등 진보주의 진영과 근로자 집단을 중심으로 더욱 커져나가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행 연방최저임금 \$7.25 보다는 다소간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참고: www.dol.gov (Consolidated Minimum Wage Table)/ www.minimum-wage.org/
The Wall Street Journal "Labor Secretary Says \$15 Minimum Wage Would Kill
Jobs('19.1.18) / East County Today "Democrats Introduce Bill Raising Minimum
Wage to \$15 by 2024('19.1.19)/ The Washington Post "19 States are raising their
minimum wage Jan.1. Progressives plan even more for 2020('18.12.31)/ The New
York Times "In New Jersey, the Minimum Wage Is Set to Rise to \$15 an
Hour('19.1.17)."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 ㅇ 최저임금제도 제도 관련
  - Employment Law Fifth Edition(Thomson Reuters, 2014) by Mark A. Rothstein, Charles B. Craver, Elinor P. Schroeder, Elane W. Shoben, L. Camille Hebert
  - http://www.dol.gov/WHD/minimumwage.htm
  - http://www.minimum-wage.org
  - http://en.wikipidia.org/wiki/Minimum\_wage\_in\_the\_United\_States
- ㅇ 최저임금제도 통계 관련
  - http://www.bls.gov
  - http://www.census.gov
  - http://tradingeconomics.com

(작성자) 주미대사관 고용노동관 신호철(+1-202-939-5664, bdragons21c@korea.kr)

# 17. 브라질

국	명	브라질연방공화국					
언	어	포르투갈어					
민 (20	족 D15년)	백인 45.2%, 물라토(혼혈족) 45.1%, 흑인 8.9%, 동양인 및 기타 0.8%					
면	적	8,511,965 <sup>km²</sup>					
인 (20	구 )17년)	2억 878만명 (IBGE, 브라질 국립통계연구원) 2억 930만명 (세계은행)					
수	도	브라질리아(Brasilia, D.F.)					
주.	요도시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리아, 꾸리찌바, 벨로오리존찌					
1	교 010년)	천주교 65%, 개신교 22%, 기타 토속종교(Umbanda) 등					
화:	폐 단위	Real(R\$)					
	GDP	US\$ 1,800억달러 (R\$/US\$ = 3.76)					
<b>5</b> 0	1인당 GDP	US\$ 8,709달러 (R\$/US\$ = 3.76)					
주요 경제	GDP 성장률	1.1%					
지표 (2018년) (IBGE)	교역규모	수출 : 239.8 / 수입 : 181.2 - 단위: US\$ billion FOB					
(IDGL)	실업률	12.3%					
물가상승률		3.75%					
-	ト질 대 사 관 사 이 트	http://bra-brasilia.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934년 이후 최저임금은 헌법적 권리로 보장됨
- 1936년 최저임금은 식료품, 주택, 의복, 위생 및 교통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일상적 필요(normal needs)를 충당해야 한다고 대통령 법령(Decree-law) 185으로 규정됨
  - ※ 동 법에 의해 브라질내 22개 지역이 구분되고, 위원회가 구성(노사관계 대표자들로 구성)
- 1938년 최초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브라질에 적용하고자 했던 Getulio Vargas대통령에 의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 금제도를 도입함
- 1943년 Vargas대통령은 통합노동법(CLT)을 제정하여 노사관계를 종합하였는바, 동 법 제76조에 최저임금제도를 규정함
- 1946년 최저임금 대상 범위 확대(노동자 → 노동자 가족)
- 1964년 노동자와 사용자로 구성된 지역위원회 폐지(법령 4589) 단, 22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은 유지
- 1988년 민주주의 헌법(군부독재 종식 후 개정)에서 최저임금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아닌 의회입법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
  -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통합 시행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의 실질적 가치 보장을 위해 구매력을 기준으로 결정
- 최저생계의 범위 확대 : 의식주 이외에 교육, 여가, 사회복지 등 추가
- 2000년 보완입법을 통해 주정부가 연방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개별적인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 2017년 11월 발효된 노동법 개혁안은 통합노동법 일정 분야(점심 시간, 노동자 대표 선출, 당직, 재택근무, 성과급, 휴가 등)에 대해 노사 협약이 노동법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사측의 권리 강화
  - 단, 최저임금 등 헌법 규정사항은 여전히 노동법이 우선함

#### 2 법적근거

- □ 브라질 연방헌법 제2편 제2장 사회적 권리에 관한 제6조 및 제7조
  - 제6조 "교육, 보건, 노동, 거주, 여가, 안보, 사회보장, 모성 및 아동 보호, 결핍에 대한 지원은 헌법에 의한 사회적 권리"
  - 제7조 제7항 "전국적인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족들의 기본적 필요 를 충족해야 하며 (중략) 구매력을 유지해야 한다."
- □ 1993년 법령 8716
  - 제1조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될 수 없다.
  - 제2-3조 최저임금은 고정소득과 변동소득을 모두 가진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감액될 수 없다.

## □ 통합노동법(CLT)

- 제76조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직접 지불하며, 농업 종사자 및 성별에 관계없이 일상 노동을 통해 의식주 및 위생과 교통을 고려한 특정시간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제78조 상기 법령 8716 제2-3조의 구체화
- 제117조 최저임금 이하의 계약은 무효이며 동법 제120조에 의해 고용주는 제재를 받는다
- 제118조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은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 모든 노동자와 기업 및 사업장이 해당됨(1988년 헌법 제7조, 통합노 동법 제76, 제78, 제117, 제118조)
- □ 외국인 노동자는 브라질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 받으며, 최저임금 등 통합노동법(CLT)이 제공하는 모든 복지를 누릴 수 있음
  - 아울러,新이민법(2017년 법령 13445)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자신의 법적 신분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음
- □ 장애인에 대해 차등 대우할 수 없음

#### 2. 특례대상

- □ 수습근로자(최대 90일 근무)도 최저임금 등 통합노동법에 의해 규율
  - 단, 인턴의 경우 통합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법령(2008년 11788)에 의해 규율됨
  - 인턴십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무보수로 계약이 가능함(단, 이 경우에도 연간 30일\*의 휴식은 보장하여야함)

<b>3.</b> <sup>3</sup>	적용제	의다	상
------------------------	-----	----	---

특정	직업*의	경우	기본역	임금(1988	헌법	제7조)	$\circ$	별도로	정해	지는
경우	가 있으므	므로, ○	]러한	경우에는	최저	임금이	적분	용되지	않고	해당
직업	기본임금	심이 적	용됨							

\* 브라질에서 특정 직업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직업종류임. 따라서 각 특정 직업의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인상 등 전반 노동 조건이 협상되어 정해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

4

- 임금은 주기적(월급 또는 주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주기가 30 일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통합노동법 제459조)
- 근로자 임금은 브라질 통화로 현금 지급되어야 한다. (통합노동법 제463조)

□ 근로시간

 브라질에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다 (1988 헌법 제7조, 노동통합법 제58조)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만 산입됨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 주휴수당, 교통비, 휴가비 및 상여금(연말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00%)
  - 주휴수당, 교통비, 휴가비 및 상여금은 헌법 제7조에 의해 기본급과 별개로 지급
  - 휴가비는 통상 1년 근무 후 기본급의 1/3 연1회 지급, 상여금은 13개월째 보수를 별도 지급
  - 모든 노동자(최저임금 노동자 포함)는 1개월의 유급휴가를 보장 받음
    - ※ 브라질은 헌법 제7조에 의해 주당 하루치의 유급주휴수당이 보장됨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 브라질 경제부는 지역별 고용노동청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등 전반적으로 브라질 통합노동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 이 외에 노동검찰청(연방검찰청 소속)도 노동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감시
  - ※ 2019년 Jair Bolsonaro 신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노동사회보장부가 폐지되면 서 새로 설립된 경제부로 대부분의 업무가 이관되었음. 기존 노동사회보 장부 및 산하기관들(노동법원, 지역 고용노동청 등)은 문제없이 기능하고 있음.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지역 고용노동청 및 노동검찰청을 통해 노동법 적용 이행을 감시 하여 근로자의 노동권리를 보호함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식
  -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노동계약은 노동부에 정식 등록될 수
     없으며, 계약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됨
  - 브라질은 노동법 관련 소송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 노동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피소될 가능성이 높음 (2016 년 노동법 관련 소송 약 390만 건)

# Ⅱ.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	관

□ 1988년 민주주의 헌법에서 최저임금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아닌 의회입법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함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 연방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결정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은 노동부, 재무부 및 중앙은행이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국회는 승인과정에서 상하원 및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최소 연 1회 회합함
- □ 지역별 최저임금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주정부는 연방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 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음(2018년 현재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리우그란데술, 산타카타리나, 파라 5개 주만이 별도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22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을 따름)

#### 2. 결정절차

□ 최저임금이 법에 의해 규정되는 바, 일반 입법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침

#### <최저임금 결정절차 예시>

- 2004. 4월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안(8.3% 인상)을 의회 제출,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14.1% 인상안 제출
- 6.02. 하원에서 정부안이 승인되고, 상원에 회부
- 6.17. 상원에서 정부 지지정당 의원의 이탈로 야당안이 승인되고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안이 다시 하원으로 돌아와 최종 심의에 회부
- 6.23. 정부 지지정당의 협력을 얻어 정부안 통과(찬성 272표, 반대 172표)

## 3 결정기준 및 도출방법

- □ 헌법 및 노동법은 친 노동 성향이 강해, 물가상승률과 노동자 가족의 기초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그 후 물가상승률을 참고하여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함
- □ 2007년부터는 경제정책 PAC(성장가속 프로그램)으로 최저임금 조정 시 직전 12개월의 물가상승률과 최근 2년간의 GDP성장률을 활용 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됨
  - 종전에는 최저임금 시행시기가 4월과 5월이 많았으나, 이를 개정 해서 시행시기가 2008년 3월 1일, 2009년 2월 1일, 2010년 이후 에는 1월 1일로 변경되었음
- □ 2014년까지는 매년 말에 당해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전년도 GDP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
  - 2015년부터 Dilma Roussef 대통령이 제정한 최저임금 인상법(법령번호: 13,152/2015) 의해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2년 전의 GDP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함. 단, 동 법령 유효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므로 Jair Bolsonaro 신정부는올해 내로 새로운 최저임금 상승정책을 채택해야 하는 상황임
- □ 최저임금 고시 기준(월 최저임금 기준 산정 시간)
  - 브라질에는 전반적으로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 이 내이며, 특정 직업에 따라 근로 시간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야간(22시~05시) 근로의 경우 1일 6시간25분, 1주일 38시간30분

이내로 근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브라질에는 전반적으로 임금을 시간급, 일급 또는 주급으로 지급 하지 않으며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단, 결근, 지각 또는 초과근로시간 등이 발생될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하거나 삭감해 야 하며,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
- 일급: 월급을 30일로 분할(예: 월급이 R\$ 1000,00일 경우, 일급은 R\$ 33.33)
- 시간급: 월급을 220시간으로 분할 (예: 월급이 R\$ 1000.00일 경우, 시간급은 R\$ 4.54) 단, 초과근로시간 발생시, 시간급 기준으로 50%(초과시간이 주중에 발생될 경우) 또는 100%(초과시간이 주 말 또는 휴일에 발생될 경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 \* 1주일 44시간 기준으로. 1개월은 220시간(44시간 x 5주)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고시
- □ 브라질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기본임금이며 의회입법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방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시되며, 브라질 전국의 주요 언론사를 통해 보도됨

# 5 갱신주기

□ 매년 말에 당해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2년 전의 GDP 상승률을 반영하여 갱신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연도별 현황

(단위: 헤알, %)

적용년도	최저임금(월)	인상률
2019.1	998	4.61
2018.1.	954	1.81
2017.1.	937	6.47
2016.1.	880	11.6
2015.1.	788	8.8
2014.1.	724	6.78
2013.1.	678	9
2012.1.	622	14.13
2011.3.	545	6.9
2010.1.1.	510	9.7
2009.2.1.	465	12.0
2008.3.1.	415	9.2
2007.4.1.	380	8.6
2006.4.1.	350	16.7
2005.5.1.	300	15.4
2004.5.1.	260	8.3
2003.4.1.	240	20.0
2002.4.1.	200	11.1
2001.4.1.	180	19.2

<sup>※ 14</sup>세부터 16세 미만은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고 16세 이상은 동일 최저임금 적용

<sup>※</sup> 현 최저임금 제도는 법령 7,872조(2012.12.26.)에 의거 2013.1.1.부터 적용

## 2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ㅇ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 서명
- 최저임금은 2018년 4월 당초 계획했던 1,006해알(월)이 아니라 998해알로 결정되었으며, 2018년 최저임금(954해알)과 비교 시 4.61% 인상됨.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과 예산에 반영된 금액 간의 차이는 인플레이션 하락 때문임
- 브라질은 최근 수년간 법정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왔으며,
   브라질의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수당, 실업수당, 노인 및 장애인 수당 등
   정부지출에 연관이 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각종 수당도 그에 따라 인상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신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노동부는 폐지되고 최저임금은 브라질 경제부에서 담당
- 브라질 노동분야 주무부처는 브라질 경제부이며 관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음: http://www.trabalho.gov.br/

(작성자) 주브라질대사관 경제과 1등서기관 최두원 (e-mail : choi21@mofa.go.kr)

# 18. 아르헨티나

국	명	아르헨티나 공화국(República Argentina)
언	어	스페인어
면	적	2,791,810 <sup>km²</sup>
인	구	44.5 백만명(2018년 추정)
수	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u>·</u>	요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꼬르도바, 로사리오, 라플라타, 마르델플라타, 멘도사 등
종	교	가톨릭(92%), 기독교(2%), 유태교(2%), 기타(4%)
교 육		초등 7년, 중고등 5년 의무교육
화፤	폐 단위	페소(peso)
	GDP	5,075억달러
	1인당 GDP	10,800달러
주요 경제	GDP성장률	-2.6%
지표	교역	1,253억달러
(2018)	실업률	9.1%
	물가상승률	47.6%
대사관	웹사이트	http://arg.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3 적용대상

- □ 사업주
- 1. 적용대상
  - 민간 및 공공 분야의 모든 사업주(법 24013 제140조)
- 2. 적용제외대상
  - 일부 지자체
  - 지자체는 자체 법령으로 규율
- □ 노동자
  - 1. 적용 대상
  - 18세 이상 모든 노동자 (내·외국인 동일 적용)
  - 2. 적용제외 대상
  - 18세 이하 노동자
  - ㅇ 심각한 장애를 가진 노동자
  - 실습생 및 시간제(part-time) 노동자
  - 농업종사자, 가사노동 종사자 및 일부 지자체 노동자
  - 농업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법 22248에 의해 설립된 농업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일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설정 불가

352 ... 최저임금위원회

-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1956년 대통령령 326호에 의해 설정
- 최저임금법을 명백히 승인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관할 범위 내의 공공행정 임금에 관해 독자적인 기준 설정 가능(이 경우 지자체가 승인한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 하한선 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 노동계약법 제103조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계약에 결과 노동자가 받는 급부로서 노동시간 혹은 노동단위에 따라 결정되며, 금전, 주거, 식품, 기회제공 등으로 제공
- 임금에는 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되는 사회보장세도포함
- 임금 지급 주기는 월 단위(월 단위 근로 노동자), 주 혹은 15일(일/ 시간 단위 근로 노동자)로 구분

#### □ 근로시간

- 법 11544 제1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일당 8시간, 주당 4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 농업, 축산업, 가사노동 종사자, 가족회사 등은 제외

$\mathbf{x} \cap \mathbf{n} = \mathbf{n}$	최저임금제도
스얼구가이	ᄼᆡᄶᄓᆖᄱᅜ
十	ᆈᄭᄆᄆᆀᆂ

#### 2. 최저임금 산입임금

- □ 명목임금
  - 명목임금은 현금성 기본급여만을 포함하며 각종 수당 및 보조금은 제외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 가족수당, 보조금 등
  - 노동계약법 제116조에 의하면 법에 규정된 정규 근무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
  - 상여금, 시간외 수당, 현물급여 등은 제외

##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5

○ 아르헨티나 법령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이행지도는 구체적으로 언급 하고 있지 않으며, 법 25877 제29조에 따르면 노동관계 모든 법령의 감독은 노동부 소관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법 25212(Annex II 제5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 법규 위반 시 최저

#### 354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의 30%~200% 범위 내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되는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가중

※ 국립통계원(INDEC)의 2018년 3/4분기 가구동향 설문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아르헨티나 노동자의 약 30% 수준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ㅇ 최저임금법에 구제 관련 규정 부재

# Ⅱ.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 최저임금위원회

- ㅇ 구성
- 위원장 1명(노동부\* 임명), 경영자단체 대표 16명, 노조 대표 16명
- 위원 임기: 4년
- 개회
- 위원장은 재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소집 가능
- 위원 14명(경영자 대표 6명 및 노동자 대표 6명 포함) 이상이 공식적 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및 절차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노동부와 통계청이 수집
   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단체교섭과 유사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의 결정에는 위원 2/3의 찬성 필요
  - 2번의 회기 이후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위원장(노동부 임명)이 결정

- \*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시작함(위원회가 소집되지 않는 해도 있음) / 최근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폭락 및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최저임금이 연간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가 집계하는 민간부문 정규 노동자에 대한 통계치와 국립통계청이 가계 단위로 조사하는 소득 분배 및 소득 추이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 2.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 외부방청 허용 여부

- 회의(plenary session) 개최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며, 일반인의 방청은 허용되지 않음
- 전문가 참석 : 위원회에서 허용여부 결정

### □ 회의록 작성

- 회의록은 회의 결과물에 포함되며, 기록으로 보관
- ㅇ 회의록에 포함되는 내용
- 회의 참석자, 회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논의 의제, 회의 시 발언자 명단
- 각 의제별 투표 결과 및 결정 사항
- 회의록은 위원장 및 노사 측 각 2명(총 5명)의 서명 필요

スロヲルロ	최저임금제도
十五 カノヨ	꾀게 급급제포

### □ 공개여부 및 범위

ㅇ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만을 공개

### □ 공개 시기

○ 최저임금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3일 후 관보를 통해 공개

### 3 결정기준

- o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사회·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위원장인 노동부차관 명의로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에 게재된 날 또는 결의안이 채택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발효

# 4 고시방법

ㅇ 관보에 시간급 및 월급 기준 최저임금 고시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연도	최저임금		
5 五 五	월(시간급×200)	시간	
2019.3.1.	12,500 페소(US\$ 314)	62.50 페소(US\$ 1.56)	
2018.12.1.	11,300 페소(US\$ 309.6)	56.5 페소(US\$ 1.55)	
2018.9.1.	10,700 페소(US\$ 286.1)	53.5 페소(US\$ 1.43)	
2018.7.1.	10,000 페소(US\$ 353.4)	47.50 페소(US\$ 1.67)	
2018.1.1.	9,500 페소(US\$ 465.7)	47.50 페소(US\$ 2.33)	
2017.1.1.	8,060 페소(US\$ 506.2)	40.30 페소(US\$ 2.53)	
2016.1.1.	6,060 페소(US\$ 418)	30.30 페소(US\$ 2.09)	
2015.1.1.	4,716 페소(US\$536)	23.58페소(US\$ 2.68)	
2014.1.1.	3,600 페소(US\$ 450)	18 페소(US\$ 2.25)	
2013.1.1.	3,300 페소(US\$ 606.6)	16.50 페소(US\$ 3.03)	

- ※ 최저임금은 월 200시간 근무기준으로 책정
- ※ 달러화 가치는 최저임금 인상 시점 환율 적용
- □ 아르헨티나는 최저임금 영향률 및 미만율 등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
- □ 2018년 3/4분기 INDEC에서 발표한 가구동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0% 가량이 최저임금 미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추산
  - ※ 아르헨티나는 연금, 사회보험 등의 부담으로 인해 비공식 노동자의 비율이 높으며, INDEC에 따르면 2018년 3/4분기 기준 전체 노동자 대비 비공식 노동자 비율은 34.7%를 기록

# 2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 최근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폭락 및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최저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한해에만 4차례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
- □ 아르헨티나 노동부 최저임금 관련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음
  - o http://www.argentina.gob.ar/trabajo/consejodelsalario

(작성자) 주아르헨티나대사관 2등서기관 전혁

(T: 54-11-3650-2282, e-mail: hjeon15@mofa.go.kr)

# 19. 칠레

국	명	칠레공화국(Republica de Chile)
언 어		스페인어
면	적	756,626km2
인	구	1,875만명(2018년)
수	도	산티아고(Santiago, 인구 7.3백만 명)
주 9	요도시	발파라이소, 콘셉시온, 푼타아레나스
종	卫	카톨릭(59%), 개신교(12%)
교 육		초·중등과정 취학률 평균 97%
화피	ᅨ단위	페소(Peso)
	GDP('18)	3,250억달러
	1인당 GDP('18)	17,196달러
주요 경제	GDP성장률 ('18)	4.0%
지표	교역('18)	수출:754억달러/수입:741억달러
실업률('18)		6.8%
	물가상승률 ('18)	2.43%
대사관	웹사이트	http://chl.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937년 최초로 생계보호가 필요한 극빈자에 식료품 공급
- 1953년 농업부문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제도 적용
- 1956년 산업 및 사업부문 근로자에 적용확대
- 1973년 사회당 Allende 대통령 집권 이후 모든 근로자에 최저임금 제도 적용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노동법」 제 44조: 급여는 시간단위인 일, 주, 2주, 월을 기준으로 하거나, 조치나 작업을 단위로 정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시간 단위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월급여는 월 최저임금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2. 최근 3년 이내(2016~2018년) 법령 개정사항

○ 2016.7월 Ley 20,935 최저임금을 257,500페소로 개정

- 이후 2017.1월, 2017.7월, 2018.1월 기준 최저임금을 각 264,000페소, 270,000페소, 276,000페소로 단계적 인상할 것에 대해 규정
- 2018.9월 Ley 21,112 최저임금을 288,000페소로 개정
  - 이후 2019.3월 기준 301,000페소로 인상할 것에 대해 규정
  - 2020.3월 기준 전년도 GDP 성장률이 4% 미만일 경우 당해 최저임금을 2.5% 인상할 것에 대해 규정
  - 2020.3월 기준 전년도 GDP 성장률이 4% 이상일 경우 당해 최저임금을 2.5%+(GDP 성장률-4%) 인상할 것에 대해 규정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내·외국인 동일 적용)

### 2. 특례대상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근로자 : 74.6% 지급(25.3% 감액)

### 3. 적용제외대상

- ㅇ 21세 미만의 견습 근로자
- ㅇ 정신 장애인

### 364 ... 최저임금위원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지불※ 유급주휴제도 없음
- □ (근로시간)
- ㅇ 주당 45시간
  - ※ 노사 합의에 따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계약에 따라 주 35시간 단축근로도 가능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ㅇ 기본급과 통상적 임금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연말 상여금, 연차 휴가 보상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로 수당, 식사, 숙식 제공 등 현물 급여 등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ㅇ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국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종업원 50인 미만: 미화 \$700 상당 이하의 벌금 부과
- 종업원 50인 이상 200인 미만: 미화 \$3,000 상당 이하의 벌금 부과
- 종업원 200인 이상: 미화 \$4,000 상당 이하의 벌금 부과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수령한 피고용자가 동 위반 사실을 노동부 노동국 조사과에 신고
- 상기 신고를 접수한 노동국 조사과는 신고한 피고용자와 고용주에게 기일을 정하여 조사과 출두 소환장 발송
- 조사관은 사실 심리 후 위반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피고용자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보상하라는 결정 통보
- 상기 노동국 조사과 결정에 따를 경우 사건은 최종 확정되며, 불복할 경우 제1심 법원에 제소하여 심리 절차 진행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노사정 3자 협상을 거쳐 국회 의결로 결정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칠레 노동 총연맹(CUT: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상공인연합회 (Confereacion de Produccion y Comercio) 간 3자협상 합의를 거쳐 입법화
- 칠레의 최저임금은 매년(anual) 또는 다년에 1회(plurianual) 개정되는 최저임금관련법에서 고시되며, 2016년의 경우 향후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한 법령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3년 주기로 개정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향후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한법령에 명시
-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은 2018.9월 공표된 Ley 21,112로, 동 법령은 2020.7월 개정될 예정

### 2. 결정절차

○ 노동총연맹 및 정부 관련부처(노동부, 재무부, 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개정법안을 칠레 국회에 제출, 상하원 의결 절 차를 거친 후 시행되며 일자는 매년 변경

### 3 결정기준

○ 물가지수, 근로자생계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 하여 결정

### 4 고시방법

○ 매년 1회 또는 다년에 1회 최저월급조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인상액을 명시, 공표 일자는 매년 변경

### 5 갱신주기

ㅇ 연 1회 또는 다년에 1회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1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월 기준, 페소)

기간	18-65세	18세미만, 65세 초과
2014.7-2015.6	225,000	167,963
2015.7-2015.12	241,000	179,912
2016.1-2016.6	250,000	186,631
2016.7-2016.12	257,500	192,230
2017.1-2017.6	264,000	197,082
2017.7-2017.12	270,000	201,561
2018.1-2018.6	276,000	206,641
2018.9-2019.2	288,000	214,999
2019.3-2020.2	301,000	224,704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수혜근로자수
2018	5,559,084	391,377(7%)

### 3 최저임금 미만현황

조사기간	2018년
임금근로자수	5,559,084명
미만근로자수(추정치)	525,285명
미만율	약 9%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 최저임금 관련 동향

4

- 2018.9.19.(수) 칠레 의회는 오랜 진통 끝에 가까스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승인, 9.24(월) 2020.3월까지 향후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액이 명시된 최저임금법 제 21,112호가 공표됨
- 상기 최저임금법 제 21,112호에 따라 2018.9.1.일부터 칠레의 최저임금은 288,800페소로 인상되었으며, 2019.3.1.일부터는 301,000페소로인상될 예정임
- 또한, 상기법은 2020.3.1.일 기준 재조정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인 상률 계산법에 대해서도 명시, 동 계산법에 따르면 2020.2월 기준 전년도 GDP 상승률이 4%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이 2.5% 인상되 며, GDP 상승률이 4% 이상일 경우에는 2.5%+(GDP 상승률-4%) 이 인상됨

###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칠레 노동사회안전부(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
  - www.mintrab.gob.cl

(작성자) 칠레대사관 이선 전문관 (전화번호+56 2 2228 4214 , e-mail:seonlee15@mofa.go.kr)

# 20. 캐나다

국	명	캐나다(Canada)	
언 어		영어, 불어(연방공용어)	
면	적	9,970,610km²(육지면적 9,215,430km²)	
인	구	37,05만명(2018.7월, 캐나다통계청	
수	도	오타와(Ottawa)	
주 9	요도시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 밴쿠버	
종 교		카톨릭 39%, 개신교 28%, 이슬람교 3.2%, 힌두교 1.5%, 시크교 1.4% 등	
교	육	의무교육(1-12학년, 만 6-17세)	
화피	폐단위	Canadian Dollar(1CAD = 0.74 USD, 2019.3월)	
	GDP	1조6,530억달러	
 주요	1인당 GDP	4만5,032달러	
경제	GDP성장률	1.8%	
지 표	교역	수출 4,499.51억달러/ 수입 4,590.27억달러	
(2018) 실업률		5.8%	
물가상승률		2.0%	
대사관	웹사이트	http://can-ottawa.mofa.go.kr	

※ 캐나다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며, 주별로 결정방식이 상이함. 이하에서는 캐나다 최대경제권(캐나다 GDP의 약 37.9%, 2017)이자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수 비율이 국가평균보다 높은 온타리오州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함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온타리오주 중심)

### 1 연혁

- 1920년에 도입
-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사스캐츄완州 도입
  - \* 1918년 브리티시 콜롬비아 및 마니토바베에서 최초로 도입하였고, 1960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베에서 마지막으로 도입
- ㅇ 과거 성별에 따른 차등적 최저임금 적용
- 최초 여성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하였으며, 당시 남성들은 협상을 통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여성들은 협상력이 없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 1937년 남성의 가정생계책임이 크다는 전제하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남성최저임금법(Men's Minimum Wage Act)」을 도입하였으나, 1950년대 캐나다 전역으로 평등임금 원칙이 적용되었고, 1974년에 「남성최저임금법」 폐지
- 온타리오州는 최저임금제 도입 후 최저임금을 위원회 방식으로 결정하여 오다가, 동 제도가 1969년「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ESA)」에 흡수되면서 위원회 기능이 소멸되고 자체 입법 공고함으로써 최저임금을 결정해 오고 있음
  - \* 마니토바 등 일부 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Minimum wage Boards)

- 온타리오州 노동부는 2013.5월 최저임금자문패널(Minimum Wage Advisory Panel)을 설치, 동 패널은 州정부 최저임금제 이행 및 관련 현안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州최저임금제도 자문역할을 담당

### 2 법적근거

-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하 최저임금 관련 규정(Ontario Regulation) 285/01, 294/07, 31/14 등
- ○「고용기준법」상 최저임금의 정의
- 최저임금은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최저한도의 임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풀타임, 파트타임,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당 수당, 수수료, 단순성과급, 고정급여, 봉급 등에 있어 최저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3

### □ 사업주

○ 특정사업, 프로젝트를 관할·감독하면서 이를 위해 특정인을 고용하는 매니저, 소유주 등을 포괄적으로 고용주에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 시, 1인 이상 고용인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주는 적용

제외 대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

### □ 근로자

-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임
-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은 내 외국인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온타리오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 Act, ESA)을 적용 받음
  - \* 이 외에도, 외국국적자이면서 이민 또는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일하는 중이거나 구직 중인 국내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for Foreign Nationals Act, EPFNA)을 적용받음
- 현재 일반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14CAD

### 2. 특례대상

- □ 청소년 근로자
  - 학기 중 주당 28시간 이하를 근로하거나 방학 또는 여름휴가동안 전시간근로하는 18세 미만 학생에게 적용
  - 일반적으로 고학년 학생보다 직장경력이 적거나 방학이 짧은 저학년 학생을 채용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마련
  - 시간당 13.15CAD (2018.1.1.일부터 현재까지)

- □ 주류서빙 근로자
  - ㅇ 수입의 일부를 팁으로 수령한다는것을 인정
  - 시간당 12.20CAD (2018.1.1.일부터 현재까지)
- □ 사냥 낚시 가이드
  - 1975년에 도입, 시간급이 아닌 몇 시간 단위(blocks of time)
  - 연속 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하루 70CAD, 5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하루 140CAD (2018.1.1.일부터 현재까지)
  - 안내원들이 시즌 중 접할 수 있는 요인(예시, 날씨)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도록 하고자 마련(일 5시간 미만 근무시 하루에 70CAD)
- □ 재택근로자
  - 1994년 도입, 집에서 유급근로를 하는 피고용인(의복제조업체를 위한 의복 봉제, 콜센터를 위한 전화응답 또는 첨단기술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작 등)에게 적용
  - 가내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주의 간접비용(사업장의 조명, 난방 비용 등)을 인정
  - 시간당 15.40CAD (2018.1.1.일부터 현재까지)

### 3. 적용제외대상

- □ 사업주
  - 외국공관 등은 국내 고용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적용 대상 사업주에서 제외
- □ 근로자
  - ㅇ 아래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됨
  - 주거건물의 관리인. 수위 또는 경비원으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자
  - 어린이캠프에서 학생신분으로 고용된 자
  - 아동의 지도나 감독을 위해 학생신분으로 고용된 자
  - 자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고용된 학생으로 그 업무가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자
  - 다음을 포함한 특정 전문가
    - 건축가, 법률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 의사, 치과의사, 심리치료사, 약사 및 물리치료사 등 개업의
    - 이 중 어느 한 직종에 대해 훈련 중인 학생
    - 판매원 또는 부동산중개인
  - 상업적 어부 및 농장에 고용된 자로 그 고용이 낙농품, 과일과 채소, 담배 및 특정 축산물 등의 1차적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 ㅇ 지급단위
    -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및 통상 근로자는 고용주의 지급방식에 따라 책정된 시급 또는 연봉에 기초하여 주급(연 52회), 격주급 (연 26회, bi-weekly), 반월급(연 24회, semi-monthly), 월급 (연 12회) 등의 방식으로 지급받음

### ㅇ 지급방법

- 현금, 수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고, 현금과 수표의 경우 반드시 근무지에서 지급(고용주와 근로자의 서면동의 하에 타 장소에서 지급 가능)받아야 하며,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계좌주가 반드시 근로자 명의이어야 함

### □ 법정근로시간

- 대부분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일, 48시간/주이며,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음
  - \* 법정근로시간은 사업장 환경(고용주)에 따라 8시간/48시간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음

- ㅇ 법정근로시간 적용 예외
  - <u>일 법정근로시간 적용 예외</u>: 근로자가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그에 앞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정보(Information for Employees About Hours of Work and Overtime Pay)'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u>주 법정근로시간 적용 예외</u>: 근로자가 주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정보'를 제공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온타리오州 노동부(고용기준담당과장)로부터 주 48시간 초과근무이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 고용주는 초과근무 이행 신청 후 승인 전 대기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동의하에 초과근무를 이행할 수 있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최저임금 계산에 숙식 제공이 포함되나, 일정한 제한이 있음
  - 제공되는 숙식을 피고용인이 이용한 경우에만 임금으로 간주
  - 피고용인이 적어도 임금최소액을 금전적인 형태로 받도록 보장 (시행령 285/01 제5조(4)O)
  - 고용주는 숙식에 대한 제5조(4)에서 규정된 최대수당(아래 표)을 빼고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함

### 〈숙식제공에 대한 임금 산입액〉

(단위: C\$)

구분	개인실	비개인실	비개인실	
			(가내 노동자)	
방(1주 기준)	31.70	15.85	_	
방 및 식사(1주 기준)	85.25	69.40	53.55	
식사(1회 기준)	2.55(1주 기준한도 : 53.55)			

<sup>※</sup> 수확근로자(담배, 과일 등)의 경우 숙식 서비스(serviced housing)가 제공되는 경우 99.35CAD 숙식 서비스가 없는 경우(unserviced housing) 73.30CAD로 수당을 책정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금전적 보상(주식 옵션 등), 팁, 수수료, 보너스, 여비, 지출경비 (expense allowance), 고용주에 의한 사회보장(benefit plan) 급부금, 휴가비, 연장근무수당 등

###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5

ㅇ 온타리오州 노동부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위반한 경우 이행 확보 및 제재를 위한 다양한 수단 사용
  - 자발적 준수 요구, 임금 지급 지시(direction), 명령(order), 위반 통보,「州의무위반법(Provincial Offences Act)」에 따른 기소 등
  - 「고용기준법」 또는 관련 규정 위반 등의 경우 시, 위반자가 개인인 경우 5만CAD 이하의 벌금(fine)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위반자가 회사(corporation)인 경우 10만CAD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고용기준법」제132조)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고용주의 고용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자는 온타리오州 노동부에 구제신청(complaint)을 제기할 수 있음(「고용기준법」제96조)
  - 조사 초기 단계에서 고용주의 자발적 준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부의 조사담당관은 고용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

- 조사담당관은 고용기준법의 위반을 확인하면 고용주에게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고용주가 이에 불응하면 고용주에 대한 지불명령, 위반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고용주나 고용인이 조사담당관의 결정(지불명령 결정 또는 지불 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온타리오州 노동관계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담당관의 결정 이후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함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최저임금 결정기구
  - 최저임금률 조정, 변경주기 등 최저임금 설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州정부(노동부)의 소관사항
    - 온타리오주의 경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자문패널의 자문
      - \* 최저임금자문패널의 활동과 관련, 의견청취 대상기관을 명시하며,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온타리오주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별도 회의록 등은 공개하지 않음 (붙임 참고)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연혁

 '14년 이후부터 매년 10월1일 최저임금률이 온타리오 소비자물가 지수(CPI)로 측정되는 온타리오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도록 공식화(고용기준법 제23조1)

### 2. 결정방법

최저임금률 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필요가 있을 경우 州정부
 (고용부) 및 내각의 협의 및 결정, 州의회에서의 최종 승인이라는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또는 조정)됨

### 3. 결정절차

- 州의회는 캐나다 연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이므로 최저 임금을 설정할 때는 노동장관 등 州정부 내각(선출직 의원)과 정부 관료(차관 등 고위공무원, 정책고문)가 최저임금자문패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된 사항을 법안으로 작성하여 州의회에 상정
  - 상정된 법안은 상·하원 양원에서 의회 토론, 표결의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州총독이 승인하여 법으로 공포, 발효됨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소비자 물가지수(CPI) 변동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을 자동 인상 하거나 각 州의 경제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인상 혹은 동결
  -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하하지 않고 동결
- 2.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자동인상 결정방법
  - ㅇ 결정 산식

금년 최저임금(10월 1일 현재)

= 지난해 최저임금(9월 30일 현재) × 지수A(직전연도 CPI) 지수B(2년전연도 CPI)

### ㅇ 결정과정

- ⓐ 매년 1월 노동부가 2년 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최저임금 산정
  - \* 소비자물가지수는 캐나다 (연방정부)통계청이 측정
- ⓑ 새로운 최저임금률을 4월 1일(조정 전 6개월)까지 고시
- © 10월 1일 최저임금률 변경
- 특별 부류에 대한 최저임금률은 동일한 비율로 인상
- 새로운 최저임금은 5센트 단위로 반올림
-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할 경우 최저임금은 변하지 않음

※ 2018.1.1.부터 인상된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자동인상이 아닌 2017.11월 온타리오 주정부가 발표한 '공정과 기회 창출을 위한 온타리오주 노동법 개혁: 2017년 공정한 사업장과 개선된 일자리에 관한 법(The Fair Workplaces, Better Jobs Act, 2017)'의 입법 통과에 의한 것으로, 동 법은 온타리오주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 △근로관계법(Labour Relations Act, 1995) △직업보건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동 법은 2019년도 온타리오주 최저임금 인상(2019.1.1.부터 시간당15CAD)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나, 2018.6월 주정부 선거에 따른 정권 교체로 2020.10.1.일까지 최저임금을 14CAD로 동결하는 신규 법안(Making Ontario Open for Business Act, 2018)이 통과된 바 있음

#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최저임금 변경이 있을 시에 당해 4.1. 또는 이전에 공표, 10.1.부터 발효됨
- 업종, 직종 등 구분하여 해당 항목별 시급을 고시
  - 일반근로자(아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청소년 근로자

4

- 주류서빙 근로자
- 사냥·낚시 가이드
- 재택근로자
- ※ 실적제(commission)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다만, 특정 산업 및 업종 내 실적제 기반 근로자는 특별 규정을 적용받음

(참고: https://www.ontario.ca/document/industries-and-jobs-exemptions-or-special-rules)

### 5 갱신주기

- □ 온타리오州 최저임금 변경 연혁
  - 8.00CAD이던 최저임금을 「온타리오 규정 285/01」 개정을 통해 2007~2010년까지 매년 0.75CAD씩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
  - 2010.3.31.부터 4년간 최저임금을 10.25CAD로 동결하였다가 2014.6.1. 부터는 CPI를 반영하여 11.00CAD로 인상
  - 2014.11.20. 고용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5.10월부터 CPI 변동에 따라 최저임금을 자동 인상하는 시스템을 도입(단, CPI가 하락하는 경우 라도 현재 책정된 최저임금을 감소할 수는 없음)하여 최저임금을 인상
  - 2017.11.27. 공정한 사업장과 개선된 일자리에 관한 법(The Fair Workplaces, Better Jobs Act, 2017)\* 발효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
    - \* 동 법은 온타리오주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 △근로관계법 (Labour Relations Act, 1995) △직업보건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 ※ 원문: https://www.ontario.ca/laws/statute/S17022
    - 현 온타리오州 최저임금은 14.00CAD(2018.1.1.부터 적용)이며, 2019.1.1.일부터 15.00CAD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주정부 정권 교체(2018.6월)로 인해 2018.11.21.일 Making Ontario Open for Business Act(2018)가 통과되면서 2020.9.30.일까지 최저임금이 14.00CAD로 동결됨
      - ※ 원문: https://www.ontario.ca/laws/statute/S18014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 각 州·準州별 최저임금 현황
  - ※ 연방 최저임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1996.12월 폐지), 연방 관할권 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로 근무하는 주 또는 준주지역의 일반 성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음

[참고사이트: http://srv116.services.gc.ca/dimt-wid/sm-mw/rpt1.aspx]

	지역	현행 최저임금(C\$)	시행일자	비고
	온타리오	14.00	2019.1.1.	
	알버타	15.00	2018.10.1.	
	브리티시 콜롬비아	12.65	2018.6.1	2019.6.1.부터 13.85로 변경예정
	마니토바	11.35	2018.10.1.	
	뉴브런즈윅	11.25	2018.4.1.	
<b>주</b>	뉴펀드랜드 라브라도	11.15	2018.4.1.	2019.4.1.부터 11.40으로 변경예정
	노바스코샤	11.00	2018.4.1.	2019.4.1.부터 11.55로 변경예정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11.55	2018.4.1	2019.4.1.부터 12.25로 변경예정
	퀘벡	12.00	2018.5.1.	2019.5.1.부터 12.50으로 변경예정
	사스캐츄완	11.06	2018.10.1.	
준	유콘	11.51	2018.4.1.	
<sup>-</sup>   주	누나부트	13.00	2018.4.1.	
	노스웨스트	13.46	2018.4.1.	

# □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온타리오주)

(단위 : C\$)

구분		청소년 🕌		사냥·낚/	시 가이드	
연도	일 반	(18세 미만 학생, 주 28시간 미만)	주류 서빙	5시간 미만(일)	5시간 이상(일)	재택근무
2018.1.1.~	14.00	13.15	12.20	70.00	150.00	15.40 (일반의 110%)
2017.10.1.~	11.60	10.90	10.10	58.00	116.00	12.80 (일반의 110%)
2016.10.1.~	11.40	10.70	9.90	56.95	113.95	12.55 (일반의 110%)
2015.10.1.~	11.25	10.55	9.80	56.30	112.60	12.40 (일반의 110%)
2014.6.1.~	11.00	10.30	9.55	55.00	110.00	12.10 (일반의 110%)
2010.3.31.~	10.25	9.60	8.90	51.25	102.50	11.27 (일반의 110%)

# □ 전체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단위 :%, C\$))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온타리오州	48.96 (최저 1,852.93/ 전체 3,784.40)	48.98 (최저 1,913.60/ 전체 3,906.24)	50.26 (최저 1,956.93/ 전체 3,893.36)	50.00 (최저 1,984.67/ 전체 3,969.72)
캐나다 전체	47.95 (최저 1,809.60/ 전체 3,773.88)	49.05 (최저 1,882.40/ 전체 3,837.28)	50.19 (최저 1,920.53/ 전체 3,826.76)	50.66 (최저 1,977.73/ 전체 3,904.04)

# 2 최저임금 적용현황(캐나다 전체)

-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되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이 7% 내외 수준이었으나, 2018 년은 10% 수준으로 다소 많이 증가\*
  - \* 캐나다 전체(3개 준주 제외)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약 57%가 온타리오주에 집중되어 있어, 2018년 1월 1일부터 온주 최저임금이 기존 11.60에서 14.00불로 급격히 인상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찰(알버타주의 경우 9,8%를 차지하며, 2018년 10월 1일부로 기존 13.6불에서 15.00불로 상승)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7.2%	7.1%	6.9%	6.5%	10.4%

<sup>\*</sup> 캐나다 통계청

3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현황

○ 캐나다 전체(3개 준주를 제외한 10개 주)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16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주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다음의 표와 같음

연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하		최저임금 이하
주	(\$, 2018)	근로자수(천명)	비율	근로자 비율
브리티시 컬럼비아	12.65	138.6	8.5%	6.8%
알버타	15.00	160.8	9.8%	8.3%
사스캐츄완	11.06	14.2	0.9%	3.0%
마니토바	11.35	31.0	1.9%	5.6%
온타리오	14.00	926.0	56.6%	15.1%
퀘벡	12.00	295.8	18.1%	8.0%
뉴브런즈윅	11.25	22.5	1.4%	7.2%
노바스코샤	11.00	28.6	1.7%	7.2%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11.55	4.9	0.3%	7.6%
뉴펀들랜드 라브라도	11.15	13.2	0.8%	6.4%
<b>캐나다 전체</b> (준주 제외)	_	1,635.5	100.0%	10.4%

\* 출처: 캐나다 통계청(2018년 기준)

○ (온타리오주) 전체 근로자의 15.1%에 해당하는 926,000명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이고, 이중 절반은 24세 이하 청년

구분	주요 특징	
연령	27.9%는 15~19세 22.4%는 20~24세 36.0%는 25~54세	
13.8%는 55세 이상 노인 24.5%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 산업		
  성별	30.4%는 소매업에 종사 57.8%는 여성	
가족상황	10.5%는 독신자 10.4%는 맞벌이 부부로 자녀가 없음 35.8%는 맞벌이 부부로 25세 이하 자녀(들이) 있음 5.0%는 배우자가 있으나 자녀가 없음 10.2%는 배우자 및 25세 이하 자녀(들이) 있음 1.8%는 배우자 모두 직장이 없는 가정 14.6%는 한부모 가정 11.7%는 기타 유형의 가정	
기업규모	45.4%는 직원 20명 미만 기업에서 근무 38.5%는 직원 20명 이상 99명 이하 기업에서 근무	

\* 출처 : 캐나다 통계청(2018년 기준)

# 3 최근이슈 및 동향

### 1. 최근 주요 정책 이슈

- □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쟁
- (반대측) 2018.6월 보수당 Doug Ford 신임 온타리오주 수상이 집권한 이후 2019.1.1.일부 최저임금 인상(14.00CAD→15.00CAD)
   계획을 철회하고 2020.9.30.일까지 14.00캐불로 최저임금을 동결함.
- 온타리오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최저임금을 \$15.00까지 인상할 경우 일자리 18만개가 없어질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TD 은행도 일자리 5만~15만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찬성측) 2019.2.9. 주재국 언론 HuffingtonPost는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 인상(\$11.60→\$14.00)에도 불구, 전반적인 일자리가 2.4% 증가하였다며, 반대측이 언급한 일자리 참사(kill jobs)는 없었다고 전함
-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요식업·숙박업과 도매·소 매업의 경우에도 각각 0.5% 증가 및 2.6% 감소로 충격이 미미하다고 보도함
- 한편, CBC 뉴스는 실업률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도입 6개월 시점에서 5.4%로 감소한 바,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전함

# 2. 관련 홈페이지

- 캐나다통계청 : www.statcan.gc.ca
- ㅇ 캐나다 온타리오州 노동부 : www.labour.gov.on.ca
- 캐나다고용사회개발부 : srv116.services.gc.ca

# 3. 주요 항목별 참고자료

- ㅇ 온타리오 고용기준법 가이드 :
  - https://www.ontario.ca/document/your-guide-employment-standards-act-0
- ㅇ 온타리오州 최저임금 자문패널 :
  - https://www.labour.gov.on.ca/english/es/advisorypanel.php
- 최저임금 자문패널 운영사례 (붙임)

# <붙 임>

#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자문패널(Minimum Wage Advisory Panel) 운영사례

※ 下記 활동 이후 동 자문패널의 추가 활동은 없었음.

### □ 최저임금자문패널 개요

- (설립) '13년 7월, 온타리오주 노동부가 州내 최저임금정책에 대해 조언 제공을 목적으로 패널 위원 임명
- (구성) 독립된 위원장 1명을 포함, 기업, 노동자, 빈곤퇴치 옹호자및 청년을 대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권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조언 제공, 그러나 새로운 최 저임금률을 제안하는 것은 아님
  - \* 영구기구로 설립된 것은 아니며 온타리오주 노동장관의 패널 활동 개시 허가에 의해 활동하게 되고 ① 활동개시마다 새로운 위원 임명 여부 ② 임명절차(추천, 지명 등) 등 패널 결정방식에 대해 자료 미공개

# ㅇ 활동

- '13년 12월 노동부에『최저임금자문패널 보고서』제출
- 온타리오 주 도처(10개 도시)에서 공공협의회 개최
- 이해당사자, 기업, 개인 및 지역사회단체들로부터 서면제출을 받음
  - \* '13년 9월~10월; 340건 제출서와 92건 프리젠테이션

### □ 최저임금자문패널이 검토한 주요 연구 결과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현존하는
   실증연구들 간에 일치된 합의점 없음
- 일부 연구는 캐나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
  - ▶ 청년근로자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보통 3-6% 고용 감소
  - ▶ 신규 노동시장 참가자 (예컨대 10대와 최근 이민자)
- 누적된 연속 소규모 인상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이 클 경우부정적 고용효과는 훨씬 더 컸음
- 장년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긍정적인 고용영향을 경험
- 청년근로자 보다 더 많은 직장경력과 신뢰성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을 선호하는 것에 기인

# □ 최저임금자문패널 권고사항

- 1. 최저임금은 온타리오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개정되어야 한다.
- 2. 임금 변경에 대해 최소 4개월의 통보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 3. 정부는 최저임금률 및 그 개정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매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 4. 정부는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상시 연구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 ◇ 정부는 '14년 고용기준법하의 최저임금 법규 개정시 위원회 권고사항 1, 2, 3은 다양한 수준으로 고용기준법에 도입하였고, 권고사항 4는 고려하였음

# □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최저임금자문패널의 의견

- ㅇ 긍정적인 측면
  - □ 조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공
  - □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음
  - □ 장기적인 최저임금 동결을 방지
  - □ 대규모 만회성 인상의 필요성을 줄임
  - □ 소비자물가지수는 다른 관할구역에서도 성공적인 척도로 사용되어 옴
- 부정적인 측면
  - □ 소비자물가지수는 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 고실업과 고물가 시기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사용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는 자동 인상을 초래할 수 있음
  - □ (임금)인상이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거나 느린 경우 평균 임금인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작성자) 주캐나다대사관 상무관 이경수 (전화번호 +1-613-244-5018, kslee17@mofa.go.kr)

# 21. 콜롬비아

국	명	콜롬비아 공화국(República de Colombia)		
언	어	스페인어, 영어(산안드레스 군도, 프로비덴시아 및 산타 카타리나), 그 외 68여개 민족언어		
면	적	1,141,748 평방미터		
인	구	약 5천만명 (세계 인구 29위)		
수	도	보고타(인구 : 약 800만, 고도 : 2,640미터)		
주.	요도시	보고타, 메데진, 깔리, 바랑끼야, 까르따헤나 등		
종 교		가톨릭교(58%), 개신교(33%), 기타(9%)		
교 육 의		의무교육(초중등교육)		
화폐 단위		콜롬비아 페소(1USD=3,133.25COP, 2019년 평균)		
명목 GDP		3,369억달러(2018)		
	1인당 명목 GDP	6,380달러(2018)		
주요 경제	연간 GDP성장률	2.8%(2018)		
지표	교역	수출 418억달러(FOB) / 수입 396억달러(FOB) (2018)		
	실업률	9.48%(2018)		
	물가상승률	3.21%(2019)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co-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945년 정부의 최저임금에 관한 법 제정으로 제도화
- 1949년 각 경제 부분별로 합의된 최저임금 지급 시작
- 1979년 최저임금 지불 제도를 시행하도록 결정
- 1983년 모든 생산 활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단일화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1945년 법(Ley) 제6호: 콜롬비아 최저임금제 수립
- 1949년 시행령(Decreto) 제3871호: 최초 최저임금 지급시행
- 1951년 시행법규(Código sustantivo): 최저임금제 적용 방법 명시
- 1955년 시행령(Decreto) 제1156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위 원회 창설
- 1959년 법(Ley) 제187호: 국가임금자문위원회 조직
- 1963년 시행령(Decreto) 제236호: 지역별 및 회사규모별 최저임금 결정

- 1963년 시행령(Decreto) 제240호: 16세 이하 미성년자 및 농업종사자 최저임금 결정
- 1972년 시행령(Decreto) 제577호: 국가 지역별 및 회사 규모별로 각 분야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운수업, 건설업, 원자재업 등)의 최저임금 결정
- 1983년 시행령(Decreto) 제3506호 : 1984년 6월부터 도시와 농촌의 최저임금 통일
- 1991년 발효 헌법 : 제2장(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에 "노동법은 최소 생계유지와 교통운송 비용을 노동의 질과 양에 비례하여 기본 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 1996년 법(Ley) 제278호 : 상임 기술 사무국으로서의 노동 및 급여정 책 상임위원회의 설립과 역할 명시. 노동 및 급여정책 상임위원회는 차년도 인플레이션 목표와 기타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고 규정
- 판례 C-815/99호 :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결
- 2005년 법(Ley) 제990호 : 노동 및 급여정책 상임위원회의 노동자 측 참여인원을 변경하였고, 연금 수급자 대표 1인을 포함

# 2. 최근 3년 이내(2015~2017년) 법령 개정사항

ㅇ 없음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ㅇ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내·외국인, 장애 구분 없이 동일 적용
- 2. 특례대상
  - ㅇ 없음
- 3. 적용제외대상
  - ㅇ 없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 통상 근로자의 임금 지급방법은 월급 또는 주급
  - 임금구성항목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사회보장세, 교통지원금 등이 포함

- 유급주휴수당: 1951년 발효된 콜롬비아 시행법규 및 이를 일부 수 정한 1990년 법50(Ley 50 de 1990) 의거, 1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부여, 다만, 최저임금 산입여부는 미명시. 해당법규는 원칙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나 노사간 합의에의해 토요일로 정할 수 있음.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일을 해야 할경우, 통상 임금의 175%를 가산하여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노동법 1950 (2017년 개정), 179조)

### □ 근로시간

○ 법정최대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ㅇ 기본급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상여금, 각종 수당, 사회보장세 등 기본급 외 임금
- 교통지원금(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이하인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 2019년 97,332페소, 작년대비 10% 증가)
  - 급여가 최저임금의 10배 이상일 경우에만 사회보장세,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보너스 등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음
- ㅇ 휴가비, 연장근무수당, 현물급여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노동부(Ministerio del Trabajo)가 최저임금 관련 이행지도 담당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 노동부는 Enforcement(최저임금지급을 시행하는 규정) 제도를 내부 감독기관을 통해 공공기업 및 민간 기업들이 최저임금 지급, 노동환경,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 노동환경 등을 합법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 노동부는 노동재판부의 명령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위반의 경중 및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1배~100배의 벌금을 부과함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근로자는 노동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재판부는 미지급 임금(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 사회보장세 미수령분 지급, 임금의 상향 조정 등을 사업주에게 명령하고 필요 시 노동부를 통해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의 1배에서 100배의 벌금을 부과함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노동 및 급여정책 상임위원회(매년 말 최저임금을 제안, 정부대표, 사업주대표, 노동자대표 각 5명, 총 15명으로 구성)
  - a) 정부대표: 노동부 장관 또는 대리인(차관)(회의 주재), 재무부 장관 또는 대리인(차관), 상공관광부 장관 또는 대리인(차관),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또는 대리인(차관), 국가기획처 처장 또는 대리인(부처장)
  - b) 사업주대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주 연합회에서 임명하는 5명의 대표로 GDP와 고용창출에 참여하는 수준에 따라 신중하게 임명(통계청 자료에 근거함)
  - c) 노동자대표: 대표성 있는(노조가입원수 기준) 노조연합들에 의해 지명되는 3명의 대표(임기 4년, 중임 가능), 대표성 있는(가입자수 기준) 연금수급자협회 2곳에서 4년마다 교체하며 선정하는 1명의 대표, 대표성 있는(가입원수 기준) 실직자연합회 2곳에서 4년마다 교체하며 선정하는 1명의 대표로 구성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모든 결정은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하며, 차년도 최저임금은 직전연도 12월 15일까지 확정 필요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는 측은 48시간 내 부동의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상대방은 다음 48시간 내 그 사유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함
- 이후, 동 위원회는 12월 30일전까지 합의를 위해 소집되어야 함
- 12월 30일까지 최저임금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중앙은행이사회가 정하는 차년도 인플레이션 목표, 노동부 소관 생산성 3자위원회가 결정한 생산성, 국민소득세, GDP 성장률, 현재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결정 방법>

시행연도	시행령 (Decreto)	결정 방식	月최저임금 (콜롬비아 페소)	증가율(%)	인플레이션(%)
2001	시행령 2579	합의	286,000	9.95	7.76
2002	시행령 2910	정부 결정	309,000	8.04	6.99
2003	시행령 3232	정부 결정	332,000	7.44	6.49
2004	시행령 3770	합의	358,000	7.83	5.50
2005	시행령 4360	정부 결정	381,500	6.56	4.85
2006	시행령 4686	합의	408,000	6.95	4.48
2007	시행령 4580	정부 결정	433,700	6.30	5.69
2008	시행령 4965	정부 결정	461,500	6.41	7.67
2009	시행령 4868	정부 결정	496,900	7.67	2.00

시행연도	시행령 (Decreto)	결정 방식	月최저임금 (콜롬비아 페소)	증가율(%)	인플레이션(%)
2010	시행령 5053	정부 결정	515,000	3.64	3.17
2011	시행령 033	정부 결정	532,500	3.40	3.73
2012	시행령 4919	합의	566,700	5.80	2.44
2013	시행령 2738	정부 결정	589,500	4.02	1.94
2014	시행령 3068	합의	616,000	4.50	3.66
2015	시행령 2731	정부 결정	644,350	4.60	6.80
2016	시행령 2552	정부 결정	689,455	7.00	5.75
2017	시행령 2209	정부 결정	737,717	7.00	4.09
2018	시행령 2269	합의	781,242	5.90	3.27
2019	시행령 2451	합의	828,116	6.00	_

출처 : 콜롬비아 노동부 자료

### 2. 결정절차

-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경제성장률, 노동시장 지표, 실질임금, 차년도 인플레이션 목표, 생산성, 국가수입에 대한 임금의 기여, 국내총생산, 소비자 물가지수 등이 고려됨
- 이를 위해 중앙은행, 국가기획처(DNP), 통계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을 청취할 수 있음. 아울러, 사업주 및 노조대표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공개
-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발표하는 시행령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내용이 설명됨

406 ... 최저임금위원회

# 3 결정기준 및 산출근거

### 1. 결정기준

- 1996년 법 제278호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중앙은행이사회가 정하는 차 년도의 인플레이션 목표, 노동부 산하 생산성 3자위원회가 결정한 소비자 물가지수, 국가수입에 대한 임금의 기여도, 경제생산성, 국민소득세, GDP 성장률을 고려하여 합의, 결정해야함. 특히, 차년도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중요한 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데이는 소비자 구매력과 기업생산비용 및 정부 재정지출을 결정 짓는 주요기준이기 때문
- 2019년 주요 산출 근거: 인플레이션 3.3%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차년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중앙은행의 고시 자료를 활용하며,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및 기타 통계 자료는 통계청(DANE)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함. 해당 자료는 중앙은행 및 통계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함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지역별, 연령별, 업종별, 숙련도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일일 기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액으로 일일 8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시되는 금액을 240{30(일)x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 이후 근무한시간을 곱하여 지급함
  - 실제로 한달이 31일인 경우에도 30일을 적용
  - 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시급에 75%의 추가 수당이 가산되며, 약간 근무(10:00p.m. 이후)시에는 25% 가산
-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담당 부처(노동부)를 통해 시행령(decreto) 형식으로 관보(Diario Oficial)에 고시하여 발효됨

# 갱신주기

ㅇ 매년 갱신

5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25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실질적 인상으로 평가받음.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6%)과 인플레이션 인상률(3.3%)의 차이가 '2.7%'로 지난 25년간 인플레이션 대비 실질적 인상률이 가장 높기 때문
  - \* 그간 임금-인플레이션 인상률의 차이는 0.2%-1.8% 수준에 머물렀음
- 작년대비 10% 인상된 교통지원금은 지난 14년간 가장 높은 인상 율로 평가

※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시행연도	월 최저임금(단위 : 콜롬비아 페소)	월 최저임금 인상률 (연간)
2019	828,116	6%
2018	781,242	5.90%
2017	737,717	7.00%
2016	689,455	7.00%
2015	644,350	4.60%
2014	616,000	4.50%
2013	589,500	4,02%
2012	566,700	5.80%
2011	535,600	3.40%
2010	515,000	3.64%
2009	496.900	7.67%
2008	461.500	6.41%
2007	433.700	6.30%
2006	408.000	6.95%

출처 : 콜롬비아 노동부 자료

3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 2014~16년간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비율은 아래와 같음

(단위: 명, %)

연도	전체 근로자 수	최저임금 미만	비고
	00.150.000	근로자 비율	
2016	22,156,000	48.7%	
2015	22,017,000	47.1%	
2014	21,503,000	48.3%	

출처: Redlat(www.redlat.org) 2017년 보고서

# 기타 최저임금 관련통계

- 콜롬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3개 주요도시(인근 소도시 포함) 근로자의 47.2%가 비정규직
- ㅇ 콜롬비아 자영업자 비율은 2016년 기준 43%임
- 교통지원금 인상분을 포함한 2019년 최신 최저임금은 925,148 콜롬 비아페소로 (USD 285.5에 해당) 최저임금수준이 태평양 연맹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었음 (칠레: USD 435; 페루: USD 277; 멕시코: USD 156)

# 4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OECD는 2016년 "콜롬비아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Review of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Colombia)"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콜롬비아 법정최저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 비정규직 감소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
- OECD 보고서는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되어 해당 가정의 빈곤 수준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률을 인플 레이션 인상 수준 이하로 조정하고 특정 집단 또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제 적용을 권고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콜롬비아 노동부 http://www.mintrabajo.gov.co
- 콜롬비아 중앙은행 http://www.banrep.gov.co
- 콜롬비아 통계청 http://www.dane.gov.co

(작성자) 주콜롬비아대사관 신윤정 전문관 (+57 616-7200 Ext: 228, yjshin19@mofa.go.kr)

# 

국	 명	파라과이
언	어	스페인어, 과라니어
면	적	406,752 km²
인	구	7.05백만명
수	도	아순시온
주9	요도시	씨우닫델에스테, 엔카르나시온
종 교 전 인구의 90%가 가톨릭		전 인구의 90%가 가톨릭
교 육		초등교육(9년제, 한국의 초·중학교에 해당) 및 중등교육 (3년제) 과정 모두 의무교육
화폐 단위		과라니(Guarani)
	GDP	398억달러
주요	1인당 GDP	5,650달러
경제 지표	GDP성장률	4.0%
(2018년	교역	수출 90.3달러, 수입 124.3달러
기준) 	실업률	6.5%
	물가상승률	3.2%
대사관	웹사이트	pry.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연혁

## 1. 도입 배경

 파라과이 노동법은 1948. 12. 10.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세계인권선언, 1948.5.2. 개최된 제9차 Panamérica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간의 권리 및 의무선언 및 각종 국제협정과 기본권을 근간으로 1961.8월 제정됨

### 2. 노동 관련 법령 변화 연혁

- 1961.8월 제정 이래 1993.10월 현행 노동법에 이르기까지 7차례 개정 ※ 2000.12월 공무원법 제정: 공무원 근무 및 노동은 별도 관리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헌법 86조 ~ 100조
- ㅇ 노동법 (Código Laboral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 2. 최근 3년 이내(2015~2017년) 법령 개정사항

- 2013.6월 「청년층 실업률 감소를 위한 고용창출 진흥법(4915/13호)」제정
  - 포용적 고용, 직업훈련 강화 등이 포함됨
    - ※ 청년층은 18-29세를 의미
- 2015.10월 「가내근로자법(5407호)」제정
  - 가내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비율을 60%에서 40%로 감소시키고 가내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해고예고 통 지 및 사회보장제도 혜택 등을 부여함
- 2016.11월 「노동법 255조항」 변경 (대통령령 5764/2016호)
  - 최저임금위원회(CONASAM)는 매년 6월에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ㅇ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ㅇ 고용주의 승인 하에 경영 및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모든 근로자
  - 전문직, 기술직, 사립학교 교사, 전문체육인
  - 민간기업 근로자
  - 공기업, 시립기업 근로자

# 2. 특례대상

□ 특례 적용 근로자 및 감액 수준

구분	감액 비율	조건	비고
가내근로자	40%	_	
수습근로자	40%	가사 또는 단순노동에 대한 수습기간은 최대 30일	_
견습생 또는 기능공	40%	견습생 또는 기능공에 대한 기간은 최대 60일	_
청소년	40%	_	국제아동청소년법으로 금지

# 3. 적용제외대상

- ㅇ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사적친분에 따라 자원 또는 자발적인 봉사 자를 활용하여 영업하는 사업주
- ㅇ 공무원, 주정부, 정부직속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 ㅇ 군인 및 경찰
  - ※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ㅇ 업체에 따라 월급, 주급, 15일급 또는 일급 등 형태로 임금 지급
- 일일 법정 근로시간 : 8시간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기본급, 연차휴가비, 출산휴가비, 연말상여금 등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보장된 수당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ㅇ 야근수당, 특근수당, 식사 또는 숙소 등 현물급여

### 5

#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ㅇ 노동부가 일괄 이행지도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노동부는 부당해고, 급여 미지불 등 사유로 고발 접수 시 해당 고용주에 미지급 급여 및 보상금을 지급토록 "권고"
- ㅇ 고용주가 이에 불응할 시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소 제기 가능
- 또한,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고용주에 고용인 1인당 최저임금 일급 30일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두번 이상 적발될 경우벌금 2배 부과)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可해 근로자는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부
 권고에 고용주가 불응할 시 추가로 법원에 정식 소송 제기 가능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최저임금위원회 (Consejo Nacional de Sueldo Mínimo)
  - 정부대표 1명(위원장), 근로자대표 1명, 고용주대표 1명으로 구성 (총 3명)
  - 정부대표는 노동고용사회보장부의 노동차관실 소속 노동국장이 맡으며, 근로자대표는 노조연합, 고용주대표는 파라과이제조·산업· 상업협회(Federación de Producción, Industria y Comercio)가 내부 투표를 통해 추천
    - 대통령 승인에 따라 임명되며 별도로 임기를 한정하지 않음
      - ※ 노동법 252조: 최저임금 변경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며 위원회는 정부 대표 1명, 근로자 대표 1명, 고용주 대표 1명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들은 명예직이며 위원장은 정부 대표인 노동국장이다. 다른 위원들은 각 단체 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2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통해 결정

### 2. 결정절차

- □ 노동부장관 또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정부, 근로자, 고용주 대표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 ㅇ 정부대표 : 노동부 노동국장
  - 고용주대표 : 파라과이제조·산업·상업협회(FEPRINCO, Federación de Producción, Industria y Comercio) 추천
  - 근로자대표 : 파라과이 전국노동연합 대표
- □ 최저임금위원회, 인상여부 심의
- □ 노동장관, 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및 행정부에 이첩
- □ 경제각료회의, 최종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후 대통령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및 경제각료회의 논의를 반영하여 대통령이 최저임금 결정
- □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령 공포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 결정과정 공개(외부 방청 허용) 여부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위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며,외부 방청 불허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녹취 및 녹취록 공개 여부
<ul><li>녹취 또는 녹화하지 않으며,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속기록을 작성 하여 보관</li></ul>
<ul> <li>작성된 녹취록은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 요약 결과만을 행정부 전달후 일반 대중에 공개 (인터넷 게재)</li> </ul>
3 결정기준
1. 결정기준
□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변화,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지표에 기초하여 결정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통계작성기관: 통계국(Dirección General de Estadísticas v Censo)

- 과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Paraguay)
- 통계작성 주기: 분기별 근로설문조사(Encuesta Continua de Empleo)
  - 1인가구는 통계에 불포함
  - ㅇ 참고 출처 : 아래 웹사이트

http://www.dgeec.gov.py/Publicaciones/Biblioteca/Resultados%20EPH/P RINCIPALES%20RESULTADOS%20EPH%202017.pdf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저임금을 책정 및 공표
  - 단, 가사근로자, 청소부 등 특정 직무가 없는 경우 기본 최저임금의 40% 감액 가능

# 5 갱신주기

□ 최저임금위원회(CONASAM)는 매년 6월 최저생계비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단위 : Gs./월)

			(= : : - , = ,
구분 적용시기	성인	그 외 특례 근로자 (가사 노동자 등)	인상률 (%)
70.1/1		(111 -671 6)	( /0)
'18.6월 ~ 현재	2,112,562 Gs	1,267,537 Gs	3.5
'17.6월 ~'18.5월	2,041,123 Gs	1,224,674 Gs	3.9
'16.6월 ~'17.5월	1,964,507 Gs	1,178,704 Gs	7.7
'15.6월 ~'16.5월	1.824,055 Gs	729,622 Gs	-
'14.6월 ~'15.5월	1.824,055 Gs	729,622 Gs	9.9
'13.6월 ~'14.5월	1,658,232 Gs.	663,293 Gs.	-
'12.6월 ~'13.5월	1,658,232 Gs	663,293 Gs.	-
'11.6월 ~'12.5월	1,658,232 Gs.	663,293 Gs.	9.9
'10.6월 ~'11.5월	1,507,484 Gs.	845,318 Gs.	6.9
'09.6월 ~'10.5월	1,408,864 Gs.	805,065 Gs.	_
'08.6월 ~'09.5월	1,408,864 Gs.	805,065 Gs.	_
'07.6월 ~'08.5월	1,408,864 Gs.	805,065 Gs.	15.5
'06.6월 ~'07.5월	1,219,795 Gs.	731,877 Gs.	11.2

- \* 출처: 통계청 및 노동고용부
- \* 청소년 노동은 2001년도 국제아동청소년법으로 인해 금지
- ※ 현지 화폐(과라니/Gs.): US\$ 1 = 6,060과라니(2019.3월 기준)

- 일급으로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26일로 나눈 금액을 일급으로 계산하며, 일급에서 일일 법정노동시간 8시간을 나눈 금액을 시급으로 산출
- 일급: 월 최저임금 ÷ 26
- 시급: 일급 ÷ 8

2

※ 임금 지불 형태로는 월급, 주급, 15일급, 일급 등이 있으며, 작업내용에 따라 급여 지불방식을 정할 수 있음

# 최저임금 적용현황

근로자수 연도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수	비고
2017	3,285,722	1,998,376	<ul> <li>전체 근로자수 조사</li> <li>시 Boqueron주, Alto</li> <li>Paraguay주 제외</li> <li>최저임금수혜자 조사</li> </ul>
			- 최저임금구에자 조자 대상에서 가사노동자 제외
2016	3,210,005	2,993,505	
2015	3,492,514	3,306,124	
2014	3,460,249	3,250,976	
2013	3,274,819	2,618,600	
2012	3,246,904	1,841,900	
2011	3,034,771	1,638,038	
2010	2,382,575	1,001,957	
2009	2,960,843	1,047,843	
2008	2,735,646	820,694	

\* 출처: 통계청

3

4

# 최저임금 미만현황

(단위:명,%)

조사기간	2017 4/4	2018 4/4
임금근로자수(A)	1,595,540	1,686,458
미만근로자수(B)	613,853	582,697
미 만 율(B/A)	38.5	34.6

※ 조사 방법: 전국 약 13,000 가구 대상 조사, 가사노동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2019.3월, 파라과이 상원은 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 통과시켰는바, 향후 하원에서 동 법안을 심의할 예정
  - ※ (참고) 파라과이는 상원, 하원 각각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상원에서 먼저 의결후 하원 의결을 하고,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하원 의결후 상원으로 의결함
  - ※ 현재 파라과이 노동법은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40% 감액된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로 규정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통계국: www.dgeec.gov.py
- 중앙은행: www.bcp.gov.py
- 노동고용사회보장부: www.mtess.gov.py
- 기타 최저임금 통계사이트: http://www.dgeec.gov.py/Publication/index.php

(작성자) 주파라과이대사관 3등서기관 성명 차지연(+595 986192098, jycha08@mofa.go.kr)



# 아시아

# 23. 대만

국	명	대만(Taiwan) ※공식 국호: 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 ※국제기구 및 국제 스포츠경기 : 中華台北 (Chinese Taipei)		
언 어		공용어는 Mandarin(중국 표준어)이나 현지어인 민남어 (閩南語)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면	적	36,192km²		
인	구	2,358만명(2018 기준)		
수	도	타이베이		
주의	요도시	가오슝, 타이중		
종	교	불교·도교(68%), 기독교·천주교(3.9%)		
교 육		12년 국민기본교육(고등학교는 강제입학은 아니나 학비가 면제)		
화피	ᆒ 단위	New Taiwan dollar. NT\$		
	GDP	5,749억 달러		
_ 주요	1인당 GDP	24,408 달러		
· - 경제	GDP성장률	3.08%		
지표	교역	5,765억 달러(수출 3,172억 달러, 수입 2,592억 달러)		
(2017)	실업률	3.76%		
	물가상승률	0.62%		
대표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tw-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대만 국민당 정부는 1930년 국제노공조직 제26호 최저임금공약에 의거하여 1936년 최저임금법을 공포함. 당시 법의 규정에 따라 성인의 임금이 본인 이외 수입이 없는 가족을 포함하여 두 사람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수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동 법이 실시되지 못하였고,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공업발전 촉진정책으로 인해 동 법을 실시치 못하였음
- 1984년 노동기준법을 실시하면서 1986년 최저임금법을 폐지하였음.
   동 노동기준법에 따라 새로 제정된 기본임금심의법은 수차례 수정을 거쳤으며, 2014.12.10. 개정된 법안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노동기준법 제21조에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
- 기본임금심의법(2014.12.10. 개정)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임금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3/4분기에 심의를 진행하고, 동법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제4조 규정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을 검토

- 기본임금심의법 제4조에 기본임금심의위원회는 기본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함
  - 국가 경제발전 현황
  - 도매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국민소득과 1인당 평균 소득
  - 업종별 노동생산력 및 취업상황
  - 업종별 근로자 임금
  - 가정수입지출 조사통계

#### 2. 최근 5년 이내(2015~2019년) 법령 개정사항

- 2015년 7월1일부터 월 기본임금 20,008NT\$, 기본시급 120NT\$
- 2016년 10월1일부터 기본시급 126NT\$
- 2017년 1월1일부터 월 최저임금 21,009NT\$, 기본시급 133NT\$
- 2018년 1월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22,000NT\$, 기본시급 140NT\$
- 2019년 1월1일부터 매월 최저임금 23,100NT\$, 기본시급 150NT\$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노동기준법 제3조 3항에 따라, 기본임금은 아래 8개 항목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적용됨
-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 △광업, 토석 채취업, △제조업, △ 건설업, △물, 전기, 석탄가스업, △운송, 저장 및 통신업, △대 중언론매체, △기타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한 사업 등
- 국립학교의 근로장학생,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임시근 로자, 사립학교 근로장학생도 노동기준법 및 기본임금법이 적용됨

#### 2. 적용제외대상

- 노동기준법 제3조 3항에 따라, 경영형태, 관리제도, 근무특성 등을 이유로 동 법이 적용 될 때 어려움이 확실시 되는 자, 중앙주무 기관(노동부)이 지정하여 발표한 사업\* 및 해당 근로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 \* (노동기준법) 非적용 업종 : 농업수리연합회, 국제조직 및 외국기구, 未분류된 기타 요식업(산업표준분류 제6판 의거), 가사서비스업
- 외국인 차등적용, 장애인·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 또는 적용제외 규정은 없으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 중앙기관이 공고한 직업별임금조사의 공업 및 서비스산업 전문직 평균 월급(현재 47,971NI\$상당)보다 낮아서 안 된다고 규정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기타 경상성(經常性) 급여
  - 노동기준법상 임금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임금은 근로자가 노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획득하는 보수를 말함
  - 임금, 봉급 및 시간급, 월급 모두 포함하며 작업량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수당 및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든 불문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함
  - 노동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당사자 간 약속한 경우 또는 매월 선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최소 2회 임금을 지불해야 함
- □ 근로시간: 노동기준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정상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노동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에 속하는 모든 항목(기본급, 상여금, 수당)이 기본임금(=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봄
- ㅇ 법률상 주휴수당 규정여부 및 최저임금 산입 여부
  - ※ 유급주휴수당: 노동기준법 제36조에서 주 2일 휴일에 대해 규정, 동 법 제 39조에서 '임금'의 범위에 제36조의 휴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동 조항에 의거 유급주휴수당 도입 및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최저임금은 정상 근로시간내에서 얻은 보수만을 포함하므로 연장 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초과급여는 산입하지 않음
- ㅇ 임금은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복리후생비는 미포함

##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5

○ 노동기준법 제4조에 따라, 주관기관은 (중앙정부의)노동부가, 각 직할시는 산하 노동국, 현(시)는 정부 산하의 노동처가 관할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처벌규정)

○ 사용자가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한 경우 노동 기준법 제79조에 따라 NT\$ 20,000 이상 NT\$ 1,0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노동기준법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의 명칭, 주소 및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노동행정 주관기관에 신고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음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기본임금심의법(基本工資審議辦法, 2014.12.10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관은 기본임금심의위원회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본임금심의법 제2조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하여 노동부는 기본 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부장(長)이 주임위원을 겸한다. 위원은 21명으로 하고,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 임기는 2년
  - 노동부 대표 1명, 경제부 대표 1명, 국가발전위원회 대표 1명, 노동계 대표 7명, 경영계 대표 7명, 전문학자 4명
- 기본임금심의법 제3조에 따르면 기본임금심의위원회에 집행비서 1명을 두되, 노동부 '노동조건 및 취업평등사(司)' 사장이 겸임하며, 주임위원의 명을 받아 일상사무를 처리한다. 수 명의 사무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돕고, 유관단위에서 겸하도록 조정
- 기본임금심의법 제5조에 따르면 기본임금심의위원회는 업무소조를 결성하여 최저임금심의 업무를 연구하여야 함
- 노동부 기본임금 심의위원회의 회의기록은 27차(2014년8월25일)
   33차(2018년9월21일)까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사일정, 회의안건, 위원들의 주요발언 등이 기록되어 있음

#### 2 결정방법 및 기준

#### 1. 결정방법

- 최저임금은 기본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원노공위원회가 행정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고
  - 대만은 5권 분립 국가로서 사법원·입법원·행정원·고시원·감찰원의 5개 부처로 분리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행정원 산하에 우리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노공위원회가 있음

#### 2. 결정기준 및 산출근거

- ㅇ 결정기준
- 기본임금심의위원회는 제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수집 하고 연구하여 심의 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회의를 거쳐 기본 임금을 결정함
  - ※ 최저임금 심사 시 구비해야할 자료: 국가 경제발전 현황, 도소매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국민소득과 평균 1인당 소득, 업종별 노동생산력 및 취업 상황, 업종별 근로자 임금, 가계수입 지출조사 통계
- 기본임금심의위원회의 제33차 회의기록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산출 할 때 아래와 같은 산출방법을 제안
  - ① 1/2 X GDP성장률 + CPI 연간 상승률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② 1/2 X GDP성장률 + 17가지 주요 민생물자 연간 상승률
- ③ 1/2 X GDP성장률 + 1/2 X 노동생산성 연간 증가율 + 17가 지 주요 민생물자 연간 상승률
- 상기 산출방식을 참고하여 노사간 희망금액을 제시(노동자 대표 : 23,540NT\$, 고용자 대표 : 23,000NT\$)하여, 최종적으로 절충금액인 23,100NT\$로 결정
- 최저시급의 경우, 시급제 노동자가 대부분 청년, 고령자 등 구직 자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약자계층 지원차원에서 최저시급은 150NT\$로 산정

#### | 갱신주기

3

 갱신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본임금심의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임금심의위원회는 원칙상 매년 3/4분기에 심의를 진행하고 동법 제4조 규정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을 검토함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단위 : 명)

비율 연도	전체 근로자 수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2018	10,372,358	2,867,802	510,091
2017	10,272,071	2,794,456	457,565
2016	10,165,434	2,218,878	409,754
2015	10,073,327	2,255,685	391,808
2014	9,920,361	2,311,460	355,802
2013	9,745,794	748,728	329,639
2012	9,709,511	1,791,616	322,812
2011	9,725,761	1,334,778	304,951
2010	9,397,608	1,212,396	260,640
2009	9,029,279	1,150,259	240,403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2

- 「노동기준법」최신 개정법령(54,55,59조 내용 수정)은 2018.11.21.부터 정식 시행됨
  - 주요 변동내용은 강제 퇴직 기준, 퇴직금 급여 기준, 업무 중 발생한 상해, 사망, 장애 등에 대한 보상 규정 등임
-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017 송년 기자회견(2017.12.29.)에서 청년 저임금 문제 해결이 2018년 정부의 핵심 시정과제라고 강조하면서,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세부 조치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기조 유지 및「최저임금법」 제정 추진'을 언급함

- 스쥔지에(施俊吉) 행정원 부원장은 2018.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을 매년 6~8% 인상하여 4~6년 내에 월 최저임금 3만 대만달러 도달 목표를 밝히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 부작용을 최 소화 하겠다고 언급함
- 2018.11.30. 노동부는 <최저임금법(最低工資法)> 초안을 발표함
- 초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입하여,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규정, '원칙상 매년 3/4분기에 진행되는 최저임금 심의'를 법적으로 매년 3/4분기 개최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수록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노동부 http://www.mol.gov.tw/
- 경제부 http://www.moea.gov.tw/MNS/populace/home/Home.aspx
- 통계처 http://www.stat.gov.tw/
- 법무부 www.moj.gov.tw

(작성자) 주타이베이대표부 김기현 대표보 (전화번호 +886-2-2758-8320, e-mail khkim07@mofa.go.kr)

# 24. 말레이시아

국	명	말레이시아(Malaysia)		
언	어	공용어는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이나 영어가 통용되며 중국계·인도계는 각자 고유언어를 주로 사용		
면	적	330.25 <sup>km²</sup> (한반도의 약 1.5배)		
인	구	3,240만명(2018년 기준)		
수	도	쿠알라룸푸르		
주 9	요도시	페낭, 말라카, 콴탄, 코타키나발루 등		
종	<b>종 교</b>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			
<b>교 육</b> 초등 6년, 중등 5년, 대입준비과정 2년, 대학 3~		초등 6년, 중등 5년, 대입준비과정 2년, 대학 3~4년		
화폐 단위		Ringgit Malaysia(RM)(1U\$ = 4.035, 2018년 평균)		
GDP 3,543억달러(2018년)		3,543억달러(2018년)		
1인당 GDP 10,936달러(2018년		10,936달러(2018년)		
주요	GDP성장률	2016년 4.2% → 2017년 5.9% → 2018년 4.7%		
경제   지표	교역	1조 8,760억링깃(2018년, 연평균 환율 4,649억달러)		
	실업률	2016년 3.5% → 2017년 3.4% → 2018년 3.3%		
	물가상승률	2016년 2.1% → 2017년 3.7% → 2018년 1.0%		
대사관	웹사이트	http://mys.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 제도 도입

- 2012.4월말 나집총리는 최저임금시행령(Minimum Wages Order)을 발표하였으며 2013.1.1.부터 시행
  - 동 제도는 2010.3월 발표한 신경제모델의 목표인 2020년 고소득 국가 진입수단의 하나로 제시

#### 2. 적용대상 변경

- 시행 초에는 종업원 6인 이상 업체 및 일부 전문직종 업체(말레이시아 표준직업분류표상 전문직종인 병원, 법률회사, 자문회사 등)에만 적용되었으나, 2013.7.1.부터는 5인 이하 업체로 적용대상 확대
- 다만, 2013.5월에는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제 시행을 유보하였고, 7월에는 영세기업의 국내 근로자에 대해, 9월에는 개인기업에 대해 각각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제 시행 유보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국가임금자문위원회법(National Wages Consultative Council Act 2011 [Act 732])에 의한 최저임금시행령(Minimum Wages Order 2016)에 근거하여 시행
- 이외 고용법(Employment Act 1955),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67 [Act 177]), 최저임금시행령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imum Wages Order 2012), 고용규칙 (Employment (Part-time Employees) Regulations 2010) 등의 관련 법령이 있음

# 2. 최근 법령 개정사항

- 최저임금시행령이 2012년 1차례, 2013년 3차례, 2016년 1차례 개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소득세법의 최저임금 관련 지출공제규정 [Income Tax (Deduction for Expenditure in Relation to Minimum Wages) Rules 2014]이 개정
-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 삭제 등을 위해 2차례(10월, 11월) 최저임금시행령을 개정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국내에서 고용계약을 맺는 모든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
  - \* 장애인 차별규정 없음

#### 2. 적용제외대상

가정부, 요리사, 경비, 정원수, 개인운전사 등 가정에 고용된 근로자,2년 미만 견습생 등은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4

- (임금) 말레이시아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은 임금을 기본급과 피용자의 노동대가로 지급하는 여타 현금으로 정의
- 주거지원비, 퇴직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 여비,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연간보너스 등은 임금에서 제외
-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8시간 이내이며 연장근로시간은 매월 최대 10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국가임금자문위원회법(National Wages Consultative Council Act 2011 [Act 732])은 고용법에서 정한 임금 중 기본급을 최저임금 으로 정하고 있음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고용법상 임금 중 기본급 외의 현금 지급분, 즉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인적자원부 산하의 국가임금자문위원회와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제 이행의 조정, 지도, 영향평가 등을 수행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최저임금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상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구속형도 가능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최초 위반 시 근로자 일인당 1만링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에게 실제 지불 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을 지불토록 할 수 있음

446 ... 최저임금위원회

- 법규위반이 지속될 경우 유죄 선고 후 위반기간 동안 매일 1천링깃 이하의 벌금 부과
- 법규위반이 반복될 경우 2만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구속형 가능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문제는 인적자원부 산하 국가임금자문 위원회 사무국에, 이행과 관련한 문제는 노동부에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ㅇ 국가임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서 결정
  - 위원회는 인적자원부 장관이 선임한 의장, 부의장, 서기, 고용자대표(최소 5인), 근로자대표(최소 5인), 공공부문대표(최소 5인, 정부공무원), 학계·경제학자·NGO대표(최소 5인) 등으로 구성(최대 29인)
    - ·의장, 부의장, 학계·경제학자·NGO대표는 공무원, 고용주, 노동 조합소속이어서는 안되며 인력·산업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로서 장관이 임명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 가능

#### 2 결정절차

- ㅇ 국가임금자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률을 제안하면 이를 정부에서 결정
  - 모든 위원은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 의장 및 부의장 부재 시에는 의장이 선임한 위원 순으로 결정권을 가짐
  - 위원회는 연 최소 4회 이상 회의를 가져야 하며 주요 역할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정부에 조언 및 제안, 국민들에게 상담 제공, 임금에 관한 자료 수집, 분석 및 연구, 최저임금 실시에 따른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최저임금 시행령 검토(매2년) 등임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최저임금률은 △소득빈곤선(2009년 기준 800링깃), △고용주의 지불능력(임금중앙값),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실업률, △생산성 증가율의 5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상기 다섯가지 요소를 이용한 아래 공식에 의해 결정
- 최저임금 = 평균값(소득빈곤선÷가계당 평균 근로자수+임금중앙 값)×[1+(지역별생산성증가율/100)+(지역별소비자물가상승률/100) + {(지역별실제실업률-자연실업률(4%))/100}]

4

#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월급, 일급, 시급 최저임금 결정·고시
- ㅇ 최저임금시행령 가이드라인에 의거 기간별 최저임금률을 고시
  - \* 지역별 최저임금률은 2019년부터 폐지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까지 Sabah주, Sarawak주, Labuan 금융특구 소재 지역에 대해 말레이반도보다 낮은 최저임금률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9년부터는 동일한 최저임금률을 적용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1. 최저임금 수준

○ 지역별·기간별 최저임금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링깃)

					일당	
적용시기	지역	월당	시간당	주	<sup>두</sup> 당 근무일 <sup>:</sup>	<u></u>
				6일	5일	4일
2019.1.1. 이후	말레이시아 전지역	1,100	5.29	42.31	50.77	63.46
	말레이반도	1,000	4.81	38.46	46.15	57.69
2016.7.1. ~ 2018.12.31.	Sabah주 · Sarawak주 · Labuan 금융특구	920	4.42	35.38	42.46	53.08

- \* 주당 총 근로시간 최대 48시간 이내 조건
- \* 일 최저임금 =  $\frac{$ 월 최저임금  $\times$  12개월 52주  $\times$  8시간  $\times$  6일
- \* 시최저임금 = 일최저임금 × 주근무일수(6일) 주근무시간(48시간)
- \* 기본급이 아닌 성과급, 커미션 등의 형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1,100링깃 이상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인적자원부 산하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는 최저임금 준수여부
 조사(2019.1.1~2.28일, 7,695건) 결과 점검대상의 98%가 2019년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

#### 2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신정부는 2018년 총선(5.9일) 전후에 현 여당연합(PAKATAN HARAPAN)의 선거공약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기존(월 1,000링깃) 보다 50% 많은 월 1,500링깃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증가액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및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2019년 1월부터 적용할 최저 임금을 당초 목표보다 낮은 월 1,100링깃\*으로 결정
  - \* 2018.10월 1,050링깃으로 발표하였다가 11월 1,100링깃으로 수정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 2. 관련 홈페이지

○ 인적자원부는 최저임금제 포털사이트(http://minimumwages.mohr.gov.my)를 운영 중임

(작성자)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재무관 이대건(전화번호 6-03-4251-2336, e-mail dklee18@mofa.go.kr)

# 25. 베트남

국	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언	어	베트남어
면	적	330,966km²(한반도의 1.5배)
인	구	9천6백95만명('18년)
수	도	하노이(Ha Noi)
주의	요도시	호찌민시, 하이퐁시, 다낭시, 껀터시(5대 주요도시)
종	교	불교(12%), 카톨릭(7%) 등
교 육		초등 5년, 중등 4년, 고등 3년(중등까지 의무교육)
화폐 단위		동(Dong)
	GDP	2,427억불
, o	1인당 GDP	2,587불
주요 경제	GDP성장률	7.08%
지표 (2018년)	교역	4,822억불(수출: 2,447억불, 수입: 2,375억불)
(20101)	실업률	2.18%
	물가상승률	1.48%
대사관	웹사이트	vnm-hanoi.mofa.go.kr

# I. 최저임금 제도의 개요

#### 1 연혁

#### 1. 노동법 제정 이전

- 베트남 최저임금제도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1986년 최초로 도입
- 1993년부터는 베트남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도 도입
  - 외국 투자기업과는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

#### 2. 노동법 제정 이후

- 1994년 제정된 베트남 노동법에 최저임금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노동법에 근거한 최저임금제도 시행중
- ㅇ 2013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행정기관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채택
- 노동보훈사회부가 여러 가지 경제·사회지표 등과 노동조합·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연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한 후 총리실에 제출하면 시행령으로 최종 공포
- 2013. 5. 1. 시행된 개정 베트남 노동법(2012.6.18. 공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임금위원회 방식 채택
- 베트남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와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 사회·경제적 상황 및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공표
-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13년 노동법 개정 이전 2차례 방한, 한국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참조 →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시스템과 유사한 부분이 다수임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 베트남 노동법(10/2012/QH13, 2012.6.18.)
  - 근로자의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됨(§90①)
  - 최저임금은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가장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이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함. 최저임금은 월, 일,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과 산업에 따라 정해짐(§91①)
  -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 사회·경제적 상황 및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공포함(§91②)
  - 산업의 최저임금은 산업별 단체교섭을 통하여 정하고, 산업별 단체협약에 명시. 다만, 이는 정부가 공표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됨(§91③)
  - ㅇ 국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자문기관으로서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노동총연맹, 중앙 사용자 대표조직의 대표들로 구성(§92①)

○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기능, 임무, 조직 구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92②)

#### □ 임금에 관한 시행령(49/2013/ND-CP)

- (국가 임금위원회의 기능) 국가임금위원회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조정·공표에 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며, 총리는 국가임금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함(§3)
- (국가임금위원회의 임무) ①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예측하여 보장·결정하도록 사회·경제적 상황 및 생활수준을 분석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연간계획 및 시기별 계획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이행 상황, 노동시장의 임금수준,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평가, ②정부에 규칙적이지 않은 업무 또는 단시간근로(some irregular careers, ovs or part time affairs)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자문, ③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지역구분의 조정·보완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지역구분에 대한 검토·평가, ④최저임금에 관한 자문능력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국 사례·경험의 연구 및 조사활동, ⑤총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임금 정책에 관한 기타 사항의 연구·자문(§4)
- (국가임금위원회의 조직 구조) 국가임금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 하되 노동보훈사회부를 대표하는 5인, 베트남노동총연맹을 대표 하는 5인, 중앙 사용자대표조직을 대표하는 5인으로 구성(§5)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이 되며, 3인의 부위원장은 베트남노동총연맹 부위원장,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부회장, 베트남 협동조합연맹 부의장으로 함
- 위원은 노동보훈사회부를 대표하는 4인, 베트남 노동총연맹을 대표하는 4인, 베트남 중소기업협회를 대표하는 1인,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앙수준의 업계협회를 대표하는 2인이 됨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비상임으로 임기는 5년임

#### □ 국가임금위원회설치에 관한 총리결정서

- ㅇ 국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명단을 규정
- ㅇ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권한은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에게 위임
-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협동조합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맹, 농장, 가구, 개인, 기관·조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157/2018/ND-CP, 2018.11.16.)
  - 2019.1.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규정(매년 개정)
    - \*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자료 해당 부분에 상술
  - 서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장,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지점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임금 적용
  - 여러 지역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단지 등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는 가장 높은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등) 직업훈련(기업이 실시한 직업훈련 포함)을 받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최소 임금수 준은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7%이상 높아야 하며
- 과중·유해·위험한 근로환경을 가진 업무 또는 직책\*\*의 최소 임 금수준은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유사한 복잡성을 가진 업무 또 는 직책의 임금보다 5% 이상 높아야 하며
- 특별히 과중·유해·위험한 근로환경을 가진 업무 또는 직책\*\*의 최소 임금수준은 7% 이상 높아야 함(§7)
  - \* 2011년부터 지역별 최저임금관련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2015년 부터는 지역별 최저임금관련 시행령(제5조제2항)에서 규정
  - \*\*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결정서 1452/LDTBX-QD 등 총 6개의 시행규칙 또는 결정서에서 규정

# □ 「공무원 등의 공공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72/2018/ND-CP)

- ㅇ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최저임금을 규정
- 2018.6월까지는 130만동이었으나 2018.7월부터 139만동으로 인상 되었고, 2019.7월부터는 149만동으로 인상 예정

# 2. 최근 3년 이내(2016~2018년) 법령 개정사항

# □ 관련 규정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 하는 시행령」(157/2018/ND-CP, 2018.11.16.)

# □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단위: 만동, %)

구 분	2019년 적용	2018년 적용	인상금액	인상률
1지역	418	398	20	5.03
2지역	371	353	18	5.10
3지역	325	309	16	5.18
4지 역	292	276	16	5.80
평균 인상률	_	-	_	5.3

<sup>\*</sup> 산업화 정도에 따라 4개 지역 구분

## □ 기타 개정 내용

#### 1 적용지역 변경

구 분	변경된 지역		
1지역으로 변경	깟하이(Cát Hải), 끼엔투이(Kiến Thuy) 군/현(하이퐁 市), 저우띠엥 (Dầu Tiếng), 푸자오(Phú Giáo) 현(빙즈엉 省)		
2지역으로 변경	자빙(Gia Bình), 르엉따이(Lương Tài)현(박닝省), 쩌우타잉(Châu Thành)현(띠엔장省), 동허이(Đồng Hới)시(꽝빙省)		
3지역으로 변경	떤프억(Tân Phước)현(띠엔장省), 레투이(Lệ Thủy), 꽝닝(Quảng Ninh), 보짜익(Bố Trạch), 꽝짜익(Quảng Trạch)현, 바돈(Ba Đồn)타운 (꽝빙省)		

#### 3 적용대상

#### 1. 적용범위 및 규율대상

-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 연맹, 농장, 가구, 개인, 기관·조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리·활동 중인 기업(베트남 내 외국투자 기업도 포함)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베트남의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 연맹, 농장, 가구, 개인 및 기타 조직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기관·외국인 및 국제조직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 특례대상

-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 2018.6월까지는 130만동이었으나 2018.7월부터 139만동으로 인상 되었고, 2019.7월부터는 149만동으로 인상 예정

#### □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 직업훈련(기업이 실시한 직업훈련 포함)을 받은 근로자에게 요구 되는 최소임금수준은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한 7% 높아야 함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 과중·유해·위험한 근로환경을 가진 업무 또는 직책

- 과중·유해·위험한 근로환경을 가진 업무 또는 직책의 최소임금 수준은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유사한 복잡성을 가진 업무 또는 직책의 임금보다 최소한 5% 높아야 하며
- 특별히 과중·유해·위험한 근로환경을 가진 업무 또는 직책의 최소 임금수준은 최소한 7% 높아야 함

#### 3. 적용제외 및 차등 적용 여부

#### □ 수습근로자

-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지만,
   적어도 해당업무에 대한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함(베 노동법 제28조)
  - \* 수습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해당업무에 대한 임금의 85%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노동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 □ 외국인 및 장애인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

ㅇ 외국인 및 장애인에 대한 차등 적용 관련 법령은 없음

# 5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관련 주요 내용
  - (정의 및 범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
  - (지급방법) 사용자는 근로시간, 생산량 또는 업무완성에 따른 지급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가짐
    - 시급, 일급 또는 주급제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일·주에 따라 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적어도 15일에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함
    - 월급제 근로자는 월 1회 또는 2회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음
    - 생산량 또는 업무완성에 따른 방식인 경우에는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업무가 수개월동안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매월 수행한 업무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구성항목) 임금은 업무 또는 직위에 따른 기본급, 수당 및 기타 추가 지급항목을 포함함
- □ 법정 근로시간
  - (정규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일 또는 주단위로 정할 수 있음. 주단위로 정할 경우 정규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특별하게 과중·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 근로시간) 1일 정규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주단 위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 및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이 1일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초과근로시간은 1개월에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다만,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1년에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①수출을 위해 방직, 봉제, 가축, 신발, 농림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②전력 공급, 통신서비스, 정유상품 생산·공급, 상하수도, ③지체할 수 없거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ㅇ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는 기본급만을 가지고 판단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기타 추가 지급항목
  - \* 베 노동법은 주휴일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1주에 최소한 연속 24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급/무급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6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노동보훈사회부 감독국 또는 성·시 노동보훈사회국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근로자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위반한 근로자 수에 따라 2,000만동에서 7,500만동까지의 벌금\*형
  - \* 1~10명 근로자 대상 위반 시: 2천만동~3천만동, 11~50명 위반 시: 3천만동 ~5천만동, 51명 이상 위반 시: 5천만동~7천5백만동
- 아울러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충분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도록 조치되고,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사업운영이 정지될 수 있음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노동보훈사회부 감독국 또는 시·성급 인민위원회 노동보훈사회국에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이 발견되면 벌금부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미지급기간동안의 이자 지급 조치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조가 이의제기 시사업주가 동의하면 차액지급, 부동의시에는 상급노조단체 등이 노동보훈사회국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소 제기 가능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공표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 한의 생계비, 사회·경제적 상황 및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을 고려 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공표
- 국가임금위원회는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노동총연맹, 중앙 사용자 대표조직의 대표들로 구성
- 15인으로 구성하되, 노동보훈사회부를 대표하는 5인, 베트남 노동 총연맹을 대표하는 5인, 중앙 사용자 대표조직을 대표하는 5인
- 위원장은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이 되며, 3인의 부위원장은 베트남 노동총연맹 부위원장,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부회장, 베트남 협동조합연맹 부의장으로 함
- 위원은 노동보훈사회부를 대표하는 4인, 베트남 노동총연맹을 대표 하는 4인, 베트남 중소기업협회를 대표하는 1인,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앙수준의 업계협회를 대표하는 2인이 됨

-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노동총연맹,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의 장은 국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대표를 지명하고, 노동보훈사회부에 명단을 제출함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회장은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앙 수준의 업계협회로서 국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대표를 지명 할 2개 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제안함
-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총리가 국가임금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안하고, 국가임금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을 결정함
- 총리는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가임금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에게 국가임금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위임
-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은 비상임으로 임기는 5년임
- 국가임금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지역별 최저임금 계획 및 최저임금 적용지역 구분을 연구·조사·정리·수립하는 기술부서와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상설 사무국을 가짐
- 기술부서는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조직의 노동·임금 분야 전문가, 대학교·연구기관·부처·부처 산하기관의 관리자, 연구자, 과학자를 포함
  - \* 노·사·정 실무자급 대표 15명, 연구기관·대학 등 10명, 총 25명으로 구성, 3~7월 사이 세미나 등을 통해 각자의 의견 제시 → 기술부서 논의는 합의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안은 노·사·정 입장에 따라 복수로 제시되기도 함

-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상설 사무국 기능은 노동보훈사회부의 관련 부서(노동임금국)에서 업무를 수행

## 2. 결정절차

- 국가임금위원회에 노·사 및 국가임금위원회 기술부서에서 각각 인상안을 제시, 이를 토대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후 최종 권고안을 정부 총리실에 제출
- ㅇ 이와는 별도로 노동보훈사회부에서도 독자적 인상안 제출
- ㅇ 정부 내 논의 과정을 거쳐 총리가 시행령으로 최종 공포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결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임금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최종권고안 확정 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결정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함
- 결정과정에서 녹취하고 회의록도 작성하며 정부에 최종 권고안
   제출 시 회의록을 첨부해 제출함
  - 회의록 및 녹취록 모두 비공개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생계비, 사회·경제적 상황, 노동시장 임금수준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 생계비

- 통계청에서 격년으로 조사·발표하는 '주민생활상황 통계\*' 활용
  - \* http://www.gso.gov.vn/Default.aspx?tabid=217
- 근로자 1인당 부양가족 1인\*을 기준으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 \* 맞벌이 및 자녀 2명인 가정이 일반적이라 근로자 1인당 부양가족 1인으로 산정
  - 식료품 구매비용, 주거비용, 전기·수도세 등 요금, 아이 한명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 □ 사회·경제적 상황

- GDP성장률 및 금년 GDP성장률 예측치, CPI(소비자 물가지수), 기업 설립 및 파산 수치 등 경제상황 지표, 노동생산성 지표 등 사용
- 기획투자부(MPI)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경제사회상황보고서\*<sup>'</sup>를 통해 관련 지표 파악
  - \* http://www.mpi.gov.vn/Pages/default.aspx

4

## □ 노동시장 임금수준

○ 매년 노동보훈사회부에서 2,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소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지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

#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베트남 노동법(§91①)은 "최저임금은 월, 일,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과 산업에 따라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월 최 저임금만을 4개 지역별로 정해서 적용하고 있음
  - \* 주급, 시급으로는 정부에서 산정하고 있지 않음
- 법상 근로시간 상한(주 48시간 이내, 월 최소 4일의 휴일) 범위 내에서 기업 내규, 근로계약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근무 시 지급 되는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근로자가 주급·일급·시간급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기업내규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 기준 월급을 근로계약에 표기하여야 함\*
  - \*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가입대상 여부 판단기준이 월급이기 때문임
- 산업별 최저임금은 6년전 유일하게 섬유·봉제업종에서 노사 대표 간당시 정부 최저임금안보다 10% 정도 높게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 후 발표된 적이 없음

# 갱신주기

○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년도 적용 지역별 최저임금을 공포

5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1 최저임금 현황

(단위:월기준,만동,%)

	2014년 2015년	201614	001713	001013	2019년 적용		
구 분	2014년 적용	2013년   적용	2016년 적용	2017년 적용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금액
	70	70	70	7 0	70	의 시 금 ㅁ	(인상률)
1지역	270	310	350	375	398	418	20(5.03)
2지역	240	275	310	332	353	371	18(5.10)
3지역	210	240	270	290	309	325	16(5.18)
4지역	190	215	240	258	276	292	16(5.80)
평균 인상률	15.3	14.2	12.4	7.3	6.5	_	5.3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 관련 정부통계 없음

# 3 최저임금 미만현황

○ 관련 정부통계 없음

# 4 기타 최저임금 관련통계

-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노동사회과학원에서 기획투자부(MPI) 통계를 가공, 매월 노동시장 통계 관련 보고서 작성
  - \* http://ilssa.org.vn/trang-chu/

# 5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견해차 존재
- '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5.3% 인 상안으로 결정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노동사회과학원 : http://ilssa.org.vn
- 기획투자부(MPI) : http://www.mpi.gov.vn
- 통계청 : http://www.gso.gov.vn

주베트남대사관 고용노동관 성명 이재국(84-93-648-4575 , e-mail: jglee19@mofa.go.kr)

# 26. 우즈베키스탄

국	명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언 어		우즈벡어(터키계 언어)를 공용어로 하나, 러시아어가 일 반적으로 통용			
면	적	44만 7,400km²			
인	구	3천 325만 명(2019.1.)			
수	도	타슈켄트(인구 : 약 300만 명)			
주 9	요도시	사마르칸트, 부하라, 페르가나, 히바, 안디잔 등			
종	卫	이슬람교88%(수니파), 그리스정교 9%, 기타 3%			
교	육	기본학제는 유치원/초등(4년)/중등(5년)/고등학교(3년)/대 학교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화피	폐 단위	숨(soum)			
	GDP	총규모 484.7억달러(연평균환율 8,069.9숨/\$ 적용)			
	1인당 GDP	1,518달러			
주요 경제	GDP성장률	약 5.1%			
지표	교역	338억달러(수출 142.5억달러 / 수입 195.5억달러)			
	실업률	약 9.3% 수준			
	물가상승률	약 14.3%			
대사관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uz-k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 연혁

- □ 우즈베키스탄의 기본적인 노동 기준 중의 하나인 최저임금 (Minimum Wage) 관련 제도는 1986년 제정
  - 1986년 9월 ~ 2011년 말까지는 최저임금에 대한 단일제조 운영
  - 2012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과 최저급여액(Minimum amount of payment for labor)으로 2개의 급여제도로 운영 중
  - 최저임금은 대통령 결의로 금액을 고시
  - 최저급여액은 내각이 고시하는 단일급여등급별 계수(Unified wage rate scale, URS)의 1등급 계수를 최저임금에 곱하여 계산
    - ※ 2019년 3월 현재 최저급여액= 202,730숨(대통령령 2018.10.13.자, UP-5553 고시한 최저임금) X 2.847(내각결의 2019.01.18.자, No 47의 URS 1등급 계수) = 577,172숨
    - ※ 단일 급여등급별 계수(Unified wage rate scale, URS)는 정부 부처 기관의 임금 크기 결정시 적용하는 일반적 비율로, 2019.1.18.일자 종전 계수(2009.7.21.자, No 206)을 개정함에 따라 1등급 2.476→2.847, 2등급 2.725→2.997, 3등급 2.998→3.148로 상향 조정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제153조에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규정
  - 노동법 제153조(임금액의 설정) : 임금은 법령에서 정한 최저금액 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며, 최대액은 제한되지 않는다
- □ 최저급여액의 기준은 「2012년 정부 예산 및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대통령 결의(2011.12.30.)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동 기준이 노동법에 명문화(2012.9.10., ZRU-329)
  - 노동법 제155조(최저급여액): 해당 기간 동안 근무규칙과 의무를 완수한 근로자에 대한 월 급여는 단일 급여등급별 계수(Unified wage rate scale, URS)의 1등급 계수에 따라 계산되어지며, 법령 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최저급여액에는 정상 근로시간이외 근무한 추가임금, 초과수당, 상여금, 시간외 수당 및 지역별 임금조정계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 2. 최근 3년 이내(2013~2015년) 법령 개정사항

□ 별 첨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

#### 2. 특례대상

□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고용특성(수습, 상시·시간근로, 내국인· 외국인, 장애인 등)과 근로자의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 및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3. 적용제외대상

□ 최저임금의 적용에 있어 일부 특정 근로자 또는 업종별 적용 제외 특례 또는 면제 대상 등은 없음

#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4

- □ (임금) 임금 지급일은 단체협약 또는 기타 지역노동규범에 의해 정해지며, 최소 1월간 2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
  - 임금의 지급형태와 체계, 보너스, 추가지급, 이익금, 인센티브는 단체협약 또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위원회 또는 다른 근로자 대표 기구와의 계약, 규범에 따름



- □ (근로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1일 7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1일 8시간, 주당 40시간(노동법 제115조)
  - 노동부가 매월/분기/반기/년에 따른 근로일 및 시간기준을 매년 승인함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음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 최저임금에는 정상적인 근로시간 이외 근로한 추가임금, 이익금 (increments), 초과근로수당, 공휴일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인센티브, 지역별 임금조정계수는 포함하지 않음
  - ※ 임금은 우즈벡 현금(숨)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식사, 숙소 등 현물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5

□ 급여, 노동보호규칙 등 노동법령 이행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특별 담당 국가기관 및 기관내 감독청(inspection) 인 국가노동보호감독청 (State Labor protection inspection)과 노동부산하 국가노동사법감독청 (State Legal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Labor) 및 노조가 담당 ○ 또한, 검찰총장(General Procurator)과 그 소속 검사들이 사업주의 임금 지급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며, 임금 지급 기간 미준수 시 해당 관련 책임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담당자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음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노동법 위반(급여 등)의 경우 고용주의 공식 대표에게 행정과태료 부과(행정책임법 제49조), 행정 처벌은 국가노동보호감독청(State Labor protection inspection)과 노동부산하 국가노동사법감독청 (State Legal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Labor)이 담당(행정 책임법 제255조)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 고용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 고용주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송비용 전액부담
- □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검찰·국가 노동위원회에 청원도 가능

# Ⅱ.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된
--------

□ 최저급여액은 최저임금(대통령령 고시)과 단일 급여등급별 계수 (Unified wage rate scale, URS, 내각결의 고시)에 따라 정해짐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에는 최저임금 결정 절차(논의 시작 시기, 심의 기간, 시행시기 등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음) 및 방식에 대한 해당 규정은 없음
- □ 다만, 최저임금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인상여부를 결정하며, 1년에 통상 2차례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고시하고 있음(대통령령으로 결정)
  - ※ 최저임금과 함께 연금 및 선천장애인 보조금, 노령자 및 노동능력상실자 지원연금도 병행 인상되는 바, 실제 최저임금은 동 보조금 및 연금지급자에 대한 지급액 인상을 목적으로 인상
- □ 고시된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다음 최저임금이 고시 및 적용되는 시점이며 사전에 적용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

## 2. 결정절차

□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무부, 경제부, 노동부, 통계위원회, 조세위원회 및 기타 정부부처가 같이 참여하며, 전국노조연합의 의견도 고려함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여부 파악 곤란. 다만, 최저임금은 고시되어 언론 등에 공개되고 있음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반영되는 고려사항은 연금·보조금 인상 필요성, 생활비 변화(Cost of Living)와 예산사정(각종 행정수수료 부과 시 기준으로도 활용) 등임
  - ※ 최저임금은 노동법 등 각종 법령위반 시 벌금 부과와 행정수수료 설정 시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예1) 거주등록 위반 시 최저임금의 50~100배를 벌금으로 부과
    - 예2) 외국인 노동허가 시 최저임금의 10배를 행정수수료로 부과
    - 예3) 기업체 일자리가 비어 있어 노동기관에서 직원을 추천할 시 거부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3~5배의 과태료 부과
    - 예4) 장애인 대상 사회인프라 시설의 원활한 출입 및 철도·항공·자동차 교통·통신·정보 원활한 사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저 임금의 10~15배의 과태료 부과 등

$\mathbf{x} \cap \mathbf{n} = \mathbf{n}$	최저임금제도
스얼구가이	ᄼᆡᄶᄓᆖᄱᅜ
十	ᅬᄭᄆᄆᆀᆂ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결정기준 도출 방법 파악 곤란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 최저임금을 지역별·연령별·업종별·숙련도별 등 구분적용하지 않으며, 월급 단위로 고시
  -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고시하나, 시급으로 환산 시 월 근로시간은 160시간(주 40시간, 월 4주 근무) 근로를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시급 1,267숨으로 환산됨

# 5 갱신주기

□ 정기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지 않고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매년 2회 내외)로 결정·고시하며 최저임금액이 다시 고시 될 때까지 기존의 최저임금액이 적용됨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단위 : 월, Sum)

구분	모든 형태	인상률(%)	
적용시기	Uzbek Sum(월급)	U.S. Dollar(월급)	(Sum 월급 )
'18.11.1.~현재	202,730	24.6\$(8,250숨/1\$)	10.0
'18.7.15.~'18.10.31.	184,300	23.6%(7,800舍/1\$)	7.0
'17.12.1.~'18.7.14.	172,240	21.2\$(8,100숨/1\$)	15.0
'16.10.1.~'17.11.30.	149,775	46.4\$(3,231숨/1\$)	15.0
'15.9.1.~'16.930.	130,240	46.4\$(2,809숨/1\$)	10.0
'14.1215.~'15.831.	118,400	49\$(2,413숨/1\$)	23.2
'13.1215~'14.1214.	96,105	45.8\$(2,100숨/1\$)	20.7
'12121.~'131214.	79,590	47\$(1,700숨/1\$)	26.5
'11.121.~'1211.30.	62,920	37\$(1,700숨/1\$)	26.5
'10.121.~'11.11.30.	49,735	30\$(1,650숨/1\$)	32.0
'09.121.~'10.11.30.	37,680	25\$(1,508舍/1\$)	34.4
'08.11.16.~'09.11.30.	28,040	20\$(1,383 合/\$)	50.5
'07.11.16 <i>~</i> '08.11.15.	18,630	15\$(1,288숨/1\$)	50
'06.11.1.~'07.11.15. 12,420		10\$(1,238舍/1\$)	32
'05.10.1.~'06.10.30.	9,400	_	_

<sup>※ 1</sup>년에 1~2차례 개정 고시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 최저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 현황에 대해 국가통계가 외부로 제공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가 생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최저임금 인상율은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등의 임금인상율과연계되고 있음

# 3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우즈베키스탄은 2016.12월 신정부 출범 후, 종전의 점진적 시장개 방 및 외환규제 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제 선진화를 목표로 급속한 경제개방·자유화 정책 추진
- 2017.9월 외환자유화 및 환율단일화 조치에 따른 숨(Sum)화 평가 절하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나, 경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시장효율 개선 등 효과가 나타나면서 2019년부터 성장세를 차츰 회복할 전망
- 우즈베키스탄의 최저임금은 각종 행정업무 수수료(노동허가 수수료는 최저임금의 10배), 벌금부과(거주등록 해태 시 최저임금 100배)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와는 차이가 많음

## 【별 첨】

- 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개정(안)은 2013.10.7(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8(화) 공포
- 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 고용 시 수습기간 배제(84조)
    - 고용주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을 고용할 경우 졸업 후 3년 기간 동안 수습기간 없이 채용
      - \* 우즈벡노동법은 근로자의 능력이 업무수행에 적합한지, 고용계약에 게재된 근무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최대 3개월)을 두도록 허용하고 있음.
  - 고용주의 해고사실 통지 의무 부여(247-1조)
    - 고용주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이 졸업 후 3년 기간 동안 채용된 첫 직장에서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년내에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지역노동기관에 해고 사실을 반드시 통지
  - 무급 휴가 실시기간 설정(150조)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무급 휴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무급 휴가 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해지나 총 기간이 12개월 기준 3개월 초과 불가
  - 근로 불허용시 봉급 미지급 명문화(113조)
    -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동 기간 봉급 지불 금지

- \* 음주·마약·독극물 등에 중독이 된 채 출근하는 경우, 의무적인 의료 검진을 회피하는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의료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당일 근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동조건 변경 요구 거부시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90조)
  - 고용주가 직원의 노동조건 변경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 주는 거부 사유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작성자) 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 직책 1등서기관 성명 우희창 (전화번호 +998712523151(104), e-mail: hcwoo17@mofa.go.kr)

# 27. 이스라엘

국	п-1	
	명	이스라엘(State of Israel)
언	어	히브리어, 아랍어
면	적	20,770km
인	구	898만명(2019.1월)
수	도	예루살렘
주:	요도시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브엘쉐바, 아쉬도드
종	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교	육	3-6세 의무 유치원. 초중고12년 의무교육
화폐 단위		NIS(New Israel Shekel)
	GDP	3,536억달러
	1인당 GDP	39,106달러
주요 경제	GDP성장률	4.4%
지표	교역	1,987억달러(수출 1,022억달러, 수입 965억달러) (2017년)
(2018) 실업률		4.1%
	물가상승률	0.88%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il-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전

- ㅇ 이민자로 정착한 유대인들은 활발한 노조활동을 전개
- 1920년 노동자총연맹(Histadrut) 결성

## 2.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후 - 1980년대까지

- 노동자총연맹 및 산하노조가 건국이후에도 강력한 이익단체로 활동,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을 주도하여 이스라엘인들은 1980년대
   까지 법정 최저임금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음
- 1983년 노동자총연맹 가입자 수는 약 160만명으로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3, 전체 노동자의 85%를 차지

# 3. 1980년대 이후

○ 1980년대 이스라엘의 경제 자유화가 활발해지자 노동자총연맹 가입 자가 감소되며 영향력이 약해진 바 최저임금제 필요성이 대두

# 4. 1987년 최저임금법 제정

2017년 노동자총연맹 가입자는 약 7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8%, 인구의 약 9% 차지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 최저임금법(Minimum Wage Law, 5747-1987)
  - ㅇ 이스라엘 시민과 거주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
  -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받는 18세 이상의 고용인에게 적용
    - 파트타임 고용인은 최저임금의 보호 대상에 포함
  - 노동자총연맹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
- □ 도제법(Apprenticeship Law, 5713-1953)
  - ㅇ 특정 전문분야 견습생의 월급과 지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 견습생의 임금은 노동부(최근 경제부가 협력)가 결정
  - 노동부는 견습생의 숫자를 제한하며 특정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준의 견습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금지
  - ㅇ 전문분야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견습생으로 고용 가능

# 2. 최근 3년 이내(2014~2018년) 법령 개정사항

- 2014.12. 노동자총연맹(Histadrut)과 이스라엘기업인협회(Israel Business Organizations Directorate)의 단체협약으로 다음과 같은 보완규정 제정
  - 2015.4.1.부터 2016.3.1까지 최저임금을 월 4,300NIS에서 월 4,650NIS 으로 인상
  - 2016.4.1.부터 2016.12.31.까지 최저임금을 월4,825NIS로 인상
  - 2017.1.1.부터 최저임금을 월5,000NIS로 인상
  - 2017.12.1.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월5,300NIS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국가포함)
- 시급, 일급, 월급 및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18세 이상 노동자 (내·외국인 동일 적용)

# 2. 특례대상

○ 18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경제부장관이 마련하고 국회 노동사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불 가능

- 단, 정신적, 심리적 또는 신체적 장애인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일부라 하더라도 국가의 출연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최저임금 적용

#### 3. 적용제외대상

ㅇ 없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 최저임금: 시급(29.12NIS), 주급(주 5일 244.62NIS, 주 6일 212NIS), 월급(5,300NIS). 최저임금 근로자는 연봉으로 미계산
- 통상 근로자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제로 계산

## □ 근로시간

-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2시간, 월 182시간
- 주5일 근무자는 1일 8.4시간 근무, 주6일 근무자는 1일 7시간 근무
-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
  - 휴일이나 명절근무는 경제부의 허락을 받은 특정 업종(보안, 병원 등)에만 허락되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ㅇ 기본급여 또는 종합급여
- 생활비 보전수당(종합급여 미포함 시)
  - \*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상승 시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보전수당
- 기타 고용의 결과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고정금액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가족 수당, 근속 수당, 교대근무 수당, 1개월 추가 수당, 연례 수당
- 고용자가 지불 또는 보전한 고용인의 출장비(숙박비 및 교통비)

#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5

○ 경제산업부의 노동법 집행 관리국(Administration for Enforcement of Labour Laws)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ㅇ 최저임금 위반 시 아래와 같은 처벌 부과
  - 징역 1년 미만 또는 220,000NIS 이하 벌금 부과
  - 1인에 대한 위반 1건당 매월 5,000NIS(월급제의 경우) 또는 매일

200NIS(월급제가 아닌 경우, 월급제이나 근무일이 12일 미만인 경우) 벌금 부과

- 최저임금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확정판결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는 가장 최근의 판결일로 부터 1년간 정부기관 입찰에서 배제
- 노동법원은 사업주에게 미지불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 하도록 사업주에게 명령 가능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ㅇ 경제부 출장소에 구제신청 또는 노동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최저임금관련 제안은 경제부장관, 노동자 총연맹을 통하여 이루어 지며, 노동자총연맹(Histadrut)과 이스라엘기업인협회(Israel Business Organizations Directorate)의 단체협약을 기초로 국회에서 심의, 승인
- 노동자총연맹(Histadrut)은 55명으로 구성된 지도위원회가 있음. 위원장이 지도위원을 임명하며 지도위원회가 임금협상단을 구성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최저임금은 1987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되며, 보완규정을 통해 개정됨. 실제적으로는 노동자총연맹과의 단체협약을 통한 협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

## 2. 결정절차

○ 통상 6월에 제안을 접수하고 단체협약을 기초로 국회에서 심의 승인과정을 거치며 경제부장관은 다음해 4.1자로 최저임금을 고시 및 시행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노동자총연맹(Histadrut)과 이스라엘기업인협회(Israel Business
 Organizations Directorate)간의 협상과정은 미공개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최저임금은 생계비, 물가지수, 다른 임금요인을 지표로 노동자총
   연맹과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
  - ※ 연간 인플레가 8% 이상일 경우에만 생계비를 최저임금 인상 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2004년 결정하였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인플레가 8% 미만이어서 최저임금인상 기준에 생계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물가지수통계: 월·분기·년 통계
- 임금통계: 월·분기·년 통계
- 노동력통계: 월·분기·년 통계
  - 통계내용: 15세 이상 노동력에서 실업률과 고용률. 25-64세 노동력에서 실업률과 고용률
    - ※ 통계는 이스라엘 통계청(www.cbs.gov.il)이 작성

# 4 갱신주기

ㅇ 매년 4월 주기적으로 갱신

496 ... 최저임금위원회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 2018.4.1. 최저임금
  - 시급(29.12NIS), 주급(주 5일 244.62NIS, 주 6일 212NIS), 월급(5,300NIS)
    - ※ 2018.4.1.에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면서(43시간→42시간) 시급이 사실상 상향 조정되었으나 2019.3.29 현재까지 시급에 대한 법 개정은 완료되지 않음
  - 주5일 근무자는 1일 8.4시간 근무, 주6일 근무자는 1일 7시간 근무

#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NIS, New Israeli Shekel)

연도	일급 (주 5일)	일급 (주 6일)	시급	월급	인상률
2018.4.1. ~ 현재	244.62	212	29.12	5,300	_
2017.12.1. ~ 2018.3.31	244.62	212	28.49	5,300	6.0
2017.1.1. ~ 2017.11.30.	230.77	200	26.88	5,000	3.6
2016.4.1. ~ 2016.12.1.	222.70	193	25.94	4,825	3.8
2015.4.1. ~ 2016.3.31.	214.61	186	25	4,650	8.1
2012.10.1. ~ 2015.3.31.	198.46	172	23.12	4,300	4.9
2011.7.1. ~ 2012.9.30.	189.23	164	22.04	4,100	5.39
2011.4.1. ~ 2011.6.30.	179.55	155.61	20.92	3,890.25	1.0
2008.7.1. ~ 2011.3.31.	177.70	154.00	20.70	3,850.18	3.77
2007.4.1. ~ 2008.6.30.	171.24	148.41	19.95	3,710.18	3.48
2006.6.1. ~ 2007.3.31.	165.47	143.41	19.28	3,585.18	3.72
2006.4.1. ~ 2006.5.31.	159.53	138.26	18.58	3,456.58	3.63

- \* 출처: www.btl.gov.il/insurance 2019.1.1. 게재 확인
-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시 월 18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단위: 개소, 명, %)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적용대상 사업체*	적용대상 근로자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영향률
'18	1인 이상		4,199,000		
'17	1인 이상	515,000	4,126,000		

- \* 면세사업자는 제외되며, 2018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 \*\* 최저임금대상근로자의 통계는 이스라엘은행(Bank of Israel)의 2012년 통계가 가장 최근 것임. 2013년 이후 통계 없음

# 최저임금 미만현황

3

○ 2013년 최저임금 미지불로 인한 벌금부과: 90건

(출처: 2014 경제부 보고)

# 4 기타 최저임금 관련통계

# □ 청소년 최저임금 현황

(단위: NIS(New Israel Shekel), 현지화폐)

구분	최저임금에 대한 비율	최저월급 (최대 주40시간)	최저시급
16세 미만	70%	3,710	21.45
16-17세	75%	3,975	22.98
17-18세	83%	4,399	25.43
견습	60%	3,180	18.38

<sup>\*</sup> 출처: 국민권리보호 단체(2019.3.7)

# □ 장애인 최저임금 현황

(단위: NIS(New Israel Shekel), 현지화폐)

업무능력(100%)	최저임금에 대한 비율	최저월급	최저시급
19-30	30%	1,590	8.73
31-40	40%	2,120	11.64
41-50	50%	2,650	14.56
51-60	60%	3,180	17.47
61–70	70%	3,710	20.38
71-80	80%	4,240	23.29
80이상	100%	5,300	29.12

<sup>\*</sup> 출처 : 국민권리보호 단체(2019.3.7.)

# 5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2017.12.1.부터 최저임금을 월5,300NIS로 인상
  - 2018.4.1.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43시간에서 42시간으로 변경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www.kolzchut.org.il 국민권리 보호 단체
  - www.economy.gov.il 경제산업부
  - www.tax.co.il 국세청
  - ㅇ www.cbs.gov.il 통계청
  - www.btl.gov.il 국립보험공단

주이스라엘대사관 공사참사관 제동환 (전화 972-9-959-6804, dhche97@mofa.go.kr )

# 28. 인도네시아

국	명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언 어		인도네시아어		
면	적	190만ʰ//(한반도의 약9배)		
인	구	2억6,058만명(2016, 통계청)		
수	도	자카르타 (인구: 약 1,015만 명)		
주 9	요도시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등		
종	교	이슬람교(87%), 기독교(7%), 가톨릭(3%), 기타(3%)		
교 육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초등6년, 중등3년)		
화폐 단위		루피아		
GDP		1조 264억달러(2018)		
1인당 GDP		3,927달러		
주요 경제	경제성장률	5.17%(통계청)		
지표	교역	수출 1,801억달러, 수입 1,886억달러		
(2016)	실업률	5.3% (2017.2)		
	물가상승률	3.13% (2018)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id-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 1970-90년대

- 1970년대 초반 이래 시행해왔던 최저임금제는 이후 상당기간 동안 형식적인 제도로만 운영되어오다 1980년대 후반 커다란 변화를 겪음
- 1989년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제는 최저생계비, 노동시장 조건 등과 연동되어 산출되기 시작했으며, 지역에 따른 경제적 조건 역시 고려됨
- 1999년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에 따라 인력이주부장 관이 주, 시·군최저임금 결정
  - \* 인도네시아 노동관련 부처는 인력이주부(Ministry of Manpower and Migration)였으나 2015년에 조코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인력송출 업무를 분리한 후부터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로 통칭. 따라서 인력이주부와 노동부는 동일한 정부부처임. 인니 노동부 본부는 바뀐 명칭을 쓰고 있으나 지방조직은 여전히 인력이주청으로 쓰고 있기도 함

# 2. 2003년 신노동법 제정

- ㅇ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근거 정비
- 주, 시·군최저임금은 적정생계비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주지사가 시·군임금위원회의 추천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지방 자치화 도입
- ㅇ 최저임금 지급 유예제도 도입, 장관령으로 시행규칙 마련

## 3. 2013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및 2015년 임금 정부령 제정

- 2013년 각 지방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결정절차상 난맥상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지시 형태의 가이드라인 및 인력이주부장관령 제정
- 2015년 기존의 임금 관련 시행법령을 총망라한 "임금에 관한 정부령" 제정, 최저임금 결정공식을 신설하여 각 지방정부가 임의로 최저 임금 인상폭을 정할 수 없도록 기준 마련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인도네시아 노동법(No 13, 2003년)
- 최저임금 기준, 결정절차 및 결정권자, 최저임금 이하 지급 금지 및 유예절차
- 임금위원회에 관한 대통령결정(No 107, 2004년)
  - 중앙 및 각 지방 임금위원회의 구성, 의사결정 절차 등 규정
- 적정생계비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No 13, 2012년)
  -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적정생계비 조사의 항목, 조사절차 등 규정
- 최저임금 시행유예절차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결정(No 231, 2013년)
  - 노동법상 근거가 있는 유예 신청, 승인절차

504 ... 최저임금위원회

- 임금에 관한 정부령(No 78, 2015년)
  - 임금 개념, 적정소득, 임금 보호, 최저임금(결정 기준 및 절차), 제재 규정 등 임금관련 법령 통합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주단위 아래에 자치시·군이 없는 자카르타의 주최저임금은 사업 장에 직접 적용되나,
  - 다른 주의 주최저임금은 시·군 최저임금의 하한역할만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 군 최저임금임
- 최저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기준으로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지급되어야 함
  - \* 최저임금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No 15, 2018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최장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지급이 금지됨
  - \* 외국인 차등적용 규정 없음
-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업종에 대한 법령규정은 없어
   최저임금 시행 상 필요한 세부규정이 미흡한 편임

#### 2. 적용유예

- 최저임금 적용이 힘든 기업의 경우 일정요건(노사합의, 재무보고서, 향후 생산계획 등)을 갖춘 유예신청에 대하여 주지사의 결정을 얻어 최저임금 적용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최저임금 유예신청은 다음해 최저임금 시행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할 주정부 인력이주청(지방노동청)에 신청해야 함
- 최저임금유예 신청 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기초하며 노사합의서, 최근 2년간 회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타 재무상태 설명서를 포함하는 회사 재무보고서, 최근 2년 간 생산, 판매 현황 및 향후 2년간 생산계획, 판매계획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최저임금 유예기간은 최장 12개월이며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은 신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최소한 새로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 임금이 기본급 및 고정수당으로 구성된 경우에 기본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의 75% 이상이어야 함
  - \* 노동법 제94조
- 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와 노조가 합의할 경우 주급 또는 매 2주마다 월 보수액을 기초로 최저임금 규정에 맞게 지급 가능
  - \*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3/제7호

# □ 근로시간(노동법 제79조)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시 1일 8시간
- 1주간 휴무는 6일 근로 시 1일, 5일 근로 시 2일을 부여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이 휴가권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정상 급여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규정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발표가 됨
- 잔업은 근로자 동의를 요하고 최장 1일 3시간, 주 14시간까지만 허용되며, 특정업종 및 업무에 대한 예외는 장관령으로 규정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및 산입하지 않는 임금
-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ㅇ 상여금, 시간외수당, 현물급여 등
    - \*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개념은 적정생계비와 연계하여 출근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받는 임금(기본급+고정수당)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 불산입되는 임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 유급주휴수당 규정 없음

#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5

- ㅇ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감독은 노동관청 소관임
- 중앙정부의 노동부에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총국 소속 근로감독 국이 근로감독정책을 총괄 및 중요사건에 대한 직접 근로감독권을 행사하며,
- 주정부의 노동청 및 시·군정부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을 지급여부를 포함한 근로감독을 시행함

- 지방노동청(또는 사무소)은 지방정부 소속으로 지방자치의 영역이나 중앙정부의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규율을 받음
- 노동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임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최저임금 지급규정 위반은 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행위로 규정되며 징역 1년에서 4년, 벌금 최소 1억에서 최고 4억 루피아(약 3만 7천 USD)에 처함
  - \* 노동법 제16장 「형사법규정 및 행정제재」 제185조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최저임금 미지급은 형사제재 대상으로 근로자나 노조의 신고에 의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일반형사절차에 따른 제재를 하게 됨
-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노사분쟁해결 절차를 통함
- 노사분규 해결법(No 2, 2004년)에 의하면 노사분규발생시 노사 협상을 우선시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분쟁해결 신청을 하며 노동청에서는 노사에 대해 알선 또는 중재의 방법 중 선택하여 분쟁해결을 하며,
- 분쟁해결 방법합의에 실패할 경우 조정절차에 회부됨
- 알선 또는 중재를 통한 노사 합의시 합의문은 관할 노동법원에

등록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짐

- 조정 및 알선 절차는 노동청에 등록된 알선인 또는 중재인에 의해 시행되며 합의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합의문을 노동법원에 등록 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됨
- 노동법원은 일반법원에 속한 특별법원으로 해고, 권리 및 이권분쟁, 단일회사 내 노조 간 다툼사건을 관할하며,
- 민사소송절차를 따르고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특별판사와 일반판 사로 구성되며 2심은 대법원임
  - ※ 노동법 위반 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 관할임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1) 국가임금위원회

- 중앙정부의 임금정책 자문기구인 국가임금위원회와 실질적인 최저 임금 노사정 협의기구인 각 지방임금위원회(주 및 시/군)가 각각 설치되어 있음
- 근거법령은 국가임금위원회 및 (지방)임금위원회에 관한 대통령 결정(2004년 제107호)으로 규정함
- 국가임금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임금정책 자문기구로 위원은 정부대표, 사업주대표, 노조대표로 구성되며 학계 및 전문가 위원은 필요에 따라 임명됨(위원의 총수는 홀수여야 함)
- 정부측, 사업주측, 노조측 위원의 비율은 2:1:1
  - \* 대부분 위원 수는 10명, 노조 5명, 사업주 5명, 대학 및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사업주는 인니경총이 대표함
-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절차에 대해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2) 지방임금위원회

- 지방임금위원회는 주임금위원회 및 시·군임금위원회가 각 지방정부 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장의 추천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해임
- 지방임금위원회 위원은 지방정부대표, 노조대표, 사업주대표, 대학,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별도로 없으나, 위원 수 비율은 각각 2:1:1이고 위원 총수는 홀수를 유지
  - \* 보고르지역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 14, 사업주측 7, 노조측 7로 구성
- 위원의 자격요건은 1. 인니 국적자, 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3. 인적자원 개발 및 임금분야에서 종사했거나 지식을 가진 자로 제한
- 주 단위 및 시·군단위 지방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현실적으로 변동성이 커서 수시 교체)
- 노사정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협의하여 지방정부의 장(주지사, 시장/ 군수)에게 익년도의 최저임금액을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
-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통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및 절차

2

## □ 주 및 시·군 최저임금 결정절차

- 주(UMP) 및 시·군 최저임금(UMK)은 주 및 시·군 임금위원회의 토의 및 인상액 추천을 거쳐 모두 주지사가 결정, 고시함
  - ※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2015년 「임금에 관한 정부령」이 제정됨에 따라 2016년도 최저임금부터는 아래 기술된 법령절차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절차 보다는 동 정부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따른 주지사의 일률적인 인상액 결정권한이 우선시되었음
- ㅇ 임금위원회 내부 결정절차
- 임금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토의(musyawarah)와 합의(mufakat)를 중시하는 인도네시아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운영됨
  - ※ 임금위원회 관계 법령은 위원회 구성 및 행정조직 위주로 규정하고 있음
- 임금위원회는 시장조사 및 토의를 통해 적정생계비(KHL) 금액을 먼저 결정한 후 익년도 최저임금액을 토의 및 표결을 통해 정하여 주임금위원회는 주지사에게, 시·군 임금위원회는 시장, 군수에게 추천
- 토의과정에서 위원 간 이견이 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 사정이 각각 익년도 최저임금액을 각각 주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추천하는 경우도 있음

- 주최저임금(UMP) 결정절차
- 주임금위원회가 추천한 최저임금액은 주지사를 기속하지 않으며 주지사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대부분 주임금위원회의 추천금액을 그대로 결정·고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 자카르타를 제외한 다른 주들은 시·군 최저임금이 더 중요하므로 주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대립은 심하지 않으며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됨
- 시, 군 최저임금(UMK) 결정절차
- 각 시·군 임금위원회는 익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군수에게 추천하며 시·군수는 임금위원회의 추천금액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주지 사에게 관할 시·군의 익년도 최저임금액을 추천함
- 시·군 임금위원회의 및 시·군수의 추천금액은 주지사를 기속하지 않으나 대부분 시·군수의 추천금액을 그대로 결정·고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따라서 2014년까지 각 시·군 임금위원회의 위원 추천, 적정생계비조사방법 및 시기, 인상액 결정을 위한 토의 및 표결과정이 매우중요하였고 그 이후도 임금위원회의 위원, 시·군수의 의사가 중요

## □ 주 및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절차

- 업종별 최저임금(UMP 및 UMSK)의 개념
- 다수 근로자를 고용하고 경제적 영향이 큰 섬유, 봉제, 전자, 식품, 목재, 금속 등 "중점업종"에 대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여 시행함

- 「임금에 관한 정부령」 에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법령, 장관령 등 규정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다소 혼선이 있음
- 익년도 주 및 시·군 최저임금이 결정·고시되면 최저임금액을 하한선 으로 제조업체가 다수 소재한 주 및 시·군에 적용되는 업종별 최 저임금을 별도로 주지사가 결정·고시함
- 자카르타수도특별주는 자치 시·군이 없어 주최저임금이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므로 주업종별 최저임금이 결정·고시 및 적용됨
- 나머지 주에서는 시·군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하는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적용되며 업종에 따라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업황을 고려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이 고시되지 않는 업종도 있음
- 업종별 분류는 일반적으로 산업부의 산업분류표에 따르나 시·군에 따라서는 피고용 근로자 수나 수출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등 일정치 않음
- 업종별 최저임금(UMP 및 UMSK)의 결정절차
-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관련 업종 사업주단체(인도네시아경영자 협회)와 노조의 합의에 근거하고 지역임금위원회의 중점업종에 대한 제안과 고려를 감안하여 시·군수를 거쳐 주지사가 결정함
- 일반 최저임금과 다른 점은 그 결정근거로 업종별 노사합의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임

# 2.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ㅇ 외부방청 허용여부
- 대부분 지역의 임금위원회는 회의에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음
- ㅇ 녹취 여부
- 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은 서기가 기록하며 주지사의 지시 등 특별한 경우에는 녹음할 수 있음
- ㅇ 공개여부 및 범위
- 회의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최저임금 논의결과만 노동부장관, 주지사 및 주의회에 보고함
- 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결과를 보고서 사본으로 배포함
  - ※ 최저임금 논의결과란 노사정 대표가 각각 제시하고 합의한 적정생계비, 최저임금 인상액 및 합의하지 못한 경우 표결결과를 말함
- ㅇ 공개시기
- 회의록은 비공개이며 최저임금 설정의 기준으로 결정된 적정생계 비와 지역별 최저임금액은 주지사가 익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 후 외부에 공개함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 법정 기준

- ㅇ 노동법 2003년 제13호
- 제89조 제2항 "최저임금은 적정생계비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된다."
-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현 노동부장관령) 2013년 제7호
- 제3조 제1항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적정생계 비를 기초로 결정된다."
- 동조 제2항 "최저임금은 적정생계비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78호
- 제43조 제1항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적정 생계비를 기초로 매년 정한다."

# □ 적정생계비(KHL)

 적정생계비 구성항목 및 조사절차는 「적정생계비 달성단계 시행 및 구성항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2012년 제13호)에 규정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 임금위원회에 의해 구성된 조사팀(임금위원회 4명 및 지역통계사무소 1명)에서 지역별 적정생계비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토의를 거쳐 적정생계비가 결정됨
  - \* 임금위원회 미구성 지방정부의 조사팀은 사업주 측 1, 근로자 측 1, 지방정부 측 1 및 지역통계사무소 측 1명으로 구성됨
- 시·군 임금위원회는 매월 적정생계비 조사결과를 주임금위원회에,
   주임금위원회은 관할 모든 시·군의 적정생계비 조사결과를 국가 임금위원회에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함
- 적정생계비 계산을 위한 시장가격조사 항목에는 식음료, 의류, 주택,
   교육, 의료, 교통, 여가 및 저축 등 7개 분야 60개의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음
  - ※ 상기 장관령에 의해 2013년 최저임금부터 종전 46개 항목에서 60개 항목 으로 확대 적용
- 적정생계비 조사는 매월 첫째 주에 실시하며, 종교명절 및 라마단(금식월) 등 시장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기를 정해야 하며,
- 응답자는 시장에서 항목별 품목별로 소매상 3명씩을 대상으로 조사 원이 실제 흥정을 통해 구매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임
  - ※ 현장조사 시 어느 시장에서 조사할 지, 어떤 물건을 할지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노사정간 의견차가 있으며 통상 월-목요일 오전 8-10시간대의 가격을 조사하고 있음

### □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 기존 최저임금의 법정기준인 적정생계비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이 사회문제화되고 지역별 최저임금의 편차가 크고 예측가능성이 낮아 경영계획 수립이 어렵고 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정부는 2015년 「임금에 관한 정부령」을 제정하여 적정생계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 익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공식화하고 2016년 최저임금부터 적용함
- 이에 따라 2015.10.23. 제정된 동 정부령에 의해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다수 주정부가 임금위원회 협상절차와는 별도로 2015년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더한 인상률 11.5%를 적용하여 지역별 익년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산출하여 결정·고시하였고, 2017~2019 최저임금 결정시 동 기준을 따름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ㅇ 적정생계비 산출방법
- 지역별 임금위원회 내 구성된 조사팀이 직접 조사·산출함
- 「임금에 관한 정부령」에 의해 적정생계비 구성항목은 국가임금 위원회에서 매 5년마다 재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함
- ㅇ 「임금에 관한 정부령」에 규정된 최저임금 산출공식
- 익년도 최저임금(UMn) = 당해년도 최저임금(UMt) + UMt × {당해 연도 물가상승률(Inflasi t) +당해년도 국내총생산 성장률(PDBt)}

4

#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주최저임금 고시일은 매년 11월 1일, 시·군 최저임금은 11월 21일 이며, 업종별 최저임금은 고시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
- 2014년까지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지역최저임금과 함께 고시하는 주가 많았으나 2015년부터는 업종별 최저임금의 노사협의가 실제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최저임금 고시 후 별도로 고시하는 지역이 많아 졌음
- 시·군 최저임금은 주지사가 같은 날 하나의 문서로 고시하며,
   시·군별 총액만 표시되고 산출근거, 인상률 등 사항은 기재하지 않음(시간당 최저임금액은 표시되지 않음)
  - 업종별 최저임금도 동일한 형식으로 고시함

# 5 갱신주기

- 최저임금은 매년 심사하여야 하고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익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 결정고시문에 당해연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이와 동시에 전년도 최저임금 고시문서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기재됨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최저임금 현황

1

(단위 : 루피아(Rp),월)

주 또는 시•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카르타수도특별주	2,441,301	2,700,000	3,100,000	3,355,750	3,648,035	3,940,973
서부자바주 반둥군(Kab. Bandung)	1,735,472	2,001,195	2,275,715	2,463,461	2,678,029	2,893,075
서부자바주 반둥시(Kota Bandung))	2,000,000	2,310,000	2,626,940	2,843,662	3,091,346	3,339.581
서부자바주 버까시시(Kota Bekasi)	2,441,954	2,984,000	3,327,160	3,601,650	3,915,354	4,229,757
서부자바주 버까시군(Kab. Bekasi)	2,447,445	2,925,000	3,261,375	3,530,438	3,837,940	4,146,126
서부자바주 보고르시(Kota Bogor)	2,352,350	2,711,000	3,022,765	3,272,143	3,557,147	3,842,786
서부자바주 보고르군(Kab. Bogor)	2,242,420	2,655,000	2,960,325	3,204,551	3,483,667	3,763,406
서부자바주 까라왕군(Kab. Karawang)	2,447,450	2,987,000	3,330,505	3,605,272	3,919,291	4,234,010
서부자바주 수까부미시(Kota Sukabumi)	1,350,000	1,645,000	1,834,175	1,985,494	2,158,431	2,331,753
서부자바주 수까부미군(Kab. Sukabumi)	1,565,922	1,969,000	2,195,435	2,376,558	2,583,557	2,791,016
서부자바주 수방군(Kab. Subang)	1,656,857	1,928,000	2,149,720	2,327,072	2,529,760	2,732.900
반튼주 땅그랑시(Kota Tangerang)	2,444,301	2,710,000	3,043,950	3,295,075	3,582,077	3,869,717
반튼주 땅그랑군(Kab. Tangerang)	2,442,000	2,710,000	3,021,650	3,270,936	3,555,835	3,841,368
반튼주 찔레곤시(Kota Cilegon)	2,443,000	2,760,590	3,078,057	3,331,997	3,622,215	3,913,078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시(Kota Surabaya)	2,200,000	2,710,000	3,045,000	3,296,212	3,583,313	3,871,053
중부자바주 스마랑시(Kora Semarang)	1,423,500	1,600,000	1,909,000	2,125,000	2,310,087	2,498,588
중부자바주 살라띠가시 (Kora Salatiga)	1,170,000	1,287,000	1,450,953	1,596,000	1,735,930	1,875,325
중부자바주 즈빠라군 (Kab. Jepara)	1,000,000	1,150,000	1,350,000	1,600,000	1,739,360	1,879,031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 인도네시아정부는 최저임금 적용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음

# 3 최저임금 미만현황

- 인도네시아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음
  - ※ 통상 노사분규발생업체에 대한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선에서 업무종료

# 4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인도네시아 전국 34개주 가운데 33개 주단위(UMP)와 시군단위(UMK)2019년 최저임금이 8.03%로 인상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기준은 지역별 주단위 최저임금인 UMP, 시군단위 최저임금인 UMK 그리고 업종별 최저임금 UMSK로 나뉘어 있다. 노동부가 지난 10월 15일 2019년 최저임금 기준안을 8.03%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부 장관령 (Surat Edaran Menteri Tenaga Kerja Nomor 8.240/M-Nake/PHI9SK-Upah/X2018)으로 공시 되었으며, 최저임금인상은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계산을 근거로 정해졌다고 주요언론은 10월 16일 보도했다.
  - 2019년 최저임금인상을 정하기 위한 2018년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률은 중앙통계청(BPS)이 작성했다. 노동부가 15일 최저임금 인상결정

을 발표하기 전 10월 4일 중앙통계청은 노동부 장관에게 공문서 (Nomor B-216/BPS/1000/10/2018)를 보내 "2018년 인플레이션율은 2.88%이며 경제성장률은 5.15%"라고 알리며, "이는 최저 임금인상의기준이 된다"고 적었다. 이에 노동부는 주단위 최저임금 (UMP-Upah Minimum Provinsi)과 시군단위 최저임금(UMK)를 8.03% 인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어 34개주 주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인플레이션율 2.88%, 경제성장률 5.15%를 근거로 주(州)단위 최저임금(UMP)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2019년 업종별 최저임금 UMSK(Upah Minimum Sektoral Kabupaten/Kota 2019)에 업체는 고심이 남아있다. 가장 높은 업종별 최저임금 UMSK를 받는 업종은 화학, 기계, 전자, 플라스틱, 은행, 호텔 등이다. UMSK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져야하는 임금이다. UMSK 금액은 UMK에 추가 임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업 업종 유형에 따라 5-9% 사이에 지급된다.

- 2019년 최저임금 8.03% 인상에 대한 각계각층 반응
- 2019년 최저 임금인상에 대해 인도네시아 전국노총(Organisasi Pekerja Seluruh Indonesia)의 띰불 시레가르 (Timboel Siregar) 총무는 "노동부 2019년 최저임금 8.03% 인상에 찬성하고 노사는 객관적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고 달러가치 상승으로 회사들의 생산비가 증가해 비용부담이 너무 무겁다면 회사는 파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저임금 8.03% 인상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띰불 총무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낮은 교육수준으로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콤파스는 전했다.
  - 하니프 다키리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8.03%는 임금인상 정부 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78 Tahun 2015)을 근거로 노사에게 확실한 임금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정부 시행령은

'2015년 제78호'에 따라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을 임금 인상률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인 APINDO의 하르야디 B 수깜다니 회장은 "2019년 최저임금 8.03% 인상에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19에 최저임금 8.03% 인상은 기업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 최저임금인상 8.03%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인상 능력과 맞지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15년과 2016년에 최저임금은 많이 인상되었다. 그 래서 2019년 최저임금인상 8.03%는 무거운 부담된다"고 말했다.
- 가구 수공품 제작자 협회 (Himpunan Industri Mebel dan Kerajinan Indonesia)의 압둘 소부르 (Abdul Sobur) 회장은 "최저임금인상 8.03%는 경제성장률과 적합하다는데 찬성하며 최저임금 인상 8.03%는 적당하다. 제작업 임금 비중은 생산비 30%에 해당한다. 제조업 임금은 근로자에게 민감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 인도네시아 노동총연합(KSPI)은 2019년 최저임금을 20~25%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도 20%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KSPI는 "루피아 하락, 유가인상으로 생필품 가격이 인상되어 근로자 적정생계비(KHL)가 많이 올랐다"고 임금인상을 재차 강조해 연말 임금인상 시위를 예고했다.
  - \* 이상 출처: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 http://kemnaker.go.id
- 인도네시아 노동부 법령웹사이트 http://jdih.kemnaker.go.id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고용노동관 김영미

(전화 +62-21-29672555, e-mail : Koremb\_in@mofa.go.kr)

# 29. 일본

국	명	일본	
언	어	일본어	
면	적	약 38만km² (한반도의 약 1.7배)	
인	구	약 1억2,659만명 (2018)	
수	도	도쿄	
종	교	신도, 불교, 기독교	
교 육		의무교육 9년 (소학교6년, 중학교3년)	
화폐 단위		엔(¥)	
GDP		명목 4조 8,721억달러 (2017)	
	1인당 GDP	3만 8,348달러 (2017)	
주요 GDP성장률 실질 0.7% (2018)		실질 0.7% (2018)	
경제   지표	교역	수출: 81조 4,866억엔 /수입: 82조 6,899억엔 (2018년)	
실업률 물가상승률		2.4% (2018년)	
		0.9% (2018년)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jp-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947년 노동기준법에서는 행정관청이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 및 의견에 근거하여 일정사업 혹은 직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1956년 시즈오카현 노동국장은 각 업계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 는 방안을 제시, 장려(이후 통조림업계를 중심으로 확산)
- 동 사례 성공에 따라 업계간 규율에 근거한 최저임금법 성립('59)
  - ① 업자간 협정에 근거하는 최저임금 ② 업자간 협정에 근거하는 지역 적 최저임금 ③ 단체협약에 근거한 지역적 최저임금 ④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근거한 최저임금 규정
- 1959년 4월 15일 최저임금법 제정 공표를 통해 최저임금제도 도입
- 당시 최저임금은 '업자간 협정에 따른 최저임금', '업자간 협정에 따른 지역별 최저임금', '노동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따른 최저임금'이라는 4가지 결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국 적으로 단일한 최저임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역별·산업별로 구분 하여 최저임금제 도입
- 지역별 최저임금제 확산과정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의 차이가 커지면서 1963년 10월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

(目安)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 1968년 6월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산업별, 직업별 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업계 자율규율방식 폐지 및 심의회 방식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개정·폐지절차 등 개편
- 후생노동대신·도도부현 노동국장은 관계 노사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역·사업(산업)·직업에 대하여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또는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조사·심의를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 최저임금 결정
- 지역별 최저임금은 1972년부터 「최저임금의 연차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설정하기 시작하여 1976년에 전 도도부현에 설정되어 현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최저임금으로서의 역할 수행
- 2007년 12월 법 개정에서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일반적 최저임금 으로서의 기능, 즉 모든 노동자를 부당하게 낮은 임금으로부터 보호 하는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하는 법체계 정비
- 개정법률 제9조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원칙에 따라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역노동자의 생계비및 임금, 통상적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정하되,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생활보호에 관련된 시책과의 정합성을 고려
- 현 아베정권은 연간 인상율 3% 정도를 목표로, 명목 GDP 성장

률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을 전국평균 시급 1,000엔까지 인상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16년 이래 3년 연속 3%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옴

- 2018년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시간액)은 874엔
- \*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2018(2018.6.15. 각의결정), 미래투자전략 2018(2018.6.15. 각의결정),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2017.3.28. 일하는 방식개혁 실현회의결정) 등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붙임 참조)

# 2. 2007년 법령 주요개정 사항(2008.7.1. 시행)

- ㅇ 지역별 최저임금
- ①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노동자가 건강하게 문화적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에 관한 시책과의 정합성도 고려
- ②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불한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상향조정
- ㅇ 산업별 최저임금
- 산업별 최저임금액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기준법 제24조의 임금 전액지불 위반의 벌칙 (노동기준법 제120조, 벌금의 상한액 30만엔)을 적용

- ㅇ 적용제외규정의 재조정
-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장애로 현저히 노동능력이 낮은 자, 시용사용기간 중인 자, 인정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등에 관한 적용제외 허가규정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의 감액특례 허가 규정을 신설
- ㅇ 파견노동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변경
- 파견노동자에게는 파견처(사용사업주)의 지역(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
- ㅇ 최저임금액의 표시기준을 통일
- 시간액, 일액, 주액 또는 월액으로 정해져 있던 최저임금액 표시 단위를 시간액으로 통일

##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3

- □ 지역별 최저임금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임시, 촉탁 등 고용형태 및 호칭에 관계 없이, 각 도도부현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및 그 사용자에게 적용됨
- □ 한편, 특정(산업별)최저임금\*은 특정 산업의 기간제 노동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해 적용되며, 특정(산업별)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는 아래와 같음

- \* 특정(산업별)최저임금: 당해 노동자 또는 사용자에 적용되는 일정의 사업 또는 직업에 관련된 최저임금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자
- ㅇ 고용 후 일정기간 미만의 기능습득 중인 자
- ㅇ 그 외 해당산업 특유의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자
- ※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는 자 및 가사사용인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노동자 로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됨

#### 2. 특례대상 근로자

- □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아래 노동자에 대해 최저 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감액비율은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함
  - ㅇ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에 의하여 현저히 노동능력이 낮은 자
  -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자
  - 직업능력개발촉진법(1969년 법률 제64호) 제24조제1항의 인정을 받아 행하여지는 직업훈련 중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 및 이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훈련을 받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 가볍고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월 지불되는 기본적인 임금으로 한정
- 식사 등 현물급여와 관련하여「최저임금법」제5조는, 임금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제공한 식사 기타의 대금을 임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에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
  - \* 임금의 일부를 현물급여로서 지급하는 경우 그 현물급여를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하라는 의미로, 사용자의 현물급여 평가금액이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평가할 것을 규정
- 적정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후생노동성의 해석(1959년 10월 28일 기발 제747호「최저임금법」제5조의 '현물급여 등의 적정평가기준' 및 동법 제7조의 '최저임금의 감액의 특례의 허가기준에 대해')은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 제시
  - ① 식사 그 외의 현물급여 등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 등의 실정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물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공여하는데 필요한 실제 비용을 넘지 않고, 입주노동자의 식사이외의 입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식사와 다른 특별한평가는 불인정
    - \* 입주노동자의 경우 식사를 제공받는 이외에도 주택임대료, 광열비 등을 본 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으나, 식사 이외의 그러 한 이익은 임금으로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

② 노동협약 또는 노사공제협정으로 현물급여 등의 평가액을 정하고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되, 협약 또는 협정으로 정하는 액이 부적당한 때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①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

####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ㅇ 구체적으로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대상에서 제외
- (1)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결혼수당 등)
-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상여 등)
- (3) 소정의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노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임금 (잔업수당 등)
- (4) 소정의 노동일 이외의 노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임금
- (5) 심야(오후10시부터 오전5시까지)노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임금 중 통 상 노동시간의 임금 계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심야수당 등)
- (6) 해당 최저임금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을 것으로 정한 임금(현행 규정에서는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 (법 제4조 제1항)
-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0조)
- 업종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0조)

2. 최저임금 위반현황 (단위 : %)

연도	감독실시	감독실시 사업장	최저임금	최저임금
연도	사업장수	노동자수	미만자수	미만자 비율
2018	15,602	195,606	6,386	3.3
2017	15,413	196,039	6,853	3.5
2016	12,925	166,570	5,590	3.4
2015	13,295	161,377	5,262	3.3
2014	13,975	182,548	5,716	3.1
2013	13,946	190,386	4,079	2.1
2012	13,644	185,260	4,056	2.2
2011	14,298	201,361	5,275	2.6
2010	13,559	192,080	3,482	1.8
2009	9,743	150,126	3,393	2.3
2008	19,550	310,782	4,081	1.3
2007	20,362	299,402	4,241	1.4
2006	10,700	149,523	2,376	1.6
2005	11,820	177,086	2,087	1.2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 (법 제4조제2항)
  - 이 규정은 지역별최저임금은 물론 특정최저임금에도 적용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지방노동기준감독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최저임금 결정기구 위원회 방식
  - ㅇ 구성
    - 중앙최저임금심의회 : 노사공익위원 각 6명, 총 18명
    - 지방최저임금심의회 : 노사공익위원 각 5명, 총 15명(도쿄 및 오사카는 각 6명, 총 18명)
  - ㅇ 임명권자
    - 중앙최저임금심의회 : 후생노동대신이 임명
    - 지방최저임금심의회 :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임명
    - ※ 지방최저임금심의회는 노동국이 설치된 47개 도도부현에 설치되며, 위원은 비상근
    - ※ 최저임금심의회와 관련된 사무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경우는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근로자생활부 근로자생활과가 담당하며, 지방최저임금심의회는 해당 도도부현 노동국(후생노동성의 지방지국)이 담당
  - ㅇ 임명절차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관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 중에서 임명
  - 임기 : 2년,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

- ㅇ 회의개최 및 결정방식
  - 위원의 2/3 이상 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3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 개최 및 의결 불가
  -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결정절차

-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먼저 후생노동대신이 매년 5월경 중앙최저임금 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하며,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전문부회가 '조사 심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를 매년 7월경 제시
  - 대개 47개 도도부현을 네 가지 등급(A, B, C, D)으로 나누어 제시하나, 2009년에는 등급별 목표치를 제시하는 대신 생활보호 수준과 괴리가 컸던 지역에 대해서만 목표치를 제시
- 중앙최저임금심의회로부터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에 대한 '답신'을 받은 후생노동대신은 이를 공시하며, 이때부터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본격적으로 '조사심의' 개시
  - \*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개정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노사공익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공익위원 의견을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의견으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동 의견을 지역별 최저임금액개정 기준으로 공표

### 2.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결정절차

- 각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 법률에 따라 전문부회를 설치하여 조사 심의를 진행하고, 전문부회에서 최저임금액(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대한 합의나 의결(採決)을 추진하고, 본 심의회에서는 전문부회가 제출 한 결과를 접수, 이를 도도부현 노동국장(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답신'하 는 형식으로 진행
  - \*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최저임금금액 심의는 전문부회에서 실시하고, 전문부회에서 합의(전원일치) 또는 의결(採決)에 의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심의결과를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보고. 보고를 받은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에서도 재차 전문부회의 보고대로 해서 괜찮을지, 의논 및 의결을 시행하여,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결과인 답신을 도도부현 노동국장에게 송부
  - 각 지역별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9월경 결정되고, 한달 후인 10월 중순경부터 효력 발생
    - \* 각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 공익위원 견해를 참고하되, 지역의 임금실태조사, 생활보호에 관한 시책조사, 참고인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그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지역별 최저임금액 결정

#### <참고> 지역별 최저임금의 연혁

- 1972년부터 각 도도부현에서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
- 이러한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단체는 전국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오랫동안 주장 → 1977년 중앙최임위는 전국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는 시기상조라 하여 거절하고, 각 도도부현마다 최저임금에 전국적인 정합성을 갖게 하기 위해 전 도도부현을 임금실세와 생계비 격차등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구분
  - \* 중앙최임위 기준액 결정시 '임금 개정 상황조사'(6.1일 시점으로 매년 30인 미만 사업소의 약 4.000개소 대상으로 한 임금상승률 조사)를 참고

### 3.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결정절차

 특정(산업별) 최저임금은 관계노사의 신청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도부현 노동 국장이 결정

#### <참고> 특정(산업별) 최저임금의 연혁

- 종래 산업별 최저임금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산업 등 몇 개의 넓은 범위의 산업에 대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에 근거하여 설정
-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작은 범위의 산업별' 최저임금을 설정
-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산업별 최저임금에 대한 요청을 받아 조사심의가 시작되며, 해당 산업의 최저임금액 개정이 필요한 지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최저임금 전문부회 설치
- 이때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산업과 관련되는 인물을 위원으로 전문부회에 참여하도록 하며, 산업별 전문부회에서 해당 산업의 최저임금액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의 노동국장에게 '답신' 송부
- 이를 기초로 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산업별 최저임금 공시
- 특정 최저임금은 지역별최저임금액을 상회할 필요

### 3 결정기준

-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최저임금 결정시, 노동자의 생계비, 임금, 통상 사업별 임금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하며 아래 통계를 활용
  - 거시경제지표: GDP, 실업률, 유효구인배율, 소비자물가지수 등
  - 임금지표: 현금급여 총액, 파트타임 시급, 임금교섭(춘투)결과 등
  - 생활보호지표: 최저임금 실수령액(제세공과금 공제후) 대비 청년 단신세대 급부액
  - 최저임금 적용실태: 영향률, 미만율 등
- 임금지표와 관련해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5인 이상)와 "최저임금 에 관한 기초조사"(30인 미만)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에 관한 기초조사로 파악된 임금정보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에 관계된 시책과의 정합성 고려
  - \* 법 제9조 제3항 규정
- 최저임금과 생활보호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2008년도 이후 △최저임금으로 법정노동시간을 일한 경우의 실수령액과 △의식주라는 의미에서 생활보호 중 12-19세 단신자의 생활부조기준(1類費\*\*+2類費\*\*\*+기말 일시부조)의 縣내 인구가중평균에 주택부조 실적을 더한 것을 47개 도도부현 각각 비교하여 정합성 확인을 하고 있음
  - \* 법 제9조 제3항에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

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보호에 관한 시책과의 정합성을 배려하도록 한다'고 규정

- \*\* (1종비) 식비 등 개인단위로 소비하는 경비이고 연령대별로 산정되는 통계
- \*\*\* (2종비) 수도광열비 등 세대단위로 소비하는 경비
- ㅇ 지방별 최저임금 권고 시 사용자료는 거의 유사
  - 생계비조사(세대별 표준생계비, 소비자물가지수, 가계수지)
  - 임금통계(도도부현 조사 후 중앙 취합)
  - 매월노동통계 조사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단위: 엔)

적용시기	시간당 최저임금 (전국 가중 평균액)	인상률(%)
2018.10월~	874	3.07
2017.10월 ~2018.9월	848	3.04
2016.10월 ~ 2017.9월	823	3.13
2015.10월 ~ 2016.9월	798	2.31
201410월 ~ 2015.9월	780	2.09
2013.10월 ~ 2014.9월	764	2.00
2012.10월 ~ 2013.9월	749	1.63
2011.10월 ~ 2012.9월	737	0.96
2010.10월 ~ 2011.9월	730	2.38
2009.10월 ~ 2010.9월	713	1.42
2008.10월 ~ 2009.9월	703	2.33

## 2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현황

-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 1.9%에서 2007년 1.1%로 감소한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2.7%을 기록한 후,
   2017년 1.7%로 다시 감소
  - \*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나 기업의 임금인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미만율이 증가세

○ 영향률은 2002년 1.9%를 정점으로 1.5~1.6%대를 유지하다 2007년 부터 상승 2013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 하다 2017년에는 11.8% 기록

###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추이>

(단위:%)

연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만율	1.9	1.6	1.5	1.4	1.2	1.1	1.2	1.6	1.6	1.7	2.1	1.9	2.0	1.9	2.7	1.7
영향율	1.9	1.6	1.5	1.6	1.5	2.2	2.7	2.7	4.1	3.4	4.9	7.4	7.3	9.0	11.0	11.8

- ※ "미만율"은 최저임금액을 개정하기 전에, 최저임금액을 하회하는 노동자 비율임.
- ※ "영향율"은 최저임금액을 개정한 이후, 개정후의 최저임금액을 하회하게 될 예상 노동자 비율임.

### 최저임금 관련 최근 동향

1.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3

-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전국 가중 평균)으로 874엔을 권고하였으며,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 4개의 등급(랭크)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별 최저임금 인상액을 권고
- 도도부현 지방최저심의회는 상기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권고를 토대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함
  - \* 2018년 등급(랭크)별 인상액

등급 (랭크)	지역(도도부현)	17년	18년
А	동경도,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사이타 마현, 지바현	26엔	27엔
В	교토부, 효고현, 시즈오카현, 시가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히로시마현, 나가노현, 도야마현, 미에현, 야마나시현	25엔	26엔
С	군마현, 오카야마현, 이시카와현, 가가와현, 나라현, 미야기현, 후쿠오카현, 야마구치현, 기후현, 후쿠 이현, 와카야마현, 홋카이도현, 니가타현, 도쿠시마현	24엔	25엔
D	후쿠시마현, 오이타현, 야마가타현, 에히메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고치현, 이와테현, 가고시마현, 사가현,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미야자키현, 오키나와현	22엔	23엔

\* 출처: 후생노동성

### 2. 언론 보도

- 가. 2018.10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물가 및 성장률을 감안해 결정 (니혼케이자이신문, 18.10.28)
  - 일본은 도도부현별로 시급 최저임금을 정하는 바, 2018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도쿄로 985엔, 가장 낮은 곳은 가고시마 현으로 761엔임. 전국평균은 874엔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함. 2000년대 전반에는 전년대비 증감율이 정체되어 있 었으나, 2016년 이후 3년 연속 3%를 초과함
  -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및 성장률 등을 고려해 결정됨.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압력이 강해짐. 소비촉진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해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도 있음

- 나. 일손부족 대응을 위해 임금인상 및 새로운 급여체제 도입 (도쿄요 미우리신문, 19.01.10.)
  - 일본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에 따르면 일손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지에서 임금인상 및 새로운 급여체제를 운영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가나자와지점 조사에서는 종업원의 이직방지 목적으로 시급을 100엔 인상한 경우가 있으며, 고치지점 관내에서는 최저임금 인 상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뿐 아니라 정사원도 임금을 인상 하기도 함

### 4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 일본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설명 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chingin/minimum/minimum-01.html

○ 일본 후생노동성 최저임금 홍보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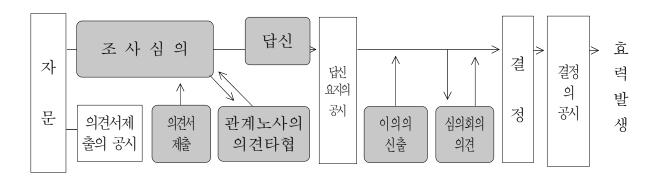
https://pc.saiteichingin.info

(작성자) 주일본대사관 경제과 (전화 81-3-3452-7611/9, economic\_jp@mof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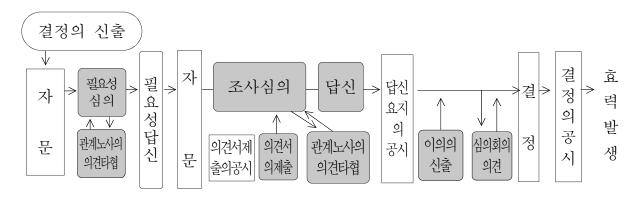
### <참고1>

### 최저임금의 결정방식별 결정절차의 개요

- (1)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를 근거로 한 최저임금 (가) 지역별 최저임금
- 도도부현 노동국장(또는 후생성노동장관)이 실시하는 사항 최저임금심의회가 실시하는 사항 노동자 또는 사용자가 실시하는 사항



### (나) 사업별 최저임금



### <참고2>

### 최저임금액 개정의 흐름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기준심의) (지역별 최저임금 심의) (산업별 최저임금 심의) 5월 6~7월 4~5월 문 문 노사의 신청 6~7월 6~8월 조 사 심 의 7월 하순 조 사 심 의 답 신 7~8월 8월 상중순 답 신 필요성자문 정 필요성심의 8월 결정의 공시 필요성답신 9월말~10 8월 효 력 발 생 자 문 9~10월 조 사 심 의 10월 답 신 정 결정의 공시 12월 효 력 발 생

## <참고3>

## 2018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상황

도도부현명	최저임금 시간단위(단위: 엔)	발효년월일
홋카이도	835	2018.10.1.
아오모리	762	2108.10.4.
이와테	762	2018.10.1.
미야기	798	2018.10.1.
아키타	762	2018.10.1.
야마가타	763	2018.10.1.
후쿠시마	772	2018.10.1.
이바라키	822	2018.10.1.
도치기	826	2018.10.1.
군마	809	2018.10.6
사이타마	898	2018.10.1.
지바	895	2018.10.1.
도쿄	985	2018.10.1.
가나가와	983	2018.10.1.
니가타	803	2018.10.1.
도야마	821	2018.10.1.
이시카와	806	2018.10.1.
후쿠이	803	2018.10.1.
야마나시	810	2018.10.3.
나가노	821	2018.10.1.
기후	825	2018.10.1.

도도부현명	최저임금 시간단위(단위:엔)	발효년월일
시즈오카	858	2018.10.3.
아이치	898	2018.10.1.
미에	846	2018.10.1.
시가	839	2018.10.1.
<b>교</b> 토	882	2018.10.1.
오사카	936	2018.9.30.
<u> ক</u> ্র	871	2018.10.1.
나라	811	2018.10.4.
와카야마	803	2018.10.1.
돗토리	762	2018.10.5.
시마네	764	2018.10.1.
오카야마	807	2018.10.3.
히로시마	844	2018.10.1.
야마구치	802	2018.10.1.
도쿠시마	766	2018.10.1.
가가와	792	2018.10.1.
에히메	764	2018.10.1.
고치	762	2018.10.5.
후쿠오카	814	2018.10.1.
사가	762	2018.10.4.
나가사키	762	2018.10.6.
구마모토	762	2018.10.1.
오이타	762	2018.10.1.
미야자키	762	2018.10.5.
가고시마	761	2018.10.1.
오키나와	762	2018.10.3.
전국 가중 평균액	874	-

<참고4> 산업별 최저임금액 결정상황 (단위 : 엔)

=1 C4	지역별	<b>571-17101</b>	일액	시간액	HI = 01
현명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	(円)	(円)	발효일
	835	처리우유 · 유음료、유제품、당류제조업	_	871	18.12.1
	(18.10.1)	철강업	_	948	18.12.1
홋카이도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	868	18.12.1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선박제조·수리업、선체블록제조업	_	866	18.12.1
	762	철강업	_	877	18.12.21
	(18.10.4)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06	18.12.21
아오모리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700	10 10 01
		각종상품소매업 자동차소매업	_	798 838	18.12.21
	700		_		
	762	철강업、금속선제품、그밖의금속제품	_	829	18.12.28
	(18.10.1)	제조업 광학기계기구·렌즈、시계·동부분품	_	809	18.12.28
		제조업		000	10.12.20
이와테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796	18.12.28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백화점, 종합슈퍼	_	800	18.12.28
		각종상품소매업	-	767	16.12.11
		자동차소매업	_	838	18.12.28
	798	철강업	_	898	18.12.20
미야기	(18.10.1)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41	18.12.20
_10101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005	10.10.00
		자동차소매업	_	865	18.12.20
	762	비철금속제련·정제업	_	871	18.12.24
	(18.10.1)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	_	808	18.12.24
		지、전자응용장치、그 밖의전기기계			
아키타		기구、영상 · 음향기계기구、전자계산			
		기 · 동부속품장치제조업 자동차 · 동부속품제조업	_	845	18.12.24
		자동차 (신차) 、자동차부분품 · 부속	_	838	18.12.24
		품소매업		000	10.12.24
	763	펌프·압축기기、일반산업용기기·장	_	837	18.12.25
	(18.10.1)	치、그밖에분류되지않는겸용기계 · 장			
야마가타		치、화학기계 · 동장치、진공장치 · 진			
		공기구제조업			

현명	지역별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	일액 (円)	시간액 (円)	발효일
	3/100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11)	821	18.12.25
		근접 기옵 - 의미하고 - 근접되고, 근기   기계기구,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021	10.12.25
		기계기   \	_	836	18.12.25
		자동차정비업	_	840	18.12.25
	772	비철금속제조업	_	847	17.12.16
	(18.10.1)	   계량기·측정기·분석기구·시험기·	_	849	18.12.15
	(1011011)	· · · · · · · · · · · · · · · · · · ·			
		│			
도쿠시마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15	18.12.19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_	851	18.12.14
		자동차소매업	_	848	18.12.21
	822	철강업	_	916	18.12.31
	(18.10.1)	겸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업무	_	880	18.12.31
		용기계기구제조업			
		계량기·측정기·분석기구·시험기·	_	877	18.12.31
이바라키		이화학기계기구、의료용기계기구·의			
		료용품、광학기계기구·렌즈、전자부			
		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기계기			
		구、정보통신기계기구、시계 · 동부분			
		품제조업			
		각종상품소매업	_	849	18.12.31
	826	도료제조업	_	943	18.12.31
	(18.10.1)	겸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업무	_	889	18.12.31
		용기계기구제조업			
		계량기·측정기·분석기구·시험기· 	_	889	18.12.31
		측량기계기구제조업、의료용기계기 			
도치기		구·의료용품제조업、광학기계기구·			
		렌즈제조업、의료용계측기제조업、시			
		계 · 동부분품제조업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89	18.12.31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동부속품제조업		906	18.12.31
		사용사·용무속품세조합 각종상품소매업	_	896	
	900	작용상품소매입 제강·제강압연업、철소형재제조업	_	850	18.12.31
	(19.10.6)		_	897	18.12.20
군마	(18.10.6)	펌프·압축기용、일반산업용기기·장	_	886	18.12.20
		치、그밖의겸용기계·동부분품、금속 			

현명	지역별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	일액 (円)	시간액 (円)	발효일
		가공기계、그밖의생산용기계·동부분			
		품、사무용기계기구、서비스용 · 오락			
		용기계기구제조업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86	18.12.20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000	10.10.00
	000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_	886	18.12.20
	898	비철금속제조업	_	924	18.12.1
	(18.10.1)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_	930	18.12.1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_	939	18.12.1
사이타마		광학기계기구·렌즈、시계·동부분품	_	938	18.12.1
사이다마		제조업		330	10.12.1
		· 각종상품소매업	_	849	16.12.1
				*	
		자동차소매업	_	936	18.12.1
	895	조미료제조업	_	889	17.12.25
	(18.10.1)			<b>*</b>	
		철강업	_	965	18.12.25
		경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_	922	18.12.25
		계량기 · 측정기 · 분석기구 · 시험기 ·	_	887	17.12.25
		측량기계기구 · 이화학기계기구제조		*	
취비		업、의료용기계기구 · 의료용품제조			
치바		업、광학기계기구·렌즈제조업、시			
		계 · 동부분품제조업、안경제조업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_	928	18.12.25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sup>-</sup> 각종상품소매업	_	848	16.12.25
				*	
		자동차 (신차) 소매업	_	922	18.12.25
	985	철강업 	_	871	14.3.23
	(18.10.1)			*	
		겸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_	832	10.12.31
도쿄				*	
		업무용기계기구、전기기계기구、정보	_	829	10.12.31
		│통신기계기구、시계·동부분품、안경 │		<b>*</b>	
		제조업 지도한 도보소프레조어 서바레조		000	10.0.10
		자동차 · 동부속품제조업、선박제조 ·	_	838	12.2.18

현명	지역별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	일액 (円)	시간액 (円)	발효일
	3/166	수리업, 선박용기관제조업、항공기·	(11)	<u>*</u>	
		도부속품제조업		^	
	983	도료제조업	_	894	15.3.1
	(18.10.1)			<b>*</b>	
	( , , , , , , , , , , , , , , , , , , ,	철강업	_	874	14.3.15
				<b>*</b>	
		비철금속·동합금압연업、전선·케이	_	821	10.12.20
		블제조업		*	
		· · -   보일러·원동기、펌프·압축기용、일	_	857	13.3.1
가나가와		- · · · · · · · · · ·     · · · · · ·		*	, 51511
		계、금속가공기계제조업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90	15.3.1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b>*</b>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_	855	13.3.1
				<b>*</b>	
		자동차소매업	_	842	11.12.21
				<b>*</b>	
	803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90	18.12.22
	(18.10.1)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니가타		각종상품소매업	_	824	18.12.31
		자동차 (신차) 、자동차부분품·부속	_	898	18.12.20
		품소매업			
	821	알루미늄 제 2 차제련·정제업、알루미	_	781	15.12.26
	(18.10.1)	늄·동합금압연업、알루미늄·동 합금		*	
		주물、알루미늄·동합금다이캐스트、			
		금속제샷시, 도어、건축용금속제품、알			
		루미늄 · 동합금프레스 제품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겸용기계·장치、	_	885	18.12.13
도야마		트랙터、금속공작기계、기계공구、로			
		봇、자동차·동부속품제조업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23	18.12.26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_	840	18.11.30
		백화점, 종합슈퍼 자동차 (신차) 소매업		769	11.1.20
		이 o 이 (현의/ 포배협 	- <del>-</del>		11.1.20
-1.1-1-1	906	바저어 하하셔으바저 포바저 그		792	17 10 01
이시가와	806	방적업、화학섬유방적、毛방적、그	_	782	17.12.31

-104	지역별		일액	시간액	HI = 01
현명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	(円)	(円)	발효일
	(18.10.1)	밖의방적、그물、어망 제조업		*	
		양식기 · 칼、금속소형재제품、볼트 ·	6,102	763	99.12.26
		너트·리벳트·소형 나사·목재나사、		*	
		그 밖의금속제품제조업			
		금속소형재제품、볼트·너트·리벳	_	900	18.12.31
		트·소형 나사·목재나사 등、그 밖			
		의금속제품、겸용기계기구、생산용기			
		계기구、발전용·송전용·배전용전기			
		기계기구、산업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민생	_	847	18.12.31
		용전기기계기구、전자응용장치、정보			
		통신기계기구제조업		200	10.10.01
		자동차·동부속품、자전거·동부분품	_	900	18.12.31
		제조업 배칭저 조항스교		940	18.12.31
	803	백화점, 종합슈퍼	_	840	18.12.24
		방적업, 화학섬유、직물、염색조리업 섬유기계、금속가공기계제조업	_	804 859	18.12.24
	(18.10.1)	전자디바이스、전자부품、기록미디	_	840	18.12.24
		전자디마이스、전자구움、기록미디   어、전자회로、유닛부품、그 밖의전	_	040	10.12.24
		자부품ㆍ디바이스ㆍ전자회로、발전			
후쿠이		용 · 송전용 · 배전용전기기계기구、산			
		업용전기기계기구、전자응용장치、통			
		신기계기구 · 동관련기계기구、영상 ·			
		음향기계기구제조업 각종상품소매업	_	750	11.12.24
				/30 *	11.12.24
		   백화점, 종합슈퍼	_	810	18.12.24
	810	러워마, 이십 마시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_	890	18.12.15
	(18.10.3)	전사구품·디리이드·전사되도、전기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030	10.12.13
야마나시	(10.10.3)	건데시   V 중포증단/계기   세포함 			
		자동차 · 동부속품제조업	_	896	19.1.3
	821	인쇄、제판업	_	827	18.12.31
	(18.10.1)	겸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업무	_	883	18.11.27
, ! =! !		용기계기구、자동차 · 동부속품、선박			
나가노		제조·수리업, 선박용기관제조업			
		계량기 · 측정기 · 분석기구 · 시험기、		872	18.11.27
		의료용기계기구 · 의료용품、광학기계			
		ᅴᇁᇂ기계기구·ᅴ둏쿰、ᇂ띡기계 			

=104	지역별		일액	시간액	HI = 01
현명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	(円)	(円)	발효일
		기구·렌즈、전자부품·디바이스·전			
		자회로、전기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			
		기구、시계·동부분품、안경제조업			
		각종상품소매업	_	835	18.12.31
	825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_	866	18.12.21
기후	(18.10.1)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 · 동부속품제조업	_	910	18.12.21
		항공기 · 동부속품제조업	_	950	18.12.21
	858	펄프 · 종이 · 가공종이제조업	_	786	15.12.31
	(18.10.1)			*	
		타이어 · 튜브、고무벨트 · 고무호스 ·	_	879	18.12.21
		공업용고무제품제조업			
시즈오카		철강、비철금속제조업	_	916	18.12.21
11-12		겸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업무	_	930	18.12.21
		용기계기구、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900	18.12.21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각종상품소매업	_	866	18.12.21
	898	염색조리업	_	732	08.12.16
	(18.10.1)			*	
		제철업、제강·제강압연업、강재제조	_	957	18.12.16
		업			
		겸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업무	_	928	18.12.16
		용기계기구제조업		075	17.10.10
		계량기·측정기·분석기구·시험기、	_	875	17.12.16
		광학기계기구 · 렌즈、시계 · 동부분품		<b>*</b>	
아이치		제조업		001	10.10.10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_	901	18.12.16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_	936	18.12.16
		각종상품소매업		847	16.12.16
		식당영품노매립 	_		10.12.10
		지도한 /사회) - 코드웨티티프 - 비스		*	07.40.40
		자동차 (신차) 、자동차부분품·부속	_	800	07.12.16
		품소매업		*	
		자동차 (신차) 소매업	_	921	18.12.16
미네	846	유리 · 동제품제조업	_	879	18.12.20
미에	(18.10.1)	선철주물、가단주철、주철관제조업	5,907	739	98.12.15
	<u> </u>			l	

현명	지역별	특정최저임금	일액	시간액	발효일
	최저임금	100.11,00	(円)	(円)	
				*	
		전선 · 케이블제조업	_	900	18.12.20
		양식기 · 칼 · 연장 · 철물류제조업	_	843	15.12.20
				*	
		일반기계기구제조업	_	762	03.12.15
				*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_	886	18.12.20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004	10.10.00
		건설기계 · 광산기계제조업、자동차 ·	_	921	18.12.20
		동부속품제조업、선박제조·수리업,			
		│선박용기관제조업、산업용운반차兩· │			
		동부분품·부속품제조업、그밖의운송			
	000	용기계기구제조업		700	10.10.00
	839	방적업, 화학섬유제조업、그밖의직물	_	789	16.12.30
	(18.10.1)	업、염색조리업、섬유조제품제조업、		<b>*</b>	
		그밖의섬유제품제조업 유리·동제품、시멘트·동제품、위생	_	905	18.12.29
		뉴디 · 등세품、시텐트 · 등세품、위영   도기、탄소 · 흑연제품、탄소섬유제조		903	10.12.29
		포기 시민 보 ㆍ 국원제품 시민 포함규제요     업			
		<sup>딥</sup>   겸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업무	_	910	18.12.29
시가		요리			
		계량기 · 측정기 · 분석기구 · 시험기、	_	894	18.12.29
		광학기계기구·렌즈、전자부품·디바			
		   이스·전자회로、전기기계기구、정보			
		   통신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 · 동부속품제조업	_	914	18.12.29
		각종상품소매업	_	840	18.12.29
	882	인쇄업	-	765	10.12.18
	(18.10.1)			*	
		금속소형재제품、볼트·너트·리벳	_	921	18.12.22
		트·작은나사·나무나사등제조업			
교토		펌프 · 압축기기제조업、일반산업용기	_	822	08.12.21
亚无		기 · 장치제조업、그밖의겸용기계 · 동		*	
		부분품제조업、섬유기계제조업、생활			
		관련산업용기계제조업、기초소재산업			
		용기계제조업、금속가공기계제조업、			
		반도체 · 플랫패널디스클레이제조장치			

현명	지역별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	일액 (円)	시간액 (円)	발효일
		제조업、그밖의생산용기계 · 동부분품			
		제조업、사무용 기계기구제조업、서비			
		스용·오락용 기계기구제조업、건설기			
		계 · 광산기계제조업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919	18.12.22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운송용기계기구、건설기계·광산기계 제조업		_	927	18.12.22
				921	10.12.22
		^//   각종상품소매업	_	884	18.12.22
		자동차소매업	5,926	741	97.12.21
				*	
		자동차 (신차) 소매업	_	885	18.12.22
오사카	936	도료제조업	_	948	18.12.1
	(18.10.1)	철강업	_	946	18.12.1
		비철금속·동합금압정업、전선·케이	_	937	18.12.1
		블제 조업			
		경용기계기구제조업、생산용기계기구 	_	939	18.12.1
		제조업、업무용기계기구제조업、난방			
		장치 · 배관공사용부속품、금속선제품			
		제조업、선박제조·수리업, 선박용기			
		│관제조업 │전자부품ㆍ디바이스ㆍ전자회로、전기		007	10 10 1
			_	937	18.12.1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동부속품제조업	_	941	18.12.1
		자동차소매업	_	937	18.12.1
효고	871	심유공업	_	800	16.3.1
	(18.10.1)			*	
		도료제조업	_	949	18.12.1
		철강업	_	943	18.12.1
		겸용기계기구제조업、생산용기계기구	_	921	18.12.1
		제조업、업무용기계기구제조업			
		계량기 · 측정기 · 분석기구 · 시험기 ·	-	875	18.12.1
		측량기계기구제조업		6=5	10.10.1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제조	_	873	18.12.1
		업、전기기계기구제조업、정보통신기			
		계기구제조업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_	954	18.12.1
		승ଟ기계기   세포함	<del>-</del>	304	10.12.1

현명	지역별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	일액 (円)	시간액 (円)	발효일
	각종상품소매업		_	797	16.2.1
				<b>*</b>	
		자동차소매업	_	876	18.12.1
나라	811	겸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업무	_	878	18.12.26
	(18.10.4)	용기계기구제조업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발전	_	865	18.12.26
		용 · 송전용 · 배전용전기기계기구、산			
		업용전기기계기구、민생용전기기계기			
		구제조업			
		자동차소매업	_	867	18.12.26
		목재 · 목제품 · 가구 · 장비품제조업	6,527	816	99.1.25
와카야마	803	철강업	_	921	18.12.30
	(18.10.1)	백화점, 종합슈퍼	_	830	18.12.30
돗토리	762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	790	18.12.28
	(18.10.5)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각종상품소매업	_	718	16.12.17
				*	
시마네	764	제강·제강압연업、철소형재제조업	_	886	18.11.24
	(18.10.1)	겸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업무	_	867	18.11.25
		용기계기구제조업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	800	18.12.9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 · 동부속품제조업	-	859	18.12.1
		백화점, 종합슈퍼	_	750	17.11.22
				*	
		자동차 (신차) 소매업	-	838	18.11.29
오카야마	807	방화물제조업	_	918	18.12.20
	(18.10.3)	철강업	-	939	18.12.19
		공기압축기 · 가스압축기 · 송풍기、가	_	912	19.1.2
		정용엘리베이터、냉동기 · 온습조정장			
		치、베어링、농업용기계、봉제기계、			
		생활관련산업용기계、기초소재산업용			
		기계、반도체 · 플랫패널디스플레이제			
		조장치、진공장치 · 진공기계、그외분			
		류되지않는생산용기계 · 동부분품、사			
		무용기계기구、서비스용·오락용기계			

-11-1	지역별		일액	시간액	
현명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	(円)	(円)	발효일
		기구제조업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54	18.12.13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000	10.10.10
		자동차 · 동부속품제조업	_	900	18.12.16
		선박제조 · 수리업, 선박용기관제조업	_	931	18.12.22
		각종상품소매업	_	856	18.12.26
히로시마	844	제철업、강재、선철주물、가단주철제	_	946	18.12.31
	(18.10.1)	조업、그밖의철강업			
		│건설용·건축용금속제품、그 밖의금	_	902	18.12.31
		속제품제조업		010	10.10.01
		경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업무 	_	912	18.12.31
		용기계기구제조업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_	873	18.12.31
				0/3	10.12.31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동부속품제조업	_	892	18.12.31
		선박제조·수리업, 선박용기관제조업	_	934	18.12.31
		각종상품소매업	_	858	19.1.16
		자동차소매업	_	890	18.12.31
야마구치	802	청강업、비철금속정련·정제업、비철		939	18.12.15
			_	939	10.12.13
	(18.10.1)	금속·동合金압연업、비철금속소형재			
		제조업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_	865	18.12.15
				003	10.12.13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000	10.10.15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_	909	18.12.15
		백화점, 종합슈퍼	_	822	18.12.15
도쿠시마	766	조작재 · 합판 · 건축용조립재료제조업	_	857	18.12.21
	(18.10.1)	겸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업무	_	900	18.12.21
		용기계기구제조업		000	10.10.01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_	862	18.12.21
가가와	792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냉동조리식품제조업		793	18.12.15
7 7 7 7 7		경용보다작품세요합 경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업무	_		
	(18.10.1)		_	915	18.12.15
		용기계기구제조업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_	862	18.12.15
		전자구움·디리이드·전자되도、전기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002	10.12.13
		기계기구、성도등인기계기구세요합   선박제조·수리업, 선박용기관제조업	_	928	18.12.15
에히메	764	필프、종이제조업	_	894	18.12.25
11 -1 -11	, , , ,	결= \	_	902	18.12.25
		BOMMAIN OLOMAIN HT		302	10.12.23

-104	지역별	ETITION D	일액	일액 시간액	
현명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	(円)	(円)	발효일
	(18.10.1)	용기계기구제조업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기	_	870	18.12.25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010	10 10 05
		선박제조·수리업, 선박용기관제조업 각종상품소매업	_	910 789	18.12.25 18.12.25
고치	762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전자	_	788	
고 시 	(18.10.5)	전자구품·디마이스·전자회도、전자   응용장치、영상·음향기계기구제조업	_	/ 00	18.12.30
	(10.10.3)	등등당시、당당·금당기게기구세모급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_	910	07.6.2
후쿠오카	814		_	950	18.12.10
	(18.10.1)	업			
	( ,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905	18.12.10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_	923	18.12.10
		백화점、종합슈퍼	_	867	18.12.10
		자동차(신차)소매업	_	915	18.12.10
사가	762	도자기 · 동관련제품제조업	_	763	18.12.8
	(18.10.4)	펌프·압축기기、일반산업용기기·장	_	847	18.12.28
		치、그밖의겸용기계 · 동부분품、농업			
		용기계、건설기계 · 광산기계、생활관			
		련산업용기계、기초소재산업용기계、			
		금속가공기계、반도체 · 플랫패널디스			
		플레이제조장치、그밖의생산용기계 ·			
		동부분품제조업			
		발전용·송전용·배전용전기기계기	_	816	18.12.26
		구、산업용전기기계기구、전구·전기			
		조명기구、전지、그밖의전기기계기 			
		구、통신기계기구·동관련기계기구、 			
		전자계산기·동부속장치、전자디바이			
		스、전자부품、기록미디어、전자회			
		로、유닛부품、그밖의전자부품 · 디바			
1   -  1   -	700	이스·전자회로제조업		001	10.10.10
나가사키	762	경용기계기구、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_	861	18.12.12
	(18.10.6)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08	18.12.27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선박제조·수리업, 선박용기관제조업	_	861	18.12.14
구마모토	762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07	18.12.15
ーパエエ	(18.10.1)	전자구품·디마이스·전자회도、전기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007	10.12.13
	(10.10.1)	기계기구、중조중인기계기구세조합			

-104	지역별		일액	시간액	HI - 01
현명	최저임금	북 특정최저임금 	(円)	(円)	발효일
		자동차 · 동부속품제조업、선박제조 ·	_	858	18.12.15
		수리업, 선박용기관제조업			
		백화점, 종합슈퍼	_	765	18.12.15
오이타	762	철강업	_	915	18.12.25
	(18.10.1)	비철금속제조업	_	886	18.12.25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807	18.12.25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 · 동부속품제조업、선박제조 ·	_	853	18.12.25
		수리업, 선박용기관제조업 각종상품소매업		710	10.10.05
		식중앙품오매립 	_	716	16.12.25
		지도한 (시원) 스템어		<b>%</b>	10.10.05
		자동차 (신차) 소매업	_	821	18.12.25
미야자키	762	부분육·냉동율、육가공품、처리우	_	678	14.12.26
	(18.10.5)	유 · 유음료、유제품제조업		*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775	18.12.29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각종상품소매업 	_	705	15.12.24
				*	
		자동차 (신차) 소매업	_	804	18.12.16
가고시마	761	전자부품 · 디바이스 · 전자회로、전기	_	788	18.12.28
	(18.10.1)	기계기구、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백화점, 종합슈퍼	_	693	14.12.26
				*	
		자동차(신차) 소매업	_	821	18.12.28
오키나와	762	축산음료품제조업	_	683	13.12.11
	(18.10.3)			*	
		당류제조업	_	769	18.11.25
		청량음료、주류제조업	_	686	13.11.23
				*	
		신문업	_	823	18.11.15
		각종상품소매업	-	770	18.11.23
		자동차(신차)소매업	_	770	18.11.18

- ※ 표시는 지역별 최저임금액 적용<법제6조 관련>
- 노동자가 2이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에 있어서 정하는 최고임금액 중 최고의 것에 의하여 적용한다.

### 일본 최저임금법

1959년 4월 15일 법률 제137호

최종 개정: 2012년 4월 6일 법률 제27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저임금의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는 것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사업의 공정한 경쟁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노동자(勞働者): 노동기준법 제9조에 규정하는 노동자(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는 자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사용자(使用者): 노동기준법 제10조에 규정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 3. 임금(賃金): 노동기준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 제2장 최저임금

#### 제1절 총칙

- 제3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하는 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계약으로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하는 것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본다.
  - ③ 다음에 정하는 임금은 전 2항에 규정하는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1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임금으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
  - 2. 통상의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의 임금 이외의 임금으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
  - 3. 당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임금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노동자가 그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노동시간 혹은 소정노동일을 노동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에게 소정노동시간 혹은 소정노동일을 노동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노동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날에 대응하는 한도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 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 제5조(현물급여 등의 평가) 임금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제공하는 식사 기타의 대금을 임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하여 이들의 것은 적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 제6조(최저임금의 경합) ① 노동자가 2 이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에 있어서 정하는 최저임금액 중 최고의 것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서도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역별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및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7조(최저임금의 감액의 특례) ① 사용자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노동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당해 최저임금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으로 부터 당해 최저임금액에 노동능력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는 금액을 감액한 최저임금액에 따라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에 의하여 현저히 노동능력이 낮은 자
  -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
  - 3. 직업능력개발촉진법(1969년 법률 제64호) 제24조제1항의 인정을 받아 행하여지는 직업훈련 중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 및 이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받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 4. 가볍고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 제8조(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최저임금의 개 요를 항상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절 지역별 최저임금

- 제9조(지역별 최저임금의 원칙) ① 저임금의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최저임금(일정의 지역마다의 최저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널리 전국 각 지역에 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②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역 노동자의 생계비 및 임금, 통상의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 ③ 전항의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생활보호에 관련된 시책과의 정합성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별 최저임금의 결정)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은 일정의 지역마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또는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이하 최저임금심의회라고 한다)의 조사심의를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듣고 지역별 최저임금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그 의견에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최저임금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에 관한 이의신청)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회가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견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과 관련된 지역의 노동자 또는 이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최저임금심의회에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전조제1항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 금심의회의 의견이 제출될 때까지도 이와 같다.
- 제12조(지역별 최저임금의 개정 등)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은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하여 지역에서의 노동자의 생계비 및 임금, 통상의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의 예에 따라 그 개정 또는 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파견중의 노동자의 지역별 최저임금)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85년 법률 제88호) 제44조제1항에 규정하는 파견중의 노동자 (제18조에서 "파견중의 노동자"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그 파견처의 사업(동항에 규정하는 파견처의 사업을 말한다. 제18조에서도 같다)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결정되는 지역별 최저임금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4조(지역별 최저임금의 공시 및 발효)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은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결정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개정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공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 이후의 날로 당해결정에서 별도로 정한 날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폐지의 결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공시일 이후의 날로 당해결정에서 별도로 정한 날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3절 특정최저임금

제15조(특정최저임금의 결정 등) ① 노동자 또는 사용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하는 자는 후생노동성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에 대하여 당해 노동자 또는 사용자

- 에 적용되는 일정의 사업 또는 직업에 관련된 최저임금(이하 "특정최저임금"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당해 노동자 또는 사용자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정최저임금의 개정 또는 폐지의 결정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②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를 요청하고 그 의견을 들어 당해 신청에 관련된 특정최저임 금의 결정 또는 당해 신청에 관련된 특정최저임금의 개정 또는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동조 제2항 중 "지역"은 "사업 또는 직업"으로 본다.
- ④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당해 특정최저임금에서 일정한 범위의 사업에 대하여 그 적용을 일정기간에 한하 여 유예하거나 최저임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6조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개정되는 특정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은 당해 특정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결정되는 지역별 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을 상회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개정되는 특정최저임금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예에 따라 그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8조(파견중의 노동자의 특정최저임금) 파견중의 노동자에 대하여는 그 파견처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또는 그 파견처의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의 직업에 대하여 특정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최저임금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따라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9조(특정최저임금의 공시 및 발효)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은 특정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최저임금의 결정 및 특정최저임금의 개정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공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 이후의 날로 당해결정에서 별도로 정한 날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동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최저임금의 폐지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공시일 이후의 날로 당해결정에서 별도로 정한 날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3장 최저임금심의회

- 제20조(설치) 후생노동성에 중앙최저임금심의회를, 도도부현노동국에 지방최저임금심의회를 둔다.
- 제21조(권한) 최저임금심의회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외에 지방최 저임금심의회에 있어서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의 자문에 응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 의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노동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22조(조직) 최저임금심의회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동수로써 조직한다.
- 제23조(위원) ① 위원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24조(회장) ① 최저임금심의회에 회장을 둔다.
  - ② 회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이 선출한다.
  - ③ 회장은 회무를 총리(總理)한다.
  - ④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제2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25조(전문부회(專門部會) 등) ① 최저임금심의회에 필요에 따라 일정사업 또는 직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시키기 위하여 전문부회를 둘 수 있다.
  - ② 최저임금심의회는 최저임금의 결정 또는 그 개정의 결정에 관하여 조사·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전문부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전문부회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관계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동수로써 조직한다.
  - ④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전조의 규정은 전문부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⑤ 최저임금심의회는 최저임금의 결정 또는 그 개정 혹은 폐지의 결정에 관하여 조사·심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노동자 및 관계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⑥ 최저임금심의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심의에 즈음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노동자, 관계사용자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6조(정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에 최저임금심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잡 칙

- 제27조(원조) 정부는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공 기타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원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조사) 후생노동대신은 임금 기타 노동자의 실정(實情)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여 최저임 금제도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보고) 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직권 등) ①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의 직권은 2 이상의 도도부현 노동국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안 및 하나의 도도부현 노동국의 관할구역 내에만 관련된 사안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전국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후생노동대신이 행하고, 하나의 도도부현 노동국의 관할구역내에만 관련된 사안(후생노동대신의 직권에 속하는 사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당해도도부현 노동국장이 행한다.
  - ② 후생노동대신은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결정한 최저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정 또는 폐지의 결정을 하도록 도도부현 노동국장에게 명할 수 있다.
  -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31조(노동기준감독서장 및 노동기준감독관) 노동기준감독서장 및 노동기준감독관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32조(노동기준감독관의 권한) ① 노동기준감독관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노동기준감독관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다.
- 제33조 노동기준감독관은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 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3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위반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도도부현노동국장, 노동기준감독서장 또는 노동기준감독관에게 신

고하여 시정을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전항의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
- 제35조(선원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2항, 제2장제2절,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선원법(1947년 법률 제100호)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하 "선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선원에 관하여는 이 법률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 도도부현노동국장 또는 노동기준감독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대신, 지방운수국장(운수감리부장(運輸監理部長)을 포함한다) 또는 선원노무관(船員勞務官)이 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법률 중「후생노동성령」은「국토교통성령」으로, 제3조 중「시간」은「시간, 일, 주 또는 월」로, 제7조제4호 중「가볍고 쉬운」은「소정노동시간이 특히 짧은 자, 가볍고 쉬운」으로, 제19조제2항 중「제5조제2항」은「제15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7항」으로, 「동조제2항 및 제17조」는「제15조제2항 및 제 35조제7항」으로, 제30조제1항 중「제10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7조」는「제15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7항」으로, 「도도부현 노동국의 관할구역」은「지방운수국 또는 운수감리부의 관할구역(정령에서 정하는 지방운수국에 있어서는 운수감리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로 본다.
  - ③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운수국장(운수감리부장을 포함한다)은 저임금 선원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의 생계비, 유사 선원의 임금 및 통상의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원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선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선원노동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사심의를 요청하고 그 의견을 들어 선원에 적용하는 특정최저임금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의견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제2항 중 「지역」은「사업 또는 직업」으로 본다.
  - ⑤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운수국장(운수감리부장을 포함한다)은 제3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당해 특정최저임금에서 일정한 범위의 사업에 대 하여 그 적용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유예하거나 최저임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의견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⑦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운수국장(운수감리부장을 포함한다)은 제15조제2항 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선원에 적용되는 특정최저임금에 대하여 선원의 생계비, 유사한 선원의 임금 및 통상의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예에따라 그 개정 또는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⑧ 선원직업안정법(1948년 법률 제130호) 제87조제1항에 규정하는 승조파견선원에 대하여는 그 선원 파견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사업 또는 그 선원파견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사용되는 동종의 선원의 직업에 대하여 특정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6조 선원에 관하여는 이 법률에 규정하는 최저임금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선원노동위원 회가 행한다.
- 제37조 ① 선원노동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일정사업 또는 직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전문부회를 둘 수 있다.
  - ② 선원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결정 또는 그 개정의 결정에 관하여 조사·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전문부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최저임금전문부회의 위원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대신이 임명한다.
  - ④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최저임금전문부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⑤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38조(성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벌 칙

- 제39조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지역별 최저임금 및 선원에 적용되는 특정최저임금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지역별 최저임금 및 선원에 적용되는 특정최저임금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제4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2012.4.6. 법률 제 27호)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30. 중국

국	명	중국
언 어		중국어
면	적	9,634,057km <sup>2</sup>
인	구	약 13억 9,538만명
수	도	베이징
주:	요도시	상해, 심천, 광저우, 천진, 남경 등
종	교	도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교	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화	폐 단위	위안
GDP		13조4,174억달러(2018, 중국 국가통계국)
	1인당 GDP	10,931달러(2018, 중국 국가통계국)
주요	GDP성장률	6.6% (2018년, 국가통계국)
경제   지표	교역	수출입 총액 4조 5500달러 (2018년, 해관)
	실업률	3.8% (도시등록실업률, 2018년 4분기)
	물가상승률	2.1% (2018년, 주민 소비가격지수, 중국국가통계국)
대사관	웹사이트	www.overseas.mofa.go.kr/cn-k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 연혁

- 중국은 1980년대 이전부터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을 검토하다가 1993년 노동부의 「기업최저임금규정」 공포 이후 제도 시행
- 1993년(도입기): '기업최저임금규정'과 '임금지급규정' 등 제정, 상해 에서 중국 최초로 최저임금기준을 발표(당시 210위안)
- 1994년(확산기) : 《노동법》제48조에 최저임금보장제도 시행 방침을 명시, 북경(당시 210위안), 산동(170위안), 해남(280~180위안) 등이 잇따라 최저임금기준을 발표
- 2004년(정착기) : 노동사회보장부가 '최저임금규정'을 공표, 시행(3월) 하면서 1993년 이래의 '기업최저임금규정'을 폐지했고 11월 서장 자치구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기준을 발표하면서 전국 적으로 시행

#### 중국 최저임금제도 경과

정착기 모색기 도입기 확산기 (1994 ~ 2003년) (1993년 이전) (1993년) (2004년) -노동부 '기업 - 노동사회보장부 - 노동법에 최저 - 1949년 政協 최저임금규정' '최저임금규정' 공동강령에 최저 임금보장제도 공표 시행 방침 명시 공표, 시행(3.1) 임금규정포함 - '임금지급규정' - 서장자치구를 - 북경, 산동, 해 -1984년 ILO 등 제도화 추진 마지막으로 32개 '최저임금결정 남 등 최저임금 전 성.시.자치구 표준 시행 후 기구창설에관한 - 상해, 첫 최저 조약 (26호) 비준 최저 임금제 시행 전국적으로 확산 임금표준적용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 최저임금제도의 특징

-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보장성(기본생활 보장), 강제성(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효력), 거시경제조절기능(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취업압력 완화) 등의 특징을 가짐
- ㅇ 중국은 이 같은 일반적 특징 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음
- 최저임금제도의 모델은 중앙정부가 원칙적 규정을 정하고 각 지방별로 차등표준을 적용하는 혼합형임
  - ※ 최저임금액의 지역 간 격차가 큼(상해 2,420위안~호남성 4등급 1,130위안)
- 동일 지역(성·시) 내에서도 급지 차이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 (예) 상하이는 단일(2,420), 복건성은 급지에 따라 5등급(1,700~1,280)
- 전일제와 비전일제(1주 24시간 이내)로 구분 고시
- 최저임금제도 시행(1993년)이 늦었으나, 지속적 경제성장 등의 요인 으로 임금인상율과 최저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
  - ※ (예) 상해는 1993년 210위안에서 2018년 2,420위안으로 11.5배 증가

#### 중국 최저임금제도 특징

#### 일반적 특징 + 중국의 특수성

- 보장성
  - : 노동자 기본생활 보장
- 강제성
  - : 법적 강제력
- 거시경제조절기능
  - : 물가변동 시 임금 보존 등

- 임금 상승률 급등
  - : 최근 경제성장 및 물가급등 요인이 작용
- 혼합형 제도
  - : 지방별로 차등표준 적용
- 지역간 격차 극심
  - : 지역간 경제수준 격차 요인

# 2 법적근거

#### 1. 노동법

- (제정시기) 1994. 7. 5.
- (주요내용)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실시 및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역할 등 규정
  - \* (노동법 제48조) 국가는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국무원에 등록한다
- (입법배경)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사회공평의 실현, 사회 안정의 수호 및 기업의 임금분배 제도화 기초 제공

## 2.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

- (제정시기) 2003.12.30. 제정, 2004.3.1. 시행
- (주요내용) 최저임금 기준에 대한 확정 및 조정방안 등 규정
  -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기관이 공회·기업 연합회 등과 함께 연구·작성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구 노동 보장부)에 제출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초안 접수 후 전국총공회 및 중국기업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

# 3. 최근 3년 이내(2016~2018년) 법령 개정사항

○ 없음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최저임금규정 제2조, 노동법 주해 3. 임금 등)
  - 기업, 민간비영리기관(民辦非企業單位), 자영업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이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 \*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시용기간, 숙련기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2. 특례대상(최저임금규정 제12조, 노동법 주해 3. 임금 등 참조)
  - 근로자 본인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적용 제외
  - 병가 중인 근로자, 병가 후 회복기 내의 근로자
    - 단, 이 경우에도 지역 최저임금의 80%를 하회할 수 없음
- 3. 적용제외대상(노동법 주해 3. 임금 등 참조)
  - 최저임금규정에는 특별히 적용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다만, 중국 노동법 주해(1995, 노무발 309호)는 공무원과 공무원 제도를 참조하여 운영되는 사업기관 등의 종사자, 농촌근로자(鄉鎭기업 종사자 및 농민공은 적용), 현역군인, 가정보모 등을 적용 제외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 구성 항목 및 세부 내역

구성 항목	주요 내용
시간급 임금	시간급 표준과 근로시간에 의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노동보수로 다음 각호를 포함 1. 이미 완료한 작업에 대하여 시간급 표준에 의해 지급하는 임금 2. 직무급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와 직무급여 3. 수습임금(도제생 생활비) 4. 운동선수의 체육수당
성과급 임금	이미 완료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량 단가에 의해 지급하는 노동보수로 다음 각호를 포함  1. 초과 누진작업, 직접적인 무한도 작업, 정액작업, 초과 정액작업 등 임금 제도를 실시하며 노동부서 등이 비준한 정책과 작업건수 단가에 의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2. 작업임무를 책임지는 방법에 의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3. 영업액에 의하여 공제하거나 또는 이윤에 의하여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상여금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초과 노동보수와 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줄이는 노동 보수로 다음 각호를 포함 1. 생산 상여금 2. 절약 상여금 3. 노동경시대회 상여금 4. 기관, 공공기관의 장려임금 5. 기타 상여금
수당과 보조금	특수한 경우 또는 임금 외 근로자의 노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근로자 임금수준이 물가상승에 의해 하락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물가상승 보조금 1. (수당) 임금 외 근로자 노동을 보상하는 수당, 보건성 수당, 기술성 수당, 연공성 수당 및 기타 수당 2. (물가보조금) 근로자 임금수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수당
초과근로임금	휴일근로 임금과 연장근로 임금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하는 임금	1. 국가의 법률, 법규 등에 근거한 질병, 산재, 출산 휴가, 가족계획 휴가, 혼례와 장례 휴가, 사적인 휴가, 귀성 휴가, 정기휴가 등에 대하여 시간급 표준 또는 시간급 표준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임금 2. 부가 임금, 유보 임금

####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 임금(「임금총액 구성규정」 기준)

- 임금총액의 구성
- 시간급 임금, 성과급 임금, 상여금, 수당과 보조금, 초과근로 임금, 특수 상황에서 지급하는 임금으로 구성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노동보험과 근로자 복지 관련 비용, 작업복 등 노동보호비용 등은 임금총액에서 제외
- 임금지급 방법
- 전일제 근로자는 연봉제 및 월급제로 지급
  - \* 전일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 비전일제 근로자는 시급제로 지급
  - \* 비전일제는 1주 24시간 이내, 1일 4시간 이내 근로

# □ (근로시간) 전일제 및 비전일제로 구분

- 전일제 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국무원령 제146호, '95.5.1 시행)에 따른 표준 근로시간
- 비전일제근로는 1주 24시간 이내, 1일 4시간 이내 근로
  - \* 중국은 비전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대부분 지역에서 별도로 고시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최저임금규정 제3조)

-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 유급휴가, 가족친지방문 휴가, 경조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기간 및 법정 근로시간 내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한 시간은 정상노동으로 간주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최저임금규정 제12조)

- \*「임금총액 구성규정」에서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미포함
- \* 지역별로 공제항목이 다를 수 있음
- 시간 외 근로 수당
- 중근(2교대 근무), 야근, 고온, 저온, 갱내 작업, 유독·유해 등 특수 작업 환경 및 조건에서 근무 수당
- 국가법률, 법규, 정책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지대우\*
  - \* 노동자보험(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 베이징, 상하이는 최저임금에 근로자 부담 양로·실업·의료보험 및 주택 공적금은 미포함(강소성은 주택공적금만 미포함), 다른 지역은 포함
  - □ (베이징 예시) 2,120元(최저임금 고시액) + 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12.2%) + 근로자부담 주택공적금(12%)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수준 으로 설정하여 다른 지역보다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높음(통상 300元 이상)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최저임금규정 제4조)
  - 성·시 등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행정기관이 최저임금 이행상황을 검사·감독
  - 노동조합인 공회(工會)는 기업이 최저임금 표준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에게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명령(근로계약법 제85조)
  - 기업이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노동행정기관이 기간을 한정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 한 지급을 명령
- □ 지급명령 미 이행 시 재무적 처벌(근로계약법 제85조)
  - 노동행정기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행정기관은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50~100%<sup>\*</sup> 이상 배상금 부과
    - $\star$  최저임금규정(2004) 제13조은 배상금은 체불임금의  $100 \sim 500\%$
- □ 재무적 처벌 미 이행 시 과징금 등 형사적 처벌(노동보장 감찰조례 제30조)
  - 노동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과징금 부과

580 ... 최저임금위원회

0	치안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
	벌하며 벋	범죄 성립	시 형사	백임을 추궁	7.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 노동감찰 신청(근로계약법 실시조례 제36조 등)
  - 근로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노동행정기관에 진정제기 가능 → 노동행정기관은 「노동보장 감찰규정」에 따라 처리
- □ 노동중재 신청(근로계약법 실시조례 제37조 등)
  - 최저임금 위반 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노동행정기관에 노동중재 신청 → 「노동분쟁조정조정법」 에 따라 처리

# 6 기타 사항

□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여러 행정조직은 자체의 최저임금 기준 제정 가능(최저임금규정 제7조)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중국의 최저임금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행정기관은 공회, 기업가협회와 함께 연구하여 최저임금 초안을 마련
  - 초안에는 최저임금표준 확정과 조정 근거, 적용범위, 기타 설명 등을 포함
- 초안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검토, 인민정부 보고 및 비준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결정

# 2. 결정절차

# <1> 초안 작성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행정기관은 공회, 기업가 협회와 함께 연구하여 지역 최저임금 초안을 마련 후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제출

#### <2>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검토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제출된 초안을 접수한 후 전국총공회, 중국 기업연합회 의견을 청취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초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수정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3> 인민정부 보고 및 비준

-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행정 기관은 인력자원사회 보장부의 검토를 거친 최저임금표준을 각급 인민정부에 보고
- 인민정부의 비준허가를 거친 후 공포

#### <4> 공포

- 비준 허가 후 7일 내 지역공보와 1종 이상의 지역신문에 발표
- 노동행정기관은 발표 후 10일 이내에 결정된 최저임금 표준을 인 력자원사회보장부에 제출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 등은 없음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월 최저임금 표준(기준)은 각 지역별 취업자와 그 부양인의 평균 생활비용, 도시 주민의 소비가격지수,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비용 및 주택적립금, 근로자 평균소득, 실업률, 경제발전수준 및 조정 요소를 기초로 산정
  - \* 중국은 '11년부터 5대 보험(양로·의료·실업·생육·공상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고, 추가로 주택공적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5보험, 1공적금)
-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기준)은 공표된 월 최저임금표준에서 사용 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본양료보험료와 기본의료보험료를 고려하 고, 취업안정성과 근로조건, 근로강도와 복지 등에 있어서 비전일 제 근로자와 전일제 취업자의 차이를 적당히 고려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다음 두가지 방법을 통해 월 최저임금기준을 산출한 후,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험금, 주택공적금, 근로자월평균임금수준, 사회구 제금 및 실업보험금 기준, 취업상황, 경제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정을 통해 산출
- 비중법: 도시주민 가계조사 자료를 근거로 1인당 수입이 가장 낮은 가구 일정비율을 빈곤가구로 정하고, 빈곤가구의 1인당 생활비용 지출수준을 계산하여 취업자 1명의 부양계수를 곱한 뒤, 조정수치를 더하여 최저임금을 결정

- 엥겔계수법: 국가 영양학회 제공 연도 표준음식 기준 및 표준음식물 섭취량에 따라 표준 식료품의 시장가격을 구한 뒤, 최저 식료품비 지출기준을 산출하여 엥겔계수를 나누어 얻은 최저생활비용 표준 수치에 취업자 1명에 해당하는 부양계수를 곱하고 조정수치를 더 하여 최저임금으로 결정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 지역

- 중국의 최저임금은 각 성·시별로 정하여 발표(별첨 참고)
  - 성·시는 관할 구역내 경제·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6개의 지역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고시
  - 업종 등에 따른 차등화 된 최저임금 기준은 없음

# □ 기준 기간

○ 최저임금 표준은 월 최저임금 및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발표

# 5 갱신주기

- □ 갱신주기: 최소한 2년 내 1회 이상 조정(최저임금규정 제11조)
  - 2016년 인력사회보장부는 조정주기를 3년으로 변경

1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최저임금 현황

(단위: RMB, '18.12월 기준)

성,시(지역)	전일제 월 최저임금 <sup>12)</sup>	비전일제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실시 시간
1.북경시	2120	24	2018.9.1
2.천진시	2050	20.8	2017.7.1
3.하북성	1650/1590/1480/1380	17/16/15/14	2016.7.1
4.산서성	1700/1600/1500/1400	18.5/17.4/16.3/15.2	2017.10.1
5.내몽고자치구	1760/1660/1560/1460	18.6/17.6/16.5/15.5	2017.8.1
6.길림성	1780/1680/1580/1480	17/16/15/14	2017.10.1
7.요녕성	1620/1420/1300/1120	16/14/11.8/10.6	2018.1.1
8.흑룡강성	1680/1450/1270	16/13//12	2017.10.1
9.상해시	2420	21	2018.4.1
10.강소성	2020/1830/1620/	18.5/16.5/14.5	2018.8.1
11.절강성	2010/1800/1660/1500	18.4/16.5/15/13.6	2017.12.1
12.안휘성	1550/1380/1280/1180	18/16/15/14	2018.11.1
13.복건성	1700/1650/1500/1380/1280	18/17.5/16/14.6/13.6	2017.7.1
14.강서성	1680/1580/1470	16.3/15.8/14.7	2018.1.1
15.산동성	1910/1730/1550	19.1/17.3/15.5	2018.6.1
16.하남성	1900/1700/1500	19/17/15	2018.10.1
17.호북성	1750/1500/1380/1250	18/16/14.5/13	2017.11.1
18.호남성	1580/1430/1280/1130	15/13.4/12.4/11.6	2017.7.1
19.광동성	2100/1720/1550/1410	20.3/16.4/15.3/14	2018.7.1
20.심천시	2200	20.3	2018.7.1
21.광시자치구	1680/1450/1300	16/14/12.5	2018.2.1
22.해남성	1670/1570/1520	15.3/14.4/14	2018.12.1
23.중경시	1500/1400	15/14	2016.1.1
24.사천성	1780/1650/1550	18.7/17.4/16.3	2018.7.1
25.귀주성	1680/1570/1470	18/17/16	2017.7.1
26.운남성	1670/1500/1350	15/14/13	2018.5.1
27.서장자치구	1650	16	2018.1.1
28.섬서성	1680/1580/1480/1380	16.8/15.8/14.8/13.8	2017.5.1
29.감숙성	1620/1570/1520/1470	17/16.5/15.9/15.4	2017.6.1
30.청해성	1500	15.2	2017.5.1
31.닝샤자치구	1660/1390/1320	15.5/14.5/13.5	2017.10.1
32.신강자치구	18201620/1540/1460	18.2/16.2/15.4/14.6	2018.1.1

(출처: 각 성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인상지역 음영표시)

<sup>12)</sup> 성·시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역별 경제·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4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고시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 중국 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 현황

적용 연도	적용 업종	기업법인 수	근로자 수(만명)	영향률
'17	1명 이상 전산업	18,097,682	77,640	N/A
'16	1명 이상 전산업	14,618,448	77,603	N/A
'15	1명 이상 전산업	12,593,254	77,451	N/A
<b>'14</b>	1명 이상 전산업	10,617,154	77,253	N/A

<sup>※</sup> 최저임금 영향률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산출을 위한 통계원 자료도 제공되지 않고 있음

□ 관련	통계	없음
------	----	----

4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중국은 '06년 이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위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크게 인상
- '11년에는 12.5규획(제12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13% 인상계획을 발표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13년 2월에는 최저임금 기준을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2015년까지 대부분의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현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권고(소득분배제도 개혁 강화에 대한 의견)
- 그러나, 경제성장률의 점진적 하락으로 임금인상 부담이 커졌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영 부담 가중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분배 정책이 다소 약화
- '16년 발표한 13.5규획에서는 명시적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를 제외
- 인력사회보장부는 2016년 최저임금 조정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다만, 중국은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중진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양극화 및 저임금 근로자와 빈곤인구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전망
-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의 19대 보고에서 다시 일자리의 질, 국민 소득 수준, 소득 분배의 중요성 강조

# 2. 최신 최저임금 동향

-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율은 여전히 높은 추세이나, 매년 하락하는 추세
- 12.5규획(2011~2015년)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율(조정지역 중 최고 최저임금 기준)이 13%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7년부터 인상율이 10% 이하로 하회

- ※ 최저임금 인상율: (2011) 25.2% → (2012) 17.5% → (2013) 15.1%, (2014) 13.0% → (2015) 13.0% → (2016) 10.3% → (2017) 8.7% → (2018) 8.4%
- 2018년의 경우, 전체 32개 성·시 중 북경, 상해 등 총 16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조정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인상율은 8.4%)
  - 전일제 월급을 기준으로 상해의 최저임금이 2,420위안(한화 399,300원, 1위안 165원 기준)으로 가장 높고, 상해, 북경, 광둥, 천진 등 7개 지역이 2,000위안을 초과

### 3.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www.mohrss.gov.cn), 각 성·시 인력자원 사회보장청 또는 국 홈페이지
- 중국 국가통계국(data.stats.gov.cn) 홈페이지
- 근로계약법(勞動契約法, 주석령 제73호, 2012.12.28. 개정)
- 노동보장감찰조례(勞動保障監察條例, 국무원령 제423호, 2004.10.26. 공포)
-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 노동사회보장부령 제21호, 2004.1.20. 공포)
- 임금총액구성규정(關于工資總額組成的規定, 주석령 제28호, 1994.7.5. 공포)
- 임금지급잠정규정(工資支付暫行規定, 노부발 제489호, 1994.12.6. 공포)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관철집행이 약간문제에 관한 의견(노동법 주해, 노부발 제309호, 1995.8.4. 시행)

(작성자) 주중대사관 고용노동관 성명 권구형 (Tel: 86-010-8531-0842, e-mail: chaesa233@korea.kr)

# 31. 캄보디아

국 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언	어	크메르어, 불어(50대 이상), 중국어, 영어(청&장년층)
면	적	181,035km²(한반도 전체의 약 80%)
인	구	16,245천명(2018.7월, 남 7,928천명/여 8,317천명)
수	도	프놈펜(Phnom Penh)
주의	요도시	시엠립(Siem Reap), 시하누크빌(Sihanoukville) 등
종	교	불교(95%), 기타(5%)
화피	ᅨ단위	캄보디아 리엘(KHR) / 1미달러=4,018리엘(2018.12.31)
	GDP	220.6억달러
	1인당 GDP	1,372.6달러
주요	GDP성장률	7.0%
경제 지표* 교역 (2017년)		수출 112.8억달러, 수입 142.8억달러
	실업률	1.06%
	물가상승률	3.1%
대사관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kh-ko/index.do

<sup>\*</sup> 자료 : World Bank, 교역(캄보디아 상무부), 실업률(ILO 추정, 15세 이상)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최저임금 관련사항은「노동법」(Labor Law)에 규정되었으며 특별법 으로「최저임금법」(Law on Minimum Wage)이 2018년 8월 공표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절차, 국가최저임금위원회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30개 조항으로 구성
- ○「직물, 봉제, 신발업계 근로자에 대한 2019년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시행령」(노동직업훈련부)이 2018년 10월 공표

# 2. 최근 5년 이내(2014~2018년) 법령 개정사항

- 2014.11월: 2015년 직물, 봉제, 신발업계 최저임금을 월 128미달러로 결정
- 2015.10월: 2016년 직물, 봉제, 신발업계 최저임금을 월 140미달러로 결정
- 2016. 9월: 2017년 직물, 봉제, 신발업계 최저임금을 월 153미달러로 결정
- 2017.10월: 2018년 직물, 봉제, 신발업계 최저임금을 월 170미달러로 결정
- 2018.10월: 2019년 직물, 봉제, 신발업계 최저임금을 월 182미달러로 결정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2 적용대상

- ○「최저임금법」은 노동법 적용대상을 최저임금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직물, 봉제, 신발업계에 대해서 공표
  - \* 「직물, 봉제, 신발업계 근로자에 대한 2019년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시행령」(2018.10월)
  - 여타 업종은 최저임금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관행상 이에 준하여 설정하고 있음
- 내·외국인 동일 적용
- 별도 법규의 적용을 받는 군·경·항공 및 해운인력 등은 노동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노동법」제1조)

#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3

- ㅇ 임금 구성항목
- 기본급, 초과급, 수수료, 상여금 및 보상금, 이익배분, 사례금, 현물급여가치, 법적으로 규정된 금액을 넘어서는 가족수당, 연가비 또는 연가보상비, 병가 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 유급주휴제도는 도입되어있지 않음
  - ※ 임금 구성항목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

- 건강보험료, 법정 가족수당, 여비,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혜택

#### □ 근로시간

○ 1주 48시간(「노동법」제141조)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최저임금법」제10조)

# 4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노동법」제344조는 노동조사관(Labour Inspector) 또는 유사한 기구가 최저임금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노동국(General Department of Labour) 내 노동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고용주는 4천만 리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최저임금법」제24조)
-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고용주는 최저임금 및 지불 임금 차액(이자포함)을 지급해야 함(「최저임금법」제6조, 제24조)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노동직업훈련부가 결정·공표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최저 임금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Minimum Wage)는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
-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최소 48명(정부대표 1/3, 사용자대표 1/3, 근로자대표 1/3)으로 구성
  - 위원장 및 사무처는 노동직업훈련부에서 담당하고 부위원장(2명)은 근로자 및 사용자 측에서 각각 담당
  - 동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과학적 연구, 회의 및 연구 조정, 노동 직업훈련부에 대한 권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
- 내각(Royal government)은 노동직업훈련부 요청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노동직업훈련부가 국가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와 내각(Royal government)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하여 공표
  - \* 2019년의 경우 국가최저임금위원회 권고수준(월 177달러)에 내각의견을 반영 하여 월 182달러로 결정

#### 2. 결정절차

- 노동직업훈련부가 국가최저임금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논의일정을 시행령으로 공표
- 국가최저임금위원회가 국가통계 및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직업훈련부에 건의
  - 동 위원회 회의시 정부, 사용자, 근로자측은 각각 내부적으로 공식 의견을 도출하여 논의에 임하며, 각 공식의견에 반할 수 없음
  -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만장일치가 원칙이며 두차례 회의에서 미합의시 과반수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이면 위원장이 정함
- 노동직업훈련부는 내각(Royal government)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수준을 시행령으로 공표
- 사측은 작업장, 임금지불사무소, 고용사무소에 최저임금수준 게시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4

# 3 결정기준 및 산출근거

- 예측가능한 수준 및 비율로 결정하되 윈-윈 원칙에 따르고, 법적 공식 데이터와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라 결정(「최저임금법」제10조) 되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공표되어 있지 않음
- 사회적 기준 : 가족상황, 물가상승률, 생계비
- 경제적 기준 : 생산성, 국가경쟁력, 노동시장 상황, 해당부문 수익성
-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등을 감안하여 통상의 근로 자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함(「최저임금법」제7조)

# 업종, 직종 등 차등적용 구분

- 동일 조건하에 출신·성별·연령에 따른 차별없음(「최저임금법」제8조)
- 「직물, 봉제, 신발업계 근로자에 대한 2019년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며 여타 업종에 대해서는 강제적용되지 않음
-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경제활동, 직업,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기준 조정이 가능(「최저임금법」제5조)
-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지역,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변경하거나 시행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최저임금법」제9조)

## 갱신주기

5

○「최저임금법」제9조는 경제상황 및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익년도 직물·봉제·신발업계의 월 최저임 금이 갱신됨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1 최저임금 현황(직물, 봉제, 신발업계 한정)

(단위: 달러, %)

적 용 년 도	월 급여	인 상 률 (전년대비)	결 정 고시일
2019	182	7.1	2018. 10. 4
2018	170	11.1	2017. 10. 5
2017	153	9.3	2016. 9. 29
2016	140	9.4	2015. 10. 8
2015	128	28	2014. 11. 12
2014	100	25	2013. 12. 31

# 2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시행령」시행(2018.9월)
  - 2019.1.1.일부터 임금을 월 2회 지급
- ㅇ 「근속수당(Seniority Indemnity) 지급에 대한 시행령」(2018.9월)\*
  - \* 직물, 봉제, 신발업계는 2019.6월부터, 여타업종은 2021년부터 시행 예정
  -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종료시 급여의 5%에 상당 하는 퇴직금을 지급
  - 근로기간이 미정인 경우 근로자 해고시 지급하는 보상금(연 15일 급여)을 연 2회(6월 및 12월) 분할하여 사전 지급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캄보디아 봉제협회 웹사이트 (최저임금 관련 노동부직업훈련부 시행령 등 관련 법률 정보 게재)
  - http://www.gmac-cambodia.org/default.php
- 국제노동기구(ILO) 캄보디아 사무소(캄보디아 노동 관련 법 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 http://www.ilo.org/asia/countries/cambodia/lang-en/index.htm

(작성자)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제담당관

(전화번호: (855-23)211-900, cambodia@mofa.go.kr)

# 32. 태국

국	명	타이 왕국(Kingdom of Thailand)
언	어	타이어(공용어)
면	적	51.4만 K㎡(한반도의 2.3배)
인	구	약 6,918만 명(2018 IMF) 타이족(75%), 화교(14%), 말레이계 등 기타(11%)
수	도	방콕(Bangkok)
주요도시		(북부) 치앙마이, (동북부) 나콘라차시마, (남부) 송크라, 푸겟
종	교	불교(95%), 이슬람교(4.3%), 기독교(1%), 기타(1%)
교	육	초등(6년), 중등(3년) 총 9년 의무교육 (단, 2009년부터 유아(3년), 초등(6년), 중고등(6년) 총 15년간 공립학교 학비 면제)
화되	폐 단위	Baht(1Baht = 100Satang), US\$1 = 32.31Baht(2018 EIU)
	GDP	4,901억달러(NESDC)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b>T</b> 0	1인당 GDP	7,444달러(NESDC)
주요 경제	GDP성장률	4.1%(태국통계청)
지표	교역	5,039억달러 (수출 2,534억달러, 수입 2,505억달러)(EIU)
(2017)	실업률	0.9%(태국통계청)
	물가상승률	1.1%(태국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tha.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법 연혁

#### 1. 1972년

- 1971년 11월 17일 혁명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후, 1972년 3월 16일 노동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권한을 내무부에 부여 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명단 포고 제103호(Revolutionary party decree no. 103, March of 1972)」가 공포됨
- 1972년 도입 당시에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담당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노동부로 이관됨
  -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내무부고시에는 임금위원회 구성, 임금위원 회의 권한, 심의의결방법,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 등의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1975년과 1981년에 일부조항이 개정됨

#### 2. 1998년

- 1998년 「노동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제정에 따라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1958년 이래 노동조건을 내무부고시로 규제해오다, 노동조건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국제적인 경제 경쟁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1일 8시간·주 48시간, 최저노동연령 15세, 최저임금 등을 법으로 규정한 노동보호법이 1998년도에 제정됨

$\mathbf{x} \cap \mathbf{z} = \mathbf{z} \cap \mathbf{z}$	최저임금제도
스얼구가이	ᄼᆡᄶᄓᆖᄸᆘᅮ
エムカハー	

# 2 법적근거

○ 「노동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2008)」 및 관련 고시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 사업주
  - 인종, 국적 및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용자
- □ 근로자
  - 인종, 국적, 장애,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근로자
    - \*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태국 사회복지부에서 월 900바트(약 27,000원)를 기업체에 지원

# 2. 특례대상

- □ 15세 이상 시간제
  - 시간당 40바트(일반근로자 1일 8시간, 308~330바트)
  - 학생(대학생 포함)의 경우 학기 중에는 하루 최대 4시간, 학기 중 휴일에는 하루 최대 6시간, 방학 중에는 최대 7시간, 주당 최대 36시간까지만 근무 가능
    - ※ 도박, 식당(성매매 관련), 공연(손님과 같이 하는 경우) 등 관련 사업은 불가하고 청소년이 다칠 경우 사업주가 전액 치료비를 지원해야 함

□ 기술직종에 대한 최	4서임금 석봉사인
--------------	-----------

ㅇ 기술직종은 직종별 수준별(레벨 1, 레벨 2)로 1일 최저임금 별도 적용

#### 3. 적용제외대상

- ㅇ 중앙 및 지방공무원
- ㅇ 국영기업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국영기업 노동자
- ㅇ 경작, 어업, 산림업, 가축업 등 농축수산업 근무 노동자
- ㅇ 가사 노동자 및 비영리사업 근무 노동자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 임금의 지급 방법은 대부분 일급, 월급 형태로 지급
- 임금구성은 임금이외에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사회보험료(실업 보험, 의료보험 등), 식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임

# □ 근로시간

- 통상근로는 1일 8시간, 주당 48시간
  - 전문직, 서비스직, 관리직, 사무직, 상업 근로 1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있으나 주당 48시간 초과할 수 없음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5시간 근로 시 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며, 일주일 근로 시 1일의 휴식(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ㅇ 주간휴일

- 고용주는 1주일에 1일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간휴일간의 간격은 6일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됨. 주간 휴일기간에도 기본급은 지급하여야 함. (일용직, 시급, 도급근로자 제외)
- ㅇ 기본급여
-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써, 시급, 일급, 월급 또는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합의된 금원
- 기본급여에는 실제 일하지 않았으나, 노동보호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가 포함
- 안전이나 보건상 위해한 업종의 경우 1일 7시간, 주당 42시간임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없으나 관행상 일반적인 근로에
 따라 수령하는 기본임금을 의미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에는 사회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보너스, 주휴수당, 기타 수
 당은 포함하지 않음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태국 노동부 소관의 86개 지방노동사무소(방콕 10개, 지방 76개)가 이행여부를 단속하고 지도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20만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최저임금제도 위반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구제요청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고한 경우 노동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책임을 지게 됨
- 감독기관에의 신고와 별도로 노동법원에 최저임금의 지불을 요청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서 결정
- □ 임금위원회(Wage Committee)
  - 구성: 노동부 사무차관(위원장), 정부대표로 위원장 외 4명, 사용자 대표 5명, 노동자 대표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 임명 및 임기: 정부대표는 당연직이며, 사용자대표와 노동자대표는 내각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재임명도 가능
  - 주요기능: 최저임금액 및 기초최저임금액 결정, 임금에 관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최저임금 심의 시 의사정족수는 2/3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고 사용
   자와 근로자대표가 적어도 2명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위원의
   2/3이상의 동의로 의결
- ㅇ 최저임금 심의 시 정족수에 미달하여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회의를 재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의 최소 2명 이상 참석과 관계없이 전체위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

- \* 이는 최저임금액에 불만이 있는 노사위원 어느 일방이 회의를 보이콧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입
- 통상의 회의는 과반수 위원이 참석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적어도 1명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며, 다수결로 의결

#### 2. 결정절차

- 일반적으로 임금위원회가 매년 하반기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 관례임
- 필요시에는 연중에도 최저임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검토 시 최저임금이 매번 조정되는 것은 아님
  - \* 1976, 1984, 1988, 1997, 1998, 1999, 2014, 2015, 2016년은 최저임금을 동결했으며, 1974, 1989, 1995, 2008년은 두 차례 최저임금 인상
- 중앙임금위원회는 기초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각 지역최저임금 위원회에 송부
- 지역최저임금위원회는 중앙임금위원회에서 통보한 기초최저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지역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중앙임금위원회에 동 임금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
- 중앙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최저임금위 원회에서 요청한 지역최저임금 수준을 심사한 후 중앙임금위원회에서 서 전국 모든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 일반적으로 지역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요청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 앙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됨
- 중앙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의결내용은 노동부장관을 통해 각료회의에
   제출되고, 최종적으로 각료회의에서 전국 각 지역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확정
- ㅇ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관보에 게시되고 시행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최저임금 발표 후 위원회의 회의내용(간단히), 참석인원 등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단, 녹취내용과 회의록 등은 미공개)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중앙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심의·결정시 현행임금수준, 생계비, 인 플레율, 생활수준, 생산비용, 물가, 기업 효율성, 노동생산성, GDP, 경제·사 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노동보호법 제87조)
- 생계비는 77개 지역최저임금위원회(방콕포함)에서 해당 지역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실태생계비를 조사하여 산출
- 각 지역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조사한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생계비를 확정하여 중앙임금위원회에 제출
- 중앙임금위원회에서는 지역별 생계비와 기타 요소(물가 등)를 가지고 지역별최저임금을 확정

### 2. 산출근거

- 지역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아래 3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
- ① 근로자의 생활비 : 현재 근로소득, 생활비, 인플레이션, 서비스 및 생산비용, 생활수준, 노동생산성
- ② 근로자 소득증가 능력: 생산원가, 비즈니스 능력, 노동생산성 지표
- ③ 경제 및 사회 : 전국 및 지방 GDP, 전국 및 지방의 경제, 사회 상태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최저임금은 지역별 일급으로, 기술직종은 직종별·기술 수준별로, 15세
 이상 시간제는 시간급으로 고시

# 5 갱신주기

ㅇ 특정한 조정주기는 없으나 매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단위: 바트, %)

적 용 년 도	시 간 급	일 급 (8시간기준)	인 상 률 (일 기준)	심 의 의결일	결 정 고시일
'18	_	308~330	1.64~7.14	'18. 1.19	'18. 3.19
'17	_	300~310	0~3.3	'16.10.19	'16.10.31
'16	_	300	_	_	-

- ※ '13.1.1.이후 '16.12.31까지 최저임금이 300바트로 동결되어 지역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17.1.1.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 ※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신정부 구성('19.6월 잠정) 이후 발표 예정

# 최저임금 적용현황

(단위: 개소, 천명, %)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적용대상사업체	적용대상근로자	최저임금 대싱근로자	영향률
'17	1명 이상 전산업	_	37,458	공개불가	_
'16	1명 이상 전산업	435,303	37,692	공개불가	_
'15	1명 이상 전산업	429,070	38,016	공개불가	_

※ 통계자료 근거: 적용대상사업체수는 사회보험 가입 기업기준(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 제외, '17년 적용대상사업체는 태국노동부에서 자료 업데이트 하지 않음)이며, 적용 대상근로자는 National Statistical Office(The Labor Force Survey, 5 참조) 기준임. 최저임금 대상근로자는 태국노동부 담당부서 문의 결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임

2

## 최저임금 미만현황

3

4

(단위: 천명, %)

조사기간	'15.12	'16.12	<b>'</b> 17.12
임금근로자수(A)	38,016	37,692	37,458
미만근로자수(B)	공개불가	공개불가	공개불가
미만율(B/A)	_	_	-

<sup>※</sup> 통계자료 근거 : 임금근로자수(A)는 National Statistical Office(The Labor Force Survey, 5 참조) 기준임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2011년 7월 총선으로 집권한 프어타이당은 "1일 최저임금 300바트" 공약을 단계적으로 실시
  - 2012년 4월부터 방콕 등 7개 주요시도의 최저임금을 일당 300바트로 인상(인상률 39%)하는 등 전국평균 39.5%(69.4바트) 인상
  - 2013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 일당 300바트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전국평균 23.1%(54.8바트) 인상됨
- 2015년 4월 1일 태국의 비상계엄체제가 해제되면서, 태국 노동단체는 2 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최저임금을 360바트(20%)로 인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 태국 노동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17년 1월부터 최저임금

<sup>※</sup> 미만근로자수(B)는 태국노동부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5

일당을 300바트에서 지역별 차등을 두어 최대 3.3%(310바트)까지 인상

- 2018년에는 77개 지역을 7개 최저임금으로 구분하여 '18. 4. 1.부터 최대 330바트까지 인상(인상률: 최대 7.14%)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최저임금제도 담당부서 : 태국 노동부 최저임금제도사무소
- 태국 노동부: www.mol.go.th

##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18년도 1.64~7.14% 인상

(단위: 바트/일, %)

연번	지역 명					최:	저임금(1	바트)				
진빈	시크 명	'06년	'07년	'08.1	'08.6	'08.11	'10.1	'11.1	'12.4	'13.1	'17.1	<b>'18.4</b>
1	방콕	184	191	194	203	203	206	215	300	300	310	325
2	논타부리	184	191	194	203	203	205	215	300	300	310	325
3	나콘빠톰	184	191	194	203	203	205	215	300	300	310	325
4	빠툼타니	184	191	194	203	203	205	215	300	300	310	325
5	사뭇쁘라깐	184	191	194	203	203	206	215	300	300	310	325
6	사뭇사컨	184	191	194	203	203	205	215	300	300	310	325
7	푸껫	181	186	193	197	197	204	221	300	300	310	330
8	촌부리	166	172	175	180	180	184	196	273	300	308	330
9	사라부리	163	168	170	179	179	184	193	269	300	308	320
10	나콘라차시마	158	162	165	170	170	173	183	255	300	308	320
11	라용	155	161	165	173	173	178	189	264	300	308	330
12	프라야콘스라 야유타야	155	160	165	173	173	181	190	265	300	308	320
13	차창사오	153	160	165	173	173	180	193	269	300	308	325
14	라농	155	160	163	169	169	173	185	264	300	300	310
15	팡아	155	159	162	168	168	173	186	259	300	308	320
16	크라비	151	156	160	165	165	170	184	257	300	308	320
17	페차부리	150	156	160	164	164	168	179	250	300	305	315
18	치앙마이	155	159	159	168	168	171	180	251	300	308	320

Al m	-1 A1 -11					최:	저임금(	바트)				
연번	지역 명	'06년	'07년	'08.1	'08.6	'08.11	'10.1	'11.1	'12.4	'13.1	'17.1	'18.4
19	롭부리	151	155	158	163	163	170	182	254	300	305	320
20	찬타부리	150	155	158	163	163	167	179	250	300	305	318
21	칸차나부리	151	155	157	165	165	169	181	252	300	305	315
22	라차부리	147	154	156	164	164	167	180	251	300	305	310
23	싱부리	147	152	156	161	161	165	176	246	300	300	310
24	사뭇송크람	150	154	155	160	160	163	172	240	300	305	318
25	스라캐우	147	154	155	160	160	163	172	241	300	305	315
26	프란친부리	147	152	155	163	163	170	183	255	300	308	318
27	뜨랑	148	152	154	157	157	162	175	244	300	300	310
28	앙통	148	152	154	161	161	165	174	243	300	305	315
29	뤄이	144	150	154	162	162	163	173	241	300	305	315
30	프라차우브키리칸	147	152	152	160	160	164	172	240	300	305	315
31	송크라	144	152	152	157	157	161	176	246	300	308	320
32	람푼	145	149	152	156	156	160	169	236	300	305	310
33	우돈타니	145	150	150	157	157	159	171	239	300	305	315
34	춤폰	145	149	150	158	158	160	173	241	300	300	310
35	트랏	145	149	150	156	156	160	169	236	300	305	320
36	콘깬	144	148	150	154	154	157	167	233	300	308	320
37	니콘스리탐마랏	144	148	150	155	155	159	174	243	300	300	310
38	부리남	144	148	150	155	155	157	166	232	300	305	315
39	사뚠	144	148	150	155	155	159	173	241	300	305	310
40	농카이	144	148	150	157	157	159	169	236	300	305	320
41	붕깐	-	_	-	-	-	-	-	236	300	305	315
42	나콘나욕	143	147	150	156	156	160	170	237	300	305	318
43	나콘사완	143	147	150	155	155	158	166	232	300	305	315
44	파타룽	143	147	150	155	155	159	173	241	300	305	315
45	페차분	143	147	150	155	155	155	163	232	300	305	315
46	수라타니	143	147	150	155	155	159	172	240	300	308	320
47	우타이타니	142	146	150	158	158	158	166	234	300	305	310
48	람빵	145	149	149	154	154	156	165	230	300	305	310
49	수코타이	145	149	149	151	153	153	165	230	300	305	310
50	수판부리	145	149	149	154	154	158	167	233	300	305	320
51	캄펭페츠	143	147	149	156	156	158	168	234	300	305	310
52	차이낫	142	146	149	154	154	158	167	233	300	305	315
53	칼라신	144	148	148	155	155	157	167	233	300	305	318
54	나콘파놈	144	148	148	153	153	155	164	229	300	305	315
55	나라티왓	144	148	148	153	153	160	171	239	300	300	308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어피	지역 명					최 :	저임금(1	바트)				
연번	시작 병	'06년	'07년	'08.1	'08.6	'08.11	'10.1	'11.1	'12.4	'13.1	'17.1	<b>'18.4</b>
56	파타니	144	148	148	155	155	159	170	237	300	300	308
57	<b>알</b> 라	144	148	148	155	155	160	172	240	300	300	308
58	피사누록	143	147	148	152	152	153	163	227	300	305	315
59	묵다한	142	146	148	152	152	155	165	230	300	305	318
60	사콘나콘	142	146	148	155	155	157	166	232	300	305	318
61	농부아룸푸	142	146	148	154	154	156	165	230	300	305	310
62	딱	143	147	147	151	151	153	162	226	300	305	310
63	우트라라딧	143	147	147	149	152	153	163	227	300	305	315
64	마하사라캄	142	146	147	151	151	154	163	227	300	305	310
65	야소톤	142	146	147	155	155	157	166	232	300	305	315
66	로이에드	142	146	147	154	154	157	166	232	300	305	315
67	매홍선	141	145	147	151	151	151	163	227	300	305	310
68	수린	141	145	147	151	151	153	162	226	300	305	315
69	차이야품	142	146	146	148	152	156	165	230	300	305	310
70	치앙라이	142	146	146	157	157	157	166	232	300	305	310
71	스리사켓	142	146	146	150	150	152	160	223	300	305	310
72	피칫	141	145	146	150	150	151	163	227	300	305	310
73	프래	140	144	146	150	150	151	163	227	300	305	310
74	암나차론	141	145	145	153	153	155	163	227	300	305	310
75	우본라차타니	141	145	145	154	154	160	171	239	300	305	320
76	파야오	140	144	144	150	150	151	159	222	300	305	315
77	난	140	143	144	151	151	152	161	225	300	305	315
평균		149	154	155	161.9	161.9	165.2	175.8	245.2	300	305	319

<sup>\*</sup> 총 77개 지역 인상 내역: 308바트 3개 지역, 310바트 22개 지역, 315바트 21개 지역, 318 바트 7개 지역, 320바트 14개 지역, 325바트 7개 지역, 330바트 3개 지역

<sup>\*\* &</sup>quot;41.붕깐"은 2012.3월에 농카이에서 분리

# 기술직종에 대한 최저임금

# □ 2016. 11. 17. 고시

기술직종명	자격증 수준	최저임금	비고
1. 기계제도	Level 1	460바트	
1. 기계세도 	Level 2	550바트	
0 디그요저	Level 1	500바트	
2. 티그용접	Level 2	600바트	
3. 자동차정비	Level 1	450바트	
3. 사중사장미	Level 2	540바트	
ᄼᄋᅅᄀᆝᅰ저비	Level 1	460바트	
4. 유압기계정비	Level 2	550바트	
C UHL기계 O 저	Level 1	400바트	
5. 냉방기계용접	Level 2	485바트	
6. 대형냉방기계정비	Level 1	385바트	
0. 내명병당기계정미	Level 2	470바트	
ᄀᄉ청!ᆘᄖᄓᆌᅯᅯ	Level 1	385바트	
7. 소형냉방기계정비	Level 2	470바트	
O 내내기계조리	Level 1	370바트	
8. 냉방기계조립	Level 2	455바트	
9. 수치제어장치(CNC)	Level 1	450바트	
기술자	Level 2	540바트	
10. 방전가공기(EDM)	Level 1	430바트	
기술자	Level 2	515바트	
11. 와이어컷(Wire Cut)	Level 1	430바트	
방전가공기 기술자	Level 2	515바트	
10 저사기기스키	Level 1	380바트	
12. 절삭기기술자	Level 2	455바트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2017.10.30. 고시

# ○ 철 직종

기술직종명	자격증 수준	최저임금	비고
1. 철 아크 녹임	Level 1	480바트	
1. 철 <u>아크 득</u>	Level 2	580바트	
0 = 13	Level 1	500바트	
2. 철 정련	Level 2	600바트	
3. 철 탄디쉬, 몰드	Level 1	460바트	
S. 설 인디지, 글드 	Level 2	560바트	
A 첫 여러리	Level 1	440바트	
4. 철 열처리	Level 2	540바트	

# ○ 플라스틱 직종

기술직종명	자격증 수준	최저임금	비 고
1. 플라스틱 사출	Level 1	380바트	
1. 글나으릭 사물   	Level 2	450바트	
이 프리스티 보트 시ᄎ	Level 1	380바트	
2. 플라스틱 봉투 사출	Level 2	450바트	
3. 플라스틱 사출모형제작	Level 1	380바트	
3. 물나그릭 사물포장세역	Level 2	450바트	
◢ 프리스티 시ᄎ저비	Level 1	410바트	
4. 플라스틱 사출정비	Level 2	480바트	

# ○ 가구 직종

기술직종명	자격증 수준	최저임금	비 고
1. 가구 재료 준비	Level 1	340바트	
1. 기구 세표 준비   	Level 2	370바트	
이 기구제자 지도기계	Level 1	380바트	
2. 가구제작 자동기계	Level 2	440바트	
	Level 1	350바트	
3. 가구 조립 	Level 2	400바트	
4. 가구 페인트	Level 1	360바트	
	Level 2	400바트	

# ○ 신발 직종

기술직종명	자격증 수준	최저임금	비고
1. 신발 설계	Level 1	370바트	
	Level 2	405바트	
2. 신발 재봉	Level 1	380바트	
Z. 신설 제공 	Level 2	420바트	
3. 신발 조립(지원)	Level 1	360바트	
	Level 2	390박트	

작성자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재경관 장주성(jsjang19@mofa.go.kr)

# 33. 터키

국	 명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	
7 0		다가증와국(Nepublic of Turkey)	
언	어	터키어	
면	적	783,562km²(남한의 7.8배)	
인	구	8,200만 명(남자 50,2% 여자 49,8% - 2018년)	
수	도	앙카라(Ankara)	
주의	요도시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밀, 부르사, 안탈랴 등	
종	교	이슬람교(99.8%, 수니파 다수), 기타(0.2%, 개신교, 천주교 및 유대교)	
교 육		초등, 중등, 고등학교 (12년 의무교육제도 = 4 + 4 + 4 교육 시스템)	
화피	<b>예단위</b>	Turkish Lira(TL)	
	GDP	2017년 8,511억 달러	
	1인당 GDP	2017년 10,540 달러	
주요	GDP성장률	2017년 7.4%	
경제 지표 교역 (2016)		2018년 : 수출: 1,680 억 달러 수입: 2,230 억 달러 무역수지: -550 억 달러	
	실업률	12.7%(2018년, 잠정) * 2017년 13%	
	물가상승률	20.30%(2018년) * 2017년 11.91%	
대사관	웹사이트	http://tur-ankara.mofa.go.kr	

\* 자료: 터키 중앙은행, 통계청, World Bank, OECD통계국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931년 제정된 노동법에 명시되었으나 시행령 미비로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하다가 1951년 시행령 제정으로 발효
- 1951-67년 주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으며, 1966년 모든 주에서 시행
- 1967년 헌법재판소의 노동법 효력정지 결정, 1971년 신 노동법제정, 1972년 시행령 제정으로 발효
- 1982년 개정 헌법에서 제49조 2항과 제55조 2항을 통해 노동자와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규정
- 1989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농민과 노동자의 구분을 없애면서 산업별, 지역별 차별을 완전히 철폐
- 200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현 최저임금제도 확정. 노동자의 범위 확대(노동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대상자를 모든 노동자로 규정)
  - 노동법 제39조(최저임금): 모든 노동자들의 경제 및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노동부 관할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 최소 2년에 한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 법령 번호 : 4857, 상법 제39조
  - 관보게재일 : 2003.6.10. 번호 : 25134
  - 최저 임금 규정
    - 관보게재일 : 2004.1.8. 번호 : 25540
  - 최저임금산정위원회 공고, 번호 : 2015/1

#### 2. 2014년 4월 19일 최저임금규정 개정사항

- (규정 1) 제4조, "노동조합 법률 60항에 따라 산업분야에 따라 명시됨"에서 "관보 게재일 2012.10.18. 6356호 노동조합과 단체 계약법에 따라 4항에 규정에 명시됨"으로 개정됨
- (규정 2) 제5조, 제7조 첫 단락의 규정은 "최저임금 결정에는 언어, 인종, 성별, 정치적 견해, 철학적 신념, 종교, 그 어떠한 이유에도 차별이 될 수 없음"에서 "최저임금 결정에는 언어,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정치적 견해, 철학적 신념, 종교 등 그 어떠한 이유에도 차별 되지 않음 "으로 개정됨
- (규정 3) 제7조에 따라 "임금규정은 최소 2년에 한번으로 하며, 16세를 기준으로 임금이 다르게 결정됨"에서 "임금규정은 최소 2년에 한번으로 정함 "으로 개정됨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고용계약에 따른 모든 근로자 및 법조항 4857에 의거한 모든 사업자

### 2. 특례대상

- 정식 취업자가 아닌 견습생(학생)의 경우 생활수당을 제외한 실수령 최저임금액의 30%를 임금으로 지급
- 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총급여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본인부담분 할인이 적용됨
- 할인금액은 갱신되는 최저임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2019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1등급 장애인(장애율 80%이상 : 133.97 TL(월))
  - ② 2등급 장애인(장애율 60~79%) : 97.50 TL(월))
  - ③ 3등급 장애인(장애율 40~59%) : 43.50 TL(월))

## 3. 적용제외대상

○ 없음 (외국인도 동일)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 임금
  - 임금구성항목
    - 기본급여, 보험료, 실업수당, 인지세, 최저생계수당, 소득세
  - 유급주휴수당: 1주 45시간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에 따라) 최소 24시간의 유급 휴가를 얻을 자격을 가지며,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함
    - 일급 85.28TL, 시급 11.37TL(=85.28TL/7.5시간, 터키 주 45시간, 주 6일 근로)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1일 7.5 시간, 1주 45시간, 6일 근무
  - 예외: 고용주와 근로자 합의 시 1일 1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근무일자 조정가능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ㅇ 기본급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일체의 수당과 성과급, 현물급여

626 ... 최저임금위원회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가족노동사회보장부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2019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불한 고용주에게는 인당 매월 236TL의 벌금 및 최저임금액의 2배인 5,117TL(건당)의 별도 행정벌금(과태료 성격)을 부과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최저임금 위반 시 사회보장청에 신고하고,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최저임금 차액을 받기 위해 고소할 수 있음
  - ※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간혹 조사하나, 실제실업률이 20%(공식 발표 실업률은 10%내외)를 상회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반 신고사례가 매우 적음)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가족노동사회보장부가 최저임금산정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 하고 관보 게재 (최소 2년에 1회 최저임금 재검토가 법적 규정이 나 높은 물가인상률로 인해 통상 매년 최저임금 갱신)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 위원회방식

- 비상설기구로서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 임명
  - 최소 2년에 1회 최저임금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매년 개최
  - 위원: 최소 15명으로 구성
    - 노동부 대표 2명, 국가통계원 대표 1명, 재무부 대표 1명, 개발 부 대표 1명
    - 가장 많은 수의 회원 보유 노동조합 대표 5명
    - 가장 많은 수의 직원 보유 사업주단체 대표 5명

#### 2. 결정절차

- 최소 15명 참여로 개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 최저임금산정위원회의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결정 내용이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함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
  - 2018.12.6. 제1차 최저임금 산정위원회 회의 개최
  - 2018.12.13. 제2차 최저임금 산정위원회 회의 개최
  - 2018.12.20. 제3차 최저임금 산정위원회 회의 개최
  - 2018.12.25. 제4차 최저임금 산정위원회 회의 개최
  - 2018.12.27. 최저임금 관보 게재
  - 2019.1.1. 2019년 최저임금 적용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임금의 결정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대학, 근로자, 고용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며, 문서 자료는 공개되지 않음

スロフルロ	최저임금제도
十五 カノー	- 레이 ㅁㅁ에ㅗ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근로자의 식료품, 주택, 의복, 보건, 교통, 문화비 등 필수불가결한 1일 생활비의 최저선을 충족시키는 임금(2004.8.1.자 시행령)
- 당해년도의 소비자물가 인상률
- 기업의 지불능력
- 경제성장률
- 노동생산성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최저임금은 단일 최저임금이며 지역별·연령별·업종별·숙련도별 구분적용 없음

# 5 갱신주기

○ 최대 2년 (통상 1년)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1.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수준(세전, 사회보장비 등 포함)

(단위 : TL, 월액 기준)

연도	구분	성인	청소년(16세 미만)	그 외 특례
2019	연중	2,558.4	2,558.4	_
2018	연중	2,029.5	2,029.5	_
2017	연중	1,777.5	1,777.5	_
2016	연중	1,647	1,647	_
2015	상반기	1,201	1,201	_
2013	하반기	1,273	1,273	-
2014	상반기	1,071	1,071	_
2014	하반기	1,134	1,134	_
2013	상반기	978.60	839.10	_
2013	하반기	1,021.50	877.50	_
2012	상반기	886.50	760.50	-
	하반기	940.50	805.50	_
0011	상반기	796.50	679.50	_
2011	하반기	837.00	715.50	_
0010	상반기	729.00	621.00	_
2010	하반기	760.50	648.00	-
2009	상반기	666.00	567.00	-
	하반기	693.00	589.50	_

<sup>※ 2007</sup>년부터 물가인상률 반영 위해 연 2회 인상 / 2016년부터 상하반기 구분 없이 연간 임금으로 결정

<sup>※ 2014</sup>년부터 청소년(16세 미만)의 경우도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

# <2019년 가족구성별 추가 생활수당 보전분>

(단위 : TL)

수령자 가족구성에 따른 구분	기혼 배우자 직장 有	기혼 배우자 직장 無
미혼	191.88	
기혼	191.88	203.26
1자녀	220.66 259.04	
2자녀	249.44	287.82
3자녀	287.82	326.20
4자녀	307.01	326.20

# <2019년 최저 임금위원회가 산정한 최저 임금표>

최저임금	단위 (TL/월)
최저임금	2,558.40
보험료 14%	358.18
실업수당 1%	25.58
소득세 15%	326.20
생활수당 (보전액) * 미혼 기준	191.88
인지세	19.42
차감액	729.38
실 최저임금	2,020.90

# <기간별 실질 최저임금>

(단위 : TL)

연도	구분	법정 최저임금 (세금·사회보장비 포함)	실질 최저임금
	상반기	<u> </u>	629.96
2011	하반기	837	658.95
0040	상반기	886.50	701.13
2012	하반기	940.50	739.79
2012	상반기	978.60	773.01
2013	하반기	1,021.50	803.68
2014	상반기	1,071	846
	하반기	1,134	891.03
2015	상반기	1,201	949.07
2015	하반기	1,273	1,000.54
2016	연중	1,647	1,300.99
2017	연중	1,777.5	1,404.04
2018	연중	2,029.5	1,603.12
2019	연중	2,558.40	2,020.90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 2018년도의 경우 전체 근로자수 중 최저임금 근로자수 비율이 40.3% 에 달함(노동부 발표)
- 3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ㅇ 없음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ㅇ 4857 법률
  - 최저 임금 규정 (관보 : 2004년 1월 8일 관보 번호 : 25540)
  - 최저 임금의 고정위원회 결정 공고 / 2015.1
  - 가족노동사회보장부 웹 사이트 (http://www.aile.gov.tr)
  - 사회보장청 웹 사이트 (http://www.sgk.gov.tr)

(작성자) 주터키대사관 경제과 유혜런 실무관

(전화번호 +903124684821(내선111) , e-mail : hryou15@mofa.go.kr )

# 34. 필리핀

국	명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언	어	타갈로그어(Tagalog), 영어	
면	적	300,400km² (한반도의 1.3배)	
인	구	1억98만명(2015.8월)	
수	도	마닐라	
주의	요도시	마닐라, 세부, 다바오 등	
종	교	가톨릭교(83%), 개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卫	육	12학년제	
화폐 단위		필리핀 페소(Peso, \$US 1 = PhP 52.63, '19.3.14. 기준)	
	GDP(명목)	3,324억달러	
	1인당 GDP	3,095달러	
주요 경제	GDP성장률	6.2%	
지표 교역		1,632억달러(수출: 628억달러, 수입: 1,004억달러)	
(2018년)	실업률	5.1%	
	물가상승률	5.2%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 Quirino정부의 첫 최저임금제도(RA 602) 마련(1951.4.6.)
  - 농업/비농업 종사로 분류하여 이원화된 최저임금 고시
  - 임금위원회(Wage Board) 설립
    - 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청원 접수, 공청회 개최, 최저임금 권고사항 제출 등의 역할 수행
  -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노동관련부처 장관에게 부여

## 2. Marcos정부 임금제도(1965-1986)

- 물가수당(Cost of Living Allowance) 추가 지급
- 1983년 달러가치상승으로 인한 유가 및 교통비 폭등으로 4번의 최저임금 인승

## 3. 임금현실화법(Wage Rationalization Act, RA 6727): 1989-현재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NWPC) 설립
  - 동 위원회는 임금 및 생산성에 대해 대통령 및 하원에 자문 제공
  - 동 위원회의 지역사무소격인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이사회(Regional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 RTWPB)가 각 지역에 적합한 최저임금 마련

- ㅇ 지역별 최저임금 차별화
  - 국가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별화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 □ 임금현실화법(Wage Rationalization Act, RA 6727)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역별, 업종별 상이한 최저임금제를 도입
  - ㅇ 일급으로 고시
- 2. 최근 3년 이내(2013~2015년) 법령 개정사항
  - 최근 3년 이내 법령 개정 사항 없음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민간부문 근로자에게만 적용 되며 개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및 공공기관 근로자는 별도의 법령 적용 (내·외국인 동일 적용)

## 2. 특례대상

ㅇ 없음

#### 3. 적용제외

- ㅇ 가사도우미, 개인 기사 등 개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 ㅇ 도매/서비스업으로서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지 않는 사업체
- ㅇ 자연재해 영향을 받은 사업장
- 경영상 손실을 입은 사업장(distressed establishment)
  - 법인(corporation/corporative)의 자본부족 또는 1년 회계기준 손실 발생시, 손실 정도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비법인(single proprietorship/partnership)의 2년 회계기준 손실 발생시, 손실 정도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비주식, 비영리 단체의 2년 회계 기준 손실 발생시, 손실 정도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법정관리/청산에 들어간 은행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ㅇ 임금은 기본임금, 생계비, 생산성기반 인센티브로 구성
- 근로시간은 일당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초과 시 고용자와 근로자간 동의 및 추가 수당 지급 필요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최저임금은 기본임금 및 생계비(cost of living allowance)으로 구성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인센티브,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 □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지역사무소
  - 국령 6727호에 따르면,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 이행은 노동고용부의 지역사무소가 시행하며 지역노사정임금 생산성이사회에서 이를 관리 감독
- □ 국가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노동고용부 소속 준사법기관으로 최저임금 분쟁 해결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 과태료 또는 징역
  - 국령 6727호에 따르면, 최저임금 불이행시 불이행 고용주 또는 사업장에 25,000페소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최저임금 위반 시 피해근로자는 국립조정이사회(NCMB)에 권리 구제를 요청. NCMB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화해·조정을 시도함. 만일 조정에 실패할 경우 사건은 국가노동관계위원회 (NLRC)로 이첩되어 담당판사가 결정(decision)을 내림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 동 위원회는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이사회(RTWPB)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 마련과 기술적 행정적 관리 감독을 제공
- 위원회 구성(7명)
  - 의장: 노동고용부(DOLE) 장관
  - 부의장: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
  - 노조측 2명(대통령 임명, 5년 임기)
  - 사측 2명(대통령 임명, 5년 임기)
  - NWPC 사무국 총장
- 최저임금 결정 4가지 기준(2014년 발표)
  - 생활임금 수요(Demand for living wage):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임금조정, 생계비 지수 변화, 노동자 및 가족의 필요, 생활수준 개선
  - 지불능력(capacity to pay): 사측의 자본투자에 대한 적정보수, 사측의 임금지불능력, 생산성

- 비교가능한 임금·소득(comparable wages and incomes)
- 사회경제발전의 필요 요건(requirement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지방투자촉진, 일자리창출 및 가계 수입 효과, 수입과 부의 동등한 분배
- □ 지역 노사정 임금생산성이사회(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 RTWPB)
  - ㅇ 각 지역 및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
  - 위원회 구성(7명)
    - 의장: 노동고용부 지역사무소장
    - 부의장: 국가경제개발청 지부장, 교역산업부 지부장
    - 노조측 2명(대통령 임명, 5년 임기)
    - 사측 2명(대통령 임명, 5년 임기)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공청회 종료 후 이사회 내 표결, 과반수 의결에 의한 최종 결정
  - 표결 시 사측 및 노조 측 각각 1명 이상 참석 필수

#### 2. 결정절차

#### □ 이사회의 자발적(motu proprio) 발안

- 지역 및 산업환경 변화 또는 국가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임금 법령 발의를 위한 절차 개시 가능
- 위원회는 공청회(hearing)를 개최
- 관련 산업 또는 분야와의 협의 진행 가능

#### □ 청원에 의한 발안

- ㅇ 최저임금 인상 청원 제출
- 청원서 수령 15일내 위원회의 청원서 검토 심사
- 청원서의 제출 조건 충족시, 공청회 개최
  - 최초 공청회 개최 15일전 공청회 개최에 대한 고시 실시
- ㅇ 반대측은 최초 공청회 이전 또는 당일 반대 청원서 제출
- ㅇ 반대측 청원이 2개 이상인 경우 이사회는 공동공청회 개최
- ㅇ 타 정부기관,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의 지원 또는 협조 요청 가능
- 최후 공청회 이후 30일내 위원회는 임금 법령(Wage Order) 발행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 공청회

○ 공청회 관련 회의록 등은 요청에 의해 공개

#### □ 위원회 최종 결정

○ 결정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정사항은 임금법령 절차 규정에 따라 공표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빈곤선(국가통계조정의회, NSCB)
- 일반(평균)임금(Labor Force Survey 통해 도출)
- 사회경제지표(소비자물가/인플레이션, 고용률, 지역내총생산 지표 등)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ㅇ 구체적인 조사 및 분석 방법은 비공개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4

## │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고시하며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 17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각 지역 내에서도
   산업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을 지급
  - 농업, 비농업\*, 제조업, 사립 병원, 도매업 등으로 분류
    \*가내수공업, 일반수공업, 가공업, 수리업, 광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등
- 산업에서도 사업장 규모, 역량, 직원 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고시되고 월급 및 연봉으로 급여 책정될경우 365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여부 판단

#### 갱신주기

5

 최저임금 결정 이후 12개월 이내 인상 청원은 불가하며 석유제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가격 급등 등 강력한 환경변화(supervening condition)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1) 수도권 지역(National Capital Region)

(단위 :폐소, %)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	537	4.88%	′18. 11. 22.
농업 (플랜테이션&비플랜테이션)	500	5.26%	′18. 11. 22.
사설병원 (수용침대시설 100개 이하)	537	4.88%	′18. 11. 22.
소매업/서비스업 (근로자 15명 이하)	500	5.26%	′18. 11. 22.
제조업 (정규근로자 10명 이하)	500	5.26%	′18. 11. 22.

## 2) Cordillera 행정지역(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모든 산업	300-320	6.66-8.62%	′18. 8. 20.
소규모 사업	200, 210	0.77 11 110/	/10 0 00
(근로자 10명 이하)	300–310	8.77-11.11%	′18. 8. 20.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3) 지역 I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Large-Small)	256-310	5.35-10.71%	′18. 1. 25.
농업(플랜테이션)	265	5.16%	′18. 1. 25.
농업(비플랜테이션)	256	5.35%	′18. 1. 25.
상업적 어업	265	5.16%	′18. 1. 25.

<sup>\*</sup> 비농업의 경우 자산 비중과 사업규모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하여 범위로 나타냄

## 4) 지역Ⅱ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	360	2.94%	′18. 11. 25.
농업	340	3.13%	′18. 11. 25.
소매업/서비스업 (근로자 11명 이상)	360	2.94%	′18. 11. 25.
소매업/서비스업 (근로자 10명 이하)	320	3.33%	′18. 11. 25.

## 5) 지역Ⅲ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 (총자산 3천만페소 이상)	329–380	4.40-5.11%	′18. 8. 1.
비농업 (총자산 3천만페소 미만)	329-373	4.48-5.11%	′18. 8. 1.
농업(플랜테이션)	314-350	4.79-5.37%	′18. 8. 1.
농업(비플랜테이션)	302-334	5.03-5.59%	′18. 8. 1.
소매업/서비스업 (근로자 16명 이상)	369	2.99%	′18. 8. 1.
소매업/서비스업 (근로자 15명 이하)	355	4.72%	′18. 8. 1.

## 6) 지역IV-A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	317-400	4.63-14.52%	'19. 12. 1.
농업(플랜테이션)	303-372	3.06-18.77%	'19. 12. 1.
농업(비플랜테이션)	303-372	3.77-18.77%	'19. 12. 1.
소매업&서비스업 (근로자 10명 이하)	303	7.07%	'18. 4. 28.

<sup>\*</sup> 지역내에서도 도시구역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하여 범위로 나타냄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7) 지역Ⅳ-B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서비스업 (근로자 11명 이상)	320	6.67%	'18. 11. 27.
비농업/서비스업	294	4.43%	'19. 2. 1.
(근로자 10명 이하)	254	7.4070	10. 2. 1.

## 8) 지역 V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근로자 11명 이상)	305	5.17%	'18. 9. 21.
	(310)	(6.90%)	('19. 5. 1.)
비노어(그리지 10대 이글)	295	5.36%	'18. 9. 21.
비농업(근로자 10명 이하)	(310)	(10.71%)	('19. 5. 1.)

## 9) 지역Ⅵ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산업/상업 (근로자 11명 이상)	365	8.19%	'18. 7. 12.
비농업/산업/상업 (근로자 10명 이하)	295	6.81%	'18. 7. 12.
농업(플랜테이션)	295	3.02%	'18. 7. 12.
농업(비플랜테이션)	295	6.81%	'18. 7. 12.

## 10) 지역Ⅷ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 (근로자 10명 이상)	323-386	4.50-5.46%	'18. 8. 3.
비농업 (근로자 10명 미만)	318-376	2.73-3.25%	'18. 8. 3.

## 11) 지역Ⅷ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	305	7.02%	'18. 6. 25.
농업(설탕 외 일반농업)	275	4.98%	'18. 6. 25.
소매업/서비스업 (근로자 11명 이상 30명 이하)	305	10.9%	'18. 6. 25.
소매업/서비스업 (근로자 10명 이하)	275	12.24%	'18. 6. 25.
가내수공업	275	8.70%	'18. 6. 25.
설탕산업(제분소)	305	7.02%	'18. 6. 25.
설탕산업(농장)	275	12.24%	'18. 6. 25.

## 12) 지역IX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	316	6.76%	'18. 7. 30.
농업/소매업/서비스업 (근로자 30명 이하)	303	7.07%	'18. 7. 30.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13) 지역X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	343–365	7.99-10.76%	'18. 11. 1.
농업	331-353	8.28-11.18%	'18. 11. 1.

## 14) 지역XI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상업/소매업/서비	370	8.82%	'18. 8. 16.
스업 (근로자 10명 이상)	(396)	(16.47%)	('19. 2. 16.)
누어	365	8.96%	'18. 8. 16.
농업	(391)	(16.72%)	('19. 2. 16.)
소매업/서비스업	355	9.23%	'18. 8. 16.
(근로자 10명 이하)	(381)	(17.23%)	('19. 2. 16.)

## 15) 지역XII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	311	5.42%	'18. 5. 11.
농업/소매업/서비스업	290	6.62%	'18. 5. 11.

## 16) 지역XIII (CARAGA)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	300	3.45%	'18. 2. 14.
	(305)	(5.17%)	('18. 5. 1.)
농업(플랜테이션)	300	3.45%	'18. 2. 14.
	(305)	(5.17%)	('18. 5. 1.)
농업(비플랜테이션)/소매업/	300	3.45%	'18. 2. 14.
서비스업(근로자 10명 이하)	(305)	(5.17%)	('18. 5. 1.)

## 17)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지역(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업종	일급 (8시간기준)	연인상률	적용일
비농업	280	5.66%	'18. 6. 15.
농업	270	5.88%	'18. 6. 15.

5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ㅇ 고용안정화 추진 동향
  - 노동·고용안정화를 위한 법안인 HB6908(Act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Tenure of Workers)가 2018.1.29.(화)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검토 중인 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동 법안의 조속한(urgent) 통과를 표명함에 따라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찰
  - 상기 법안 적용시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 및 복리후생이 적용되며(수습기간 제외), △하도급 고용(단 기프로젝트고용 및 임시계절근로자 포함) 등이 금지될 예정
- 출산휴가 연장
  - 2019.2.20.(수) 두테르테 대통령이 출산휴가연장법(Expanded Maternity Leave Act)에 서명함으로써 총 유급출산휴가일이 105일 혹은 3개월로 증가
  - 기존 유급출산휴가일은 △자연분만시 60일, 제왕절개시 78일, △ 30일 연장이 가능했으나 무급휴가 조건부였으며, △4번째 출산 까지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동 제한도 해제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http://www.nwpc.dole.gov.ph/

(작성자) 주필리핀대사관 1등서기관 박중석(63-2-856-9210, jspark97@mofa.go.kr)



# 오세아니아

# 35. 뉴질랜드

국	명	뉴질랜드			
언	어	영어, 마오리어			
면	적	268,670 <sup>km²</sup>			
인	구	4,926천명 (2018년 9월 기준)			
수	도	웰링턴			
주 9	요도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종	종 교 기독교(43.82%), 힌두교(2.12%), 불교(1.38%) (2013년 서스기준)				
<b>교 육</b> 만 6세~16세 의무교육		만 6세~16세 의무교육			
화피	ᅨ단위	뉴질랜드 달러			
	GDP 170,598백만달러				
	1인당 GDP	35,272달러			
주요 경제	GDP성장률	2.8%			
지표 (2018년)	교역	수출 396.75달러, 수입 405.88달러			
(20101.)	실업률	4.3%			
	물가상승률	1.9%			
통계청	웹사이트	https://www.stats.govt.nz/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894년 「산업조정중재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에 의해 중재재판소를 설치하고, 동 재판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함
- 당시 여성의 최저임금은 남성의 70%정도로 차등 결정
- 1936년 「산업조정중재법」개정으로 21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별 기본임금을 일반령(Order)으로 정하도록 함
- 1983년 「최저임금법 (Minimum Wage Act 1983)」도입으로 20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최저임금이 남녀 동일하게 적용됨
- 1991년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 1991)」도입으로 중재재판소제도가 폐지됨
- 1994년 16세~19세 근로자에 대한 청소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되고,2001년 성인최저임금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변경됨
-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최저임금(16,17세)이 성인 최저임금의 60%에서 80%로 증가함
- 2003년 6월 수습생(training)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수습생 최저임금은 16, 17세 청소년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됨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2007년 9월 「신규 근로자 및 수습생(new entrants and training wage) 최저임금 개정법」이 통과되고 신규 근로자의 자격조건은 16, 17세 청소년으로 총 200시간 이하 근무 또는 3개월 이하 근무하는 자로 정해짐(200시간 이하 근무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중 한 가지라도 불충족 시 성인 최저임금 적용)
- 이로써 청소년 최저임금이 2008년 4월 1일자로 폐지되고 '신규 근 로자 최저임금'이 등장
- 2013년 3월 「최저임금(신규근로자)개정법(Minimum Wage (Starting-out Wage) Amendment Act」이 통과되어 신규근로자 자격요건이 변경됨
- 2016년 3월 「최저임금 개정법(Minimum Wage Amendment Act 2016」이
   통과되어 고용주의 의무가 강화됨

#### 2 법적근거

#### 1. 관련 법령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제도는 「1983년 최저임금법 (Minimum Wage Act 1983)」, 「2013년 최저임금(신규근로자)개정법(Minimum Wage (Starting-out Wage) Amendment Act 2013」, 2016년 최저임금개정법 (Minimum Wage Amendment Act 2016)」,「2000년 고용관계법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2. 최저임금(신규근로자)개정법

○ 2013년 3월「최저임금(신규근로자)개정법」이 통과되어 2013년 5월 1일자로 신규근로자 최저임금 제도를 신설

#### 3. 최저임금개정법

- 2016년 3월「최저임금개정법」이 통과되어 2016년 4월 1일자로 고용주의 의무 강화 등 일부 개정됐으며, 아래와 같이 변경됨
- 제8A조(임금 및 근무시간 기록) 폐지
  - \* 1) 고용주는 모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피고용인을 고용 시 피고용인의 성명, 나이(20세 미만 해당), 주소, 업종, 근로계약, 고용형태 등을 명시, 2) 근로감 독관의 요청에 따라 고용주는 지난 6년간 고용한 피고용인의 임금 및 근무시간 기록을 제출
- 제10조는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대상자를 구체화, 명칭도 'Penalties and jurisdiction'에서 'Penalties'로 변경됨
- 제11AA조 체납된 임금에 대한 구제 절차(Proceedings by Labour Inspector or worker to recover arrears of wages from person involved in failure to comply) 추가
- 근로감독관 또는 피고용인은 최저임금법에 의거 피고용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 체납된 경우, 이를 고용주 외에 다른 사람(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체납의 귀책사유가 있는 제3자)에게 상환 받을 수 있음. 단, 피고용인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1)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2)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함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ㅇ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대상 근로자: 16세 이상 근로자(외국인 동일 적용)
-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나 뉴질랜드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을 근거로 고용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외교관 혹은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외국회사 계약직 (temporarily) 근로자들의 경우는 뉴질랜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음

#### 2. 특례대상

- 신규근로자(Starting-out, 아래조건)의 경우 성인최저임금(Adult minimum wage)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1983년 최저임금법」 제 4(A)조에 따르면 신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성인 최저임금의 80%미만이 될 수 없음
  - \* 아래 신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교육·훈련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경우 성인최저임금을 적용받음.
- 16-19세로 6개월 이상 근무하며 1개 이상의 사회보장급여를 지급 받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계속적 근로 상태에 있거나(해당 기간 동안 일자리를 변경하더라도 계속적 근로 상태에 있으면 해 당), 근로계약과 관련된 직종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

및 시험을 거치는 것이 근로계약 상 요구되는 경우

- \* 상기 신규근로자 요건의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즉 복수 충족도 가능) 신규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받음
-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르면, 근로감독관(Labour Inspector)이 아래의 필요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제외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함
- 장애로 인해 노동자의 업무능력이 현격하고 명백하게 제한될 것
- 사업주가 장애인 노동자의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최저임금 적용 특례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할 것

#### 3. 적용제외대상

○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①「1938년 마오리 거주 개정법 (Maori Housing Amendment Act 1938)」,「1981년 뉴질랜드 철 도공사법(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Act 1981)」, 「1971년 방위법(Defence Act 1971)」,「1959년 우체국법(Post Office Act 1959)」, 또는 「1962년 국가공무법(State Services Act 1962)」, 또는 기타 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수습계약의 구속을 받는 수습사원, ②수감자(inmates of any charitable institution), ③가정·공동체 지원(출장비 지급)을 위한 법률「Home and Community Support (Payment for Travel Between Clients) Settlement Act 2016」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983년 최저임금법」적용을 받지 않음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또는 통상의 근로자의 임금 지급방법은 직장 정책 및 고용계약서에 의해 상이하나 통상 주급 또는 격주급이 대부분임
-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정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범위

- ㅇ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 주재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포괄적이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에서 자의적인 명목으로 공제할 수 없도록 공제범위와 금액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숙식 또는 숙박(board or lodging)를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을 경우 숙박 또는 식사의 제공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식사 또는 숙박비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과 공제액 차감후 지급되는 현금 급여액의 총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됨. 다만, 식사또는 숙박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구체·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식비로는 15%, 숙박비로는 5% 이상을 공제할 수 없음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ㅇ 휴가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 4. 유급주휴제도 및 유급휴가제도

- 뉴질랜드는 한국의 유급주휴제도와 동일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일주일에 실제 5일 동안 35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총 619.50뉴불(최저임금 17.70 x 35)을 받음
- 그러나 뉴질랜드 모든 근로자는 12개월 근무 이후 매년 4주의 유급휴가를 가지며, 휴가기간 동안 실제 휴가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기준으로 일반 주급(OWP, ordinary weekly pay) 또는 실제 휴가기간 시작 전 12개월 동안의 근로자 평균 주급 수입(AWE, average weekly earnings)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함
- 근로자의 실제 휴가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매 휴가 기간 마다 계산을 하여 지급 필요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전 사용할 수 있었던 유급휴일을 육아휴직 중 사용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와 동일하게 OWP와 AWE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하는 반면,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 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내에 유급휴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AWE를 적용

5

####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1983년 최저임금법」및「2000년 고용관계법」에 따라 고용관계청(기업혁신고용부산하기관)이 이행지도 주체임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노동법 위반으로 「2000년 고용관계법」에 따라 벌금형(벌금액은 근로감독관의 재량 으로 결정)에 처할 수 있으며, 2016년 4월 1일부로 제재가 강화됨
- 임금 착취 등 심각한 위반사항인 경우 벌금이, 개인은 NZ\$ 10,000에서 최대 NZ\$ 50,000로 증액, 법인은 NZ\$ 20,000에서 최대 NZ\$ 100,000로 증액 또는 경제적 이익의 3배로 강화됨
- 2017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최저임금을 포함한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Stand down 제도를 시행함
- 노동조사단(Labour inspectorate)(기업혁신고용부 소속팀), 고용관계청 및 고용 법원(Employment Court)에서 위반 행위 심각성의 정도 에 따라 Stand down 기간을 결정함
- 매주 수요일 Stand down 적용 고용주의 목록을 기업·혁신·고용 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의

고용 관련 홈페이지(Employment New Zealand)에서 공개함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1983년 최저임금법」 제10, 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labour inspector)(기업혁신고 용부 소속)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접수한 근로 감독관은 진상을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부족분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근로감독관은 법원의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행명령을 내릴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명령에 불이행 시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류, 벌금 및 징역 선고 가능
- 우선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조정노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고용관계청에 심사신청을 하거나 혹은 고용법원(Employment Court)에 제소가 가능함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뉴질랜드는 한국과 달리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정기 의회 개회 시 의회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진행함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983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노사관계안전장관(Minister for Workplace Relations and Safety)은 매년 12월 31일 최저임금검토 (Minimum Wage Review)\*를 통해 최저임금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이를 내각에 제출하고 내각 및 의회의 승인을 거쳐 총독이 의회령(Order in Council)을 통해 매년 4월 변경된 최저임금을 발효함
  - \* 기업혁신고용부에서 작성(2018년 최저임금 검토서 별첨)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인플레이션, 임금인상(wage growth), 고용성장 저해(restraint on employment growth), 재정에 미치는 영향(fiscal impact), 기타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
- 2019.4.1 시행된 최저임금 결정시에는 위 4가지 기준 이외에도 아래 기준 추가 고려
  - △근로자 및 가계의 생계비 및 재정적 수요, △세금,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장급여 정산후 근로자 및 가계의 실수입, △복지혜택, 평균임금 등과 최저임금 간의 상관성, △최저임금 변경으로 인한 분배 효과, △빈곤개선에 미칠 영향, △현정부의 경제목표(2021년 까지 최저임금을 NZ\$20로 인상),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중·소·대기업, 무역의존기업, 자선단체 등 고용주)들에 미칠 영향 고려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평균임금,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중위수임 금의 변화율 등 통계 활용, 노동 단체(뉴질랜드 노동조합협의회 (NZCTU) 및 뉴질랜드 기업인협의회(Business NZ) 의견 수렴 등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성인최저임금(adult minimum wage)과 신규근로자 최저임금 (Starting-out Wage)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은 별도 구분 없음
-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지역·업종과 상관없이 적용되나 최저임금 규제영향평가시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각 업종 및 지역별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최저임금 산정시 고려

#### 5 갱신주기

 매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검토(Minimum Wage Review)를 완료하고 최저임금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내각 및 의회 승인을 거쳐 통상 다음해 4월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함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1

## 연도별 최저임금(시간당) 수준 추이

(출처: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연도	성인	신규 근로자	훈련생	성인 인상률
2019. 4. 1	NZ\$ 17.70	NZ\$ 14.16	NZ\$ 14.16	7.3%
2018. 4. 1	NZ\$ 16.50	NZ\$ 13.20	NZ\$ 13.20	4.8%
2017. 4. 1	NZ\$ 15.75	NZ\$ 12.60	NZ\$ 12.60	3.3%
2016. 4. 1	NZ\$ 15.25	NZ\$ 12.20	NZ\$ 12.20	3.4%
2015. 4. 1	NZ\$ 14.75	NZ\$ 11.80	NZ\$ 11.80	3.5%
2014. 4. 1	NZ\$ 14.25	NZ\$ 11.40	NZ\$ 11.40	3.6%
2013. 4. 1	NZ\$ 13.75	NZ\$ 11.00	NZ\$ 11.00	1.9%
2012. 4. 1	NZ\$ 13.50	NZ\$ 10.80	NZ\$ 10.80	3.8%
2011. 4. 1	NZ\$ 13	NZ\$ 10.40	NZ\$ 10.40	2%
2010. 4. 1	NZ\$ 12.75	NZ\$ 10.20	NZ\$ 10.20	2%
2009. 4. 1	NZ\$ 12.5	NZ\$ 10.0	NZ\$ 10.0	4%
2008. 4. 1	NZ\$ 12.0	NZ\$ 9.6	NZ\$ 9.6	6.7%
2007. 4. 1	NZ\$ 11.25	NZ\$ 9.0	NZ\$ 9.0	9.8%
2006. 3.27	NZ\$ 10.25	NZ\$ 8.2	NZ\$ 8.2	7.9%
2005. 3.21	NZ\$ 9.5	NZ\$ 7.6	NZ\$ 7.6	5.6%
2004. 4. 1	NZ\$ 9.0	NZ\$ 7.2	NZ\$ 7.2	5.9%
2003. 3.24	NZ\$ 8.5	NZ\$ 6.8	NZ\$ 6.8	6%
2002. 3.18	NZ\$ 8.0	NZ\$ 6.4	_	3.9%
2001. 3. 5	NZ\$ 7.70	NZ\$ 5.40	_	2%
2000. 3. 6	NZ\$ 7.55	NZ\$ 4.55	_	7.9%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출처: 뉴질랜드 통계청, 단위 : 명, %)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전체(적용대상)근로자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영향률
'18	1명 이상 전 산업	2,044,000	143,000	7.0
'17	1명 이상 전 산업	1,965,312	152,800	7.8

- □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비율이 높은 청년 및 여성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분석
  - \* 전체 근로자 중 청년 비율은 17%에 불과하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 로자의 61%가 16-24세로 청년층이 장년층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파 악되며, 전체 최저임금 대상근로자의 60%가 여성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됨

#### 최저임금 미만현황

- □ (2016년) 뉴질랜드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으나, 노동부에 따르면, 18~64세 사이의 노동자들 중 4.4%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남
  - \* 단 노동부는 4.4%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불 이유가 법률위반인지, 최저임금 적용 특례인지, 산출방식의 오류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힘
- □ (2017년)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에서 발표한 2016년 최저임금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7년 「1983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는 아래와 같음

3

#### 35. 뉴질랜드

(출처: 기업혁신고용부, 단위: 건)

위반 결과	2013–14	2014–15	2015–16	2016–17	합계
강제조치 (Enforcement action)	51	68	83	31	233
총 조사 건수	111	97	105	35	348

- □ (2018년) 2018년 4월 25일 기준 총 104명의 고용주(또는 고용기업) 에게 Stand down 조치\*가 부과됨
  -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최저임금 등 고용기준 미준수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제도(상기 최저임금 이행확보 수단 참고)
- □ (2019년) 2018년 3월 13일 기준 총 95명의 고용주(또는 고용기업)에게 Stand down 조치가 부과됨

4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 (노동당 주도 연정 집권후 최저임금 인상) 2017.10월 집권한 노동당 주도 연립정부는 '더 공정하고 더 좋은 뉴질랜드(fairer and better New Zealand)'를 슬로건을 내세우며 포용성장과 공정경제, 빈곤 감소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옴
  - 그 일환으로 현정부는 집권 직후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NZ\$20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8년 4.8%(NZ\$15.75 → NZ\$16.50), 2019년 7.3%(NZ\$16.50 → NZ\$17.70) 인상하였으며, 금년 최저임금 인상액 발표시 2020년까지 NZ\$18.90, 2021년까지 NZ\$20로 단계적 인상 계획을 공표함
    - ※ 정부의 현행 계획대로 2021년까지 최저임금이 NZ\$20로 인상된다면 이는 2017년 대비 NZ\$4.25상승(연평균 6.2%)하는 것으로, 과거 국민당 주도 연정 집권시였던 2008-2017년 기간 최저임금이 NZ\$12에서 NZ\$15.75로 NZ\$3.75 (연평균 2.75%) 상승되었던 것과 크게 대비
  - 2018.4월 現정부 최초의 최저임금 인상액(4.8% 상승)이 적용되기 시작하자 소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2018.2분기에는 서비스 분야(숙박 및 식음료 등)의 단기계약직(주로 카페 서빙 등) 일자리가실제로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기도 함
    - 그러나 2018.3분기에 실업률이 3.9%(전분기대비 0.5%, 전년대비 0.8% 감소)로 감소하였고, Ardern 총리가 소기업위원회를 설립하여 소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여 비난

여론이 다소 잠잠해지게 되었음

- Simon Bridges 야당대표는 2018.4월 최저임금 인상시에는 환영입 장을 표명하면서도 소기업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역효과(일자리 감소 등)가 우려된다고 하였으며, 2019.4월 최저임금액이 7.3%로 추가로 인상 되자 뉴질랜드 경제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를 표명
- □ (산업·직군별 최저고용조건 교섭체계 마련) 現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2018.6월부터 근로자 임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별 또는 직업군별의 단체교섭 절차를 체계화하여 해당 산업 및 직업군 근로자에 대한 최저 고용조건을 설정하는 공정임금협약(Fair Pay Agreement)의 법제화를 추진해 오고 있음.
  - ※ 최저 임금의 경우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산 업별·직군별로 해당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공정임금 협약 제도가 도입되 면 산업별·직군별로 적용되는 실질적 최저 임금이 상승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
  - 現 노동당 주도 연립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제도설계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기 위 해 국민당(現야당) 출신 前총리를 공정임금제도 검토 실무위원회(Fair Pay Agreement Working Group) 대표로 선임함
    - 2019.1월 발표된 공정임금 제도 검토 실무위원회의 권고보고서(별첨)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이며 향후 정부입장 발표 예정
  - Simon Bridges 국민당 대표는 공정임금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노시간 분열이 야기되고 수출의존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함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뉴질랜드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employment.govt.nz/
- 고용관계국: http://www.era.govt.nz
- 최저임금법령(Minimum Wage Act 1983)
- 최저임금개정법(Minimum Wage Amendment Act 2016)
- 최저임금(신규근로자)개정법(Minimum Wage (Starting-out Wage) Amendment Act
- 고용관계법령(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고용관계개정안(Employment Relation Amendment Bill) 정부 발
   의 요약
- 육아휴직 및 고용보호법 개정안(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mendment Bill)
- 2015년 최저임금검토 보고서
- ㅇ 2016년 최저임금검토 보고서
- 2018년 최저임금 각료 페이퍼 및 규제영향서
- 2018년 3월 21일 Stand down 적용 기업 목록
- 2019년 최저임금검토 보고서
- 2019년 최저임금 각료 페이퍼 및 규제영향서
- 2019년 3월 13일 Stand down 적용 기업 목록
- 공정임금체계 권고안 보고서

(작성자) 주뉴질랜드대사관 전문직행정원 정효경 (+6444739073, researcher2-nz@mofa.go.kr)

## 36. 호주

국 명		Commonwealth of Australia			
언	어	영어			
면 적		7,682천 km²			
인	구	25,345만명 (2018.4월 추정치)			
수	도	캔버라(Canberra)			
주요도시		시드니(Sydney), 멜번(Melbourne), 브리스번(Brisbane), 퍼스 (Perth) 등			
종	통   교   기독교 57.7%				
교 육		일반적으로 6~16세까지 의무교육이며, 초등학교(Primary School, Year1-7,8), 중학교(Secondary School, Year7,8-10), 고등학교(Senior Secondary School 혹은 College, Year 11,12)로 구성			
화폐 단위		Australian Dollar(1A\$ = 0.7183 U\$, 2019.4월 현재)			
주요 경제 지표	GDP	1조 4,200억달러(2018년 기준)			
	1인당 GDP	56,350달러(2018년 기준)			
	GDP성장률	2.8% (2018년 기준)			
	교역	6,486억 A\$ (2018. 12월 기준)			
	실업률	5.0% (2019.3월 현재)			
	물가상승률	1.8% (2018.12월 기준)			
대사관 웹사이트		http://aus-act.mofa.go.kr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1896년 빅토리아州 공장법(the Factories Act) 도입
  - 6개 제조업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기관인 Wage Board 설립
- 1902년 NSW(New South Wales), 서부호주(WA, Western Australia) 세정부 최저임금제도 도입
  - Wage Board 설립
- 1904년 조정중재법 도입
  - 강제중재제도 도입(노사단체 참여 아래 국가가 최저임금 결정)
  - 국가적으로는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사례임
- 1907년 최저임금 도입
  - 최저임금 결정기구 : 연방조정중재법원(Commonwealth Court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 1930년대 최저임금 결정기준 형성
  - 1930년대까지 생계비, 경제의 생산성, 산업의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확립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ㅇ 1956년 조정중재법 개정
  - 연방조정중재법원을 연방산업법원(Commonwealth Industrial Court)과 연방조정중재위원회(Commonweal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로 분리
  - ※ 연방조정중재법원은 사법권과 화해·중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으나 1956년 법 개정을 통해 화해·중재 및 사법권한 밖의 행정적인 업무 (최저임금 확정업무 포함)는 조정중재위원회로 이전됨.
- 1967년 총액임금제 도입
  - 조정중재위원회가 기본임금에 기술수당까지 포괄하여 최저임금 결정
  - 전국최저임금 개념 도입
- 1988년 호주노사관계법 도입(과거의 연방조정중재법 대체)
  - 중앙집권적 임금결정제도 유지·보완 및 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 장려
- 1996년 작업장노사관계법 도입
  - 개별계약제도 도입(노조 개입 없이 사용자와 노동자 개인이 고용 계약 체결 가능)
- 2006년 작업장노사관계개정법 도입
  - 개별계약제도 강화(노조 배제적 사용자 단독 협약1))

<sup>1)</sup> 단독협약은 모든 신설기업, 단기사업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새로운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전에 협약을 만들수 있음. 이런 협약을 여전히 노조와 체결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단독 협약도 인정

- 최저임금 결정기구가 노사관계위원회에서 호주공정임금위원회로 변경(정부가 노조와 협의 없이 경제학자와 경영자 중심으로 구성)
- 2009년 공정노동법(Fair Work Act 2009) 도입
  - 포괄적인 재정 안정망, 근로자들의 작업장에서의 권한 행사 강화, 최저임금 근로자 보호
  - 최저임금 결정기구가 호주공정임금위원회에서 호주공정노동위원회 (FWC)의 전문가 패널로 교체
  - 호주공정노동위원회의 전문가 패널(Minimum Wage Panel)은 사실 상의 최저임금 결정권을 행사하고, 최저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연 구 및 조사작업은 호주공정노동위원회 내의 최저임금조사국에서 시 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문가 패널은 특정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조사기간 중 민간 또는 단체로부터 어떠한 의견이든 수렴해야 하고, 제출된 모든 의견은 제출자의 상업적 기밀사항이나 보호되어야할 정보가 아닌 이상 연례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함
    - \* 호주상공회의소, 호주기업가협회, 호주사회봉사협회, 호주노조연합회 등

## 2 법적근거

#### 1. 관련법령

- 공정노동법(Fair Work Act 2009)
- 2009년 신규 노사관계법인 공정노동법(Fair Work Act 2009)이 도입후 2010.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규 노사관계법에 의해 신설된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산하의 전문가패널 (Expert Panel for Annual wage Review)이 기존 호주 공정임금 위원회를 대체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함

## 2. 최근 5년 이내(2013~2017년) 법령 개정사항

- 호주 정부는 2013년에 만 21세 이하 청소년, 견습생, 장애인에 차등 적용되는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심의 시 지역별 생계비 반영 조건 을 도입함
- 또한, 호주공정노동위원회 명칭을 Fair Work Australia에서 Fair Work Commission으로 개명함
- o 호주 정부는 2017년 9월 워킹홀리데이메이커, 외국인 근로자 등 노 동시장 소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Fair Work Amendment (Protecting Vulnerable Workers) Act 2017)을 도입함
  - 동 개정안에는 임금지불명세서 기록 미비 등 공정노동법위반 시 처벌 강화, 공정노동옴부즈맨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고용주가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에 임금지급 후 현금으로 일부 반

환을 요구하는 행위(Cash back scheme) 등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포함

- 공정노동위원회는 2017.2월 그동안 소매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중 토요일(평소 시급의 80%) 일요일(평소 시급의 150%-225%)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
- 그동안 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휴일 추가수당으로 인해 임금 부담이 증가하여 신규고용이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온 점을 감안

## 공정노동위원회의 휴일 추가수당 지급비율

(단위: %)

	업 종	정규직 근로자 (Full, Part Time)	비정규직 근로자 (Casual)
	요식업	145	170
0047.7.4	숙박업	170	170
2017.7.1	소매업	195	195
	약국	195	220
	요식업	135	160
2018.7.1	숙박업	160	160
2010.7.1	소매업	180	185
	약 국	180	205
	요식업	125	150
2019.7.1	숙박업	150	150
2019.7.1	소매업	165	175
	약 국	165	190
2020.7.1	소매업	150	150
	약 국	150	175

\* 자료: 호주공정노동위원회

## 3 적용대상

#### 1. 적용대상

- ㅇ 무역, 금융 및 외국 기업들(법인 기업) 및 그 기업의 근로자들
- 호주 본토 및 호크리스마스와 코코스(킬링)섬의 근로자 및 고용주들
- ㅇ 연방 정부 및 그 산하 단체들과 그 근로자들
- 주·테리토리\*(준주)·국내 및 외국 무역 및 통상과 관련해서 고용 된 부두·선박 및 항공 승무원
  - \* 주(State)의 법적지위를 받지 못하였으나, 주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지역
- ㅇ 주 정부 근로자2)
  - ※ 내·외국인 구분없이 동일적용

## 2. 특례대상

- 지원급료제도(Supported Wage System, SWS) 하에서 일하는 장 애인 근로자
- 2018-19년 주당 최저 임금³)은 호주화 84A\$에서 86A\$(주 38시간 기준)으로 인상(2018.7.1일부터 발효)
- SWS 내 임금 책정 방법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및 생산성을 측정 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퍼센티지로 환산 후, 일반근로자의 임금에

<sup>2) 2011</sup>년부터 국가고용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에 편입

<sup>3)</sup> 주당 최저임금이란 지원급료 제도하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주당 일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동 임금미만으로는 지불될 수 없는 주당 최저임금

- 그 비율을 곱하여 책정
- ※ (예시) A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능력이 70%로 결정되면, 일반 근로자의 임금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의 70%를 수령
- 현재 주당 최저임금은 86A\$로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 12주의 trial period(시용기간)를 가질 수 있음
  - ※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trial period를 최대 4주까지 연장가능
- 고용주는 SWS 등록된 장애인 고용시 정부로부터 임금 및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3. 적용제외대상

4

ㅇ 지역정부 근로자

## │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임금 및 근로시간

- 주 38시간을 full-time으로 하고, 그 이상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함
- 초과근로의 최초 2시간은 시간당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더 지급하여야 함
- 공휴일은 150%, 일요일은 80%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유급주휴제도 없음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주 38시간씩 12개월 일한 직원(full-time worker)에 대해 4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38시간보다 적게 일한 정규직 part time 직원(worker)의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함
- 다만, 일용직 직원(casual worker)의 경우, 유급 휴가(paid leave)는 적용되지 않으나, 평소 시간급에 25%를 가산하여 더 지급받음
- 정규직 직원의 경우(full time/part time worker), 일 년에 10일간의 유급 병가, 가족의 사망 또는 심각한 병에 대해 2일간의 유급 휴가
- ㅇ 국가 공휴일(public holidays)에 대해 정규직 직원은 유급휴가를 받음
  - 만약 이런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추가 급료를 받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임금(base rate)(시간당 임금과 이를 x38시간한 주당 임금)

##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호주의 최저임금에는 현물급여 및 숙식비, 휴일 근로수당, 초과근무, 휴가 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음

## 5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이행지도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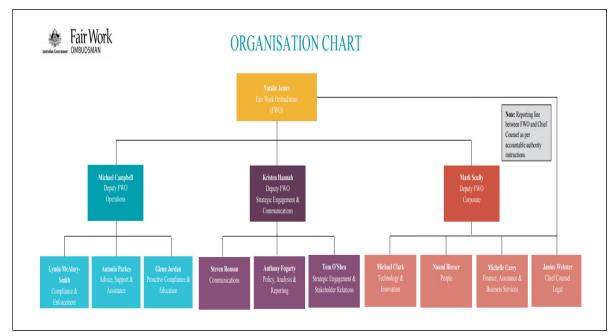
## □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

- ㅇ 권한 및 업무
- 집단기업협정(enterprise bargaining arrangements) 개정
-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 및 근로자권리 보호
- 근로조건체계(the modern award system)
- 국가근로자기준(the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노사관계법에 대한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

## ㅇ 기능

- 조정(Resolution): 공정노동옴부즈맨은 진정사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를 중개하여 조정함
- 점검(Audit):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적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산업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 조사(Investigation): 사용자의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FWO와 접촉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 집행(Enforcement): 심각한 사안에 대해 법적 행위를 수행하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강제력을 행사

#### ㅇ 조직도



\* 자료: 공정근로옴부즈맨

##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공정노동 옴부즈맨은 적발한 사용자를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와의 중재·조정, 지도장 발부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수단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를 기소하여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함
  - ※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고용주에게는 과태료(최대 개인: 10,800A\$, 법인: 54,000A\$)가 부과될 수 있음
-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정노동 옴부즈맨에 신고해야 하며, 공정노동 옴부즈맨은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FWO는 고충접수가 되었거나 최저임금 위반이 예상되는 지역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사업장의 연방공정노동법의 위반여부 및 근 로자들의 고충사항을 조사함
- (1단계) 조사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와 면담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최초 고충접수 후 30일 이내로 조정·중재가 성사되지 않으면 2단계 절차가시작됨
- (2단계) 조사관은 사용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방문,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용자가 연방공정노동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여부가 발견될 경우 위반장(contravention letter)이나 지도장 (compliance notice)을 통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나, 위반 사실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절차로 넘어감
- **(3단계)** 조사관은 △ 강제집행(enforcible undertaking), △ 지도장 (Compliance notice) 발부, △ 소송(Litigation) 등 상황에 맞추어 어떠한 조치가 적절할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함
  - ※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 근로자에 적절한 보상, 근로 보장, 과태료 등을 부과 받게 됨.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기관

- □ 호주 공정노동위원회(Australia Fair Work Commission) 산하 전문가패널(Expert Panel for Annual Wage Review)
  - 근거법령 : 「2009년 Fair Work Act」, 독립기구
  - 위원 : 위원장(현 위원장 Ian Ross는 2012.2.24. 임명)과 상근위원 3인(위원장이 임명) 그리고 비상근 위원 3인(산업계, 노동계, 사회정책, 경제계 전문가들로 정부에서 임명) 등 총 7인으로 구성
    - ※ 공정근로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패널 대표를 겸직하므로 사실상 공정노 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능 : 최저임금 결정
  - ㅇ 홈페이지 : http://www.fwc.gov.au/

## 2 결정방법 및 절차

## 1. 결정방법

○ 전문가패널(Expert Panel for Annual Wage Review)은 매년 3월 부터 최저임금을 재평가하며, 동 기간 최저임금 조정에 대하여 여러 단체, 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제안서(submission)를 받아 이를 참고 하여 6월 말경 심의를 종료하고, 새로운 최저임금을 동년 7월 1일 부터 시행

- 전문가패널은 노동생산성, 인플레이션, 임금 등 노동시장 현황과 호 주 정부의 예산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 호주경제현황을 바탕으로 최저 임금을 심의·결정함

#### 2. 결정절차

- 전문가패널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내부회의, 각계 의견서(Submission) 접수, public consultation,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연구수행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
- 전문가패널은 일반시민 및 기관 등 최저임금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서면 의견서 제출시한 및 Public Consultation 스 케줄을 공개함
- (연구 집행) 전문가패널은 Minimum wage research group을 구성,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 또는 타 기관에 발주함

## 3. 결정과정 공개, 녹취, 회의록 작성 등

## 가. 외부 방청 허용여부

 호주 전문가패널은 외부의견 수렴을 위한 Public Consultation 및
 최종 결정문 발표회 외에는 외부방청 및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심의과정 녹취여부 등

- 외부 방청이 허용되는 Public Consultation 및 최종 결정문 발표회 외에는 녹취나 속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음
- Public Consultation 및 최종 결정문 발표회는 녹취록을 작성하며,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중계함

## 다. 자료 공개여부 및 범위

- 공정노동법은 Public Consultation에 사용된 자료들과 최종 결정 발표문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공개 회의에 사용된 자료는 전문가패널 회의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함
- 공정근로법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수행한 연구자료 및 일반 기관이나 개인이 제출한 의견서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의견서를 제출한 제출인이나 제출기관이 상업적인 이유로 의견서 비공개를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견서 전체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음
- 연구자료는 정례보고서인 통계보고서(Stastical Reporting)와 비정례 보고서가 있음
  - ※ 비정례보고서는 전문가패널이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보고하는 보고서로 일정한 주제 및 발간시기가 없음
- 또한, 최저임금 심의에 사용한 참고자료 리스트는 공정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

## 다. 공개시기 및 방법

-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는 회계연도의 하반기(3-6월)에 개최되며,
   이때 사용되는 자료나 연구용역 자료 등은 공개하도록 공정노동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공개 시기는 규정된 바 없음
- 공정노동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Public Consultation, 최종 결정 발표회를 실시간 중계하며, 여타 공개문서도 홈페이지에 게재함

## 3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 □ 호주 전문가패널은 최근 6개월간의 노동시장 현황과 호주경제현황을 바탕으로 최저 임금을 심의·결정함
  - ㅇ 노동생산성
  - ㅇ 인플레이션, 노동 비용 및 수익, 노동시장 상태에 대한 분기별 관찰
  - 생계비, 실질임금추이, 가계부채 등 통계 참고
  - ㅇ 호주 정부의 예산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2. 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 연구용역 활용

○ 전문가패널은 Minimum wage research group을 구성, 최저 임금 심의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 또는 타기관에 발주함. 동 조직은 공정 노동위원회의 Workplace and Economic Research Section(의장)과, 호주산업상공회의소, 호주산업그룹, 호주사회복지위원회, 호주노동조합, 연방 및 주정부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됨

## □ 통계자료 활용

- 전문가패널은 국내 경제, 생산성, 기업 경쟁력, 임금 인상률, 노동 시장 동향, 생계비용 추이, 육아비용 추이,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등을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고 있음
- 전문가패널은 호주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최저임금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생계비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생계비 및 가구당 소득은 단신가구, 편부, 편모 및 1~2 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 및 1~2인 자녀, 외벌이 부부 및 1~2인 자녀 가구로 나누어 소득통계를 작성하여 최저임금 심의시 참고자료로 사용함
  - 또한, 소득구간별 가계 부채, 지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금융 압박정도(Financial Stress)를 수치화하여 통계로 작성, 최저임금 심의에 참고함

## 4 고시방법(업종·지역, 월급 등)

- 호주공정노동위원회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령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공정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차등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공정노동법(fair work act)에 명시되어 있음
- ㅇ 연령별 적용사항
  - 연방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만 21세로 정하고, 그 이하 연령의 근로자는 차등 지급받음

(단위: %)

연령	적용율(최저임금대비)
20세	97.7
19세	82.5
18세	68.3
17세	57.8
16세	47.3
16세미만	36.8

\* 자료: 전문가패널

- ㅇ 숙련도별 적용사항
  - 일반 성인근로자의 숙련도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소 근로조건을 명시한 업종별 최저임금(Modern Award)에 명시되어 있음. 일반 최저임금은 제조업 최저임금인 C14과 동일하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높은 최저임금이 책정됨

#### <성인 근로자의 숙련도별 최저임금 책정>

(단위: A\$)

숙련도 등급	시간당 최저임금	비고
C14	18.93	38시간 이상 트레이닝 수료
C12	20.22	Certificate I 또는 Certificate II 보유
C9	22.73	Certificate III 보유자 혹은 3년이상 경력
C7	24.04	Certificate IV 보유자
C3	27.86	Advanced Diploma 보유 및 4년 경력
C2 a, b	a) 28.55 b) 29.80	a) Advanced Diploma 보유 및 관리감독 가능 수준의 기술 보유 b) Advanced Diploma 보유 및 경력 소유

- \* 자료: 전문가패널
- \* 상기 최저임금은 훈련생(Traineeship), 도제(Apprenticeship) 등의 과정에 있는 근로자는 성인 이더라도 해당없음
- 견습생 제도(Apprenticeship)를 이용하여 근로하는 21세 미만 근로 자들은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음

(단위: %)

숙련도	적용율(최저임금대비)
4년 차	95
3년 차	80
2년 차	65
1년차	55

- \* 자료: 전문가패널
- 업종별(Modern Awards) 적용
- 호주 정부는 Modern Awards제도를 도입하여 약 154개 직업군에 대해 직업별 최저임금, 최소 근로환경 제공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 제하고 있음

696 ... 최저임금위원회

## 5 갱신주기

- □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제(Modern Awards)는 공정노동위원회가 4 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매년 개정하여 발표함
  - 통계자료는 자료별로 갱신 주기가 다르나 대부분 매년 갱신되고 있음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가. 연방정부 표준 최저임금

(단위: A\$, %)

구분	2012년 ('11.7.1~	2013년 ('12.7.1~	2014년 ('13.7.1~	2015년 ('14.7.1~	2016년 ('15.7.1~	2017년 ('16.7.1~	2018년 ('17.7.1~	2019년 ('18.7.1~
I 正	'12.6.30)	'13.6.30)	'14.6.30)	'15.6.30)	(15.7.1	(10.7.1	·18.6.30)	19.6.30
주급	589.30	606.40	622.20	640.90	656.90	672.70	694.90	719.20
시급	15.51	15.96	16.37	16.87	17.29	17.70	18.29	18.93

- \* 출처 : 공정근로위원회
- ※ Casual Worker(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25%를 더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
  - Casual Worker는 정해진 일정한 근무시간이 없고 병가 및 연가를 보장 받지 않으며, 고지 없이 해고가 가능한 근로자를 말함
  - 연령별 차등임금 적용 현황(2018/19년)

(단위: %, A\$)

적 용 연 령	최저임금대비 적용율	시 간 급	주 급 (38시간기준)
20세	97.7	18.49	702.66
19세	82.5	15.62	593.34
18세	68.3	12.93	491.21
17세	57.8	10.94	415.70
16세	47.3	8.95	340.18
16세미만	36.8	6.97	264.67

- \* 출처: 공정근로위원회
- ※ 적용율은 2014.7.1.부터 변화없으며, 성인 최저임금대비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698 ... 최저임금위원회

○ 21세미만 근로자 숙련도별(Apprenticeship) 차등임금 적용 현황(2018-19년)

(단위: %, A\$)

적 용 연 령	최 저 임 금 대 비 적 용 율	시 간 급	주 급 (38시 간기 준)
4년 차	95	17.98	683.24
3년 차	80	15.14	575.36
2년 차	65	12.30	467.48
1년 차	55	10.41	395.56

\* 출처: 공정근로위원회

※ 21세이상 견습생(Apprenticeship)의 경우, 최소 주급 A\$622.20(시급 A\$16.37) 지급이 필요

#### 나. 주정부 표준 최저임금

○ 일부 州정부는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州정부관련 근로자 들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사례 1) 남호주(South Australia) 최저임금

남호주의 경우, 州에서 별도 책정한 최저임금은 州정부, 지방 정부,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됨.

(단위: A\$, %)

적 용 년 도	시 간 급	주 급 (38시간기준)	인 상 률 (시간 기준)
2018년 ('17.7.1~'18.6.30)	18.62	707.50	3.3
2019년 ('18.7.1~'19.6.30)	19.27	732.30	3.5

\* 출처: 남호주 주정부

※ 남호주 지역 2019년 연령별 차등적용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단위: %, A\$)

적 용 연 령	최저임금대비 적용율	시 간 급	주 급 (38시간기준)
20세	90	17.34	659.10
19세	80	15.42	585.80
18세	70	13.49	512.60
17세	60	11.56	439.40
17세미만	50	9.64	366.20

<sup>\*</sup> 출처: 남호주 주정부

## - 남호주 지역 21세 미만의 숙련공의 최저임금 차등적용(2018년)

(단위: %, A\$)

적 용 숙 련 도	최저임금대비 적용율	주 급 (38시간기준)
성인 견습공 (21세 이상)	100	732.30
4년차	88	644.40
3년차	75	549.20
2년차	55	402.80
1년차	42	307.60

\* 출처: 남호주 주정부

<sup>※ 21</sup>세부터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받고 그 미만 연령은 차등 적용받음

## 2 최저임금 적용현황

(단위:%)

적용 업종	영 <b>ਰ</b>	향률
	2018	2016
전 산업	22.5	24.5
광산업	0.9	n/a
건설업	16.6	19.7
도매업	16.1	16.8
소매업	30.1	34.5
숙박, 식당업	44.9	42.7
정보통신업	7.1	5.5
금융·보험	5.2	n/a
행정·지원	41.3	42.1
공공행정·안전	10.9	18.1
보건·복지	31.7	28.8

\* 자료: 공정노동위원회

※ 영향률은 산업별 총 근로자대비 산업별 최저임금만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함

3

##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1. 최근 현안 및 이슈

- 2019.5월 연방 총선을 앞두고 야당(노동당)은 현재 호주 최저임금 으로는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노동당이 집 권한다면 호주 최저임금을 적정 생활수준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이에 대해, 빅토리아 주 등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정부는 최 저임금이 전년대비 5.65%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조 나 연방 노동당의 계획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남호주(South Australia) 등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검토가 보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호주노조위원회(ACTU: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는
   2019.7월부터 적용될 호주 최저임금이 주급기준으로 최소 5.9%(43 호불)인상한 762.20A\$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호주 산업협회, 호주 산업상공회의소 등 기업 및 산업 대표 단체들은 저물가 장기화로 인한 임금인상률 둔화를 극복하 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이용한다면, 대규모 정리해고, 신규채용 축소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주급기준으로 2.0% 수준(14.4호불)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주장

## 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호주공정노동위원회(FWC)의 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호주공정노동위원회 (www.fwc.gov.au)
- 호주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령인 공정노동법(Fair Work Act 2009) http://www.fwc.gov.au/index.cfm?pagename=legislation
-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호주공정노동위원회의 직장정보라인 (Workplace Infoline) 및 웹사이트를 통해 급료 설정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 Work Choices 개혁 이전에 존재했던 근로협약, 계약 및 직장관계법 1996, 직장 관계 규정 2006에 대한 정보는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인 www.fairwork.gov.au 에서 열람 가능
-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 호주와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제도는 이들 두 나라의 특유한 조정중재제도라는 방식으로 성립・발전되었고, 호주의 최저임금제도는 그 수준이 매우 높아서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평가됨
- 호주 연방정부는 1904년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함
- 호주의 최저임금결정방법은 시대와 더불어 변화해 왔으며 필요성 원칙, 지불능력 원칙 및 비교임금의 원칙은 최저임금결정의 기준 으로서 지금까지도 「세계표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은 호주의 경험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음

(작성자) 주호주 대사관 경제·통상 연구원 조성태(전화번호 +61 2 6270 4148, e-mail biz-au@mofa.go.kr)



# 아프리카

## 37. 남아프리카공화국

국	명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언 어		영어 및 아프리칸스, 기타 9개 흑인 부족어(Zulu, Xhosa, Sesotho어 등)		
면	적	1,219,090 <sup>km²</sup>		
인	구	약 5,773만 명 ['18.6.30, 남아공 통계청(Statistics South Africa)]		
수	도	프리토리아(행정), 케이프타운(입법), 블룸폰테인(사법)		
주 9	요도시	프리토리아, 케이프타운, 블룸폰테인, 요하네스버그		
종	교	기독교(79.8%), 이슬람(1.5%), 힌두교(1.2%)		
교 육		9년 의무교육(1학년~9학년: 우리나라 초등학교~중학교과정), 고등교육(10학년~12학년)		
화폐 단위		Rand (1\$=14.28 Rand, '19.3.7.기준, 남아공중앙은행)		
GDP		약 3,494억달러(′17, 세계은행)		
	1인당 GDP	약 6,160.73달러('17, 세계은행)		
주요	GDP성장률	0.8% ('18, 남아공통계청)		
경제	교역	수출 882.67억달러, 수입 830.30억달러 ('17, UN Comtrade		
지표	실업률	27.1% (남아공통계청, '18. 4/4분기 기준) * 구직활동 포기자 제외		
	물가상승률	4.5% (남아공통계청, '18.12. 기준)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za-ko/index.do		

##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1 연혁

- □ 1998.12.1. 이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음
- 여타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자유의사로 임금이 책정되었고, 노동조합이 형성된 경우 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단체협약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함
- ☐ 1998.12.1. 2018.12.31.
- 노동조합 형성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단체교섭이 어려운 사 각지대에 있는 취약분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Act, 1997)은 노동부장관이 최 저임금을 포함한 기본적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함
- 1998년 12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년 이후 매년 노동부장관 명령으로 가사, 농장, 도소매, 건설, 사설경비, 택시운수업, 견습공, 15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등을 취약분야 근로자로 분류하고, 동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을 권고함.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에 규율되었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랜드)

(근기 · 근-						
지역 기사 근로?	시간	기간	최저임금			
		, =	시급	주급	월급	
1. 가사 근로자 (가정부, 운전사, 유모, 정원사 등을 포함)						
도시	27시간 초과	2017.12.12018.11.30	13.05	587.40	2,545.22	
<u> </u>	27시간 이하	2017.12.12018.11.30	15.28	412.6	1,787.80	
비도시	27시간 초과	2017.12.12018.11.30	11.89	534.91	2,317.75	
비교자	27시간 이하	2017.12.12018.11.30	14.03	378.83	1,641.48	
2. 농장 근로	자					
지역 구분없음	1일 근로시간이 9 시간인 농장근로 자에게만 적용	2018.3.12019.2.28.	16.25	731.41	3169.19	
3. 임업 근로	자					
지역 구분없음	1일 근로시간이 9 시간인 임업근로 자에게만 적용	2018.3.12019.2.28.	16.25	731.41	3169.19	
임금 차등		행정업무담당, 배차원(rank n	narshals), 기타	근로자 등 4개호		
지역 구분없음	시간 구분 없음	2017.10.1–2018.6.30.	11.47 - 16.41	550.97 - 787.73	2,387.40 - 3,413.26	
5. 사설 경비	업체 근로자 (11개	직책으로 분류하여 직책, 경험	력, 근무연수 등	등을 고려하여 치	<b>ト등적용</b> )	
도시지역		2017.9.12018.8.31		1주 최대 근무 시간을		
비도시 지역	시간 구분 없음	2017.9.12018.8.31.		2로 명시하고, 제 적용	2,356 - 6,124	
6. 도소매 근	· - - - - -					
	주 27시간 초과	2018.2.12019.1.31.	17.98 - 40.92	-	-	
 도시지역	주 27시간 이하	(General Assistant 부터 Manager까지 세부 15개 직책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용)	17.36 - 39.51	781.73-1,778.05	3,387.38-7,704.32	
비도시	주 27시간 초과	2018.2.12019.1.31. (General Assistant 부터	16.80 - 35.50	-	-	
지역 <u>주 27시가 이하</u> M		Manager까지 세부 15개 직책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용)	16.14 - 34.02	762.57-1,531.16	3,148.28-6,634.56	
7. 숙박업 근	로자					
	근로자 10명		16.36	736.92	3193.12	
지역구분	이하인 사업장	2017.7.1 - 2018.6.30	10,00	700.02	0130.12	
없음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		18.25	821.34	3,559.10	
8. 계약직 청	8. 계약직 청소 근로자					
도시지역		2010 1 1 2010 11 20	20.74	_	-	
기타 지역		2018.1.1.–2018.11.30.	18.90	-	-	
콰줄루나탈	시간 구분 없음	2018.1.12018.2.28	19.36			
(KwaZulu-N atal) 주		2018.3.12018.11.30.	20.00	_	_	

- 취약분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부장관이 하고, 장관은 노동부 사무차관에게 취약분야 근로자의 '직종별 근로조건'(Sectoral Determination)에 대한 조사보고를 지시할 수 있으며, 사무차관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기본적 노동조건 등의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 제출함
  - 사무차관이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설치된 '고용조건위원회 (Employment Conditions Commission)'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는데, 장관이 '고용조건 위원회'의 종합보고서를 승인하여 이를 관보로 공시할 경우, 종합보고서에 제시된 최저임금을 포함한 '직종별 근로조건'등이 취약분야 근로자에 적용되었음
- 취약분야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 '전년도최저임금 + 지역별 (도시/농촌) 연 소비자물가(CPI)상승률 + 1%'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갱신되었으며, 인상 시 직종별/지역별로 특수한 고려사항이 반영되기도 하였음

## □ 2019.1.1. 이후

- 2017년 2월 7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국가경제개발노동위원회'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NEDLAC) 는 국가최저임금협상안을 수용하였고, 동 협상안을 근거로 한 최저임금법안(National Minimum Wage Bill, 2017)이 국회에 상정됨
- 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안은 2018.5.29. 하원, 2018.8.21. 상원을 통과하여, 2018.11.26.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여 입법이 완료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 동 법을 시행함

## 2 법적근거

- 최저 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No. 9 of 2018)
  - 2019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법 시행
  - 동법 4조 (6)항에 의거, 2017년 5월 1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최저임금(시급 R20) 이하의 임금을 지불받은 근로자에게 2017년 5월 1일 부로 소급 적용함

## 3 적용대상

## 1. 사업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또는 고용주

## 2. 근로자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남아공 국방부(National Defence Force) 소속 군인 및 근로자, 남아공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Agency) 소속 요원 및 근로자, 남아공 해외비밀첩보국(South African Secret Service)소속 요원 및 근로자, 보수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는 미적용
- 최저임금법 부칙 1(Schedule 1) 2조에 의거, 농장근로자, 가사근로자 (가사도우미, 정원사, 운전사, 유모 등),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

(Expanded public work programme)에 의거 고용된 근로자 등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일시적으로 제외되고, 다음의 최저 임금이 적용됨

- 농장근로자 : 시급 18랜드

- 가사근로자 : 시급 15랜드

-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 : 시급 11랜드

○ 국가최저임금위원회(National Minimum Wage Commission)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날(2019.1.1.)로부터 18개월 안에 농장근로자와 가사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장관에게 최저임금액을 권고해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날로 부터 2년 이내 국가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농장근로자와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함 (최저임금법 4조)

## 3. 최저 임금 적용 면제 신청

- 고용주 또는 노동부에 등록된 고용주 연합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에 대한 면제 (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음(최저임금법 15조 1항)
- 면제신청 시 ①면제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면제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②고용주가 지불 가능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③기타 조건을 명시해야 함(최저임금법 15조 2항)
  - 최저 임금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①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불 할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할 수 있고, ②고용주가 최저 임금 면제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신청 전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의미있는 논의(meaningfully consulted)를 진행한 경우에만 면제신청을 승인 할 수 있음

- 면제신청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규정한 최저임금의 90% 이하의 금액(가사 근로자와 농장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의 90% 이하의 금액)은 허용하지 않음
-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부칙1에 제시된 결정절차(decision process)를 따라야 하며, 최저임금을 면제 받은 고용주 및 면제 신청이 거절 된 고용주 리스트는 관보에 게재해야 함
- 면제를 받는 고용주는 면제통지서 사본을 해당 근로자 소속된 노 동조합에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사업장에 부착 하여 공시하여야 함
- 고용주가 잘못된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면제를 받은 경우, 고용주가 면제통지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호전된 경우, 기타 면제철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면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 (최저임금시행령 5조)

##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시급, 주급, 월급 등으로 규정)
    - \* 유급주휴제도 없음
-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아래과 같음 [최저임금법 제5조 (1)-(4)항]
    - (1) 근로자가 근로/작업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교통비, 장비 사용료, 식비, 숙박비 등 제반 수당(allowances)
    - (2) 식사 또는 숙박 등 현물급여
    - (3) 선물, 팁, 보너스를 포함한 상여금
    - (4) 기타 법률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등

## 최저임금 이행지도

- 1.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 □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

5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됨
  - (1) 벌금 부과 : 76A조 (1)항과 (2)항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여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 (compliance order)를 받은 고용주에 대해 지급임금액과 최저임금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 또는 근로자 월급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2회 이상위반한 경우 지급임금액과 최저임금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 또는 근로자 월급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2) 76A조 (4)항 : 분기별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미준수 고용주 리스트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함

##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위반 고용주에 대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근로감독관(labour Inspector)을 통해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를 실사하고, 미준수인 경우 시정명령(Compliance order)을 발부함
- 시정명령을 받은 고용주는 주어진 기한내에 시정 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분쟁 1심법원에 해당하는 CCMA(노사분쟁 화해조정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음 [근로기 본조건법 69조 (5)항]

- 노동부 사무차관(Director-General)은 고용주가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CMA에 시정명령을 중재명령(arbitration award)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고, CCMA는 시정명령통지가고용주에게 송달되었고, 해당 고용주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재명령을 발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73조)
- 연간 총보수액이 R205,433.30 이하인 근로자(2014년 7월 1일자 노동부장관명으로 관보로 공시)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우선 보호를 받는 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CCMA에 바로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해 제소할 수 있음
  - 연간 총보수액이 R205,433.30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재판소, 일반 1심법원, 일반 고등법원, 노동법원(고등법원급) 등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Ⅱ. 최저임금의 결정

## 1 결정방법

- 최저 임금 인상/조정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6조는 국가최저임금 위원회 (National Minimum Wage Commission)에서 매년 재고 (review)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조정 권고안을 매년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함
- 재고보고서(Review report)에는 일반 대중의 의견과 함께 제3자의 의견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재고보고서의 권고안을 노동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장관은 국가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서 재검토를 요청 할 수 있음
-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최저임금의조정을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 2 최저임금 인상 기준

- 국가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조정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 및 고려해야 함(최저 임금법은 7조)
  - (1) 인프레이션, 생활비와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할 이유
  - (2) 임금 수준 및 단체협상 결과
  - (3) 국내총생산(GDP)
  - (4) 생산성(productivity)
  - (5)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고용주들의 여건 (ability of employers to carry on their businesses successfully)
  - (6) 신생기업,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운영
  - (7) 권고된 임금조정으로 인해 향후 고용창출 또는 고용에 미칠영향
  - (8) 기타 관련 요인들

## Ⅲ. 주요통계 및 최근동향

## 1 최저임금 현황

- 2019년 1월 1일 부로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은 시급 20랜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3,500랜드,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3,900랜드임
  - 예외적으로 농장근로자는 시급 18랜드, 가사근로자는 시급 15랜드,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는 시급 11랜드의 최저 임금이 적용됨
- 견습계약 (Learnership agreement)을 체결한 견습생의 경우, 규율하는 최저수당(allowance)은 아래와 같음

NQF level	Credits already earned by learner	Minimum allowance per week	
Level 1 or 2	0 - 120	R301.01	
	121 - 240	R601.99	
Level 3	0 - 120	R301.01	
	121 - 240	R566.93	
	241 - 360	R928.11	
Level 4	0 - 120	R301.01	
	121 - 240	R602.05	
	241 - 360	R928.11	
	361 - 480	R1,354.51	
Level 5 to 8	0 - 120	R301.01	
	121 - 240	R652.15	
	241 - 360	R975.75	
	361 - 480	R1,374.61	
	481 - 600	R1,755.84	

## 2 최근 이슈 및 동향 등

## □ 최근 이슈

- ㅇ 남아공은 국가최저임금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남아공 실업률은 2019년 1월 29%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아공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 4분기 청년층 인구(15-34세)의 38.9%가 일자리가 없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 고드한 공기업부 장관은 2019년 2월 12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남 아공 전체 전력의 약 95%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영전력공사 인 에스콤(Eskom)사는 4,190억 랜드(300억 달러상당, 남아공 GDP의 8.5%)의 부채로 인해 재정적으로 파산직전의 심각한 재 정위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그리고 운영적 문제에도 직 면해 있다고 밝힘
  - 남아공 정부는 재정적, 구조적, 그리고 운영상의 위기에 있는 전력공사를 개혁하고 재생하기 위해 전력공사를 발전, 송전, 배 전 3개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발표함
  - 그러나 전력공사 분할 및 구조 조정은 향후 5년간 7,000명의 근로자 해고가 예상되는 바 남아공 전국노조연합(COSATU)는 전국적 파업을 예고하는 등 3개사로의 분할을 반대하고 있음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선임연구원 서광옥 (T:+27 12 460 2508, e-mail: kwseo71@mofa.go.kr)

- O 이 책자의 내용은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 되었습니다.
- 이 책자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전화(044)202-8418, 840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O 이 내용은 인터넷(www.minimumwage.go.kr(최저임금위원회/자료실)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